[None]->[None]->[None]->None  
  
**\* 제목, doc\_id, 질문, 본문은 필수 입력 정보임  
\* 다른 부가 정보를 컬럼에 추가하셔도 됩니다.   
\* 본문의 길이는 500자 내외 추천드리며, 1000자는 넘지 말아주세요!**

[문서종류]->[제목]->[분야]->질문  
  
**본문**

[보호관찰대상자 지도감독 지침]->[지침 적용 범위]->[성인보호관찰]->보호관찰 지침 적용 대상자의 범위가 어떻게 되는가?  
  
**지침 적용 대상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보호관찰법 제3조제1항의 보호관찰 대상자 및 제2항의 사회봉사․수강명령 대상자  
▸벌금미납자법의 사회봉사 허가를 받은 사람  
▸다른 법령에 따라 보호관찰, 치료명령,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받도록 규정된 사람  
▸보호관찰소 선도위탁규정 제4조제1항의 보호관찰소 선도유예 처분을 받은 사람**

[보호관찰대상자 지도감독 지침]->[비대면 지도감독]->[성인보호관찰]->비대면 지도감독은 어떻게 실시하는가?  
  
**비대면 지도감독은 대상자 및 그 관계인을 직접 대면 접촉하지 아니하고 전화, 우편, 전자우편(e-메일) 등의 방법으로 지도감독하는 일체의 보호관찰 활동이다.**

[보호관찰대상자 지도감독 지침]->[인치와 유치]->[성인보호관찰]->인치와 유치의 차이점이 무엇인가?  
  
**인치는 구인 또는 긴급 구인한 대상자를 연행하여 보호관찰소 또는 수사관서에 데려온 것이고, 유치는 구인 또는 긴급 구인한 대상자에 대해 관할 지방법원 판사가 발부한 유치허가장에 의거하여 대상자를 교도소, 구치소, 치료감호시설(가종료 취소에 한한다), 소년분류심사원, 소년원 등 에 일정기간 수용하는 것이다.**

[보호관찰대상자 지도감독 지침]->[집중면담]->[성인보호관찰]->집중면담을 실시하는 대상는 어떤 경우인가?  
  
**성인 성폭력, 약물사범을 대상으로 성폭력사범 재범위험요인 평가도구(KSORAS-T) 또는 약물사범 재범위험요인 평가도구(KDORAS-T)를 활용하여 재범위험요인을 평가하고, 재범위험요인 감소를 위해 성폭력사범 지도감독 매뉴얼 및 약물사범 지도감독 매뉴얼에 따라 실시하는 체계적인 면담이다.**

[보호관찰대상자 지도감독 지침]->[제재의 정의]->[성인보호관찰]->보호관찰 대상자에게 적용할 수 있는 제재조치의 종류는 어떻게 되는가?  
  
**보호관찰법 제32조 및 제62조에 규정된 준수사항을 위반하였거나 위반하였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에 대한 구인장(긴급구인 포함) 신청, 유치허가장 신청, 선고유예 실효 신청, 집행유예 취소 신청, 보호처분 변경 신청, 보호처분 변경 청구, 보호처분 변경 및 취소 청구, 가석방 취소 신청, 보호관찰 정지 신청, 가종료·가출소 취소 신청, 준수사항 추가·변경 신청 등이 있다.**

[보호관찰대상자 지도감독 지침]->[보호관찰 개시일]->[성인보호관찰]->보호관찰의 개시는 언제부터인가?  
  
**지침 제5조(보호관찰의 개시)에 따라, 보호관찰은 법원의 판결이나 결정이 확정된 때 또는 대상자가 가석방․가종료․가출소․임시퇴원된 때부터 시작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보호관찰 시작일을 별도로 정한 때에는 그에 따른다.**

[보호관찰대상자 지도감독 지침]->[판결문 접수]->[성인보호관찰]->법원에서 판결문 송부 등을 지연할 때에는 어떻게 조치해야하는가?  
  
**법원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60조에 따라 판결 확정 후 3일 이내 판결문 등본 및 준수사항을 적은 서면을 관할 보호관찰소에 송부하게 돼 있으므로 판결문 송부 지연 시 법원에 송부 요청을 한다.**

[보호관찰대상자 지도감독 지침]->[보호관찰 대상자의 신고의무]->[성인보호관찰]->성인 대상자의 신고는 어떻게 진행되는가?   
  
**지침 제6조A(성인 대상자의 신고) 보호관찰소의 장은 성인 대상자가 원하는 경우 보호관찰이 개시되기 전에도 신고를 접수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의무를 부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또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10일 이내에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에 출석하여 서면으로’ 주거, 직업, 생활계획,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관할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신고한다. 참고로, 선도위탁 대상자는 처분일로부터 7일 이내 신고(보호관찰소 선도위탁 규정)한다.**

[보호관찰대상자 지도감독 지침]->[보호관찰 대상자의 의무 부과]->[성인보호관찰]->의무를 부과하는 행위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언인가?  
  
**보호관찰 준수사항 교육참석 지시, 사회봉사․수강명령 집행지시 등을 말함. 따라서 판결 확정 전에는 신고접수가 가능하나 위와 같은 집행지시는 검사의 집행지휘서 접수 등 판결 확정 후 실시한다. 따라서, 준수사항 교육 및 특별준수사항 부과 등은 검사의 집행지휘서 접수 후에 진행하여아 한다.**

[보호관찰대상자 지도감독 지침]->[보호관찰의 관할]->[성인보호관찰]->보호관찰소의 관할 기준은 어떻게 정하는가?   
  
**지침 제7조(보호관찰의 관할)에 따라, 보호관찰은 원칙적으로 대상자의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상자의 취업, 신병치료, 학업, 불량 교우 단절, 장기 입원, 기타 보호관찰 지도감독의 목적상 필요한 경우 생활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에서 보호관찰을 실시할 수 있다. 이때, 생활근거지의 증명으로 접수할 수 있는 서류는 주거지 임대차 계약서, 취업확인서, 재직증명서, 건강보험증, 학원수강증, 재학증명서, 입·퇴원증명서 등의 자료가 있다.**

[보호관찰대상자 지도감독 지침]->[준수사항 교육]->[성인보호관찰]->준수사항 교육 진행은 어떻게 하는가?  
  
**지침 제11조A(성인 대상자의 준수사항 교육 진행)에 따라, 보호관찰관은 소년과 성인을 분리하여 아래 내용을 포함한 준수사항 교육을 실시하고, 공범의 유무, 감염병 우려 등을 감안하여 소집단 또는 개별 교육 형태로 실시할 수 있다. 교육내용 예시는 아래와 같다.   
 “보호관찰은 귀하가 자유롭게 사회생활을 하는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귀하가 보호관찰관에게 보고한 내용을 기초로 진행됩니다. 귀하가 보고한 내용이 사실과 다르면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귀하가 보호관찰관에게 허위사실을 보고하는 것은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을 적극적으로 방해하는 준수사항 위반에 해당됩니다.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은 귀하의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를 위해 보호관찰관은 귀하를 출석시키거나, 귀하의 집이나 직장 등을 방문하거나, 공공기관 등에 정보를 의뢰하기도 합니다. 만일 귀하가 사실대로 진술하지 않은 것이 확인되면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므로 경고, 집행유예취소, 보호처분변경 등 불이익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호관찰대상자 지도감독 지침]->[재범위험성평가]->[성인보호관찰]->성인 대상자의 재범위험상 평가 및 시기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지침 제12조A(성인 대상자의 평가 및 시기)에 따라, 보호관찰관은 보호관찰 개시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출장지도와 심층면담, 사전자료를 반영하여 대상자의 재범 위험성을 평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결문·결정문 접수의 지연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재범위험성 평가가 가능한 때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실시할 수 있다. 위와 같은 경우, 판결문·결정문 접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 실시한다. 보호관찰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심층면담 및 재범위험성평가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보호관찰대상자 지도감독 지침]->[심층면담]->[성인보호관찰]->성인 대상자의 출장 방법 및 심층면담 실시시 참고할 자료에는 무엇이 있는가?   
  
**지침 제13조A(성인 대상자의 출장과 심층면담)에 따라, 보호관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심층면담 이전에 성인 대상자의 주거지 또는 직장 등을 방문하여 대상자, 가족 또는 관계인을 면담하고 대상자 관련 정보를 파악하여야 한다. 보호관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재범위험성 평가 이전에 ▴범죄경력 등 조회서 ▴판결․결정․청구전 조사서 ▴이전 보호관찰 경력자의 보호관찰 상황 ▴수형생활 경력자의 동태시찰 상황 및 징계 등의 자료 ▴초기 비행 전력 ▴소년원 교육․처우 기록 등을 참고하여 심층면담을 실시하여야 한다.**

[보호관찰대상자 지도감독 지침]->[다수 사건 대상자의 분류등급]->[성인보호관찰]->동일 대상자의 사건이 여러 개인 경우 분류등급은 무엇을 기준으로 하는가?  
  
**지침 제16조A(다수 사건 대상자의 분류 등급)에 따르면, 동일 대상자의 사건이 여러 개인 경우 직원 1명이 담당하고 하나의 분류 등급만 유지한다. 이 경우 분류 등급은 가장 중한 것으로 한다. 예를 들어서, 하나의 대상자가 2개의 사건이 있는 경우의 분류등급이 각각 집중, 일반이라면, 더 중한 분류등급인 집중을 기준으로 월 2회 출장 및 출석면담의 대면지도를 실시한다. 전자감독 사건과 경합된 대상자의 분류 등급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전자감독 분류 등급 1:1 전담관리, 고위험피부착자 및 집중 피부착자 : 집중  
 2. 전자감독 분류 등급 임시해제 피부착자 및 일반 피부착자 : 주요**

[보호관찰대상자 지도감독 지침]->[분류의 시기]->[성인보호관찰]->초기 분류의 시기는 언제인가?  
  
**지침 제18조(분류의 시기)에 따르면, 초기 분류는 보호관찰관이 보호관찰 개시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출장 후 결과를 반영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가석방자 중 보호관찰 기간이 1개월 미만인 자는 출장 대신 통신지도를 반영하여 실시할 수 있다. 만약, 법원 등으로부터 근거 서류가 늦게 도착하면 근거 서류가 접수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실시한다. 재분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보호관찰관이 보호관찰 집행 상황의 변화에 따라 수시로 실시한다.**

[보호관찰대상자 지도감독 지침]->[성인 대상자의 초기 분류]->[성인보호관찰]->분류 등급을 정하는 기준은 무엇인가?  
  
**지침 제19조A(성인 대상자의 초기 분류)에 따라, 보호관찰관은 초기 분류 시 ‘성인 보호관찰 대상자 재범위험성 평가 도구(K-PRAI)’의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실시하며, 등급별 각 기준은 다음과 같다.  
 '집중' 대상자는 형 집행종료 후 대상자 ▴치료감호기간만료 후 출소자 ▴재범위험성평가 결과 기관내 점수가 상위 5% 까지의 대상자이다.   
'주요' 대상자는 재범위험성 평가 결과 기관 내 점수가 상위 20%까지의 대상자 중 집중대상자를 제외한 모든 대상자이다. '일반' 대상자는 집중 대상자, 주요 대상자, 분류등급제외자를 제외한 모든 대상자이다.   
  
또한, 재범위험성평가 결과 기관내 점수가 상위 20%(ex. 1~20%) 까지의 대상자 중 아래의 ㉠~㉪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집중', 상위 20%(21~99%)를 넘는 대상자 중 아래의 ㉠~㉪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주요로 분류한다.  
  
㉠ 기간 중 재범으로 보호관찰이 재부과된 자  
㉡ 기간 중 제재로 보호관찰이 재부과된 자  
㉢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자  
㉣ 본건 포함 성폭력 전력 2회 이상인 자  
㉤ 본 건 포함 보호관찰 경력 3회 이상인 자  
㉥ 본 건 포함 약물 전력 3회 이상인 자  
㉦ 특별한 사정없이 6개월 이상 무직자  
㉧ 신규 개시한 가출소․가종료자  
㉨ 거주지․연락처가 일정하지 않은 자  
㉩ 치료명령 대상자  
㉪ 조직폭력 대상자**

[보호관찰대상자 지도감독 지침]->[특정사범 대상자의 초기분류]->[성인보호관찰]->가정폭력, 아동학대, 스토킹 대상자의 분류 등급을 정하는 기준은 무엇인가?  
  
**특정사범 대상자의 분류등급은, 주요 대상자, 일반 대상자, 분류등급제외자를 제외한 대상자인 경우 '집중',   
▸가정폭력 피해자가 별거 또는 이혼하여 보호관찰관과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 연락․면담 거부 의사를 명백히 한 경우  
▸아동학대 피해자가 아동보호시설에 입소하거나 관계인에게 위탁되는 등 가해자의 재학대로부터 분명히 보호되고 있는 경우와 스토킹 피해자와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 피해자가 보호관찰관의 연락․면담 거부 의사를 명백히 한 경우 '주요'  
▸가정폭력 ․ 아동학대 ․ 스토킹 피해자가 사망하는 등 전혀 만날 수 없는 경우 '일반'으로 분류한다.   
  
보호관찰관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질병, 장애,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대상자의 분류등급을 조정할 수 있다.**

[보호관찰대상자 지도감독 지침]->[대상자의 등급 유지 기간]->[성인보호관찰]->초기 분류등급은 얼마동안 유지해야하는가?  
  
**지침 제22조(대상자의 등급 유지 기간)에 따르면, 보호관찰관은 초기 분류등급을 집중대상자는 최소 6개월, 주요 대상자는 3개월까지 하향하지 못한다. 보호관찰관은 제1항의 분류 등급 유지기간 이전이라도 장기 입원, 장기 해외출국,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분류 등급을 조정할 수 있으며, 그 사유를 보호관찰정보시스템(K-PIS)에 입력하여야 한다.**

[보호관찰대상자 지도감독 지침]->[보호관찰 대상자 재분류]->[성인보호관찰]->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분류는 무슨 기준으로 하는가?  
  
**지침 제23조A(성인 대상자의 재분류)에 따르면, 보호관찰관은 성인 대상자에 대한 재분류 시 재범위험성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보호관찰관은 대상자가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불응하는 등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분류등급을 상향할 수 있다. 등급을 상향할 수 있는 예시로는, ① 집행유예 취소신청 등이 기각된 경우 ② 고의로 범죄를 저질러 형사처분을 받은 경우 ③ 거주지 및 연락처가 일정하지 않은 경우 ④ 상습적으로 출석에 불응하거나 프로그램 참석 지시 불응 등 ⑤ 허위진술, 진술태도 불량 등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을 곤란하게 하거나 회피하려고 하는 경우 등이 있다. 반대로, 보호관찰관은 대상자가 지도감독에 순응하는 등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는 경우 분류 등급을 하향할 수 있다. 보호관찰 사건 이송의 경우 사건 접수 기관의 보호관찰관은 재범위험성 평가 결과를 검토하여 필요하면 재범위험성 평가를 재실시하고 분류 등급을 조정할 수 있다. 보호관찰관은 대상자에게 질병, 장애,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대상자의 분류 등급을 조정할 수 있다.**

[보호관찰대상자 지도감독 지침]->[성인 대상자의 분류처우 회의]->[성인보호관찰]->성인 대상자의 분류처우회의의 실시 주기 및 목적은 무엇인가?  
  
**지침 제25조A(성인 대상자의 분류처우회의)에 따라, 보호관찰관은 다음 각 호의 성인 대상자에 대해 월 1회 이상 분류처우회의를 실시하며, 해당 대상자가 없는 경우에는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실시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집중 해제 대상자(단, 수용자, 추적대상자로 집중 해제하는 경우에는 분류처우 회의를 생략할 수 있다.)  
2.등급 상향 지정에 이의를 제기하는 대상자  
보호관찰관은 분류처우 회의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논의한다.  
 1. 재분류에 대한 적절성  
 2. 처우계획의 적절성 및 이행 가능성  
 3. 분류 등급별 대상자 분포 및 재범 현황 분석 등(별지 제9호 서식)**

[보호관찰대상자 지도감독 지침]->[분류 등급의 통지]->[성인보호관찰]->분류 등급의 통지는 어떻게 하는가?  
  
**지침 제26조(분류 등급의 통지)에 따라, 보호관찰관은 분류 등급을 지정하거나 등급을 변경한 대상자에 대해서는 구두, 전화, 문자메시지 등 적절한 방법으로 대상자 본인에게 통지하고 그 내용을 보호관찰정보시스템(K-PIS)에 입력하여야 한다. 보호관찰관은 제1항의 경우 대상자의 면담 기피, 주거 부정으로 인한 서신 발송 불가 등 특별한 사정으로 통지가 어려우면 그 사유를 보호관찰 정보시스템(K-PIS)에 입력함으로써 통지를 대체할 수 있다. 또한, 집중 대상자의 지정과 해제는 지침 제27조(집중 대상자의 지정과 해제)에 따라, 중 대상자의 지정과 해제는 ‘집중 보호관찰 지정서’(성인은 별지 제12호 서식, 𝅛소년은 별지 제13호 서식) 및 ‘집중 보호관찰 해제서’(성인은 별지 제14호 서식, 소년은 별지 제15호 서식)로 한다.**

[보호관찰대상자 지도감독 지침]->[대상자의 지도감독]->[성인보호관찰]->보호관찰 개시후 대상자의 지도감독시 반영해야하는 자료에는 무엇이 있는가?  
  
**지침 제28조(대상자의 지도감독)에 보호관찰관은 대상자의 다음 특이사항을 파악하여 지도감독에 반영하여야 한다.  
 1. 재범위험성 평가 점수 등 판결전·결정전·청구전 조사 기록  
 2. 보호관찰관 응대 태도, 보고의 진실성, 지시 이행 등 지도감독 순응 정도  
 3. 대상자 및 가족 외 관계인의 비상연락처  
 4. 피해자 연령 및 특성, 대상자와의 관계  
 5. 수형기록, 청소년비행예방센터․소년원 기록, 정신병력 자료 및 특이행동  
 6. 주거지 상황 확인  
 7. 수시 출입장소, 교우 등 하루 일과의 활동 반경(동선)  
 8. 기타 출장 등을 통해 관계인, 주변인 등으로부터 수집한 자료 및 정보**

[보호관찰대상자 지도감독 지침]->[출장면담 시 착안사항]->[성인보호관찰]->주거지 방문 등의 출장면담의 목적 및 대상자 면담 시 착안  
  
**담당자의 현장 방문은 대상자의 보고내용과 실제 생활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기 위한 보호관찰 지도감독의 핵심 내용이므로, 사전에 그 취지를 설명하고 대상자가 지도감독을 위한 방문에 순응하지 않거나 저항할 경우 준수사항 불이행에 대해 지적하고 경고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처우계획에 근거하여 대상자에게 부과된 각종 지시사항에 대해 순응여부를 확인하고, 면담 후에는 가족 및 친구들과의 통화, 출장을 통해 불량교우 접촉 등 준수사항 이행 유무를 확인하여 대상자가 담당자를 기만하지 못하도록 한다. 지도감독 지시는 추상적(‘준수사항을 지킬 것’ 등)으로 하지 않고, 구체적으로 한다.**

[보호관찰대상자 지도감독 지침]->[출석, 출장에 대한 대상자의 불만]->[성인보호관찰]->출석, 출장(주거지, 직장 등)에 대해 대상자가 사생활 침해라고 불만을 토로하면?  
  
**무례하고 반항적으로 행동하여 두려움을 위장하려는 경향이 있으므로, 위와 같은 행동의 발생원인과 주변환경 등을 면밀히 관찰한 후 친화적 관계를 형성함과 동시에 준수사항 이행의 필요성과 법적 의무감임을 각인시키는 것이 필요, 특히 신고 시 출석의무 ․ 현장 방문 취지 등을 철저히 교육하여 현장 방문으로 발생할 수 있는 저항을 사전에 차단하도록 한다.**

[보호관찰대상자 지도감독 지침]->[성인 대상자의 분류 등급별 지도감독]->[성인보호관찰]->분류 등급별 대상자의 지도감독 방법 및 횟수는 무엇인가?  
  
**지침 제31조A(성인 대상자의 지도감독) 성인 대상자에 대한 지도감독 횟수는 등급 지정일로부터 시작하며, 등급별 지도감독 횟수는 다음과 같다. 집중 대상자는 월 2회(월 1회 출장포함), 주요 대상자는 월 1회(격월 1회 출장 포함), 일반 대상자는 격월 1회(반기 1회 출장 포함)로 진행한다. 보호관찰관은 대상자와 결연한 보호관찰위원 등의 경과통보서 내용이 적절하면 월 1회에 한하여 보호관찰관의 대면 지도감독으로 대체하여 인정할 수 있다. 대상자가 주거를 이전하거나 직장을 변경한 경우에는 출장을 통한 지도감독을 우선 실시하며, 이때 출장은 대면 지도감독 횟수에 포함한다. 호관찰관은 대상자의 출석 지도감독 시 ‘생활보고서’(𝅛성인은 별지 제16호 서식, 𝅛소년은 별지 제17호 서식)를 제출받아 그 내용과 면담 시간을 보호관찰정보시스템(K-PIS)에 입력하고 보호관찰기록철에 편철하여야 한다. 다만, 대상자가 무인단말기(KIOSK)를 통해 생활보고를 한 경우 생활보고서의 보호관찰기록철 편철을 생략할 수 있다.**

[보호관찰대상자 지도감독 지침]->[대면 지도감독 횟수의 조정]->[성인보호관찰]->대면 지도감독의 횟수를 조정할 수 있는가?  
  
**지침 제32조(대면 지도감독 횟수의 조정)에 따르면, 보호관찰관은 대상자의 원거리 취업 등 불가피한 사유로 대면 지도감독 횟수를 변경할 필요가 있으면 그 사유를 보호관찰정보시스템(K-PIS)에 상세히 입력하고 2개월 이내에서 등급 변경 없이 대면 지도감독 횟수를 감소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감소된 횟수만큼 비대면 지도감독을 추가로 실시하여야 한다.**

[보호관찰대상자 지도감독 지침]->[비대면 지도감독]->[성인보호관찰]->비대면 지도감독은 어떤 경우에 실시할 수 있는가?  
  
**지침 제33조(비대면 지도감독)에 따르면, 보호관찰관은 대상자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사유를 보호관찰정보시스템(K-PIS)에 입력하고 분류 등급에 관계없이 매월 비대면 지도감독을 실시할 수 있다.   
 1. 1개월 이상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중증 질환으로 자립 보행이 어렵거나 장기 입원 치료가 불가피한 경우  
 2. 의무경찰대원, 의무소방원으로서 해당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  
 3. 장애, 감염병 등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보호관찰대상자 지도감독 지침]->[사전 면담 예약제]->[성인보호관찰]->면담 시간 예약 및 관리는 어떻게 하는가?  
  
**지침 제35조(면담 시간 예약) 에 따르면, 보호관찰관은 대상자의 차기 출석 면담 일시를 지정할 때에는 면담하는 특정 일자와 시간을 정하여 고지하고, 지시 내용과 대상자의 이행 여부를 보호관찰정보시스템(K-PIS)에 입력하여야 한다. 보호관찰관은 면담 시간을 사후에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변경된 면담 시간을 대상자에게 미리 고지하여야 한다. 보호관찰관은 대상자가 면담 시간에 출석하기 어려운 사유가 발생하면 미리 구두, 전화, 우편, 전자우편(e-메일), 문자메시지 등의 방법으로 보고하여 허가를 받도록 하여야 하고, 면담 일시를 조정하는 경우 새로운 면담 시간을 지정한다. 보호관찰관은 제3항의 경우 사후에 소명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보호관찰관은 대상자가 면담 시간에 출석하지 않거나 출석불응에 대한 지시 등에 따르지 않으면 주의, 경고, 소환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보호관찰관은 대상자가 면담 시간이 아닌 임의의 일시에 출석한 경우 공식적 면담으로 인정하여서는 안 되며 면담 일시를 새롭게 재지정한다. 다만, 담당 보호관찰관은 전후 사정을 고려하여 공식적 면담을 진행할 수 있다. 주의 사항으로, 긴급한 업무로 대상자에게 사전고지를 못 할 경우에는 업무대직자가 면담 진행 가능하다.**

[보호관찰대상자 지도감독 지침]->[가정폭력 대상자의 지도감독]->[성인보호관찰]->가정폭력 대상자의 지도감독의 구체적 단계는 무엇인가?  
  
**지침 제37조(가정폭력) 보호관찰관은 가정폭력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하여 다음 표와 같이 지도감독을 실시한다.  
1. 개시단계  
▸신고 시 확인서 교부  
 - ‘가정폭력 대상자 준수사항 이행 고지 확인서’(별지 제18호 서식)로 고지한 후, 1부는 가정폭력 대상자에게 교부하고 1부는 보호관찰기록철에 편철  
▸신고 시 또는 심층면담 시 정신건강 선별검사 실시  
 ※ 6개월 미만자(선도위탁 2급 포함), 정신질환 치료자, 고령, 문맹, 질병, 부동의 시 제외  
 - 정신건강 선별검사 실시 결과 (고)위험군인 경우, 연계상담․병원연계 등 치료적 개입 강화  
 ※ 경과통보서 및 상담사 면담내용 등을 통해 대상자의 범행동기·원인 및 정신건강 상태를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이를 지도감독에 반영  
▸피해자 정보 확인   
 - 시기 : 개시 1개월 이내  
 - 내용 :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 성명, 나이, 연락처, 실제 주거지, 접근금지 여부, 면담 의사 여부, 기타 참고사항 등을 기재하고,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보호자의 의견을 기재하여야 함  
 - 입력 : 보호관찰정보시스템(K-PIS) ‘피해자 정보’란에 입력  
  
2. 집행단계  
▸대상자의 행동을 면밀히 관찰하고 피해자 또는 가족과 주기적인 연락․면담을 통해 가정폭력 재발여부 확인  
- 대상자 : 분류등급에 따른 대면 지도감독(제31조A) 실시  
- 피해자 : 대상자의 분류등급에 상관없이 피해자 또는 가족에 대해 매월 2회 이상 비대면(전화, 문자 등) 또는 대면 면담 실시  
 (피해자가 별거 또는 이혼하여 보호관찰관과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 보호관찰관의 연락․면담 거부 의사를 명백히 한 경우, 사망한 경우 등으로 피해자를 전혀 만날 수 없는 경우는 제외)  
 ※ 대상자 현지출장 시 면담을 하고, 피해자 또한 면담하였다면 대상자 및 피해자에 대한 현지출장 횟수로 각 인정  
 ※ 제외 사유 및 면담내용 K-PIS 입력**

[보호관찰대상자 지도감독 지침]->[가정폭력 대상자의 가족과의 협력 강화]->[성인보호관찰]->가정폭력 대상자의 지도감독시 가족과의 협조관계 강화가 중요한 이유는?  
  
 **가정폭력의 특성상 피해자가 보복이 두려워 신고하지 않는 경향이 다분하므로 재범 시 즉시 신고할 수 있도록 가족과의 협조관계 강화한다. 가정폭력 행위자는 사실을 축소 또는 왜곡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피해자와 면담하여 폭행기간, 정도, 이유, 음주연관성, 피해자의 감정 등을 파악하고, 폭력 재발 시 대처요령에 대해 교육한다.**

[보호관찰대상자 지도감독 지침]->[아동학대 대상자의 지도감독]->[성인보호관찰]->아동학대 대상자의 지도감독의 구체적 단계는 무엇인가?  
  
**지침 제38조(아동학대) 보호관찰관은 아동학대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하여 다음 표와 같이 지도감독을 실시한다.  
1. 개시단게  
▸신고 시 확인서 교부  
 - ‘아동학대 대상자 준수사항 이행 고지 확인서’(별지 제19호 서식)로 고지한 후, 1부는 아동학대 대상자에게 교부하고 1부는 보호관찰기록철에 편철  
▸신고 시 또는 심층면담 시 정신건강 선별검사 실시  
 ※ 6개월 미만자(선도위탁 2급 포함), 정신질환 치료자, 고령, 문맹, 질병, 부동의 시 제외  
 - 정신건강 선별검사 실시 결과 (고)위험군인 경우, 연계상담․병원연계 등 치료적 개입 강화  
 ※ 경과통보서 및 상담사 면담내용 등을 통해 대상자의 범행동기·원인 및 정신건강 상태를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이를 지도감독에 반영  
▸피해자 정보 확인   
 - 시기 : 개시 1개월 이내  
 - 내용 :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 성명, 나이, 연락처, 실제 주거지, 접근금지 여부, 면담 의사 여부, 기타 참고사항 등을 기재하고, 보호자의 의견을 기재해야 함  
 - 입력 : 보호관찰정보시스템(K-PIS) ‘피해자 정보’란에 입력  
  
2. 집행단계  
▸대상자의 행동을 면밀히 관찰하고 피해자, 가족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과 주기적인 연락․면담을 통해 아동학대 재발여부, 대상자의 접촉시도 등 확인  
- 대상자 : 분류등급에 따른 대면 지도감독(제31조A) 실시  
- 피해자 : 대상자의 분류등급에 상관없이 피해자에 대해 매월 1회 이상 현지출장 매월 1회 이상 비대면(전화, 문자 등) 또는 대면 면담 실시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제외)  
 ※ 대상자 현지출장 시 면담을 하고, 피해자 또한 면담하였다면 대상자 및 피해자에 대한 현지출장 횟수로 각 인정  
 ※ 제외 사유 및 면담내용 K-PIS 입력**

[보호관찰대상자 지도감독 지침]->[아동학대 사범 지도감독 시 유의 사항]->[성인보호관찰]->아동학대 사범 지도감독 시 유의해야할 점에는 무엇이 있는가?  
  
**아동학대 사범 지도감독 시 유의해아할 새항은 다음과 같다. 주도적 상호관계를 유지하며, 특히 ① 대상자의 다양한 정보를 파악하여 주도권 유지한다. ② 대상자와 일정한 관계 유지한다.(부적절한 관계가 형성될 경우 약점을 잡혀 주도권을 뺏길 수 있음) ③ 보호관찰관의 이중적 지위 명심하도록 한다.(원조가․조력가인 동시에 감시자․통제권자임)**

[보호관찰대상자 지도감독 지침]->[보호처분 이행상황 통보]->[성인보호관찰]->아동학대범죄로 보호관찰을 받은 대상자의 이행상황 통보는 어떤 경우에 하는가?  
  
**지침 제39조(보호처분 이행상황 통보)에 따르면, 보호관찰관은 아동학대범죄로 보호관찰을 받은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호처분 이행상황 통보서’(별지 제20호 서식)로 대상자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아동학대처벌법」제38조제2항에 따른 보호처분 이행상황을 통보하고, 그 내용을 보호관찰정보시스템(K-PIS)에 입력하여야 한다.  
 1. 추적대상자로 분류된 경우   
 2. 피해아동 면담을 방해하거나 면담 중 재학대 행위를 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3. 사건 이송 시(사건이송 기관이 신․구 주거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동시 통보)  
 4. 보호처분이 취소 또는 변경된 경우  
 5. 보호처분이 종료된 경우**

[보호관찰대상자 지도감독 지침]->[피해아동 보호명령 연장 청구 요청]->[성인보호관찰]->피해아동 보호명령 연장 청구 요청은 어떻게 하는가?  
  
**지침 제40조(피해아동 보호명령 연장 청구 요청)에 따르면, 보호관찰관은 지도감독 과정에서 대상자의 피해아동보호명령위반 사례가 확인되어 아동의 안전 확보와 재학대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피해아동보호명령 연장 청구 요청서’(별지 제21호 서식)로 피해아동보호명령 연장청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호관찰관은 그 내용 및 요청에 따른 연장청구, 연장여부 등의 결과를 보호관찰정보시스템(K-PIS)에 입력하여야 한다.  
  
위의 경우 대상자의 주거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요청하되, 피해아동의 보호위탁, 치료위탁, 상담․치료위탁, 연고자 등 가정위탁의 피해아동보호명령은 피해아동 보호명령을 위임받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수탁연고자 등의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요청한다.**

[보호관찰대상자 지도감독 지침]->[아동보호전문기관과의 협력]->[성인보호관찰]->아동보호전문기관과의 협력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지침 제41조(아동보호전문기관과의 협력)에 따르면, 보호관찰관은 분기 1회 이상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과 함께 사례관리회의를 실시하며, 사례관리회의에서 선별된 고위험 가정 방문 시 가급적 월 1회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과 동행하여 출장한다.보호관찰관은 피해아동이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보호를 받고 있는 경우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을 통해 피해아동의 상태, 재학대 위험성 등의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피해자에 대한 면담 횟수에 포함한다. 보호관찰소의 장은 제1항과 제2항을 위하여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을 특별보호관찰위원으로 위촉하여 체계적 사례개입 등을 위한 결연상담을 진행할 수 있고, 특별보호관찰위원에게 보호관찰기록철 등 필요 최소 범위의 자료를 열람하게 할 수 있다.**

[보호관찰대상자 지도감독 지침]->[특별보호관찰위원의 자료 열람]->[성인보호관찰]->특별보호관찰위원에게 자료를 열람하게 할 수 있는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①보호관찰 갑지 ②재범위험성평가(K-PRAI-R) 결과표 및 평가사유 ③처우계획서 및 분류처우회의 자료 ④기타 필요한 최소 범위의 자료 등이 있다.  
 ※ ①은 교부가능(주민번호 뒷자리 삭제), ②~④는 열람 후 회수하도록 함**

[보호관찰대상자 지도감독 지침]->[스토킹 대상자의 지도감독(개시단계)]->[성인보호관찰]->스토킹 대상자의 지도감독에서 개시단계시 실시해야할 사항들은 무엇이 있는가?  
  
**지침 제42조(스토킹)에 따르면, 개시단계는 다음과 같이 지도감독을 실시힌다.  
▸개시 초기 정신건강 선별검사 실시  
 ※ 6개월 미만자(선도위탁 2급 포함), 정신질환 치료자, 고령, 문맹, 질병, 부동의 시 제외  
 - 정신건강 선별검사 실시 결과 (고)위험군인 경우, 연계상담․병원연계 등 치료적 개입 강화  
 - 경과통보서 및 상담사 면담내용 등을 통해 대상자의 범행동기·원인 및 정신건강 상태를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이를 지도감독에 반영  
  
▸피해자 정보 확인   
 - 시기 : 개시 1개월 이내  
 - 대상 : 접근․연락 금지 등 특별준수사항 부과자  
 ※ 준수사항 미부과자 : 특별준수사항 추가 신청  
 - 내용 : 법원․검찰 등을 통하여 피해자의 성명, 연락처, 주거지 등 피해자의 기본 인적사항 확보 후 K-PIS ‘피해자 정보’에 입력**

[보호관찰대상자 지도감독 지침]->[스토킹 대상자의 지도감독(집행단계)]->[성인보호관찰]->스토킹 대상자의 지도감독에서 집행단계시 실시해야할 사항들은 무엇이 있는가?  
  
**지침 제42조(스토킹)에 따르면, 집행단계는 다음과 같이 지도감독을 실시힌다.  
▸피해자에 대한 보복 등 재발 방지에 주력  
 - 보복 위험성을 이유로 피해자의 신고가 소극적일 수 있으므로 피해자에 대한 현장 방문, 비대면 면담 등을 통해 보호관찰의 취지,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고 스토킹 기간․내용, 피해자의 감정 등에 대한 상세한 파악  
- 대상자 : 분류등급에 따른 대면 지도감독(제31조A) 실시  
- 피해자 : 대상자의 분류등급에 상관없이 피해자에 대해 매주 1회 이상 비대면(전화, 문자 등) 또는 대면 면담 실시(피해자와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 보호관찰관의 연락․면담 거부 의사를 명백히 한 경우, 사망한 경우 등으로 피해자를 전혀 만날 수 없는 경우는 제외)  
 ※ 제외 사유 및 면담내용 K-PIS 입력**

[보호관찰대상자 지도감독 지침]->[성폭력 대상자의 지도감독(개시단계)]->[성인보호관찰]->성폭력 대상자의 지도감독에서 개시단계시 실시해야할 사항들은 무엇이 있는가?  
  
**지침 제43조A(성폭력) 보호관찰관은 성인 성폭력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하여 다음 표와 같이 지도감독을 실시한다.  
▸신고 시 또는 심층면담 시 정신건강 선별검사 실시  
 ※ 6개월 미만자(선도위탁 2급 포함), 정신질환 치료자, 고령, 문맹, 질병, 부동의 시 제외  
 - 정신건강 선별검사 실시 결과 (고)위험군인 경우, 연계상담․병원연계 등 치료적 개입 강화  
 ※ 경과통보서 및 상담사 면담내용 등을 통해 대상자의 범행동기·원인 및 정신건강 상태를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이를 지도감독에 반영  
  
▸재범위험요인 평가 실시  
 - 시기 : (초기분류 또는 재분류) 분류일로부터 1개월 이내  
 ※ 이송처리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평가가 가능한 때로부터 1개월 이내 실시  
 - 대상 : 집중으로 (재)분류된 대상자  
 - 활용 : 재범위험요인 평가도구(KSORAS-T)  
 - 입력 및 편철 : 재범위험요인 평가내용 및 사유를 K-PIS에 입력하고, 재범위험요인 평가결과표를 보호관찰기록철에 편철  
 ※ 면담의 실익이 없거나, 고령, 장애인 등 면담 진행이 곤란한 자는 제외 가능하되, 제외사유는 K-PIS 입력  
  
▸피해자 정보 확인   
 - 대상 : 특별준수사항으로 ‘피해자 등 특정인에 대한 접근금지’ 부과자  
 - 방법 : 법원, 검찰, 경찰을 통한 피해자 정보 수집  
 - 조치 : 대상자의 특별준수사항 부과 사실을 피해자에게 고지하고, 이후 피해자와 연락체계를 유지하여 위반여부 확인  
 ※ 피해자 등 특정인이 보호관찰관과의 접촉거부 의사를 밝히거나 접촉 거부를 위해 의도적으로 연락처 등을 변경할 경우 제외**

[보호관찰대상자 지도감독 지침]->[성폭력 대상자의 지도감독(집행단계)]->[성인보호관찰]->성폭력 대상자의 지도감독에서 집행단계시 실시해야할 사항들은 무엇이 있는가?  
  
**▸지도감독 : 대상자의 행동을 면밀히 관찰하고 피해자와 주기적인 연락을 통해 성폭력 재발여부 확인   
- 대상자 : 분류등급에 따른 대면 지도감독(제31조A) 실시  
- 피해자 : 대상자의 분류등급에 상관없이 피해자에 대해 매월 1회 이상 비대면(전화, 문자 등) 면담 실시  
 (피해자와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 보호관찰관의 연락․면담 거부 의사를 명백히 한 경우, 사망한 경우 등으로 피해자를 전혀 만날 수 없는 경우는 제외)  
 ※ 제외 사유 및 면담내용 K-PIS 입력  
  
▸집중면담 실시  
 - 대상 : 집중으로 (재)분류된 대상자(필요시 등급에 상관없이 실시 가능)  
 - 방법 : 사범별 지도감독 매뉴얼에서 제시하는 프로그램이 완료될 때까지 월 1회 이상 계속 실시 원칙  
 - 정지 : 장기입원, 해외출국, 기타 특별한 사유 발생 시 정지 가능(사유 소멸 시 즉시 재개)  
 ※ 면담의 실익이 없거나, 고령, 장애인 등 면담 진행이 곤란한 자는 제외 가능하되, 제외사유는 K-PIS 입력  
  
▸집중면담을 대체하는 연계상담 적극 실시  
 - 대상 : 대상자의 정서상태, 범죄력 등을 고려할 때 치료적 개입이 필요한 경우 집중면담을 대체하여 연계상담을 실시할 수 있음  
 - 방법 : 연계일로부터 6개월간, 월 1~2회, 회기당 1시간 상담을 원칙  
 - 조정 : 연계상담 기간 및 시간 등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보호관찰관이 외부 전문가와 협의 후 조정 가능  
 ※ 면담의 실익이 없거나, 고령, 장애인 등 면담 진행이 곤란한 자는 제외 가능하되, 제외사유는 K-PIS 입력  
 ※ 재범예방을 위해 필요한 경우 분류 등급과 상관없이 집중면담 또는 연계상담을 실시할 수 있음**

[보호관찰대상자 지도감독 지침]->[연계상담을 위한 특별보호관찰 위원 위촉]->[성인보호관찰]->연계상담을 위한 특별보호관찰 위원 위촉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지침 제44조(연계상담을 위한 특별보호관찰 위원 위촉)에 따르면,  
 ① 보호관찰소의 장은 연계상담에 참여하는 외부전문가를 특별보호관찰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보호관찰관은 연계상담에 참여하는 특별보호관찰위원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열람하게 할 수 있다.  
 1. 보호관찰기록철  
 2. 재범위험성 평가(KPRAI-R, JDRAI-S,D) 결과표 및 평가사유  
 3.성폭력 재범위험요인 평가(KSORAS-T) 결과표 및 평가사유  
 4. 기타 상담에 필요한 최소 범위의 자료  
 ③ 보호관찰소의 장은 예산을 고려하여 연계상담 실시 범위를 정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회기별 상담사례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보호관찰관은 외부전문가 연계상담 개시 후 외부전문가로부터 매월 ‘상담결과통보서’(별지 제22호 서식)를 제출받아 보호관찰정보시스템(K-PIS)에 입력하고, 보호관찰기록철에 편철․관리한다.**

[보호관찰대상자 지도감독 지침]->[마약류 대상자의 지도감독]->[성인보호관찰]->약물검사는 어떻게 실시하는가?  
  
**지침 제46조(약물검사 일반)에 따라, 보호관찰소의 장은 성인 및 소년 마약사범에 대해 연중 계획을 세워 자체 불시 약물검사를 실시하고, 불시 약물검사 계획에 따라 대상자의 출석면담, 소환, 주거지 방문 등의 방법으로 불시에 약물검사를 실시한다. 보호관찰소의 장은 마약류 대상자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동성(同性) 직원이 담당하게 한다. 보호관찰관은 대상자의 주거지 등을 방문하여 약물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2명 이상의 직원이 출장하도록 하여야 한다. 보호관찰관은 약물검사 시 소변시료의 변조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대상자의 복장 검사, 겉옷의 탈의, 채취 시점 시료의 온도 확인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보호관찰대상자 지도감독 지침]->[간이약물검사]->[성인보호관찰]->특별준수사항으로 약물검사 수검의무가 부과된 대상자는 어떻게 약물검사를 실시하는가?  
  
**지침 제48조(간이약물검사)에서, 보호관찰관은 ‘약물검사 수검의무’ 특별 준수사항이 부과된 약물사범과 신고 시 약물검사에 동의한 대상자에 대해 신고 이후 최초 출석 면담 시 아래에 따른 간이시약으로 최초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간이시약 종류  
- MET : 메스암페타민(필로폰)  
- THC : 대마(=마리화나), 해시시  
- MOP : 모르핀(=아편)  
- AMP : 암페타민  
- MDMA : 엑스터시  
- OPI : 아편(=모르핀)  
- COC : 코카인  
  
보호관찰관은 약물사범의 분류 등급에 따라 집중은 월 2회, 주요는 월 1회, 일반은 격월 1회 이상 약물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보호관찰관은 약물검사 전 간이시약에 사용일자 및 대상자 성명을 기록하여, 사용한 시약과 피검사자의 동일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약물검사에 사용된 검사시약은 카메라로 촬영하여 멀티미디어로 저장하고, 담당 보호관찰관이 보호관찰정보시스템(K-PIS)을 통해 검사결과를 확인한 후 폐기한다.**

[보호관찰대상자 지도감독 지침]->[약물 복용 대상자의 자백]->[성인보호관찰]->정밀검사 전에 대상자가 약물을 복용한 사실을 자백하면?  
  
**간이약물 검사 결과가 양성이고 대상자가 이를 시인하여도 증거력이 약해 기각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약물 투약 시인 여부와 상관없이 정밀검사 결과에 따라 처리한다.**

[보호관찰대상자 지도감독 지침]->[정밀검사]->[성인보호관찰]->정밀검사의 전반적인 실시 절차 등은?  
  
**보호관찰관은 간이시약 검사 결과가 양성인 경우 ‘마약류 정밀 검사 및 복약검사 기관’(별표 2)에 소변검사 또는 모발검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보호관찰관은 필요한 경우 간이시약검사 결과에 상관없이 ‘마약류 정밀검사 및 복약검사 기관’에 소변 또는 모발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보호관찰관은 소환불응 또는 소재불명 기간이 3개월 이상인 대상자, 마약류 투약 등 정보가 입수된 대상자의 경우 마약류 검출 가능 기간을 참고하여 추가로 모발 검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보호관찰관은 약물검사를 위해 소변 시료를 채취할 때 30ml 이상, 모발검사는 모근 50올 이상을 제출받도록 하여야 한다. 보호관찰관은 ‘마약류(환각물질 포함) 정밀검사 및 복약검사 기관’에 소변검사 또는 모발검사를 의뢰하는 경우 시료 종류 및 채취량, 채취일시 등을 기재한 ‘정밀검사 확인서’(별지 제25호 서식)를 작성하여 대상자로 하여금 서명 날인 또는 무인하게 하여야 한다. 보호관찰관은 정밀검사 통보 결과가 양성이면「보호관찰법」제39조제1항제3호의 ‘도주할 염려가 있는 경우’를 이유로 대상자에 대한 구인장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구인장 신청의 법률요건 충족여부가 불명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대상자에 대한 소환 절차를 진행하고, 대상자가 이에 응하지 않을 시 구인장을 신청한다.**

[보호관찰대상자 지도감독 지침]->[소변채취 시 주의사항]->[성인보호관찰]->약물검사를 위한 소변채위 시 유의사항은?  
  
**대상자의 수치심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밀폐된 장소에서 직원 감독 하에 실시하고, 대상자가 별도의 소변 또는 물 등을 섞기도 하므로 소변채취 감독 시 유의하도록 한다.**

[보호관찰대상자 지도감독 지침]->[약물검사 양성반응에 따른 구인장 신청]->[성인보호관찰]->약물검사 양성반응에 따른 구인장 신청할 수 있는 경우는?  
  
**수사항 위반사실 외 증거인멸 또는 도주우려 등을 적시하여 구인장 신청, 구인장 신청이 기각된 경우 집행유예취소 신청을 할 수 있다.**

[보호관찰대상자 지도감독 지침]->[환각물질 사범]->[성인보호관찰]->간이시약으로 투약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환각물질에 대해서는 어떻게 검사를 실시하는가?  
  
**지침 제50조(환각물질 사범)에서, 보호관찰관은 간이시약으로 투약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환각물질 사범에 대해 ‘약물검사 수검의무’ 특별 준수사항이 부과된 대상자나 신고 시 약물검사에 동의한 대상자에 대해 신고 이후 최초 출석 면담 시 정밀검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보호관찰관은 분류등급이 집중 대상자인 경우 월 1회, 주요 대상자인 경우 분기 1회, 일반 대상자의 경우 반기 1회 이상 정밀검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보호관찰대상자 지도감독 지침]->[성매매 대상자의 자립지원 시설의 종류]->[성인보호관찰]->자립지원이 필요한 자에 대한 지원시설의 종료에는 무엇이 있는가?  
  
**▸일반 지원시설 : 성매매피해자 등을 대상으로 1년의 범위에서 제공하고 자립을 지원  
▸청소년 지원시설 : 19세 미만의 성매매피해자 등을 대상으로 19세가 될 때까지 숙식제공, 취학 및 교육 등을 지원  
 ▸외국인 지원시설 : 외국인 성매매피해자 등을 대상으로 3개월의 범위에서 숙식 제공 및 귀국 지원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 : 성매매피해자 등을 대상으로 2년의 범위에서 숙박 등 지원  
※ 지원시설(상담소) 현황은 한국여성인권진흥원(www.stop.or.kr) 홈페이지 참조**

[보호관찰대상자 지도감독 지침]->[형 집행 종료 후 대상자의 지도감독]->[성인보호관찰]->형 집행 종료 후 대상자의 주거이전, 국내여행 및 출국허가 등에 대한 증빙자료는?  
  
**지침 제61조(형 집행 종료 후 대상자의 주거이전․국내여행 및 출국허가 등)에 따라, 보호관찰관은 형 집행 종료 후 대상자가 주거이전․7일 이상의 국내여행 및 출국을 할 때에는 보호관찰소에 출석하여 ‘주거이전, 국내여행, 출국 허가신청서’(별지 제41호 서식) 및 아래의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 주거이전 시 : 주민등록표, 주택매매·임차 계약서, 취업예정서 등 그 밖의 주거이전 증빙서류  
- 7일 이상의 국내여행 시 : 항공권·승차권·숙박 예약 영수증 등 그 밖의 여행 증빙서류  
출국 시  
 - 출국시 : 여권, 항공권, 출국 목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출국 후 체류지와 연락처, 전담보호관찰관과 연락 가능한 방법, 연락 가능한 국내·외 거주자의 인적사항 및 연락처 등의 증빙자료를 첨부한 ‘출국 관련 소명자료’(별지 제42호 서식**

[보호관찰대상자 지도감독 지침]->[형 집행 종료 후 대상자의 지도감독]->[성인보호관찰]->형 집행 종료 후 대상자의 출국허가를 결정 절차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결정 기간은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이다. 고려사항으로는 '주거이전 예정지나 국내여행 예정지 또는 출국 예정지',   
'주거이전 이유나 국내여행 목적', '출국의 목적 또는 법 제32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에 따른 준수사항 이행 정도 등' 출국허가 결정 시 불허사유가 있다. 출국허가 결정시 불허사유에는 아래의 3가지가 있다.  
 1. ｢출입국관리법｣ 제4조 등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출국이 금지된 경우  
 2. 출국의 목적에 관한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3. 보호관찰 기간 중 정당한 사유 없이 출국 허가기간 내에 귀국하지 아니하였거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국한 전력이 있는 경우이다. 출국 기간은 출국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정하되, 치료, 생업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이를 초과하여 정할 수 있다.  
  
보호관찰관은 출국 허가를 할 경우 ‘주거이전, 국내여행, 출국 허가서’(별지 제43호 서식)를 교부하고, 출국을 허가한 때에는 ‘형 집행 종료 후 대상자 출입국 시 주의사항’(별지 제44호 서식)을 교부하고 이를 교육하여야 한다.**

[보호관찰대상자 지도감독 지침]->[형 집행 종료 후 대상자의 출국시 지도감독]->[성인보호관찰]->보호관찰관은 형 집행 종료 후 대상자가 출국한 때의 지도감독 방안은?  
  
**형 집행 종료 후 대상자가 출국한 경우 다음과 같이 지도감독한다.  
- 출입국 사실 통보 요청 : 형 집행 종료 후 대상자가 출국한 때 ‘출입국 사실 통보 요청’(별지 제45호 서식)  
 ※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제7항  
- 출입국 사실조회 : 월 2회 이상 출입국 사실 조회를 통해 형 집행 종료 후 대상자의 입국 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보호관찰정보시스템(K-PIS)에 입력  
 ※ 출국기간이 7일 미만인 경우에는 출입국 사실 조회를 생략할 수 있음  
- 지도감독 : 형 집행 종료 후 대상자의 출국기간 동안 출국 전 분류등급에 해당하는 대면 지도감독 횟수만큼 전화, 이메일(e-mail) 등의 방법으로 준수사항 이행 여부 및 신상정보 변동사항 등에 대하여 보고할 것을 지시한다. 대상자가 치료, 생업 지속 등의 이유로 허가받은 기간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1회에 한하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기간을 연장할 경우 이메일(e-mail) 등으로 ‘출국 허가(연장) 신청서’(별지 제41호 서식) 및 진단서, 재직증명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보호관찰기록철에 편철한다.  
 ※ 주의) 연장하는 기간은 3개월을 초과할 수 없음**

[보호관찰대상자 지도감독 지침]->[외국인 대상자의 지도감독]->[성인보호관찰]->외국인 보호관찰 대상자의 신고부터 집행단계는 어떻게 되는가?  
  
**지침 제87조(외국인 보호관찰 대상자 관리)에 따라, 보호관찰관은 외국인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관리한다.  
1. 신고 단계  
▸ 외국인등록증(국내 거소 신고증) 또는 여권으로 본인임을 확인한 후 사본 편철  
▸ 외국인등록증 또는 여권상의 영문명을 K-PIS 성명 입력란의 ‘개명 전 성명 우측 영문성명 입력란’에 정확히 입력  
 ※ 대문자만 허용, 여권상의 영문명 띄어쓰기에 따라 입력  
▸ 사진촬영 시 모자를 쓰거나 마스크를 착용한 사진이 등록되지 않도록 주의  
2. 개시 단계  
▸ ‘외국인 보호관찰 대상자 기본정보 통보 협조’ 의뢰  
 - 시기 : 개시 1개월 이내  
 - 의뢰기관 : 관할 출입국기관  
 - 관련 서식 : 별지 제63호 서식  
 - 결과 입력 : 외국인의 국적, 영문명, 체류자격, 사진 등의 결과를 K-PIS에 입력  
3. 집행 단계  
▸ 기간 중 보호관찰을 기피할 목적으로 출국한 사실이 확인 된 경우 : 구인장 신청 시 제123조A제3항의 소재추적 및 수용조회 생략 가능  
▸ 외국인에 대한 소재 파악 시 :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의 ‘국내거소사실증명’으로 확인할 수 없는 대상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을 이용해 체류지 정보 확인  
4. 강제퇴거 등 출국조치된 대상의 조치  
▸ ‘입국시 통보의뢰’ 실시(관련법 :「출입국관리법」제46조 및 제68조)  
 - 시기 : 출국이 확인된 후 즉시  
 - 의뢰기관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출입국심사과  
- 관련 서식 : 별지 제64호 서식  
 ※ 양식 작성 시 주의 : 서식 작성 예시 및 <작성요령> 참고  
▸ 통보의뢰 후 조치 : 반기 1회 이상 출입국 사실 조회하여 입국여부 확인  
▸ 대상자 입국 시 : 즉시 소환하여 보호관찰 실시  
▸ 대상자가 입국 후 재출국한 경우 : 다시 ‘입국 시 통보의뢰’ 실시**

[보호관찰대상자 지도감독 지침]->[추적 대상자의 지도감독]->[성인보호관찰]->추적 대상자의 지도감독은 어떻게 실시하는가?  
  
**지침 제90조제90조(추적 대상자의 지도감독)에 따르면, 추적 대상자에 대해서는 ▴주민등록지 및 고용상태 등 각종 조회 ▴관계인 면담 ▴출장 등 가능한 방법을 활용하여 수시로 소재추적을 실시한다. 구인장이 발부된 대상자에 대한 출장을 통한 소재추적의 경우 직원 2인 이상이 함께 출장하여야 한다.**

[보호관찰대상자 지도감독 지침]->[임시해제 대상자의 지도감독]->[성인보호관찰]->이행태도가 양호하여 임시해제된 대상자는 어떻게 지도감독 하는가?  
  
**지침 제92조(임시해제 대상자의 지도감독)에 따라, 임시해제 대상자에 대하여는 보호관찰을 실시하지 않는다. 다만, 재범여부를 수시로 파악하여야 한다. 임시해제 대상자가 재범하여 재범이 확정되면 즉시 ‘보호관찰 임시해제 취소 신청’(별지 제65호 서식) 또는 ‘보호관찰명령 임시해제 취소 신청서’(별지 제66호 서식)를 작성하여 심사위원회에 보호관찰의 임시해제 취소를 신청하여야 한다.**

[보호관찰대상자 지도감독 지침]->[특별 준수사항 유형별 지도감독-음주제한]->[성인보호관찰]->특별준수사항으로 '일정량 이상의 음주를 하지 말 것'의 특별준수사항을 부과받은 대상자의 지도감독은 어떻게 실시하는가?  
  
**보호관찰관은 ‘일정량 이상 음주를 하지 말 것’의 특별 준수사항을 부과받은 대상자에 대하여 집중 대상자는 월 1회, 주요 대상자는 분기 1회, 일반 대상자는 반기 1회 이상 음주측정기를 활용하여 음주측정을 실시한다. 다만, 감염병 우려 등이 있는 경우 선별적으로 검사를 실시할 수 있고, 그 사유를 보호관찰정보시스템(K-PIS)에 입력하여야 한다. 보호관찰관은 음주측정 결과 법원 또는 심사위원회 등에서 정한 혈중 알코올 농도를 초과한 대상자의 검사 결과를 카메라로 촬영하여 멀티미디어로 저장한 후 보호관찰정보시스템(K-PIS)에 입력하여야 한다.**

[보호관찰대상자 지도감독 지침]->[음주측정기 관리]->[성인보호관찰]->음주측정 관리 책임자와 관리 방법은?  
  
**지침 제180조의 보호장구 정(正)관리자, 부(副)관리자는 음주측정기를 ‘음주측정기 관리대장’(별지 제70호 서식)에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정관리자는 반기 1회, 부관리자는 분기 1회 이상 음주측정기의 수량 및 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부관리자는 음주측정기를 매 4개월마다 교통안전공단에서 정기 검사 및 교정을 받고 그 결과를 ‘음주측정기 관리대장’에 기재한다. 음주측정기 세부 보정 및 점검/교정 절차는 다음과 같다.  
  
①보호관찰소  
▸음주측정기 발송  
 (교정의뢰서 동봉)  
② 아세아통상  
▸보정(점검․수리)작업 진행  
▸도로교통공단 교정의뢰  
③ 도로교통공단  
▸교정작업 진행  
▸(적합)교정완료통보서 발급 및 측정기 기관 송부  
▸(부적합)아세아통상으로 측정기 발송, 재보정 진행**

[보호관찰대상자 지도감독 지침]->[교통사범 집행]->[성인보호관찰]->교통사범 집행 시 주요 점검 사항은?  
  
**교통사범 집행 시 단계별 주요 점검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신고 : 면허상태, 차량소유여부 등 파악  
2. 판결문접수 : 특별준수사항 확인  
3. 준수사항 교육 : 보호관찰소 주변 교육 참석자 차량 확인  
4. 초기출장 : 차량 주행거리, 주차 위치 확인, 가족 및 관계인 면담 시 재범방지 협조  
5. 출석 및 출장 : ▸면허상태, 결격기간 수시 확인, 음주측정, 문자발송 및 SNS 활용**

[보호관찰대상자 지도감독 지침]->[특별 준수사항 유형별 지도감독-외출제한명령]->[성인보호관찰]->외출제한명령의 명령기간은 및 집행 개시 시기는?  
  
**지침 제97조(명령 기간)에 따라, 명령 기간은 법원 등이 정한 기간으로 하되, 기간을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호관찰 기간으로 한다. 또한 지침 제98조(명령의 집행 개시 시기)에서 명령은 법원 등의 판결이나 결정이 확정된 때 또는 임시퇴원․가석방․가종료․가출소된 때로부터 개시된다. 다만, 법원 등이 ‘음성등록을 완료한 날’ 등으로 명령 개시시기를 별도로 정한 때에는 그에 따른다. 시스템을 활용한 명령의 집행은 음성등록을 완료한 당일 또는 다음 날부터 실시한다.**

[보호관찰대상자 지도감독 지침]->[특별 준수사항 유형별 지도감독-외출제한명령의 집행 감독 방법]->[성인보호관찰]->외출제한명령의 구체적인 집행 감독 방법은?  
  
**지침 제100조(집행 감독 방법)에 따라, ① 명령의 집행 감독은 시스템을 활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명령 개시 이후 대상자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보호관찰관이 직접 전화, 출장 등의 방법으로 감독하여야 한다.  
 1. 제104조제1항에 따라 음성등록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스템에 의한 명령 감독’(이하 “시스템상 감독”이라 한다)이 곤란한 음성 등록 당일  
 2. 주거부정자, 언어 또는 청각 장애인 등 시스템상 감독이 부적합한 사람  
 3. 음성 미등록, 전화기 미설치, 고장 및 불통, 시스템의 오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시스템상 감독이 곤란한 경우   
 ② 보호관찰관은 제1항 단서에 따라 명령을 집행한 경우 그 사유를 보호관찰 정보시스템(K-PIS)에 입력하여야 한다.  
 ③ 보호관찰관은 외출제한명령을 부과 받은 성인 대상자 중 법원으로부터 ‘음성정보등록’ 등의 명시적 표현이 없는 경우의 외출제한명령 부과자에 대해서는 아래 각 호의 방식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외출제한명령을 감독하여야 한다. 다만, 아래 제2호의 방식으로 할 경우에는 전화 및 SNS 등은 주 1회 이상 주기적인 감독을 실시하거나 필요 시 출장지도를 병행할 수 있고, 그 감독결과를 보호관찰정보시스템(K-PIS)에 입력하여야 한다.  
 1. 시스템상 감독  
 2. 출장, 전화, SNS 등 비전자방식 활용  
 3. 시스템상 감독 및 비전자방식 활용**

[보호관찰대상자 지도감독 지침]->[출석요구서 발부가 곤란한 경우]->[성인보호관찰]->준수사항 위반 등의 조사를 위해 대상자를 소환하기위한 출석요구서 발부가 곤란한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가?  
  
**출석요구서를 발부할 시간이 없거나 주거부정 등의 사유로 출석요구서 발부가 곤란한 경우 구두, 전화, 출장 등 다른 방법으로 실시한다. 또한, 대상자 연락두절 시 등의 대비방안으로, 신고서 접수 시 가족 및 지인의 연락처, 우편물 수령지 등을 정확히 기재하도록 하고, 연락두절 시 우편물 수령가능자, 연락가능자 등을 확보 한다.**

[협업포탈 업무 Q & A]->[사회봉사 집행시간 인정]->[사회봉사명령]->위탁기관 점심시간이 12:00~13:00까지이고 점심시간이 지나 위탁기관에 도착하는 경우 점심시간 1시간을 봉사 이행시간에서 제외해왔습니다  
  
개시교육때 정해진 점심시간에 1분이라도 지각하는 경우 점심시간 인정이 안되니 점심시간 엄수하라고 교육하구요  
  
무단이탈의 경우는 당연히 점심시간을 봉사 시간에서 제외하는 것이 맞는데 위와 같은 경우도 점심시간 제외하는 것이 맞는지요?  
  
실제 사례가 대상자가 점심식사후 13:07에 협력기관에 도착했습니다 1시간을 봉사시간에서 제외한다고 고지하자 근거규정을 대라고 하는데  
  
과연 근거규정은 있는지요? 이런 경우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맞을까요?  
  
  
**16조(집행시간) ④ 집행 중의 식사시간은 집행의 연속성이 있는 경우 또는 집행종료일인 경우 1시간까지 집행시간으로 인정할 수 있다. 라고 규정 되어 있고 '집행의 연속성'에 관한 기준에 관해서는 실무상으로 점심시간 전후 1시간씩을 이행하도록 하고 있는 관행 이외 어떠한 규정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개시교육 확인서 5번내용에 점심시간 연속성에 관련된 내용이 적혀있습니다. 또한, 집행은 10분단위로 집행하는 것에 근거하여, 13:07에 도착했다면 외출시간은 13시 06분을 초과하므로 13:00~13:10 10분간외출로 봐야함이 옳다. 이를 기반으로 직전 1시간, 직후 1시간을 이행했을때 연속성을 인정하므로, 현재같은 경우 직후 1시간을 이행하지 못한채 50분만 이행한바, 점심시간의 연속성을 인정받지 못하므로 당일 이행시간에서 1시간 10분을 제외하시는것으로 처리해야 한다**

[협업포탈 업무 Q & A]->[조현병 질병 코드 입력]->[성인보호관찰]->신고할 당시 조현병이 있다는 대상자가 있어 연계상담을 시작하면서 소견서를 받아봤는데 질병코드가 psychotic diorder(상세불명의 비기질성 정신병) f29 입니다.  
  
조현병이 f20이고 f20대가 망상장애, 조현정동장애 등 조현병 계열이라는 것은 대충 알고 있는데 상세불명이라고 애매하게 되어 있으니 헷갈립니다.  
  
이런 경우도 조현병으로 보고 복약검사, 종료통보를 해야 하는지 아니면 f20등 확실한 경우로 한정하는게 바람직한 것인가요?  
  
**ICD-11에서 F20(20~29)계열은 정신병적인 증상(psychotic symptom)이 주요 증상입니다.   
증상이 심각도에 따라 진단이 나눠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DSM-V에서 '조현병 스펙트럼 및 기타 정신병적 장애'와 비슷하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대상자의 경우 과거 조현병으로 진단을 받았으나   
계장님께서 연계해주시는 병원에 가게 되면서 진단명이 '상세불명의 비기질성 정신병'으로 바뀌지 않았나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계장님께서 연계해주시는 병원의 주치의가 대상자의 현상태를 봤을 때, 조현병이나 망상장애, 조현정동장애의 전형적인 진단기준에 맞지 않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즉, 대상자가 현재 정신병적인 증상(환청, 망상 등 사고 장애와 지각장애를 일컫음)을 보이기는 하는데 그 증상의 심각도나 양상, 정도가 조현병, 망상장애, 조현정동장애의 진단에 전형적이지는 않고, 그 것이 기질성, 즉 두부손상과 같은 기질적인 문제로 발생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진단을 받은 것 같습니다.  
  
저의 짧은 소견으로는 현재 대상자가 정신병적인 증상이 남아 있기 때문에 복약검사와 종료통보를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지침에는 조현병, 망상장애, 조현정동장애, 양극성 정동장애 이런걸로 한정되어 있긴 하지만,   
상세불명의 비기질성 정신병은 조현병의 한 종류라고 보는 것이 적절할 것 같고,   
스트레스의 정도나 시간의 흐름, 약물치료 중단 여부 등에 따라 증상이 심해져 조현병의 증상을 보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종합하면, 정신병리학적인 관점이나 정신질환자에 대한 관리지침이 생긴 이유 등을 고려해볼 때, 복약검사를 통해서 대상자의 증상을 관리하고 종료통보를 통해서 보호관찰 기간이 끝난 후에도 사회에서 적절히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협업포탈 업무 Q & A]->[벌금미납 사회봉사 개시일 ]->[성인보호관찰]->벌금미납 사회봉사 결정에 대하여 현재 법원에서 송달일을 함께 송부해줘서 송달일을 킥스에 입력하면 7일이 더해져서 자동으로 개시일이 계산된다고 하는데요.  
  
제가 과거에 사회봉사 업무할 때 벌금미납 사회봉사 개시일은 즉시항고기간 3일을 더해서 개시일을 계산하는가?  
  
**대법원 판례에 따라 벌금미납 사회봉사의 개시는 법원의 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시작되며, 이 때, 확정일은 결정문 접수 시 송달현황 목록상의 송달일(또는 공시송달 효력발생일)로부터 즉시항고 기간(7일)이 경과한 때입니다. 관련 내용은 '벌금 미납 사회봉사대상자 집행확정일 기준 시달(업무연락, '18.12.26.)'을 참고하시면 되고, 2018년 업무연락 당시 즉시항고 기간이 3일이었으나 현재는 7일로 개정되어 K-PIS에 개정사항이 반영된 것입니다.**

[협업포탈 업무 자유게시판]->[소년원생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확정]->[소년보호관찰]->현재 소년원 재원중인 학생이 재판에서 성폭력범죄 특례법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결정 되었습니다.  
  
고지서를 확인하니 여러개의 문항 중에 다음과 같은 문항이 있습니다.  
  
[등록대상자가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된 경우에는 그 교정시설의 장 또는 치료감호시설의 장에게 신상정보 제출서를 제출함으로써 이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   
  
[등록대상자는 신상정보 제출서를 제출할 때에 관할 경찰관서의 장 또는 교정시설등의 장이 실시하는 등록대상자의 정면,좌측,우측 상반신 및 전신 컬러사진 촬영에 응하여야 합니다.]  
  
   
  
학생이 작성한 신상정보 제출서는 제출받아 보관하고 있는데, 실무적으로 제출서 및 사진 등을 어떤 방식으로 행정처리하면 좋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TEAMS 시스템에도 관련된 문항이 없고, 현 기관에선 과거 사례도 찿아보기 힘들어 어떡하면 적절히 처리할 수 있을지 고민이네요.  
  
퇴원 시 신상정보 제출서를 거주지 관할 경찰서에 제출하도록 지도하는 것 외에 적절한 처리 방안이 있을지 여쭙고 싶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와 관련,   
소년원은 보호처분 집행기관으로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해당되지 않음에 따라,   
당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의 제출서, 사진 등 기본신상정보 일체를 주민등록지 관할 경찰서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협업포탈 업무 자유게시판]->[약물검사 정밀검사통보 양성일 경우의 구인장 신청]->[성인보호관찰]->약물검사시 정밀검사 통보 결과가 양성일 때 반드시 구인장을 신청해야 하는지 여부에   
  
 **'만일 정밀검사 결과 양성 반응을 보인 대상자가 도주하지 않고 보호관찰관의 준수사항 위반사실에 대한 소환에 순응하였다면....'  
  
위 내용이 개정 전 지침에서는 없었고, 당시에는 정밀검사 결과 '양성'인 경우 모두 구인장을 신청했었으나, 이후 기각이 된 사례들이 있고 어려가지 문제 등으로 인해 개정된 지침에 새롭게 반영된 사항이라고 합니다.(본부에 확인함)  
다만, 정밀 검사 결과 '양성'이므로 즉시, 수사의뢰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협업포탈 업무 자유게시판]->[구인장 반환과 지명수배 해제 시점]->[성인보호관찰]-><<구인장 반환 및 지명수배 해제의 시기>>  
  
- 대상자 A는 소재불명 상태 지속, 집행유예 만료일 임박으로 신병 미확보 상태에서 집행유예 취소 신청을 하였고, 2023. 5. 10. 인용됨  
- 2023. 5. 10. 인용결정 발송 / 2023. 5. 18. 인용결정 발송 / 2023. 5. 26. 인용결정 발송 하였으나 모두 폐문 부재로 송달되지 못함  
- 검찰에 문의한바 '송달이 된 후 8일이 지나야 확정'이라고 답변  
- 지침 134조(구인장반환) 제1항제2호에는 '신병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집행유예취소 신청 등에 대해 법원의 결정이 확정된 때 구인장을 반환'  
  
가. 향후 법원측에서 공시송달은 하겠으나 이렇게 한 달 가까이 구인장이나 지명수배를 유지해도 되는 걸까요?  
  
나. 5. 10. 인용되었는데, 그 이후에 대상자가 구인이 되었다면 신병 처리를 어떻게 하여야 하나요?  
  
**Ⅰ. 구인장 반환 및 지명수배해제 신청 시기 관련입니다.  
- 재판의 경우 판결, 결정, 명령 3가지로 구분됩니다.  
- 판결의 경우는 필요적 변론으로 피고인이 원칙적으로 출석의무가 있지만, 결정과 명령의 경우는 임의적 변론으로 출석의무가 없습니다.  
- 송달 효력 시기 여부에 대해서는 판결의 경우는 피고인이 재판에 출석하기 때문에 선고와 함께 고지가 되어 바로 효력이 발생하지만, 이와 반대로 결정과 명령의 경우에는 출석의무가 없기 때문에 송달의 효력 발생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 대법원 판결(2011도15914/2012모576)에 의하면 결정문이 송달된 때 형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 위 사례와 같이 소재불명 등으로 결정문이 대상자에게 송달되지 않은 경우에는 확정되지 않고, 향후 법원에서 공시송달 결정으로 송달되고 확정된 경우에 구인장 반환 및 지명수배해제 입력의뢰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보호관찰 지도감독 지침 제134조(구인장 반환) >  
 ① 보호관찰소의 장은 구인장이 발부된 대상자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호관찰관(담당 직원을 포함한다)이 서명날인한 ‘구인장 반환서’(별지 제100호 서식)에 구인장을 첨부하여 즉시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를 통해 법원에 구인장을 반환하여야 한다.  
 2. 대상자의 신병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의 집행유예취소 신청·보호처분변경 신청 등에 대해 법원의 결정이 확정된 때  
  
Ⅱ. 공시송달 결정으로 집행유예취소 신청 등이 인용되고, 확정 전에 신병확보되어 구인집행한 경우 관련입니다.  
 - 성인의 경우에는 집행유예취소가 확정되어 종료가 되더라도 향후 형사소송법 345조에 의하여 상소권회복청구를 하면 법원에서 이를 받아들여 재판이 진행됩니다.  
 - 따라서 확정 전 신병확보가 되었다면 제재조치 법적 절차에 따라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후 법원에서 공시송달 결정이 취소되고 기 청구된 집행유예취소신청 관련하여 재판이 진행될 것 같습니다.  
 - 소년의 경우에는 보호처분변경 결정에 대해 보호자에게 송달되기 때문에 유치에 대한 실익이 없어 구인 후 석방하고 신 처분에 대한 집행을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협업포탈 업무 자유게시판]->[구인장 발부된 임시퇴원자의 재범으로 인한 구속]->[성인보호관찰]->구인장이 발부된 임시퇴원자가 재범으로 경찰에 의해 구속되었습니다. 지명수배 해제는 언제 해야 하나요?  
  
**(업무연락) 보호관찰대상자 지도감독 지침 수정 사항 알림 (2023. 4. 4. (화))  
- 지명수배 해제 관련 주요 내용 수정(제160조 제3항)   
구인장이 발부된 대상자가 재범으로 구속되면, 지명수배 해제하고, 이후 진술조서 작성, 수사 상황 및 석방 여부 수시 확인 등을 하도록 수정한다.**

[협업포탈 업무 자유게시판]->[벌금대체 사회봉사 집행의 집행 기간]->[사회봉사명령]->[벌금 대체 사회봉사의 경우 특례법 상]  
  
제8조(사회봉사의 신고) ① 사회봉사 대상자는 법원으로부터 사회봉사 허가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사회봉사 대상자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주거, 직업,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제11조(사회봉사의 집행기간) 사회봉사의 집행은 사회봉사가 허가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마쳐야 한다. 다만, 보호관찰관은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검사의 허가를 받아 6개월의 범위에서 한 번 그 기간을 연장하여 집행할 수 있다.  
  
[사회봉사 지침 상]  
  
제14조(벌금 미납 사회봉사 집행기간) ① 벌금 미납 사회봉사는 사회봉사가 확정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집행해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킥스 상으로는 봉사 기간이 ‘고지를 받은 날(송달일)을 기준으로 6개월로 세팅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6개월 후 세팅이 된 상태로 기간만료 취소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 확인결과, 허가일로부터 항고 기간 7일을 기산하여 확정일로 두고 집행기간을 산정하고 있어 취소 시 마다 조금 갈등하게 됩니다.  
  
 벌금미납 사회봉사자에 대한 명확한 사회봉사 집행 기간 설명 부탁드립니다.  
  
  
**제11조(사회봉사의 집행기간) 사회봉사의 집행은 사회봉사가 '허가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마쳐야 한다.  
  
여기에서 '허가된 날' 을 '사회봉사 허가가 확정된 날'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사회봉사허가취소 청구가 기각 결정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2018.12.보호관찰과 업무연락 참고)  
  
대법원 판례와 배치됨에 따라 이후로 송달일로부터 8일째 되는 날 확정이 되고 확정일부터 6개월로 집행기간을 산정하며   
킥스에도 동일하게 세팅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사회봉사허가결정 공시송달의 경우는 초일산입(오전 0시부터 산정)으로 기산하여 공시송달일(효력발생일)로부터 7일째 되는 날 확정된다고 합니다(법원에 문의해보았습니다.)  
  
   
정우석 집행과 2023.03.14 13:47:58 제가 아는 선에서 짧은 정보 남겨봅니다.  
  
1) 벌금대체사회봉사는 신고는 송달받은 후 1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고  
2)송달받고 7일 후 형확정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3)따라서 허가 기간을 산정할 때는 송달받은 날 기준이 아닌 송달 받고 8일째 되는 날(형 확정일)부터 6개월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예)  
2023.01.01. 사회봉사 허가 인용  
2023.01.03. 송달 - 신고는 2023.01.12.까지이며 2023.01.13.부터는 미신고 상태가 됩니다.  
2023.01.11. 확정  
사회봉사 허가 기간은 2023.01.11~2023.07.10.입니다.  
  
기간만료로 취소 신청시 2023.07.11.에 신청하며  
종료 확정도 취소확정 대상자가 송달받은 일 기준이 아닌 송달(또는 공시송달)받고 8일 후 형 확정시 종료하고 있습니다.**

[협업포탈 업무 자유게시판]->[단독명령 제재조치 ]->[성인보호관찰]->보호관찰법상 보호관찰 대상자와 단독명령 대상자의 준수사항이 다르게 지정되어있는데  
  
단독명령 대상자 제재조치 시 서면경고장이나 진술조서, 집행유예 취소신청서 등에  
  
'주거지 상주 의무 위반', '재범' 등 보호관찰 준수사항이 한 꼭지로 들어가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단독명령 대상자는 법령상 '보호관찰관의 집행에 관한 지시'로 한정되어 있는데  
  
저 문구를 소극적으로 해석해야하는 걸까요...?  
  
  
**단독명령 대상자의 경우, 특별준수사항이 따로 부과되어 있지 않은 이상 주거지 상주 의무 위반 등을 제재조치의 이유로 들기 어렵습니다.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64조에서 같은 법 제32조를 준용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협업포탈 업무 자유게시판]->[보호관찰 지침43조 성폭사범 피해자 연락]->[성인보호관찰]->지침 43조A를 보면, 피해자 정보 확인은 대상이 특준 부과로 한정되어 있어 이해가 되는데  
  
집행단계 - 지도감독에서 분류등급에 관계없이 비대면으로 피해자에게 확인하라는 내용은 대상이 없어 헷갈립니다.  
  
제 상식으로는 개시단계에 이어 특준부과자만 확인하는게 맞는거 같은데, 구분이 없으니 다하라는 것 처럼 보입니다.  
  
  
**○ 보호관찰대상자 지도감독 지침상 해당 내용이 표로 되어 있다 보니 다소 혼동될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 성폭력사범에 대한 지도감독에 있어서 ‘피해자 접촉 여부 확인’은 ‘피해자 접근금지 준수사항이 부과된 대상자’에 한해 적용됩니다.  
 ○ 다만, 가정폭력·아동학대사범은 가해자와 피해자가 주거지에 같이 사는 경우가 많고 이 경우 피해자 접근금지 준수사항 부과나 추가 신청이 어려운 점, 스토킹 사범의 경우에는 재범 발생 시 그 사회적 파장이 큰 점 등을 감안, ‘피해자 접근금지’ 준수사항이 부과되기 전이라도 피해자 접촉여부 등을 확인하도록 하고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향후 지침 개정 시 관련 조문을 보다 명확하게 적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업포탈 업무 자유게시판]->[소년법상 보호관찰 처분의 개시일]->[소년보호관찰]->소년법상 보호관찰 처분의 개시일은?  
  
**「보호관찰법」은 보호관찰 개시시점을 판결이나 결정의 확정시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소년법」은 항고 시집행부정지규정을 두고 있어   
결정의 확정 여부와 관계없이 보호처분 집행이 개시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소년법」과 「보호관찰법」의 상충되는 규정으로 인해 소년 보호관찰 집행 개시시점 관련한 논란이 있어 개시시점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 논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는 보호관찰법 규정에 따라 소년 개시시점을 판결이나 결정의 확정시로 해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가정폭력처벌법에서도 항고 시 집행부정지규정을 두고 있으나 「가정보호심판규칙」 제8조에 사회봉사, 수강명령, 보호관찰의 경우는  
 결정이 확정된 때부터 집행한다는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습니다.**

[협업포탈 업무 자유게시판]->[가석방 취소 시 실종료일 ]->[성인보호관찰]-> 심사위원회에서 가석방 취소 신청이 인용된 대상자의 경우  
  
 종료 시 실종료일을 심사위원회의 결정일로 입력하는 것이 옳은 지 문의 드립니다.  
  
더불어서 가석방 취소 관련하여 어떤 불복절차가 있는 지도 문의 드립니다.  
  
**심사위원회의 결정일이 아닌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얻은 때 종료합니다.  
심사위원회의 가석방취소 결정에 대해 법무부장관의 불허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가석방 및 임시퇴원의 취소)  
- 2017 보호관찰업무편람 265p  
  
※ 관련 법률 :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제48조(가석방 및 임시퇴원의 취소), 제51조(보호관찰의 종료) 제1항3호, 형법 제75조(가석방의 취소)  
※ 관련 판례 : 가석방취소처분취소(서울행법 2000. 7. 28. 선고, 2000구4575, 판결 : 확정)**

[협업포탈 업무 자유게시판]->[외국인 대상자의 지도감독(강제퇴거 등 출국조치된 대상자 조치) 관련 ]->[성인보호관찰]-><대상자 상황>  
  
대상자 중 미국국적 대상자(남)가 출국명령(입국금지 6개월)으로 출국 하였다가 입국금지 기간이 경과하여 입국, 보호관찰 실시 중에 비자 만료(3개월) 예정으로 비자 갱신을 목적으로 2022. 12. 4. ~ 2022. 12. 6. 일본에 출국, 입국 예정이라 확인된 사실이 있습니다.  
  
 <지침 내용 및 문의사항>  
  
보호관찰 지침 제 87조 강제퇴거 등 출국조치된 대상자 조치에는 대상자가 입국 후 재출국한 경우 다시 '입국 시 통보의뢰'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입국시 통보의뢰는 어떠한 법을 근거로 공문을 발송하여야 하는 건가요?  
  
지침에 기제된 강제퇴거 등 출국조치된 대상자 조치, 입국시 통보의뢰 관련 법에(출입국관리법 제 46조, 68조)는 강제퇴거 대상자, 출국명령 대상자에 대한 입국시통보의뢰하는 것으로 되어있어 입국규제가 끝난 대상자에 대해 동일 법을 근거로 공문을 발송하는 것은 어려워 보여 문의 드립니다.  
  
**○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제37조 제2항을 근거로 출입국 기관에 ‘입국 시 통보 의뢰’ 공문을 발송하시면 되겠습니다.  
○ 지침 제87조에 입국시 통보의뢰 실시에 대한 관련법으로 「출입국관리법」 제46조 및 제68조를 기재한 이유는 강제퇴거 및 출국명령 대상 등을 안내하기 위함입니다.**

[협업포탈 업무 자유게시판]->[보석 대상자 지정 조건 관련]->[성인보호관찰]->보석 대상자 지정 조건 관련이 궁금합니다.  
  
**1. 피고인의 주거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서면으로 법원에 그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이 교통사고로 단기, 한달 이상 장기 입원하는 경우 위 조건에 부합하는지 여부  
3. 주거제한은 지정된 주거에서 생활, 이를 벗어나고자 할 경우 미리 법원 허가(다만, 건강상 이유 등 긴급한 경우 보호관찰소의 장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여기서 '생활'의 해석은, 주거 변경이 아닌 단기 또는 한달 이상 장기 병원 입원도 생활에 포함되는지 여부 및 그 기준은  
  
 ☞ 피고인이 보석 지정조건으로 주거제한이 있는 경우 피고인은 지정된 주거지에서 생활하고 이를 벗어나고자 할 경우 미리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건강상 이유 등 긴급한 경우 보호관찰소장의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자가 교통사고 등 긴급한 사유가 있을 경우 우선 보호관찰소장이 허가할 수 있으나, 긴급히 입원 후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경우 법원의 허가를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긴급한 사유가 아닌한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생활은 일정한 환경에서 활동과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입원도 생활에 포함될 수 있음)   
  
2. 3일 이상 여행을 허가나 출국할 경우에는 미리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3일 이상의 경우 계산 방법은  
 ☞ 「형사소송법」제66조에 따라 기간의 계산에 관하여 일(日), 월(月), 연(年)으로 계산하는 것은 초일을 산입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7월 1일 09:00 경부터 외출 후 여행할 경우 기산점은 7월 2일로 7월 4일이 3일이 되며 이후에도 법원의 허가없이 여행이 지속될 경우 보건조건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여행의 의미는('생업', '입원치료', '명절기간 중 가족 주거지 체류'가 여행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그 구체적 기준)  
 ☞ 여행은 일이나 유람 등의 목적으로 거주지를 벗어나 다른 지역을 가는 것을 의미하기에 ‘생업’, ‘입원치료’, ‘친인척 거주지 체류’ 모두 해당될 수 있습니다.**

[협업포탈 업무 자유게시판]->[외국인 대상자가 본국으로 출국한 경우 보호관찰 (사유:정신질환으로 국내 거주가 어려워 출국함)]->[성인보호관찰]->대상자 중 중국 조선족 대상자(여)가 정신 질환(2022.11.24 조현병 진단)으로 국내에서 정상 생활이 어려워 남동생이 데리고 본국으로 출국한 대상자(2022.11.26. 출국)가 있습니다  
  
(자진 출국 의사가 없었다면 정신질환 진단 및 범죄경력을 바탕으로 출입국사무소에 업무협의를 의뢰하여 강제 출국을 시킬 예정이였음)   
  
지침 제 87조의 내용에는 강제퇴거 등의 경우와 보호관찰을 기피할 목적의 출국과 관련한 내용만 명시되어 있고 위의 상황에 준하는 내용이 없어 문의드립니다  
  
 - 외국인이 국내에서 문제 없이 보호관찰을 받았으나 보호관찰을 기피할 의도 없이 출국할 경우 보호관찰 지도의 지속은 어떻게 이뤄져야 하는 건가요?  
  
- 강제퇴거 등에 준하여 집행하는 것이 맞을지요?   
- 현지 사정으로 대상자 본인과 연락이 어려운 경우 국내 거주 가족을 주기적 면담하는 것이 맞을까요? (이는 국내거주하는 가족에게 너무 부담을 지우는 것 일 수도 있어보이구요)  
  
  
**○ 대상자가 출국 전 보호관찰관에게 ‘주거이전 및 여행신고서’ 와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등 정상적인 절차를 거쳤다면, 지침 제33조에 따라 비대면(통신, 이메일 등) 지도감독을 실시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향후 재입국 가능성이 없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만약을 대비하여 출입국 기관에 ‘보호관찰 대상자 입국 시 통보 의뢰’를 하고, 대상자와 정기적으로 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 가족과의 접촉을 통해 대상자의 소재 등을 주기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협업포탈 업무 자유게시판]->[전자장치부착법 제4조(적용범위) 19세미만자 특칙 관련 ]->[성인보호관찰]->성인 특칙 신고는 어떻게 진행되는가?  
  
**. <전자장치부착법> 제4조의 해석과 관련하여, 19세 미만의 자에 대하여 가석방과 보석 등 결정에 의한 전자장치부착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전자장치부착법> 제4조는 총칙(제1장)에 해당되는 조항으로 별도의 준용 규정 없이도 당연히 <전자장치부착법> 전체에 적용됩니다.   
  
 다음으로, 해당 조항은 ‘만 19세 미만의 자에 대하여 부착명령을 선고한 때에는 19세에 이르기까지 이 법에 따른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조항이 ‘선고’라는 용어를 사용하고는 있으나, 해당 조항의 연혁과 입법 취지 등을 감안할 때 19세 미만의 자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른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없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2008년 시행된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의 경우 ‘만 19세 미만의 자에 대하여는 이 법에 따른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 조항은 2009년에 현재와 같은 형식으로 개정되었습니다. 이는, 19세 미만의 자에 대한 전자장치 부착명령 선고가능여부를 명확히 한 규정이지, 19세 미만의 자에 대하여 판결 선고가 아닌 다른 형식에 따른 전자장치 부착을 가능하도록 하는 취지나 의미의 규정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전자장치부착법>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분들은 언제라도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치료처우과에서는 전자장치부착법 해설집에 대한 개정작업이 진행중으로 여러분들의 의견과 의문점 등을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업포탈 업무 자유게시판]->[지명수배자 관련 문의]->[성인보호관찰]->제 대상자 중 미신고로 1년 넘게 잠적해있다가 여죄, 재범 등으로 현재 구속수감된 성인 대상자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구치소에 가서 진술조서를 받았고 곧 집행유예취소신청을 할 예정인데요  
  
지명수배해제 및 구인장 반환을 집행유예취소신청 이후에 일괄적으로 하는건지, 아니면 현재 대상자가 구치소에 있는건 확인이 되니 지명수배해제를 먼저 하는건지  
  
혹은 집행유예취소신청이 기각되고 이 대상자가 다른 사건 조사나 처벌 등이 끝나서 출소하였을 때 또 다시 미신고하고 잠적할 우려가 있으니 놔둬야하는건지 판단이 안되어 문의드립니다  
  
**1. 여죄, 재범 등으로 수용기관에 구속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지침 제174조에 의해 지체없이 지명수배해제 입력의뢰서를 작성하여야합니다.  
제174조(지명수배해제입력의뢰서 작성) ① 보호관찰관은 지명수배 해제 사유가 발생하면 지체 없이 지명수배해제입력의뢰서(？별지 제131호 서식 및 외국인인 경우 별지 제132호 서식)를 작성하여 해제를 의뢰하고 해제입력 여부를 확인하여 수배 사유 소멸자가 검거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2. 구인장 반환 시기에 대한 문의 관련해서는 2022. 7. 29. 지침 전면개정으로 제154조 3항에 의해 집행유예의 취소를 신청한 때 반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154조(구인장이 발부된 재범자의 처리) ① 보호관찰소의 장은 준수사항 위반으로 구인장이 발부된 대상자가 재범으로 구속되면 원칙적으로 수용기관을 방문하여 진술조서를 작성하고 집행유예 취소 신청 등을 하여야 한다.  
 ② 보호관찰소의 장은 재범으로 구속된 대상자의 집행유예 취소 신청 등을 한 때에는 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이 있기 전에 대상자가 석방되지 않도록 재범사건 담당 재판부 및 수용기관에 집행유예 취소 신청 등을 하였음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경우 지명수배를 해제하고 집행유예 취소 신청 등을 한 때에 구인장을 반환한다.**

[협업포탈 업무 자유게시판]->[전자감독 직업제한에 대한 대처]->[성인보호관찰]->여론도 알고 있고 거기에 따라 본부차원에서 대응을 하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만  
  
실무자 입장에서는 재범없이 멀쩡히 일하던 대상자의 직업 변경을 권유해야하고 그렇다고 새 일자리를 담당자가 구해주는 것도 아닙니다(공단 프로그램 참여 권유 등을 하긴 하지만)  
  
배달대행, 대리기사 등 업무에 종사하면 국민이 불안해하는 것도 이해하지만 아이러니 하게도 저런 직종 종사 시 재범률은 더 낮습니다  
  
직종을 변경하도록 지시해야할땐 어떻게 해야할까요? 어떤 대안이 있을지 다른 직원분들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수사ㆍ재판ㆍ집행 등 형사사법 절차에서 전자장치를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불구속재판을 확대하고, 범죄인의 사회복귀를 촉진하며,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국가의 책무) 국가는 이 법의 집행과정에서 국민의 인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제15조(보호관찰관의 임무) ①보호관찰관은 피부착자의 재범방지와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필요한 지도와 원호를 한다.**

[보호관찰대상자 안내문(보호사무관 임민규 작성)]->[보호관찰 준수사항]->[성인보호관찰]->보호관찰 일반준수사항에 대하여 설명해주세요.  
  
**\* 준수사항 및 보호관찰관 역할  
○ 주거지에서 생활할것  
-주거지를 방문하여 대상자 생활을 확인함  
○ 생업(직업)에 종사할 것  
- 일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직장을 방문하거나 재직증명서 등 관련 서류 제출을 요구함  
○ 범죄로 이어질 나쁜 습관을 버리고 선행할 것  
- 상습 음주와 불필요한 심야외출 등 범죄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 행동을 감독  
○ 범죄를 저지를 염려가 있는 사람과 어울리지 말 것   
- 공범이나 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과 만나거나 연락하는지 감독  
○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따르고, 방문하면 응대할 것  
- 보호관찰관의 정당한 지도․감독에 따라야 함  
- 보호관찰관의 방문을 피하거나 거부하지 말 것  
○ 주거 이전, 1개월 이상 국내외 여행 시 미리 보호관찰관에게 신고 할 것  
- 이사, 1개월 이상 주거지 외 여행 또는 생업 활동이 생길 경우 미리 신고해야 함**

[보호관찰대상자 안내문(보호사무관 임민규 작성)]->[보호관찰 진행]->[성인보호관찰]->보호관찰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① 보호관찰소 출석: 준수사항 이행 정도에 따라 월 1회~4회 이상 출석하여 그동안 본인이 준수사항을 어떻게 이행하는지 보고하고 보호관찰관의 지도를 듣습니다.  
② 보호관찰관의 방문: 출석 시 보고한 내용이 맞는지, 준수사항을 잘 지키는지 보호관찰관은 주거지나 직장 등을 방문하여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지도합니다.  
③ 전화: 출석이나 방문 외에 준수사항 이행과 관련하여 전화나 우편으로 필요한 내용을 확인합니다.  
④ 교육 참여 및 민간 상담가 결연: 범죄로 이어지기 쉬운 나쁜 습관을 고치고 선행 하도록 교육이나 프로그램 참여, 민간 상담가와 결연을 지도할 수 있습니다.  
⑤ 조회: 차량소유, 운전면허 유무 등을 조회하여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점검합니다.  
⑥ 각종검사: 죄명에 따라 음주측정, 복약검사, 유해약물 검사 등을 진행합니다.**

[보호관찰대상자 안내문(보호사무관 임민규 작성)]->[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성인보호관찰]->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하면 어떠헥 되는가?   
  
**보호관찰관은 보호관찰을 받는 사람(보호관찰대상자)이 사회에 잘 적응하도록 최대한 돕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호관찰관의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부는 준수사항을 상습적이고 심각하게 위반하여 제재를 받고 있습니다.  
  
① 경고장 발부  
- 준수사항을 위반했을 때 또다시 위반하면 제재 할 수 있음을 경고함  
② 구인   
- 법원에서 영장을 받아 최대 48시간 동안 강제 조사  
③ 유치   
- 법원에서 영장을 받아 구치소 또는 소년원에 수용  
④ 제재를 통한 보호관찰 종료  
- 집행유예 취소로 실형 집행  
- 보호처분 변경으로 소년원 등 수용  
- 가석방 및 임시퇴원 취소**

[보호관찰대상자 안내문(보호사무관 임민규 작성)]->[보호관찰소에 출석할 때 지켜야 할 내용]->[성인보호관찰]->보호관찰소에 출석할 때 지켜야 할 내용  
  
**① 보호관찰관이 지시한 출석 날짜와 시간을 지켜야 합니다. 불가피하게 출석시간을 지키지 못할 것 같으면 미리 보호관찰관에게 연락하여 조정을 받으세요.  
② 술 마신 상태에서 보호관찰소에 출석하거나, 소란 등을 피우면 불이익을 받습니다.  
③ 무면허로 자동차를 운전해서 출석하면 불이익을 받습니다.  
 (1년에 몇 명은 보호관찰관에게 적발되어 재판받고 있습니다.)**

[성인보호관찰 제재 업무 노하우(보호사무관 임민규 작성)]->[경고장의 의미]->[성인보호관찰]->경고장의 의미는?   
  
**경고장은 경고입니다. 경고장 발부는 대상자가 준수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앞으로 재차 준수사항을 위반하면 집행유예 취소 등을 하겠다는 행정 절차입니다. 그러나 실무에서 경고장 발부 후 바로 제재하는 경우를 봅니다. 경고장 의미를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인보호관찰 제재 업무 노하우(보호사무관 임민규 작성)]->[경고장과 무죄추정 원칙]->[성인보호관찰]->경고장은 무죄추정 원칙과 관련이 있는가?  
  
**▢ 법 제32조(경고) 보호관찰소의 장은 보호관찰 대상자가 제32조의 준수사항을 위반하거나 위반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준수사항의 이행을 촉구하고 형의 집행 등 불리한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경고할 수 있다.  
▢ 실무에서 경찰입건사실이나 검찰사건접수가 떴음에도 경고장을 발부하지 않다가, 검사처분이 났을 때 경고장을 발부하는 경우를 봅니다.  
▢ 경고장 발부는 보호관찰관이 대상자에게 지도하는 조치 중 하나입니다. 굳이 검사의 처분을 보고 경고장 발부를 할 이유는 없습니다.   
 • 만약, 대상자가 재범 사실을 부정하더라도 경고장은 발부합니다. 향후 검사 처분 결과가 재범한 사실이 없다고 나오면 그때 경고장 발부를 취소해도 됩니다.   
 • 만약, 범죄 전력이 있는 지인과 같이 있다가 지인이 범죄를 한 경우라면 대상자에게 불량교우 교제로 경고장 발부할 수 있습니다.**

[성인보호관찰 제재 업무 노하우(보호사무관 임민규 작성)]->[재재 업무에서의 절차의 중요성]->[성인보호관찰]->재재 업무에서 절차가 중요한 이유는?  
  
**대상자를 제재하기 위해서는 엄격하고 합리적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그간 등기로 보내지 않은 경고장 때문에 제재가 기각되는 사례, 등기로 보냈더라도 소재불명 된 대상자가 보호관찰을 받는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사실이 상당히 인정되어 유치허가가 기각 된 사례 등 법적용은 이전보다 더 엄격하게 피의자, 대상자 편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 앞으로도 모든 출석요구서와 경고장은 등기로 보내시고, 대상자에게 직접 전달할 때는 대상자에게 서명을 받길 바랍니다. 그리고 출석요구 기간도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7일 이상의 기한을 두십시오.**

[성인보호관찰 제재 업무 노하우(보호사무관 임민규 작성)]->[진술조서의 시스템 등록]->[성인보호관찰]->진술주소를 꼭 시스템에 등록해야하는가?   
  
**▢ 진술조서를 받은 뒤 그 내용을 상황에 입력하지 않으면 진술조서 서류를 보지 않는 한, 어떤 이유로 진술조서를 받았는지 대상자가 어떤 말을 했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 진술조서를 받은 후 그 내용 전부를 복사하거나, 아니면 최소한 진술조서 내용을 정리해서 상황에 입력하셔야 합니다.   
※ 요즘은 보호관찰을 받게 된 범죄사실을 상황에 기재하고 있어서 상황을 보고 대상자 범죄를 알 수 있는데, 예전에는 판결문을 보기 전에는 대상자가 어떤 범죄를 한 것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성인보호관찰 제재 업무 노하우(보호사무관 임민규 작성)]->[신상변동 사항 갱신]->[성인보호관찰]->시스템에 신상변동 사항 갱신해야하는 이유는?  
  
**▢ 제재조치나 임시해제를 하기 위해 신청서를 결재하는데 대상자가 직장에 다니는데도 신청서에 무직으로 기재된 경우나 무직인데도 학생으로 기재되는 일이 있습니다.  
▢ K-PIS를 통해 해당 업무를 할 때 직업이나 주소를 바꾸지 않으면 무직자를 임시해제 신청하거나 직장인을 소재불명으로 구인장 신청하게 됩니다.  
▢ 대상자를 면담한 후 신상변동이 생기면 즉시 ‘신고접수관리’를 통해 관련 내용을 수정해야겠습니다.**

[성인보호관찰 제재 업무 노하우(보호사무관 임민규 작성)]->[생활부고서 활용]->[성인보호관찰]->서면 생활보고서가 필요한 이유는?  
  
**▢ 키오스크가 도입되면서 생활보고서를 거의 활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키오스크는 출석확인 용도로 밖에는 기능하지 않습니다.  
▢ 가급적 생활보고서를 받아서 면담하시기 바랍니다.  
 • 대상자가 스스로 생활보고서를 쓰게 되면 면담소재도 늘고, 소재불명 시 추적 자료로도 유용하게 사용됩니다.   
 • 또한, 허위보고 적발에도 도움이 됩니다.**

[성인보호관찰 제재 업무 노하우(보호사무관 임민규 작성)]->[신고서 접수]->[성인보호관찰]->신고서 접수는 왜 엄격하게 해야하는가?  
  
**▢ 신고서에 서명이 빠지더라도, 모자쓰고 사진을 찍히려 하더라도, 직업이나 신장 등 필수적인 내용이 빠지더라도 신고서를 받아 줍니다.  
▢ 신고서 접수는 보호관찰의 첫 인상입니다. 대상자가 긴장하도록 엄격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성인보호관찰 제재 업무 노하우(보호사무관 임민규 작성)]->[기타행정 코드 남발]->[성인보호관찰]->기타행정 코드 남발을 주의해야하는 이유는?  
  
**▢ 진료확인서 접수해도 ‘기타행정’, 준수사항을 교육해도 ‘기타행정’, 경비원을 면담해도 ‘기타행정’ 이렇게 기타행정이 전가의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 현재 시스템에 구비된 코드를 찾아보면 대부분 사안에 맞는 코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코드에 상황을 입력하면 되는데 귀찮거나 모른다는 이유로 ‘기타행정’ 코드가 남발되는지 고민해야 하겠습니다.**

[성인보호관찰 제재 업무 노하우(보호사무관 임민규 작성)]->[보호관찰 안내문 교부]->[성인보호관찰]->보호관찰 안내문 교부가 필요한 이유는?  
  
**▢ 통상, 준수사항 교육 후 교육 서류에 대상자 서명을 받은 후 보호관찰 카드에 철합니다.  
▢ 멍한 상태의 대상자는 담당직원이 어떤 말을 했는지 다 잊어버립니다.  
▢ 별도로 첨부한 ‘보호관찰 안내문’을 각 담당직원에 맞게 수정한 뒤 대상자에게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억의 시간이 늘지 않을까요?**

[KICS의 이해 및 활용(범죄예방정보화센터)]->[보호관찰정보시스템(K-PIS)]->[기타 등]->보호관찰정보시스템이란?  
  
**보호관찰정보시스템(K-PIS, Korea-Probation Information System)은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을 기반으로 한 보호관찰 업무처리 시스템이다.   
  
형사사법정보시스템 (KICS, Korea Integrated Criminal-Justice Information System)은 형사사법업무 처리 기관이 형사사법정보를 작성, 취득, 저장, 송 · 수신하는데 이용할 수 있도록(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네트워크, 보안요소 등을 결합시켜) 구축한 전자적 관리체계이다. 법무부 · 경찰 · 검찰 · 법원 4개 형사사법기관이 수사 · 기소 · 재판 · 집행 업무를 수행하고 그 결과 생성된 정보와 문서를 공동으로 활용하는 전자적 업무관리체계이다.**

[보호관찰대상자 지도감독 지침]->[신병미확보 상태에서의 집행유예취소 신청]->[성인보호관찰]->대상자의 신병이 미확보된 상태에서의 집행유예취소 신청은?  
  
**지침 제144조((신병미확보 상태에서의 집행유예취소 신청)에 따라,   
① 보호관찰소의 장은 보호관찰 기간 중 고의로 재범하는 등 준수사항 위반 정도가 중한 경우 대상자의 신병이 확보되지 않더라도 집행유예취소 신청 등을 할 수 있다.  
② 보호관찰소의 장은 보호관찰 등의 집행을 면하려고 도망하여 장기간 소재불명된 대상자에 대해서 집행유예 취소 신청 등을 할 경우에는 가능한 보호관찰 기간 종료일 5개월 이전에 하여야 한다.  
  
재판부의 결정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공시송달 기간, 집행유예 기간을 고려하여 기간 도과로 기각되는 일이 없도록 법원에 신속히 결정하여 줄 것을 요청한다.  
  
신병미확보 상태에서 집행유예 취소신청을 한 대상자가 경찰에 검거되었다면 구인장 집행 후 유치집행한다. 단 재차 집행유예 취소신청은 하지 않으며 유치허가 신청 시 먼저 집행유예 취소 신청을 한 사유를 기재한다.**

[보호관찰대상자 지도감독 지침]->[벌금형 집행유예 취소 신청 등]->[성인보호관찰]->벌금형 집행유예 취소 신청 등의 절차는?  
  
**제145조(벌금형 집행유예 취소 신청 등)에 따라,  
 ① 보호관찰소의 장은 벌금형 선고유예 또는 집행유예를 받은 대상자가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구인하여 조사를 할 수 있으나, 법 제42조의 유치를 할 수 없으며, 조사를 마친 후 즉시 석방하여야 한다.  
 ② 보호관찰소의 장은 벌금형 선고유예 또는 집행유예를 받은 대상자가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불응하고 준수사항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면 선고유예 실효의 청구 또는 집행유예 취소의 청구를 신청하여야 한다.  
 ③ 보호관찰소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한 후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 보호관찰을 실시해야 한다.  
 ④ 보호관찰소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는 대상자를 즉시 소환하여 재분류 등의 조치를 하고 보호관찰을 실시하여야 한다.**

[보호관찰대상자 지도감독 지침]->[성인 보호처분 취소 청구]->[성인보호관찰]->아동학대 행위자에 대한 보호처분 취소 청구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지침 제146조(아동학대 행위자에 대한 보호처분 취소 청구 등)에 따라,  
 ① 보호관찰관은 아동학대 대상자가 아동학대 범죄를 재범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4조제1항에 따라 검사에게 접근금지 등 임시조치를 신청(별지 제113호 서식)할 수 있다.  
 ② 보호관찰관은 보호처분이 진행되는 동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호처분 변경 등 청구’(별지 제114호 서식)를 통해 법원에 보호처분의 종류와 기간을 변경 청구할 수 있다.  
 ③ 보호관찰관은 보호처분을 받은 아동학대 행위자가 보호처분 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에 따르지 아니하면 법원에 ‘보호처분 취소 청구’(별지 제115호 서식)를 할 수 있다.  
 ④ 보호관찰관은 아동학대 행위자의 성행이 교정되어 정상적인 가정생활이 유지될 수 있다고 판단되거나, 그 밖에 보호처분을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호처분 종료 청구’(별지 제115호 서식)를 통해 법원에 보호처분의 전부 또는 일부의 종료를 청구할 수 있다.**

[보호관찰대상자 지도감독 지침]->[재범자 처리]->[성인보호관찰]->구인장이 발부된 성인 대상자 재범자 처리 방법은?  
  
**지침 제154조(구인장이 발부된 재범자의 처리)에따라,  
 ① 보호관찰소의 장은 준수사항 위반으로 구인장이 발부된 대상자가 재범으로 구속되면 원칙적으로 수용기관을 방문하여 진술조서를 작성하고 집행유예 취소 신청 등을 하여야 한다.  
 ② 보호관찰소의 장은 재범으로 구속된 대상자의 집행유예 취소 신청 등을 한 때에는 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이 있기 전에 대상자가 석방되지 않도록 재범사건 담당 재판부 및 수용기관에 집행유예 취소 신청 등을 하였음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경우 지명수배를 해제하고 집행유예 취소 신청 등을 한 때에 구인장을 반환한다.**

[보호관찰대상자 지도감독 지침]->[범죄사실 인지 시 수사의뢰]->[성인보호관찰]->대상자의 범죄사실 인지 시 수사의뢰를 해야하는 경우는?  
  
**지침 제157조(범죄사실 인지 시 수사의뢰)에 따라,  
 ① 보호관찰관은 보호관찰 등의 집행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상자의 범죄사실을 인지하면 준수사항 위반에 따른 제재와는 별도로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1. 약물검사 양성반응자 등 증거물이 확보되거나 현행범인 경우   
 2. 사회봉사·수강명령 집행 중 협력기관으로부터 절도, 미성년자 강제추행·약물흡입 등 범죄행위가 신고된 경우  
 3. 그 밖에 수사의뢰가 필요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수사의뢰는 진술조서 및 관련 증거자료를 확보한 후에 ‘수사의뢰서’(별지 제126호 서식)로 대상자의 주거지 관할 경찰서에 하여야 한다.   
 ③ 보호관찰관은 구인·유치 과정 중에 대상자의 범죄사실을 알게 되면 통상의 제재 업무를 수행한 후 수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보호관찰대상자 지도감독 지침]->[보호관찰 정보의 제공]->[성인보호관찰]->보호관찰 정보의 제공을 할 수 있는 경우는?  
  
**지침 제158조(보호관찰 정보의 제공) 에 따라,  
① 보호관찰관은 범죄의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 형 및 감호․보호처분의 집행 등을 위해 수사기관 등의 요청을 받은 경우 특정된 대상자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② 보호관찰관은 경찰서에 정보 제공,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등에 대한 원호 신청, 보호관찰 대상자 결연 등을 할 경우에 ‘보호관찰카드 갑지’, ‘보호관찰 상황’ 등을 일괄적으로 제공하지 않고 업무수행에 필요하게 최소한으로 선별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보호관찰관이 외부로 제공하는 자료에 피해자 자료 등 민감한 정보가 포함되었다고 판단할 경우 관련 자료를 생략하는 등 정보 보안에 주의하여야 한다.  
 ④ 보호관찰관은 업무 수행 중에 대상자가 지명수배 중임을 알게 된 때에는 해당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보호관찰대상자 지도감독 지침]->[임시해제]->[성인보호관찰]->성인 보호관찰 대상자의 임시해제 신청의 기준은?  
  
**지침 제199조A(성인 임시해제 신청의 기준)에 따라,  
 ① 보호관찰소의 장은 성인 일반 대상자가 재범위험성이 낮고,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보호관찰 심사위원회에 보호관찰의 임시해제를 신청할 수 있다.  
 1. 보호관찰 기간이 40% 이상 경과한 경우  
 2. 보호관찰 기간이 30% 이상 경과하였고 특별히 임시해제를 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② 보호관찰소의 장은 제1항의 경우 ‘보호관찰 임시해제 신청서’(별지 제136호 서식)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특별히 임시해제를 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공공기관의 선행·효행상 등 수상자, 언론에 보도된 미담자, 기능·예체능 등 각종 전국대회에 입상한 자, 대학 진학자 등이 있다.  
 임시해제의 일반적인 선정기준은 지침 상 40%이상 경과하면 임시해제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나, 실제 신청 시 해당 심사위원회 자체 심사 기준에 따를 것이라고 돼있다.**

[None]->[사건종류]->[전자감독]->송치사건과 직수사건의 차이점은?  
  
**송치사건(transfered case)은 경찰청에 고소장, 고발장을 제출하거나, 경찰이 범죄 인지를 하여 경찰 단계에서부터 수사가 시작된 사건을 지칭한다. 경찰에서 수사하고 검찰로 사건을 넘기며 이를 송치(transfer)라고 한다. 이를 경찰송치사건, 줄여서 송치사건이라고 한다. 송치사건은 경찰청에 고소장, 고발장이 제출하여 수사가 시작되는 경찰고소고발사건과 경찰이 범죄를 인지하여 수사가 시작되는 경찰인지사건으로 이루어져 있다.  
  
직수사건(direct case)은 검찰청에 고소장, 고발장을 제출하거나, 검찰이 범죄인지를 하여 검찰 단계에서부터 수사가 시작된 사건을 지칭한다. 경찰수사단계가 없으므로 송치가 없으며, 검찰이 바로 수사한다. 이것을 검찰직수사건, 줄여서 직수사건이라 한다. 직수사건은 검찰청에 고소장, 고발장을 제출하여 수사가 시작되는 검찰직고소고발사건(줄여서 직고소사건)과 검찰이 직접 범죄를 인지하여 수사가 시작되는 검찰직접인지사건(줄여서 인지사건)으로 이루어져 있다.   
  
범죄발생 직후 현장에서 하는 최초 수사를 초동수사(first investigation)이라 하며, 초동수사를 주로 경찰이 담당한다. 따라서 실무상 검찰사건의 대부분은 송치사건이다.**

[None]->[수사]->[전자감독]->수사 단서(입건 원인)의 종류는?  
  
**수사가 개시되는 원인, 즉 입건 원인을 수사 단서(clue)라 한다. 고소, 고발, 자수, 범죄인지 등이 수사 단서로, 이로 인해 수사가 개시된다.   
  
범죄인지(recognition)은 수사기관이 주관적으로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는 것이다.   
근거조항: 형사소송법 제196조(사법경찰관리)의 2항에 사법경찰관은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식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에 관하여 수사를 개시, 진행하여야 한다.  
  
고소(complaint), 고발(accusation), 자수(self-denunciation)는 수사기관 등에게 범인을 처벌해줄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고소는 피해자가 범인(가해자)를 처벌해 달라고 경찰 등에 요구하는 것이다.  
근거 조항: 형사소송법 제223조(고소권자)는 범죄로 인한 피해자를 고소할 수 있다  
고발은 제3자가 범인을 처벌해 달라고 경찰 등에 요구하는 것이다.  
근거 조항: 형사소송법 제234조(고발) 1항 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할 수 있다. 2항 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하여야 한다   
자수: 범인이 범인(자신)을 처벌해달라고 경찰 등에 요구하는 것  
형법 제52조(자수...) 1항 죄를 범한 후 수사책임이 있는 관서에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신고는 경찰 등에 사건이 발생했다고 알리는 것으로 고소, 고발, 자수와는 다르다. 즉, 112로 전화거는 것은 고소, 고발, 자수가 아닌 단순한 신고이다.**

[None]->[None]->[전자감독]->내사와 수사의 관계  
  
**내사는 아직 범죄인지까지는 안되었지만, 혐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 수사 절차로 진행할 지를 판단하기 위해 수사 기관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수사이다. 내사 과정에서 범죄혐의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내사를 종결하고 범죄인지서를 작성하여 수사를 개시한다.   
  
고소, 고발 사건의 경우 내사단계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입건되며, 수사단계로 진행한다.   
  
그 밖의 사건(단순 신고 사건 등)의 경우에는 내사단계를 거쳐, 범죄인지가 되면 입건절차(내사종결)을 거쳐 수사단계로 진행한다.  
  
수사절차에는 형사소송법을 적용한다. 그 결과 수사를 받는 피의자는 여러 절차적 권리를 법률로 보장받는다. 하지만 수사와 내사의 구별이 애매한 경우가 많아, 형식이 아닌 실질(substantial)로 구별한다. 즉, 형식적으로 입건 절차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실질적으로 범죄혐의가 있다고 보아 조사한 이상, 형사소송법상 수사로 보아 조사받는 사람에게 피의자 지위를 인정해 보호한다.**

[None]->[None]->[전자감독]->피의자를 신문하기 전에 대상자에게 알려주어야 하는 사항은?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진술거부권 등의 고지)  
1) 일체의 진술을 하지 아니하거나 개개의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하지 아니할 수 있음  
2) 진술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아니함  
3) 진술을 거부할 권리를 포기하고 행한 진술은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음  
4) 신문을 받을 때에는 변호인을 참여하게 하는 등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음**

[None]->[None]->[전자감독]->대상자의 단계별 명칭 변화는 어떻게 되는가?  
  
**1) 내사 개시: 일반인 -> 혐의자  
2) 수사 개시: 혐의자 -> 피의자  
3) 공소 제기: 피의자 -> 피고인  
4) 유죄 확정: 피고인 -> 죄인**

[None]->[None]->[전자감독]->경찰의 분류  
  
**1) 행정경찰(administrative police): 범죄 발생 전, 치안, 정보, 보안, 작전, 교통 등을 맡아 질서유지를 담당하는 경찰, 범죄 예방은 행정경찰의 영역임  
  
2) 사법경찰(judical police, 수사경찰(investigative police): 범죄 발생 후, 검사의 지휘를 받아 체포, 구속 집행, 피의자신문, 참고인조사를 하는 경찰. 범죄 수사는 사법경찰의 영역임**

[None]->[None]->[전자감독]->사법경찰의 종류  
  
**형사소송법이 규정한 경찰은 사법경찰이다. 사법경찰은 다시 사법경찰관(judical police officer)과 사법경찰리(judical police assistant)로 나눌 수 있다.   
  
사법경찰“관” + 사법경찰“리” = 사법경찰“관리”  
  
1) 사법경찰관(경위 이상): 수사기관. 즉, 수사권이 있다. 단, 검사지휘를 받는다.   
형사소송법 제196조(사법경찰관리)   
수사관, 경무관, 총경, 경정, 경감, 경위는 사법경찰관으로서 모든 수사에 관하여 검사의 지휘를 받는다.  
사법경찰관은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식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에 관하여 수사를 개시, 진행하여야 한다.  
  
2) 사법경찰리(경사 이하): 수사의 보조기관, 즉 수사권이 없다. 또한,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지휘를 받는다.  
형사소송법 제196조(사법경찰관리)  
경사, 경장, 순경은 사법경찰리로서 수사의 보조를 하여야 한다.**

[None]->[None]->[전자감독]->수사(investigation)를 세부적으로 구분한다면?  
  
**1) 강제수사(compulsory investigation): 체포, 구속, 압수, 수색처럼, 강제처분(compulsory measures)에 의한 수사  
2) 임의수사(non-compulsory investigation): 강제수사를 제외한 수사  
  
임의수사가 원칙이며, 강제주사는 예외의다**

[None]->[None]->[전자감독]->임의수사에 대해 설명한다면?  
  
**임의수사에는 대표적으로 3가지의 방법이 있음  
1) 피의자신문: 피의자로부터 진술을 듣는 것  
2) 참고인조사: 참고인(피해자 또는 목격자 등)으로부터 진술을 듣는 것  
3) 임의동행: 피의자 동의를 받아 수사기관의 조사실로 함께 이동하는 것**

[None]->[None]->[전자감독]->피의자신문시 출석하게 하는 방법은?  
  
**1) 체포, 구속된 피의자는 신문할 조사실로 강제로 데려옴  
2) 체포, 구속안된 피의자는 스스로 찾아오거나, 출석요구서를 보내 부름**

[None]->[None]->[전자감독]->피의자신문시 진술거부권 및 변호인 조력권 고지 등에 대한 확인받을 사항은?  
  
**1) 귀하는 일체의 진술을 하지 아니하거나 개개의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2)　귀하가 진술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아니합니다.  
3) 귀하가 진술을 거부할 권리를 포기하고 행한 진술은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4)　귀하가 신문을 받을 때에는 변호인을 참여하게 하는 등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를 고지하고  
피의자는 위와 같은 권리들이 있음을 고지받았는지,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것인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행사할 것인지에 대해 직접 구두로 확인하고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함**

[None]->[None]->[전자감독]->참고인조사의 대상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목격자, 피해자, 제3자   
피해자도 참고인조사의 대상이라는 점이 중요함**

[None]->[None]->[전자감독]->참고인을 수사기관으로 데려오는 방법은?  
  
**참고인을 체포, 구속할 수 없으므로 강제로 데려올 수 있는 방법은 없음  
참고인이 스스로 찾아오거나, 출석요구서(참고인용)을 보내어 부름**

[None]->[None]->[전자감독]->임의동행(voluntary accompaniment)이란?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찾아가, 피의자 동의를 얻어, 피의자와 함께 조사할 곳으로 동행하는 것  
피의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해 동행이 이루어져야 함**

[None]->[None]->[전자감독]->강제처분(compulsory measures)의 종류는?  
  
**체포, 구속, 압수, 수색**

[None]->[None]->[전자감독]->강제처분의 주체는?  
  
**수사기관 및 법원  
범인이 도주할 위험은 수사단계, 공판단계 모두 있으므로 수사기관 뿐만이 아니라 법원도 가능함 -> 수사기관(investigative instituition)의 구속, 법원(court)의 구속**

[None]->[None]->[전자감독]->특별 준수사항 부과 사례는?  
  
**19세 미성년자(친인척 제외) 접촉 금지(신체 접촉 금지)  
주거지 내 여자 청소년 출입금지  
통신매체 이용 혐오 영상 전송 금지  
자살사이트 가입 및 관련 글 게시 금지  
여성 운전 탑승 금지, 000번 버스 탑승 금지  
채팅 어플 등을 통해 19세 미만 미성년자와 연락 금지, 접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보호관찰관의 디지털 분석 등 점검에 응할 것  
보호관찰관의 지시에 따라 정신과 전문의 또는 심리치료 전문가와 성충동 조절 치료를 받을 것  
배달 대행, 대리운전업(특정 업종)에 종사하지 말 것  
편의점 등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영업장소에서 근무하지 말 것  
미성년 대상 노점 판매행위를 하지 말 것  
성충동 조절 등을 위한 정신과 전문의의 상담과 복약치료를 받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정기적(최소 3개월에 한 번씩)으로 보호관찰관에게 제출할 것  
아파트, 빌라, 원룸 등 다수 세대가 거주하는 주거지 건물에 출입할 경우 건물관리자 또는 방문예정지 거주자의 명시적 동의 없이 출입하는 경우라면, 출입 전 방문사유를 보호관찰관에게 미리 보고할 것**

[None]->[None]->[전자감독]->가종료 취소와 관련된 법 조항에 대해 설명하시오  
  
**치료감호법 제36조(가종료 취소와 치료감호의 재집행)  
제37조에 따른 치료감호심의위원회는 피보호관찰자(제32조제1항제3호)에 따라 치료감호기간 만료 후 피보호관찰자가 된 사람은 제외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결정으로 가종료등을 취소하고 다시 치료감호를 집행할 수 있다.  
1.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때, 다만, 과실범은 제외한다.  
2. 제33조의 준수사항이나 그 밖에 보호관찰에 관한 지시, 감독을 위반하였을 때  
3.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라 피보호관찰자가 된 사람이 증상이 악화되어 치료감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None]->[None]->[전자감독]->구인장 신청 요건은?  
  
**피부착자가 의무 및 준수사항을 위반하거나 위반하였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1)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2) 조사를 위한 소환에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응한 때  
3) 도망한 때 또는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None]->[None]->[전자감독]->조사를 해야하는 경우와 생략해도 되는 경우는?  
  
**위반 사실 직후 수사의뢰를 할 경우에는 소환 조사, 진술조서 작성, 자술서 징구 등 생략이 가능함  
수사의뢰와 별개로 처분 취소 신청을 할 경우에는 조사 생략 불가, 신병 미확보 상태(구인장 미발부)에서 가석방 취소 신청 시 조사 생략 불가**

[None]->[None]->[전자감독]->구인시 대상자와 관련된 서류는?  
  
**구인장 사본 교부, 구인장 사본 교부확인서에 서명 받음**

[None]->[None]->[전자감독]->위험경보의 정의와 종류는??  
  
**피부착자의 위반의 정도가 무거워 전담보호관찰관의 신속한 현장 확인 등이 필요한 경보  
1) 외출금지 위반 – 외출금지 시작 전 미귀가, 시작 후 무단외출  
2) 출입금지 위반 – 출입금지구역에 진입한 경우  
3) 접근금지 위반 – 접근금지구역에 진입한 경우  
4) 부착장치 훼손 – 부착장치의 본체나 스트랩이 훼손된 경우  
5) 휴대용 추적 장치 훼손 – 휴대용 추적장치의 본체가 훼손된 경우  
6) 재택감독장치 훼손 – 재택감독장치의 본체가 훼손된 경우  
7) 전자장치 신호실종 – 일체형 부착장치 및 휴대용 추적장치로부터 보고되는 위치정보나 상8) 태정보가 일정시간동안 수신되지 않는 경우  
9) 부착장치 전원오프 – 부착장치의 전원이 꺼진 경우  
10) 재택감독장치 – 재택감독장치로부터 보고되는 재택여부 정보나 상태정보가 일정시간동안 수신되지 않는 경우  
11) 손목형 전자장치 이탈 – 손목형 전자장치에서 보고되는 상태정보가 일정시간동안 수신되지 않는 경우**

[None]->[None]->[전자감독]->특별관제 피부착자 지정 요건은?  
  
**전자장치부착법 시행지침 제56조(특별관제 피부착자 지정)에 따라  
1) 위치추적시스템 환경설정을 현장 환경에 적용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경우  
2) 주거 및 근무지의 통신환경 등으로 피부착자의 책임 없이 신호실종 등의 경보가 자주 발생하여 예외적인 경보 처리가 필요한 경우**

[None]->[None]->[전자감독]->피부착자에 대한 대면 지도감독 횟수에 포함되는 범위는?  
  
**1) 피부착자 면담  
2) 피부착자를 대면한 경보처리 또는 장치 교체  
3) 가족, 고용주, 지인, 심리치료 전문가 등 관계인 면담  
4) 행동관찰, 영상정보처리기기 자료 열람 및 심리치료프로그램 집행(각 월 1회에 한해 포함)  
5) 이동경로 현장확인(월 1회에 한해 포함하되, 제4항에 따라 월 2회 이상으로 면담횟수가 조정된 경우에는 미포함)**

[None]->[None]->[전자감독]->피부착자에 대한 대면 지도감독 횟수에 포함되는 범위는?  
  
**1) 피부착자 면담  
2) 피부착자를 대면한 경보처리 또는 장치 교체  
3) 가족, 고용주, 지인, 심리치료 전문가 등 관계인 면담  
4) 행동관찰, 영상정보처리기기 자료 열람 및 심리치료프로그램 집행(각 월 1회에 한해 포함)  
5) 이동경로 현장확인(월 1회에 한해 포함하되, 제4항에 따라 월 2회 이상으로 면담횟수가 조정된 경우에는 미포함)**

[None]->[None]->[전자감독]->처우회의를 통해 최소 월 2회 이상으로 면담횟수를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1) 일정한 주거와 동거가족이 있는 사람  
2) 6개월 이상 건전한 생업에 종사하는 사람  
3) 효용유지의무 및 준수사항 위반으로 서면경고를 받은 전력이 1회 이하이거나 수사의뢰된 경력이 없고 최근 6개월 이상 준수사항 이행태도가 양호한 사람  
4) 제46조의 전문처우 프로그램을 모두 이수한 사람  
5) 성범죄 전력이 없고 위치추적기간이 1/2이상 경과한 사람  
6) 지도감독에 순응하는 등 재범위험성이 현저히 낮다고 판단되는 경우**

[None]->[None]->[전자감독]->여성 피부착자에 대한 출장 직원감독은 직원 2인이 함께 하거나 동성 직원이 하여야 하지만 예외로 하는 경우는?  
  
**1) 직장, 학교, 쉼터 등 관리인이 있는 기관 또는 지하역사, 상가, 의료기관 등 다중이용시설에 출장하는 때  
2) 피부착자가 가족, 보호자 등과 함께 있는 때**

[None]->[None]->[전자감독]->24시간 이상 측위 변동이 없는 피부착자를 확인하면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은?  
  
**1) 불시 현재지 출장  
2) 휴대장치를 이용한 긴급통화  
3) 재택장치(응급호출)를 이용한 확인  
4) 대상자의 휴대전화로 음성 또는 영상통화**

[None]->[None]->[전자감독]->야간 귀가지도의 대상은?  
  
**1) 외출제한명령이 부과된 자(일반 가석방 피부착자 제외)  
2) 성폭력사범, 강도사범 중 야간시간대(18시부터 06시) 범죄경력자  
3) 제 1호와 제2호의 요건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특정범죄자 상세정보 또는 처우회의 결과 야간 시간대 재범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피부착자**

[None]->[None]->[전자감독]-> 1:1 및 고위험 피부착자를 집중관제 피부착자로 관리하고, 다음의 경우에 전담 보호관찰관에게 정보를 제공하여아 함  
  
**1) 생활패턴을 벗어나 일정지역에 1시간 이상 배회하는 경우  
2) 전담 보호관찰관이 별도로 지정한 위험장소 진입  
3) 24시간 이상 재택측위가 지속된 경우  
4) 1시간 이상 유흥시설에 체류하는 경우**

[None]->[None]->[전자감독]->수신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 경우는(그 외는 열람, 조회, 제공 또는 공개할 수 없음)  
  
**1) 피부착자의 특정범죄 혐의에 대한 수사 또는 재판자료로 사용하는 경우  
2) 보호관찰관이 지도, 원호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3)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보호관찰심사위원회의 부착명령 임시해제와 그 취소에 관한 심사를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4) 보호관찰소의 장이 피부착자의 제38조 또는 제39조에 해당하는 범죄 혐의에 대한 수사를 의뢰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정근수당]->[회계]->정근수당  
  
**1월에 지급되는 정근 수당은 1월 1일 현재 공무원의 신분을 보유하고 봉급이 지급되는 자 중 지급대상 기간인 전년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1개월 이상 봉급이 지급된 공무원에게 지급(봉급의 일부가 지급된 공무원 포함), 7월 지급되는 정근 수당은 7월 1일 현재 공무원의 신분을 보유하고 봉급이 지급되는 자 중 지급대상 기간인 해당연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기간 중 1개월 이상 봉급이 지급된 공무원(봉급의 일부가 지급된 공무원 포함)**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봉급 공무원]->[회계]->봉급의 일부가 지급된 공무원?  
  
**휴직(질병, 외국유학), 직위해제, 결근 등으로 공무원의 신분은 계속 유지되는 상태에서 봉급지급일수는 계속되나 봉급이 감액되어 지급된 공무원 포함**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정근 수당 지급액]->[회계]->정근 수당의 지급액?  
  
**1년 미만(미지급), 2년 미만(월봉급액의 5%), 3년 미만(월봉급액의 10%), 4년 미만(월봉급액의 15%), 5년 미만(월봉급액의 20%). 6년 미만(월봉급액의 25%), 7년 미만(월봉급액의 30%), 8년 미만(월봉급액의 35%), 9년 미만(월봉급액의 40%), 10년 미만(월봉급액의 45%), 10년 이상(월봉급액의 50%)**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정근 수당 지급액 세부]->[회계]->정근 수당의 지급액 기준?  
  
**월봉급액이란 해당 공무원의 1월 1일 및 7월 1일 현재 봉급표상의 월봉급액을 말함. 예를 들어 7월 11일자로 7급에서 6급으로 승진한 경우 7월 1일 당시의 직급 호봉에 상응하는 월봉급액을 기준으로 지급하기에 7급에서의 해당 호봉의 월봉급액을 기준함. 7월 1일 자로 강임된 경우 강임된 직급호봉의 봉급표상 월봉급액을 기준으로 지금하며 7월 1일자로 호봉이 승급된 자의 경우에는 승급된 호봉의 봉급표상 월봉급액을 기준함.**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정근수당 가산금]->[회계]->정근수당 가산금  
  
**5년 미만(지급사항 없음), 5년 이상 10년 미만(5만원), 10년 이상 15년 미만(6만원), 15년 이상 20년 미만(8만원), 20년 이상(10만원), 추가가산금으로 20년 이상 25년 미만(1만원), 25년 이상(3만원) 가산하여 지급**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여비 종류]->[회계]->여비의 종류  
  
**운임(여행 목적지로 이동하기 위해 교통수단을 이용함에 있어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여비/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운임), 숙박비(여행 중 숙박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여비), 식비(여행 중 식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여비), 일비(여행 중 출장지에서 소요되는 교통비, 통신비 등 각정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여비), ,이전비(근무지 외의 지역으로 부임의 명을 받거나 청사 소재지의 변경에 따라 거주지가 변동된 경우, 새 거주지로 이사화물을 이전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여비), 가족여비(근무지 외의 지역으로 부임의 명을 받거나 청사 소재지의 변경에 따라 거주지가 변동된 경우, 새거주지로 가족이 여행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여비), 준비금(국외출장시 사전준비를 위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여비로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항목/비자발급비, 예방접종비, 여행자보험가입비, 풍토병 예방약 구입비, 법정감염병 진단검사비)**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여비 항목]->[회계]->공무로 여행하는 때에 지급되는 여비항목  
  
**'공무로 여행하는 때'라 함은 해당공무원이 사적용무가 아닌 공적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여행을 하는 때를 의미하며 근무지내 국내출장(12500원/25000원 정액), 근무지외 국내출장(운임, 식비, 숙박비, 일비), 국외출장(운임, 식비, 숙박비, 일비, 준비금), 근무지 변경(신규임용 포함)(부임여비, 이전비, 가족여비)를 지급함**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여비 지급구분]->[회계]->여비의 지급구분 1호  
  
**(가) 대통령, 국무총리, 부총리, 감사원장, 국무위원, 검찰총장, 통성교섭본부장,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2의 비고 제1호다목을 적용받는 총장, 대장, 그 밖에 국무위원 상담 보수를 받는 공무원, (나) 인사혁신처장, 법제처장,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차관, 14등급의 직위에 임용된 외무공무원, 치안총감, 소방총감, 중장, 그 밖에 차관 상당 보수를 받는 공무원, (다) 13등급부터 12등급까지의 직위에 임용된 외무공무원,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의 검사 및 10호봉 이상의 검사, 10호봉 이상의 헌법연구관, 치안정감, 소방정감,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2의 비고 제1호 가목 또는 나목을 적용받는 총장, 대학교의 부총장, 대학원장, 대학교의 학장, 처장, 기획연구실장, 교양과정부장, 한국교원대학교 교수부장, 힌국예술종합학교 원장, 처장, 소장, 준장, 고위(감사)공무원단 가등급 직위에 임용된 공무원, 1급 공무원, 1급 상당 보수를 받는 공무원,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3 제7호 가목의 연봉등급 1호에 해당하는 일반임기제공무원,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4의2 제1호부처 제3호까지의 임용등급 가급에 해당하는 전문임기제공무원, (라) 11등급부터 9등급까지의 직위에 임용된 외무공무원, 9호봉 이하의 검사, 9호봉 이하의 헌법연구관, 헌법연구관보, 치안감, 경무관, 소방감, 소방준감, 대학 및 전문대학의 교수, 부교수, 교육부 본부 장학관 및 교육연구관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2호에 따른 시도 교육청의 국장인 장학관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지역교육청의 교육장, 초중고등학교의 교장, 대령, 중령, 고위(감사)공무원단 나등급 직위에 임용된 공무원, 2급 및 3급 공무원, 2급 및 3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보수를 받는 공무원,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3 제7호가목의 연봉등급 2호 또는 3호에 해당하는 일반임기제공무원, 「공무원임용령」 별표 4의2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임용등급 가급에 해당하는 전문임기제공무원**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여비 지급구분]->[회계]->여비의 지급구분 2호  
  
**제1호에 해당하지 안는 공무원(「공무원보수규정」을 적용받는 공무원 포함)**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근무지 외 여비]->[회계]->근무지 외 거주자를 임용한 경우의 여비지급  
  
**근무지 외의 곳에 거주하는 사람(신규채용된 사람을 포함)을 임용한 경우에는 공무원 부임의 예에 준하여 새로운 직에 해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파견자 여기 항목]->[회계]->파견자 여비 지급 항목  
  
**파견명령에 의한 파견시 본인 부임여비, 이전비, 가족여비는 파견받은 기관에서 지급한다. 다만 원소속 기관과 파견받은 기관이 협의하여 원소속기관이 지급하기로 한 때에는 원소속기관이 지급한다. 또한 파견명령에 의한 파견시 원소속기관이나 파견받은 기관에서 파견기간을 출장으로 처리하여 여비를 지급할 수 없다.**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파견자 여비]->[회계]->파견자 여비 지급  
  
**파견받은 기관의 공무수행을 위해 파견받은 기관의 장이 파견자의 출장을 명한 경우, 파견자의 여비는 파견받은 기관에서 이 영에 따라 지급한다.**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여비 계산]->[회계]->여비의 계산방법  
  
**여비는 일반적인 경로와 방법에 따라 이루어지는 여행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이때의 '일반적인 경로와 방법'이란 해당 여행시 일반적으로 이용하는 경로와 방법(육로여행 : 철도 또는 버스/ 육지도서간 여행 : 항공기 또는 선박)을 말하며, 일반적인 경로와 방법이 여러 가지인 경우에는 공무의 원활한 수행과 국가예산의 적정한 지출을 도모할 수 있는 경로와 방법을 선택한다. 공무상의 형편상 또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일반적인 경로와 방법에 의한 여행을 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실제로 여행한 경로와 방법에 의하여 여비를 지급한다.  
부득이한 사유에는 (가) 출장 시 시급한 용무로 부득이하게 항공기를 이용하는 경우, (나) 폭풍우, 폭설, 홍수 등으로 철도가 두절되어 항공기를 이용하는 경우, (다) 전염병 발생으로 인해 교통이 통제되어 우회하는 경우, (라) 범인 검거를 위하여 통상의 경로를 우회하는 경우, (마) 공적 항공마일리지를 활용하여 보너스항공권을 확보하거나 항공좌석을 승급함으로써 철도나 버스여행시보다 운임이 절감되는 경우가 있다.**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여행일수]->[회계]->여행일수 계산  
  
**여행일수는 여행을 위하여 실제로 필요한 일수에 의하여 계산한다. 다만, 공무상의 형편상 또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늘어나는 일수는 여행일수에 포함한다.**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근무지외 여비]->[회계]->근무지외 거주지 등으로부터 직접 여행시 여비  
  
**근무지 또는 출장지 외의 곳에 거주하거나 체재하는 공무원이 그 거주지 또는 체재지로부터 목적지까지 직접 여행하는 경우에는 그 곳에서 목적지에 이르는 여비를 지급한다. 다만, 그 여비는 근무지 또는 출장지로부터 목적지까지의 여비를 초과하지 못한다.**

[결산작성지침 2023]->[단수금액]->[회계]->관서운영경비 미반납액등록시 단수금액  
  
**단수금액은 10원 미만 금액만 입력해야 함. 한국은행을 통한 국고금 반납은 10원 단위로 가능하기 때문에, 10원 미만 금액은 관서운영경비 통장에 남기고 10원 이상 금액만 반납함.**

[결산작성지침 2023]->[반납고지서 처리]->[회계]->지출관에게서 반납고지서 받은 후 처리 절차?  
  
**(교부반납요청 또는 일괄교부반납 요청시) 지출관리 > 관서운영경비 > 교부관리 > 교부반납이체 화면을 통하여 전자자금이체로 반납금을 실시간으로 납부 처리하거나, 관서운영경비 통장에서 반납할 금액을 찾아 반납고지서와 반납금을 은행에 납부하여야함, 반납금 입금 후 지출관 반납확정시, 교부반납결의서가 지급완료 상태로 자동처리됨**

[결산작성지침 2023]->[카드미결제 금액]->[회계]->카드미결제 금액의 정확한 의미?  
  
**2023회계연도의 경우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정부구매카드 사용분의 결제금액 중 12월 31일까지 청구되지 않은 건으로, 다음 회계연도에 청구가 예산되는 건의 합계금액 의미. 해당금액은 반납하지 않고 관서운영경비 통장에 남겨 두었다가, 다음 해에 결제 할 수 있도록 해야 함.**

[결산작성지침 2023]->[관서운영경비 사용잔액 처리계획]->[회계]->관서운영경비 사용잔액 처리계획 확정 후 잘못된 것이 발견된 경우 처리?  
  
**취소는 지출관이 지출반납결의를 하기 전까지만 가능하기에 취소를 해야 한다면, 지출반납결의를 삭제하고 작업해야 함**

[결산작성지침 2023]->[지출결의 미완료 처리]->[회계]->원인행위가 승인되었지만 지출되지 않은 지출결의 처리?  
  
**일반 지출인 경우, (계좌이체요구) 미이체건 이체요구반려 -> (지출결의서작성및조회 - 지출결의서작성 탭) 조회후 삭제 -> (동일 메뉴-지출결의요청 탭) 요청반려 -> (지출원인행위서작성및조회-원인행위서작성 탭) 조회 후 삭제 -> (동일 메뉴-원인행위요청 탭) 요청반려 -> (지출요청) 삭제**

[결산작성지침 2023]->[13월 마감 종류]->[회계]->화면별로 13월 마감을 해야 하는지 여부  
  
**출납공무원의 경우, 출납월마감, 감사원출납계산증명은 13월 작업필요, 국고예금월계대사표는 13월 작업 필요없음  
지출관의 경우, 지출월마감, 일선관서 보고서 확정, 감사원계산증명은 모든 화면 13월 작업 필요  
기금 지출관의 경우, 지출월마감, 일선관서 보고서 확정, 기금감사원계산증명 : 지출월마감, 일선관서보고서 확정 화면에서 13월 확정 완료 후에 기금감사원계산증명 화면에서 4분기 전송해야 함**

[결산작성지침 2023]->[지출 오류]->[회계]->지출 혹은 지급처리를 모두 잘 했는데도 대사금액이 일치하지 않는다고 나오는 경우  
  
**관계가 없는 2개 이상의 관서에서 증명자책임부호를 공용으로 잘못 쓰고 있을 수 있음. '증명자책임부호별 조회' 체크박스를 체크 해제 후 조회시 정상적으로 조회된다면 이런 경우일 가능성이 있으므로 확인하고 해결이 안되는 경우 사용자지원실 및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홈페이지 사용자문의 게시판으로 문의해야 함**

[결산작성지침 2023]->[출납 미마감 표시]->[회계]->출납공무원 마감을 모두 했는데도 미마감 현황에 2, 3월 마감이 안된다고 표시시 처리?  
  
**2, 3월에 출납내역이 없어 국고예금월계대사표를 확정하지 않아, 한국은행이 해당 국고예금계좌 담당자와 통화 혹은 미통화 후 강제 확정처리를 해 준 경우 dbrain에서는 그내역을 알 수 없음. 이때 확정기한만료로 표시될 수 있으나 무시하면 됨. 출납내역이 없어도 국고예금월계대사표를 반드시 확정해야함.**

[결산작성지침 2023]->[과목정정 보고서 확정 취소]->[회계]->5월 건을 과목정정 하려 보고서 확정 취소해야 하는데 안되는 경우?  
  
**5월 건을 관목정정 하려면 가장 최근 확정월부터 5월까지 차례로 확정 취소를 하고 다시 5월부터 재확정 해야 함.**

[결산작성지침 2023]->[지출관 마감 오류]->[회계]->해당원 지출관 마감을 모두 했음에도 확정 안되었다고 오류뜨는 경우 처리?  
  
**지출월마감 화면에서는 확정을 하였으나, 일선관서 보고서 확정을 하지 않은 경우임. 일선관서 보고서 확정을 한 후 감사원계산증명을 하면 됨.**

[결산작성지침 2023]->[예산 이월불용 확정 처리 오류]->[회계]->일선관서 세출연결산 보고서확정 화면에서 연결산 확정시 "예산 이월, 불용 확정 처리가 되지 않았습니다"라는 메시지가 뜨는 경우?  
  
**일선관서 세출연결산 보고서 확정 작업 전에 예산 메뉴에서 해당 지출관의 관련관서로 연결된 재무관에 대하여 예산 이월불용 등록 및 확정 처리가 선행되어야 함. 이월불용 등록 및 확정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사용자 지원실 및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홈페이지 사용자문의 게시판(업무구분:예산배정)으로 문의 해야 함.**

[결산작성지침 2023]->[13월 지출반납 실수]->[회계]->13월 지출반납 건을 잘못처리 하여 차년 1월에 반영시 처리  
  
**지출관리>지출결의>계좌이체요구>지출금/반납금정정 화면에서 잘못처리된 해당 반납금액만큼 1월->13월로 반납금 정정하면 됨**

[결산작성지침 2023]->[이월불용액 조회 불가]->[회계]->일선관서 세출결산보고서에서 이월액 및 불용액 조회가 안되는 경우  
  
**해당 지출관의 13월 세출결산보고서 조회시 이월불용액이 조회되지 않는 것은 관련 재무관이 예산 메뉴에서 이월불용액 등록 및 확정 작업을 하지 않았기 때문. 재무관에게 먼저 확인하고, 이월불용액 등록 및 확정 처리 관련 문의는 사용자지원실 및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홈페이지 사용자문의 게시판으로 문의 해야 함.**

[결산작성지침 2023]->[이월불용액 등록]->[회계]->당해년 이월액, 불용액 등록 하는 법  
  
**예산관리 > 예산배정 > 이월불용 > 이월불용 요구등록배정 메뉴에서 회계연도를 차년도로 선택하시고 소관 및 재무관서 선택 후 조회된 내역의 이월불용 금액을 입력 후 재정책임관에게 제출하면 됨 이월내역 등록시 계속비사업의 이월사유 유형등록은 계속비이월로 등록하여야 하고, 이월불용 사유는 필수입력사항임**

[결산작성지침 2023]->[이월불용액 계산]->[회계]->이월불용 가능액 산정  
  
**재무관서에 배정된 예산액중 지출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이 이월불용가능액임, 예산배정액 - 지출액의 잔액 기준이므로 이월불용을 위해서 별도로 사업감배정 작업은 하지 않아도 됨. 예를 들어 예산배정액이 100만원인데 90만원을 지출액으로 썼다면 10만원이 이월불용 가능액임**

[결산작성지침 2023]->[수입 부표 마감 재마감]->[회계]->수입 부표마감 후 중앙관서 마감까지 끝낸 후 다시 마감할 수 있는지?  
  
**중앙관서 마감 이후에는 특별한 사유가 있지 않은 이상 마감취소 후 다시 마감을 할 수 없음. 만약, 다시 하여야 한다면 중앙관서 담당자에게 연락을 한 후 중앙관서마감 취로를 요청해야 함. 이후 일선관서 마감 취소를 하고 다시 마감에 관련된 작업을 할 수 있음**

[결산작성지침 2023]->[수입 13월 마감 오류]->[회계]->수입 마감시 13월 마감까지 다 했는데 한국은행 13월 마감하라고 연락이 온 경우 처리  
  
**월계대사표(실시간)에서 대사표 요청 후 대사확인을 하지 않아서 그러함. 수입마감과 별개로 한국은행 월계대사는 매월 대사표요청 및 대사확인을 하여야 한국은행에 이상이 없음을 통보하게 됨. 수입관리>마감>수입징수관>월마감>월마감단계별처리-월계대사표요청및 확인 탭 화면에서 해당월을 선택하고 대사확인 버튼을 클릭하면 됨**

[결산작성지침 2023]->[수입 월계대사표 마감 오류]->[회계]->수입 월계대사표 대사확인 작업까지 다 했는데 한국은행에서 마감이 안되었다고 연락 온 경우 처리  
  
**수입관리>마감>수입징수관>월마감>월마감단계별처리-월계대사표요청및확인 탭화면에서 해당월에 대한 대사표요청을 다시 수행해야 함. 월초의 경우 대사확인 작업 수행 후 수입금정정에 의한 경정금액이 월계대사액에 반영될 수 있음. 이런 경우는 변경된 월계대사액을 확인한 후 대사확인 작업을 다시 수행하여야 함**

[보호관찰 업무 매뉴얼]->[호칭]->[공통]->보호관찰 대상자는 소년, 성인, 여성, 노인 등 연령층과 대상이 다양한데 그 호칭은 어떻게 해야하나?  
  
**우리가 업무를 하다보면 대상자를 어떻게 불러야하는지 고민이 될 때가 있습니다. 호칭을 부르는 것은 직원마다 다양한데, 일반적으로는 큰 문제가 없으나, 종종 호칭으로 인해 갈등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호관찰 대상자와 호칭 문제로 언쟁을 벌이는 경우는 대부분 우리 언어 습관 및 어감에서 오는 뉘앙스 차이 때문이었습니다. 문제되는 호칭의 예로, 성인은 당신, 아저씨, 아줌마, 아가씨, OO양, 이 양반 등이었으며, 소년의 경우 야, 어이, 이봐 등이므로, 이러한 호칭은 근무 중에 자제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 대신 성인의 경우에는 보호관찰 대상자가 박사학위를 소지한 경우이든, 특정 자격을 갖춘 경우라 하더라도 개별적 특성에 따른 호칭을 사용하지 않고 "OOO씨"라는 통상적인 호칭을 사용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관계형성 이후에는 친근감이 있는 개별적 호칭이 가능한데, 소년의 경우 성명만 호칭하거나 학생인 경우에는 "OOO학생"이라고 호칭하여도 무방하겠습니다.**

[보호관찰 업무 매뉴얼]->[신고의무 거부]->[공통]->대상자가 신고 및 출석면담 시 신상에 대한 작성을 거부하면?  
  
**보호관찰 대상자가 보호관찰소에 출석하여 신고서 및 생활보고서 등을 작성할 때, 직업, 가족사항 등 사생활에 관계된 항목 작성을 기피하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이럴 때에는 신고 의무를 대상자에게 설명하고 비밀 유지 등에 신뢰감을 줘야 합니다.   
  
보호관찰은 법원의 판결 및 결정이 확정된 때, 또는 가성방 및 임시퇴원 된 때부터 시작되며, 10일 이내에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에 출석하여 서면으로 본인의 주거지, 직업, 생활계획 등을 신고할 의무가 있음을 설명해야 합니다(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더불어 보호관찰 대상자가 작성한 생활보고서 및 출석 면담 내용은 보호관찰 지도감독 자료로만 활용되고 외부에 일체 공개되지 않음을 명확하게 주지시켜, 보호관찰 대상자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등 신뢰감을 형성하도록 합니다.   
  
다만, 소재불명, 재범 등 준수사항 위반사실이 중대하면 사실 확인을 위한 주거지 및 직장 등 출장으로 인해 비밀유지가 곤란할 수도 있음을 설명해야 합니다.**

[보호관찰 업무 매뉴얼]->[법원 판결 및 결정 불복]->[공통]->대상자가 법원 판결 및 결정에 불복하여 상소 제기 의사를 표현할 경우에는?  
  
**보호관찰 대상자가 법원에서 판결 및 결정을 받고 보호관찰소에 출석했습니다. 그런데 억울하다고 말하며 상소에 대한 방법과 절차에 대해 질문을 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러한 경우에는 우선 상소 절차를 설명하고 상소 제기시 보호관찰소에 연락할 것을 고지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형의 확정은 재판의 당사자인 피고인과 검사가 재판결과에 승복하여 상소를 제기함이 없이 일정 기간(7일) 경과하였을 때이며, 이 시점(형 확정일)을 기준으로 보호관찰 등이 시작됨을 미리 안내해야 합니다.   
  
보호관찰 대상자의 판결일자 및 내용, 사건번호 등 재판결과를 확인하여 상소 절차에 대해 설명하면서 신고 후 법원에 상소를 제기하면 반드시 보호관찰소에 연락할 것을 안내해야 합니다. 보호관찰 대상자가 사회봉사 또는 수강명령 조기 집행을 위해 상소기간 내에 직접 판결문을 가지고 보호관찰소에 출석하여 신고하면 상소 권한이 본인 뿐만 아니라 검사에게도 있음을 알려야 합니다.**

[보호관찰 업무 매뉴얼]->[판결문 등 지연]->[공통]->법원 등에서 판결문 송부 등을 지연할 때의 대처법은?  
  
**법원 등에서 판결문 송부 등을 지연할 때의 대처법은 법원 등에 송부 또는 조속한 발부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1) 판결문이 송부되지 않으면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60조, "소년심판규칙" 제4조,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등에 관한 예규"(재형 2003-9, 제9조)에 따라 송부를 요청합니다. 2) 법원에서 유치허가장 발부가 지연되면 보호관찰소에 유치시설이 없는 점, 도주 및 인권침해 가능성 등을 설명하여 유치허가장의 조속한 발부를 요청합니다. 3) 유치기간이 지났음에도 유치기간 연장결정 통지가 없으면 유선으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에 따른 연장 결정의 통지를 요청합니다. 4) 검찰에서 집행지휘서 송부를 지연 또는 누락하면, "자유형 등에 관한 검찰집행 사무규칙" 제18조의2(보호관찰 명령 등의 집행지휘)에 따라 검찰청 사건과에 집행지휘서 송부를 요청합니다. 5) 검찰에서 집행유예취소 결정서 송부를 지연하면,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송부를 요청합니다. 6) 경찰서 유치장 수용 및 가유치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57조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9조에 따라 가능합니다.**

[보호관찰 업무 매뉴얼]->[언론사 인터뷰 요청]->[공통]->언론사로부터 업무 관련 인터뷰 또는 취재 요청을 받았을 경우 대응 방법은?  
  
**1) 상황 : 안녕하세요. OO신문사 OOO기자입니다. 현재 아동 성폭행으로 보호관찰 진행 중인 대상자는 몇 명이며, 어떻게 보호관찰을 실시하고 있습니까?   
  
2) 대처 : 취재 목적 및 의도 파악 후 상급자에게 보고하고, 답변 시에도 업무범위에서 사실만 요약하여 답변합니다. 구체적으로, 언론기관이 취재요청을 하면 취재하고자 하는 본연의 목적과 의도를 정확히 숙지한 후 적절히 대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기자, 방송작가들로부터 취재 및 인터뷰 요청에 대한 전화를 받은 경우 상대방의 소속, 성명, 취재의도 및 목적, 프로그램명 등 취재와 관련된 세부사항을 정식 공문으로 요청하고 과장 등 상급자에게 관련 사실을 보도하고 본부(보호관찰과, 특정범죄자 관리과)에 정보보고합니다. 무엇보다 전화응대 시에는 상대방 질문에 대해 실무자들이 알고 있는 내용이라 할지라도 확인된 사항이 아닌 이상 답변을 자제합니다. 더불어 기자들과 전화통화를 하는 순간부터 이미 취재 중임을 유념해야 합니다.**

[보호관찰 업무 매뉴얼]->[판결 확정 전 신고 가능 여부]->[보호관찰]->판결 확정 전에 보호관찰 신고 접수가 가능한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그 판결 및 보호처분이 확정되면 10일 이내 신고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실무상 판결정 확정 전 신고 접수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예외 규정이 없음에도 신고를 접수하는 것에 법적 문제가 없을까요?  
  
원칙적으로 10일 이내 신고를 해야 하는 이유는 대상자 또는 검사의 상소 시 판결 및 결정이 확정되지 않아 신고 자체가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실무적으로 보면 대상자가 상소할 의사가 없으면 확정 전에 신고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는 통상적으로 확정이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신고를 접수하여도 무방합니다. 다만, 대상자는 상소하지 않더라도 검사의 상소 가능성이 있는 만큼 대상자 신고 접수 후 반드시 확정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보호관찰의 경우 지도감독,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의 경우에는 지시 및 집행을 검사의 집행지휘서 접수 후 실시하여야 합니다.**

[보호관찰 업무 매뉴얼]->[항소기각결정 사건의 확정시기]->[보호관찰]->항소기각결정 사건의 확정 시기는 언제인가?  
  
**항소기각결정이 피고인에게 송달, 고지된 날로부터 3일 뒤 확정됩니다.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집행은 판결 확정 후에 하고(형사소송법 제459조), 보호관찰도 판결 확정 후 집행합니다. 판결은 심리를 열어 구두 변론을 하여야 하며, 피곤이이 원칙적으로 참석하지만, 결정은 심리 열지 않고 내릴 수도 있으며, 결정문을 작성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37조, 제38조).   
  
판결의 경우에는 대법원판결선고시, 상소기간 도과시 확정되지만, 피고인의 절차권이 보장되지 않은 결정의 경우 반드시 피고인에게 알려지거나 결정문이 송달되어야 효력이 있으며, 판례도 이와 같은 취지로 판시합니다(2012모576, 2011도15914). 또한 상고기각결정 혹은 항소기각결정의 경우 즉시 항고라는 불복방법이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송달, 고지된 후 즉시항고기간인 3일이 지나야 결정이 확정됩니다.**

[보호관찰 업무 매뉴얼]->[면담 시 면담내용 및 주요 착안사항]->[보호관찰]->보호관찰 대상자 면담 시 면담내용 및 주요 착안사항은?  
  
**보호관찰 대상자 출석 시, 많은 시간을 할애해 면담을 하였으나 정작 각종 지시사항 이행여부 등 필요한 사실은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보호관찰상황 기록에 곤란을 겪는 경우가 있는데, 면담 전에 보호관찰 대상자에게 무엇을 질문하고 확인할 것인지, 그리고 어떤 지시를 해야할까요? 답변을 드리자면, 기본사항과 지난 면담 이후 변동사항을 확인하고 지시는 구체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처우계획에 근거하여 보호관찰관이 보호관찰 대상자에게 부과한 각종 지시 사항에 대해 보호관찰 대상자가 순응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면담 후에는 가족 및 친구들과의 통화, 출장을 통해 불량교우 접촉 유무를 확읺라여 보호관찰 대상자가 담당자를 기만하지 못하도록 조치합니다(교우관계 확인 시, 보호관찰 대상자가 자주 만나는 친구들의 주소 및 전화번호 등을 확인하고 기록하여 향후 소재불명 시 참고자료로 활용합니다). 더불어 지난 면담 이후 연락처 변경 등 신상변동사항, 준수사항위반(특히 재범)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그 사유를 전산에 상세히 입력합니다. 아울러 지도감독상 지시는 추상적(예: 준수사항을 지킬 것)으로 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명시합니다(예: 검정고시 학원 수업에 빠지지 말 것).**

[보호관찰 업무 매뉴얼]->[담당자가 아닌 대상자 방문]->[보호관찰]->담당자가 아닐 경우 출석한 보호관찰 대상자를 맞이하는 요령은?  
  
**보호관찰 대상자는 담당자가 지정한 날짜에 출석하였습니다. 그러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담당자가 부재할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해결방안은 담당자와 통화하게 하고, 업무대직자가 담당자와 요청한 사항을 수행하면 됩니다. 구체적으로, 보호관찰 대상자에게 담당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부재중임을 알린 후 다른 직원이 대신 면담하면 됩니다(보호관찰 대상자 지도감독 지침 제37조 2항).   
  
우선 담당자와 보호관찰 대상자가 통화하게 하여 보호관찰 대상자가 담당자로부터 필요한 지도를 받게 하고, 업무대직자가 담당자와 통화하여 필요한 내용을 전달받아 보완적인 업무(예" 경고장 교부, 각종 증명원 발부 등)을 수행합니다. 다만, 담당자가 면담 시간의 변경을 미리 고지하였음에도 보호관찰 대상자가 출석을 강행하였다면 출석면담으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유의바랍니다.**

[보호관찰 업무 매뉴얼]->[짧은 면담에 대한 의미 질문]->[보호관찰]->보호관찰 대상자가 보호관찰소에 출석하여 짧은 시간 면담하는 것이 무슨의미가 있는지 질문할 경우  
  
**보호관찰에 불만이 있거나 출석을 고의로 기피하는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대처 방안은 무엇일까요? 해결방안은 보호관찰 대상자의 말을 경청하되, 보호관찰 면담의 의미, 필요성 및 법적 성격 등을 설명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보호관찰 대상자의 말을 경청하고 공감을 표시하여 라포를 형성할 수 있도록합니다. 이후 보호관찰관과 보호관찰 대상자의 면담은 단순한 만남이 아니라 보호관찰 대상자가 가진 문제(인성의 개선, 가족관계의 회복, 취업, 진학, 원호 등)를 함께 공유하고 해결하는 과정을 통해 궁극적으로 재범을 방지하고 보호관찰 대상자가 사회에 원만하게 복귀하도록 지도하는 것임을 설명합니다.   
  
아울러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서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보호관찰관의 정당한 지도감독 권한과 보호관찰 대상자의 준수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보호관찰 대상자의 기본권을 법률적으로 제한하는 것이므로 보호관찰 대상자는 이에 따라야함을 고지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따르지 않으면 법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명확하게 주지시켜야 합니다.**

[보호관찰 업무 매뉴얼]->[친구, 공범 등과 함께 출석]->[보호관찰]->보호관찰 대상자가 친구, 공범 등과 함께 보호관찰소에 출석할 경우  
  
**보호관찰 대상자가 친구, 공범 등과 함께 출석할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출석시 혼자 올 것을 지시하고, 친구와 공범의 경우 나누어 지도합니다. 우선, 보호관찰소에 출석할 때에는 친구와 동행하지 말도록하고, 특히 공범과는 도행은 물론 평소에도 어울리지 말 것을 엄정하게 지도합니다. 보호관찰 대상자가 출석 시 친구와 동행한 경우, 보호관찰 대상자와 면담을 진행하는 동안 잠시 휴게실 등에서 기다리게 하고, 보호관찰 대상자와 면담한 후 가급적 친구와의 상담을 통해 보호관찰 대상자의 동선, 잦은 출입장소, 유흥장소와 함께 자주 어울리는 친구들의 가정환경, 직업, 생활태도 등을 자세히 파악하여 보호관찰 대상자의 지도감독 자료로 활용합니다.   
  
보호관찰 대상자가 출석 시 공범과 동행한 경우, 함께 동행한 사실에 대해 엄중하게 주의조치한 후, 그동안의 생활에 공범이 어떠한 영향력을 미쳤는지 상세히 묻고 준수사항 위반사실 유무를 파악하여, 보호관찰 대상자의 면담이 종료되면 공범과 별도 면담하여 보호관찰 대상자가 진술한 내용에 대해 진위 여부를 확인합니다.**

[보호관찰 업무 매뉴얼]->[특이 보호관찰 대상자 효율적인 지도감독]->[보호관찰]->폭력 대상자, 알코올 중독자 등 특이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효율적인 접촉요령 및 지도감독 기법은?  
  
**폭력 대상자, 알코올 중독자 등 특이 보호관찰 대상자는 각 상황에 맞게 침착히 대응하고, 필요시 개별교육, 정보보고 등 실시합니다. 보호관찰 대상자가 직원에게 위협적, 폭력적 행위를 하면 차분하면서도 진자하게 보호관찰 대상자의 행위가 절대 용납될 수 없으며, 이런 행동이 반복되면 그에 상응하는 불이익이 가해질 수 밖에 없음을 고지합니다.   
  
알코올 중독자의 경우 초기면담 시 보호관찰 대상자와 가족 면담을 통해 알코올 중독치료를 위한 입원 및 통원치료 전력, 음주횟수, 음주량, 음주상태에서 야기한 범죄경력 등을 자세히 조사하여 알코올 의존 정도를 정확히 파악한 후 음ㅈ로 인한 재범방지에 초점을 두어 처우계획을 수립하고 개별 교육을 실시합니다(출장을 강화하고 보호관찰 대상자가 음주상태에서 출석하면 엄중 경고 조치합니다). 에이즈 등 감염병 질환자는 특별관리 대상자이므로 신고서 접수 후 본부에 정보보고한 뒤 지도감독 합니다.**

[보호관찰 업무 매뉴얼]->[장기간 해외출장 및 여행]->[보호관찰]->보호관찰 대상자가 장기간 해외출장 및 여행을 할 경우 효율적인 지도감독 기법은?  
  
**사업 등 경제활동을 위해 장기간 국외출장을 가거나 가족여행을 위해 출국하는 보호관찰 대상자를 지도감독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이때는 신고는 받되, 허위 신고 가능성에 대하여 관련 자료를 확보하여 철저히 확인합니다.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장기간의 국외출장은 허가 사항이 아니라 신고 사항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불허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허위로 신고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출국 전에 여권, 비행기표 등 여행관련 서류와 여행신고서를 확보해야합니다(한 사례로, 어떤 대상자는 비행기 예약 상태만 출력하여 제출하고 출국을 하지 않은 경우도 있으므로, 결재 내역을 제출하도록 지시합니다). 또한, 출국 후에는 편지, 전자우편(e-mail) 및 국제전화 등을 통해 수시로 보호관찰 담당자에게 현지 생활을 보고하도록 지도해야 합니다.**

[보호관찰 업무 매뉴얼]->[다양한 원호 활동을 위한 효과적인 방법]->[보호관찰]->보호관찰 대상자의 복학 주선, 숙소 및 취업 알선 등 다양한 원호 활동을 위한 효과적인 방법은?  
  
**이때는 대상자의 문제점을 함께 파악하되 보호관찰관의 입장이 아닌 대상자의 입장으로 한 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보호관찰 대상자 엄호를 위해 제일 먼저 고려해야할 사항은 보호관찰 대상자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보호관찰 대상자를 둘러싼 가정, 사회적 환경 문제에 어떻게 개입할 것인가를 정하는 것입니다. 원호는 첫째, 경제분야(장학금, 의료비, 생계금품 등), 둘째, 진로 및 사회적응 분야(복학, 학원, 직업훈련, 취업 등), 셋째, 환경개선 분야(주거환경 개선, 숙식알선 등), 넷째, 기타 분야(문진제거시술, 건강검진 등)로 크게 나뉩니다. 보호관찰 대상자가 원하는 것, 가정, 사회적 환경 등을 고려한 맞춤형 원호는 보호관찰 대상자의 변화에 대한 자발적 동기를 이끌어 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원호 활동은 담당자의 입장이 아니라 보호관찰 대상자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호관찰 업무 매뉴얼]->[불안정한 가정환경 대상자의 지도감독 기법]->[보호관찰]->소년소녀가장 및 한부모 가정 등 불안정한 환경으로 일탈행동을 한 대상자의 지도감독 기법은?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의 경제 상황, 부모와의 불화 등 비행행위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여 효율적인 처우계획을 수립, 지도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이때는 대상자가 마음의 상처를 입지 않도록 유념하고 경청하되, 일탈행동에 대한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고 필요한 프로그램에 참가를 유도합니다.   
  
불우한 가정환경에서 성장한 보호관찰 대상자들은 대부분 자신의 환경에 대해 말하거나 노출하는 것을 싫어하며, 면담 시 담당자가 큰소리로 보호관찰 대상자의 가정환경을 질문하면 모멸감이나 자존심에 상처를 입을 수 있으므로, 출석 면담 시 보호관찰 대상자의 객관적 상황만 파악하고 구체적인 가족관계 및 가정환경 등은 독립된 면담실에서의 개별 면담 또는 출장 시 질문을 통해 확인합니다.   
  
면담 시 보호관찰 대상자가 본인의 일탈행위를 가정환경 탓으로만 돌리고 불만을 토로하면 경청은 하되 자신의 일탈행동을 정당화 할 수 있는 가정환경에 대한 동정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비행원인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통해 그에 상응한 전문 처우 프로그램에 참가하도록 유도합니다.**

[보호관찰 업무 매뉴얼]->[수시로 원호금풍 요구시 대응방법]->[보호관찰]->보호관찰 대상자가 생활고 등의 이유로 수시로 원호금품을 요구하는 경우 대응 방법은?  
  
**보호관찰 대상자가 경제적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은 하지 않고 보호관찰소에 원호만을 요구하면 어떻게 할까요? 우선 담당자가 보호관찰 대상자가 필요로 하는 사항이 무엇인지 알고 있음을 알리고 대상자 본인의 노력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함을 인식시켜야 합니다.   
  
수시로 원호금품을 원하는 경우 먼저 보호관찰 대상자가 요구하는 것이 어떤 부분인지 경청하고 요구사항에 대해 담당자가 요약 후 반복하여 답변해 줌으로서 담당자가 자신의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인식시켜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호관찰 대상자가 작성한 세부계획을 기본으로 보호관찰 대상자와 함께 스스로 할 수 있는 부분과 보호관찰소에서 사회내 자원을 통해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명확히 밝혀 상대방을 이해시킵니다.   
  
단순히 현금을 지원하는 원호시스템은 의미가 없으며 보호관찰 대상자 스스로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해 자립하는 노력이 있어야만 지원이 가능함을 강조해야 합니다.**

[보호관찰 업무 매뉴얼]->[사생활 침해 등으로 지도감독에 불만]->[보호관찰]->본인 및 가족 등이 사생활 침해 등을 이유로 지도 감독에 불만을 갖고 보호관찰소에 항의할 경우는?  
  
**보호관찰 대상자를 보호관찰소에 출석토록 지시하거나 본인의 주거지 및 직장 등에 출장을 실시하면 보호관찰 대사자는 본인의 사생활을 침해한다고 하면서 강한 불만을 토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침착하게 대응하면서 보호관찰 대상자와 친밀감 형성을 위해 노력하되 출석 및 출장 지도는 보호관찰 지도감독상 필수적인 법적 권한임을 설명합니다. 보호관찰 대상자들은 담당자에게 무례하고 반항적으로 행동하여 그들의 두려움을 위장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때 담당자는 보호관찰 대상자의 행동을 직원 개인에 대한 공격이라 생각하지 말고 그러한 행동의 발생 원인과 주변 환경 등을 면밀히 관찰한 후 보호관찰 대상자와의 친화적 관계형성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동시에 준수사항 이행의 필요성과 위반 결과가 보호관찰 대상자에게 상응하는 부담으로 되돌아옴을 분명히 고지하여 보호관찰 대상자로 하여금 법적 의무감을 각인시킵니다. 특히, 신고 시 보호관찰 대상자에게 거주지, 가정환경 등 객관적인 정보수집과 준수사항 이행여부 확인을 위해 수시로 출장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는 보호관찰 지도감독의 기본 업무임을 철저히 교육시켜 향후 거주지 방문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사전에 차단해야 합니다.**

[보호관찰 업무 매뉴얼]->[폭언 및 욕설 등 반항적인 행동에 대한 대처]->[보호관찰]->보호관찰 대상자가 보호관찰소에 출석하여 폭언, 욕설 등 반항적인 행동할 경우 대응방법  
  
**보호관찰 대상자가 음주상태 또는 법원의 판결에 불만을 갖고 출석하여 직원의 정당한 지시를 회피하거나 흥분한 채 폭언, 욕설 등 반항적인 행동을 할 경우에는 침착하게 대응하면서 상황을 판단하여 면담 또는 귀가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보호관찰관은 상황을 살핀 후 상담을 할 것인지, 귀가시킬 것인지를 판단하여 신속히 조치하고, 귀가지시를 거부하고 계속 폭언과 욕설을 하면서 업무를 방해하면 일단 경고 조치하고, 경고에도 불구하고 보호관찰 대상자의 반항적 행동이 지속되면 긴급 구인할 수도 있음을 고지하여 더 이상 소란을 피우지 않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보호관찰 대상자가 보호관찰소에 신고 시 "나는 잘못이 없다. 보호관찰을 내가 왜 받아야 하나? 수십억을 먹은 놈들은 다 멀쩡하게 있는데 왜 나 같은 사람이 보호관찰을 받아야 하냐?"면서 사무실 분위기를 시끄럽게 하는 경우가 간혹 있는데, 차분하게 재판일자를 확인하고 항소 일자가 남아 있으면 항소기간과 절차 등에 대해 친절히 안내하는 등 상대방 감정을 최대한 억제시킵니다. 보호관찰 대상자의 분노 표출에 맞서 대응하기 보다는 부드럽게 대처하고 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호관찰 업무 매뉴얼]->[주거지 및 직장 등 방문시 주의사항과 감독기법]->[보호관찰]->담당자가 보호관찰 대상자의 주거지 및 직장 등 방문시 주의사항과 구체적인 감독기법은?  
  
**보호관찰 대상자 및 가족이 보호관찰 사실이 주변에 알려질 것을 우려하여 출장 자체를 강하게 항의하는 경우가 있으며, 예기치 못한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에 출장 시 주의사항과 구체적인 감독기법을 사전에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보호관찰 공개범위를 다시 확인하고 비밀을 지켜주고 상호 협력관계를 유지하되, 출장 자체는 보호관찰관의 법적 권함임을 분명하게 인식시킵니다. 초기면담 시 보호관찰 공개 범위를 반드시 확인하고, 출장 시 담당자와 보호관찰 대상자와의 접촉은 보호관찰 지도감독의 기본적 업무이고 보호관찰 대상자는 보호관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인 주거지방문에 순응해야 함을 주지시킵니다.   
  
출장 시 일방적인 훈계나 지시 일변도의 대화보다는 가족의 상황 및 입장, 상호협력 관계 유도를 위한 접근을 시도합니다.   
  
보호관찰 대상자가 가족 등 관계인에 대해 자신이 보호관찰 대상자임을 비밀로 해달라고 요청하면 사실관계와 그 요청의 적절성 판단 과정이 필요합니다.   
  
첫 회 방문은 신고 후 가급적 빨리 실시하되 가급적 방문일시를 미리 고지하고 구체적인 날짜와 시간을 약속해서 만나는 것이 좋습니다.   
  
주거지 방문 시 대상자 등을 면담하지 못한 경우 출입문에 메모를 남기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보호관찰 대상자라는 사실이 이웃에 알려져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으므로 메모를 남기더라도 담당자의 이름과 연락처만 기재하거나 소환에 불응하는 보호관찰 대상자는 출석요구서 발부 등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처리합니다.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출장지도는 단순히 주거지 상주 여부를 확인하는데 그치지 않고 보호관찰 대상자가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한 사항의 진실 여부 및 전월과 달라진 변동사항 등을 확인하고 가족 구성원간의 애정이나 결집력 등 환경적인 요소를 파악합니다.**

[보호관찰 업무 매뉴얼]->[여자 보호관찰 대상자 혼자 거주하고 있는 등 예기치 못한 문제 발생시 효과적인 대응]->[보호관찰]->출장 시 여자 보호관찰 대상자 혼자 거주하고 있는 등 예기치 못한 문제 발생 시 효과적인 대응 방법은?  
  
**남자 직원 혼자 보호관찰 대상자 주거지 등을 방문하였을 경우 가족 중 여성만 집에 있는 경우에는 가족이 보호관찰 대상자임을 알고 있는지 확인하고 필요하면 방문자의 신분을 밝히되 가급적 문 밖이나 현관 입구에서 면담을 실시합니다.  
  
우선 "안녕하세요? 여기가 OOO씨 댁 인가요?" 라고 보호관찰 대상자의 이름을 먼저 밝혀 방문자가 보호관찰 대상자를 알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인식시켜 상대방의 불안감을 해소시킵니다.  
  
이 때 방문자가 보호관찰소 직원이라는 사실을 먼저 밝히지 않도록 주의하고 "실례지만 OOO씨와 어떻게 되시나요?"라고 물어 보호관찰 대상자와의 친분관계 및 신분 등을 확인한 후 보호관찰소 직원이라고 밝혀도 되는지를 검토합니다.  
  
상대방이 보호관찰 대상자가 보호관찰 받고 있음을 알고 있으면 신분과 방문 목적을 밝히면서 가급적 신분증을 제시합니다.  
  
또한 불필요한 오해를 없애기 위해 가급적 문 밖이나 현관 입구에서 보호관찰 대상자의 근황 등을 파악한 후 재범방지를 위해 가족이 적극 협조해 줄 것과 보호관찰 대상자에게 지시할 사항을 전달합니다.**

[보호관찰 업무 매뉴얼]->[경고장(출석요구서 포함) 관련 대상자 소환 시기]->[보호관찰]->경고장(출석요구서 포함)상 보호관찰 대상자의 소환 시기는?  
  
**출석요구서 및 경고장 발부 시 보호관찰 대상자 소환일자가 전국적으로 통일되어 있지 않아 혼선의 여지가 있습니다. 획일적 기준은 없으며, 사안 및 보호관찰관의 재량에 따라 결정하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출석요구서나 경고장 발부 시 소환일자는 7일간의 기간을 주고 있으나, 이는 절대적인 것이 아니고 사안의 시급성과 담당관의 재량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 7일이라는 기간은 관행에 따른 것으로, 오늘날과 같이 교통이 발달한 상황, 그리고 출석요구서나 경고장이 주로 대상자의 거주지 등 보호관찰소 관내라는 가까운 곳에 발송되는 점을 감안하면 그 기간을 줄일 필요가 있습니다(문제 대상자에 대한 즉시적 대응이 아니라 지나치게 이완된 대응은 문제의 소지를 키워 재범으로 악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유선이나 출장을 통해 전달할 경우 7일이라는 기간에 얽매일 필요 없이 1일 또는 2일 등의 기간만을 줄 수도 있습니다.**

[보호관찰 업무 매뉴얼]->[준수사항 위반 대상자에게 출석 요구서 및 경고장 발부]->[보호관찰]->준수사항을 위반한 보호관찰 대상장제게 출석 요구서 및 경고장을 발부하기 위한 사전요건과 불응시의 대응 방법은?  
  
**준수사항을 위반한 보호관찰 대상자를 보호관찰소에 소환하여 조사하고자 출석요구서와 경고장을 발부하게 되는데, 처리 절차와 불응시 대응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출석요구 및 경고는 구두 또는 서면으로 할 수 있고, 경고와 출석요구를 동시에 할 수도 있으며, 출석요구에 불응하면 경고 등 제재를 할 수 있습니다.  
  
보호관찰 대상자가 지켜야 할 준수사항을 위반하였거나 위반할 위험성이 있으면 원칙적으로 서면 형식의 출석요구서를 발부합니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등 출석요구서를 발부하기 적당하지 않거나 주거부정이면 전화, 출장 등 다른 방법으로 실시하며, 소재불명이면 가족, 동거인, 관계인 등에게 발송합니다.  
  
실제 업무처리에서는 통신을 이용한 출석요구(구두)를 먼저 실시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불응했을 경우에는 출석요구서 발부합니다.  
  
준수사항 위반사실이나 위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준수사항의 성실한 이행을 촉구하고 만약 불이행시에는 구인 유치 등 불이익한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경고하는 서면경고장 발부와 함께 소환지시를 할 수도 있습니다.**

[보호관찰 업무 매뉴얼]->[구인장 및 유치허가장 신청 시 관할 검찰청]->[보호관찰]->보호관찰소 소재지와 검찰청 관할이 다른 경우 구인장 및 유치허가장 신청 시 관할 검찰청은?  
  
**서울 강남구 거주하는 홍길동의 구인장 및 유치허가장을 신청 할 경우 강남구의 관할인 서울중앙지검에 신청해야 하는지, 아니면 서울보호관찰소 관할인 서울북부지검에 신청해야할까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는 '보호관찰소 장은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에 구인(긴급구인) 및 유치허가의 신청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소재지는 보호관찰소의 소재지 입니다.  
  
\* 보호관찰 대상자 소재지가 아닌 이유는 보호관찰 대상자와 검찰청의 연관성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보호관찰소 관할 구역에 검찰청이 여러 개이면 보호관찰소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검찰청이 구인장 신청 대상 관할입니다.**

[보호관찰 업무 매뉴얼]->[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의 구인집행 시점]->[보호관찰]->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41조의 구인집행 시점은?  
  
**서울보호관찰소 지명수배 대상자가 (1) 2015.7.30(월) 21:00 창원중부경찰서에서 검거된 경우에 지명수배조 및 기관 사정에 따라 (2) 2015.7.31.(화) 09:00 창원중부경찰서에서 인수하여, (3) 2015.7.31.(화) 15:00에 서울보호관찰소에 인치한 경우 동법 제41조의 구인 집행 시점을 어떤 시간을 기준으로 해야할까요?   
  
구인장에 의해 검거된 경우는 경찰 검거일시이며, 체포영장 등 타집행권원으로 거거된 경우에는 타 집행권원 선 조치 후 석방된 시점입니다. '14.12.30.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보호관찰 대상자의 구인집행 시점이 "인치한 떄"에서 "구인한 때"로 변경되었습니다.  
  
보호관찰관이 구인장에 의해 대상자를 검거하면 검거한 시점이 바로 구인집행시점이며, 구인장에 의해 경찰이 대상자를 검거한 경우, (1) 경찰 검거 시점이 구인집행 시점이고 , 다른 권원(예: 절도로 발부된 체포영장)으로 검거를 한 경우 다른 권원에 의한 조사를 마친 시점이며, (2) 신병인수시, (3) 보호관찰소 인치시점은 구인 집행 시점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보호관찰 업무 매뉴얼]->[구인장이 공휴일에 발부되었을 경우 지명수배 입력시기]->[보호관찰]->금요일 또는 공휴일에 구인장이 발부되면 지명수배 입력 시기는?  
  
**보호관찰 대상자 지도감독 지침상 구인장 발부 즉시 지명수배를 입력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금요일 심야 또는 주말에 구인장이 발부되면 1~3일을 경과한 월요일에 지명수배를 입력해도 될까요?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다음주의 첫 근무일에 지명수배 입력을 의뢰합니다.  
  
통상적으로 검찰청 당직 근무자는 평일 업무시간 종료 이후와 공휴일에는 지명수배 입력, 지명수배 해제 공문을 접수만 할 뿐, 실제 전상상 입력 또는 해제 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 다만, 검찰청마다 지명수배 처리 근무 형태가 다를 수 있으므로 주의바랍니다.  
  
따라서 구인장이 금요일 심야에 발부되지 않도록, 구인장 신청을 금요일 오전까지 하는 등 운영의 묘를 살리되, 부득이하게 금요일 야간 또는 주말, 휴일에 구인장이 발부되면 그 다음주의 첫 근무일에 지명수배 입력을 입력하면 됩니다.**

[보호관찰 업무 매뉴얼]->[구인장 발부된 대상자 주거지에 가족 등이 함께 있을 때]->[보호관찰]->구인장이 발부된 대상자가 거주하고 있는 주거지 등에 들어갔는데, 가족, 친구 등과 함께 있을 경우 대응 방법은?  
  
**주거지 등 구인 현장에 구인영장이 발부된 보호관찰 대상자가 친구 또는 가족들과 함께 있으면 가족 등에게 영장을 제시하고 협조를 요청하되, 집행을 방해하면 인근 경찰에 협조를 요청합니다.   
  
구인 집행 현장에서는 우선 영장을 제시하고 구인 대상자와 그 밖의 사람들은 신속하게 분리해야 하며, 구인 대상자에게 구인사실 요지와 미란다 원칙에 대해 고지한 후 보호장구를 사용하여 신속하게 구인 대상자의 신병을 확보합니다.  
  
가족에 대해서도 구인장을 제시하고 구인사실 요지에 대해 충분히 설명한 후 공무집행에 대해 협조를 당부합니다.  
  
만약, 가족이나 지인이 구인 집행을 고의적으로 방해하면 공무집행 방해로 고발될 수 있음을 설명하고, 지구언의 경고에도 계속하여 업무를 방해하면 인근 경찰서에 협조를 요청합니다.  
  
이때 구인 대상자 외의 사람에게 보호장구를 사용하여서는 안됩니다.  
  
구인 집행이 완료되면 구인 후 진행되는 법적인 절차와 대응요령 등을 가족 및 지인들에게 설명해 주어 불안감을 해소시킵니다.**

[보호관찰 업무 매뉴얼]->[구인장이 발부된 대상자가 집에 있으면서 문을 열어주지 않을 때]->[보호관찰]->구인장이 발부된 대상자를 구인하기 위해 주거지를 방문하였는데 대상자와 가족들이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가급적 본인을 설득하고 가족을 활용하여 스스로 문을 열도록 유도합니다. 구인장이 발부된 대상자 또는 가족과 전화통화 등 대화를 시도하여 보호관찰의 취지와 목적이 처벌이 아님을 설명하고, 구인 집행의 목적은 준수사항 위반 사실을 조사하기 위함이고 조사 시 준수사항 위반 경위를 해명할 수 있으며 사안에 따라 구인 후 석방도 가능함을 고지하여 심리적인 안정감을 유도합니다.  
  
그러나 계속하여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불이익한 처벌을 받게 됨을 재고지하여 구인 대상자 스스로 문을 열도록 유도합니다.  
  
가족 등은 외출을 한 상태에서 대상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가족 등과의 전화통화 등을 통해 상황을 설명하고 가족 협조를 요청합니다.  
  
구인집행 과정에서 구인 대상자가 심리적 불안감에 음독, 자해 및 무리한 도주를 시도하다 위험한 상황에 빠지지 않도록 상황 판단을 정확히 하고 무리한 구인 집행은 자제합니다.**

[보호관찰 업무 매뉴얼]->[구인, 유치하는 등 제재 과정 중 갑작스런 음독, 발작 등 긴급 상황 발생했을 때]->[보호관찰]->보호관찰 대상자를 구인, 유치하는 등 제재 과정 중 갑작스런 음독, 발작 등의 긴박한 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대응 방법은?  
  
**사전에 병력 등을 파악하여 대비하고, 긴급 상황이 발생하면 침착하게 응급조치 후 의료기관으로 이송하되 계호는 철저히 시행합니다. 구인 대상자가 구인 후 석방 및 집행유예취소신청 기각 등 사안에 따라 선처를 받을 수 있음을 설명하고 심리적인 안정감을 갖게 합니다.   
  
계호 시 구인 대상자가 위험한 물건으로 자해를 하거나 음독, 발작 등을 일으킬 수 있고, 특히 화장실에서 도주를 시도하다 부상을 입는 경우가 있으므로 담당자는 시선 내 계호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특히, 구인 대상자의 병력, 신체적 특징 등을 미리 파악하여 간질, 고혈압, 심장질환 등 병력자와 임신한 대상자는 특별히 유의합니다.  
  
조사가 끝나고 유치허가장이 발부되기 전까지 가급적 동성 직원 1명이 구인 대상자와 대화를 나누면서 편안한 상태를 유지합니다.  
  
긴급 상황이 발생하면 응급조치를 취한 후 가까운 의료 기관으로 후송해서 치료를 받도록 조치하고, 상황 추이에 따라 제재를 진행합니다.  
  
긴급 상황에서도 계호를 철저히 하고, 구인 대상자가 도주 목적으로고의로 응급상황을 유발했을 개연성도 고려합니다.**

[보호관찰 업무 매뉴얼]->[지명수배 대상자 검거 후 경찰서 인치된 경우 신병 인계인수 방법]->[보호관찰]->지명수배 대상자가 검거되어 경찰서에 인치된 경우 신병 인계인수 방법은?  
  
**지명수배 대상자가 검거되어 경찰서에 인치된 후 늦은 밤 또는 새벽에 연락이 오거나 검거 경찰서가 관할이 아닌 원거리인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 경찰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서 조회 가능함을 고지합니다(Kics창에서 정보검색-구인장정보연계-성명, 주민번호 입력, 보호관찰소 선택 후 조회 가능  
  
교통사정 등으로 장시간이 소요되면 그 사유를 검거관서에 설명하고 피검자의 도주방지를 위하여 검거관서 유치장에 일시 보호를 요청합니다  
  
보호관찰소와 검거관서간 거리가 너무 멀면 인근 보호관찰소에 구인 공조 요청을 하고 약속된 장소에서 신병을 인수합니다  
  
경찰관에게 검거 경위서를 받고 피검자의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 사항을 확인 후 구인 경위 및 미란다 원칙 등을 고지하고 신병을 인수합니다  
  
신병 인수 후 반드시 지명수배 대상자의 몸을 수색하여 음독, 자해 등에 이용될 수 있는 위험한 물품(약품, 라이터, 소형 칼 등)을 수거하고 소지품과 함께 보관합니다**

[보호관찰 업무 매뉴얼]->[보호처분과 집행유예 동시 진행시 제재 방법]->[보호관찰]->소년 보호처분과 집행유예 사건이 동시 진행되면 제재 방법은?  
  
**소년 보호처분(임시퇴원 포함)과 집행유예 사건의 보호관찰이 동시에 진행 중인 보호관찰 대상자가 준수사항을 위반하면 어떻게 제재 해야 할까요? 이때는 보다 중한 집행유예 사건에 대하여 구인장을 발부받아 제재를 실시합니다. 소년 보호처분(임시퇴원 포함) 사건에 대해서는 보호관찰 대상자 지도감독 지침 제110조(보호관찰 정지) 또는 제112조(기간 연장 신청)에 따릅니다.  
  
신병이 확보되어 구인 및 유치를 집행할 떄에는 집행유예 취소 신청 후 아래와 같이 처리하고, 임시퇴원 사건은 보호관찰정지 해제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집행유예 취소 신청 인용 : 2개 사건 모두 종료(집행유예 취소 종료, 형집행 종료)  
- 집행유예 취소 신청 기각 : 2개 사건 모두 진행(기간경과 후 종료)  
  
일부 기관에서는 집행유예와 소년보호처분(임시퇴원 포함)이 경합 상태에서 준수사항을 위반하면 각각 구인장을 발부받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교정처우의 역전현상(2건 모두 인용시 징역형 집행 후 소년원에 재수용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지양해야 합니다**

[보호관찰 업무 매뉴얼]->[구속적부심 청구된 대상자의 호송 및 계호 주체]->[보호관찰]->구속적부심이 청구된 보호관찰 대상자의 호송 및 계호 주체는?  
  
**청구 당시 보호관찰 대상자가 있는 기관에서 호송 및 계호를 담당합니다. 체포, 구속적부심은 헌법 제12조 제6항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에 근거하여 인정되므로, 원칙적으로 체포 또는 구속된 자가 그 대상입니다. 그러나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에서 보호관찰 대상자의 구인 및 유치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유치허가장 발부 시 피유치자 역시 유치적부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인 유치 등에 대한 적부심 청구와 관련하여 법원의 심문을 위한 호송 및 계호의 주체에 대한 규정은 없으며, 두 가지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 보호관찰소에서 조사받고 있는 중 가족의 신청으로 구인 등에 대한 적부심을 청구한 경우 해당 보호관찰소에서 담당  
- 소년보호기관에 유치된 상태에서 구속적부심 청구하면 해당 소년 보호기관에서 담당**

[보호관찰 업무 매뉴얼]->[구인 집행 시 별도의 압도 수색 영장 발급 필요 여부]->[보호관찰]->구인 집행 시 별도의 압수 및 수색 영장 발급이 필요한가?  
  
**구인장 집행 시 보호관찰 대상자가 주거지에서 문을 열어주지 않는 경우 등 별도의 압수 수색 영장 없이 보호관찰 대상자의 수색이나 필요한 물건을 입수할 수 있을까요?   
  
보호관찰 대상자가 집안에 확실하게 있는 경우에는 구인장만으로 압수·수색 가능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체포현장에서의 압수·수색은 별도의 압수·수색 영장 없이 압수·수색이 가능하므로, 보호관찰 대상자 구인 현장에서 필요하면 별도의 영장 없이 압수·수색이 가능합니다  
  
다만, 형사소송법 제215조가 체포영장과는 별도로 압수·수색이 필요하면 영장을 발부받도록 한 취지상 여기서의 '구인(체포)현장'이라 함은 보호관찰 대상자가 집안에 있는 것이 확실하거나 개인성이 있는 경우를 의미하고, 보호관찰 대상자가 집안에 있는지가 불명확하면 별도의 압수·수색 영장이 필요합니다.  
  
\* 관련 법류: 형사소송법 제215조·제216조 및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7조**

[보호관찰 업무 매뉴얼]->[출입국관리 직원이 지명수배된 대상자 신병 확보 가능한지]->[보호관찰]->출입국관리 직원도 지명수배된 보호관찰 대상자의 신병을 확보할 수 있는가?  
  
**출입국관리소와의 업무협조를 통해 지명수배된 보호관찰 대상자가 출입국 시 바로 출입국 관리소 직원이 공항에 있는 경찰관에게 연락하고, 경찰관이 올 때까지 보호관찰 대상자의 신병을 확보하고 있는 것이 가능할까요?  
  
출입국관리 직원은 보호관찰 대상자의 신병을 강제로 확보할 권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출입국에서 대상자를 발견하여도 출국만 금지할 수 있을 뿐, 보호관찰 대상자의 신병을 잡고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지명수배된 보호관찰 대상자가 출국을 포기하고 그냥 집으로 돌아간다고 해도 출입국관리 직원이 신병을 체포할 수는 없습니다.  
\* 법령상 보호관찰 대상자의 신병확보는 보호관찰관(또는 경찰관)만 가능합니다.**

[보호관찰 업무 매뉴얼]->[국선변호인 선임 요구]->[보호관찰]->구인 대상자가 국선변호인 선임을 요청하면?  
  
**구인된 대상자가 준수사항 위반사실에 대한 조사를 받기 전 국선변호인을 선임해 줄 것을 요청하면 처리방안은?   
  
국선변호인 선임은 될 수 있으나, 그 업무는 보호관찰소가 아니라 법원에서 처리함을 설명합니다.  
  
법률상 법원이 직권으로(필요적) 국선변호인을 선임하거나, 구인 대상자가 법원에 청구를 하면(임의적) 법원이 국선변호인 선임 여부를 판단하는데, 형행법상 구인 대상자는 필요적으로 국선변호사를 선임해야 합니다.  
  
\*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 보호관찰 대상자의 구인 및 유치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제214조의 2를 준용한다.  
\* 형사소송법 제214조의 2,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제33조 규정을 준용한다.  
\* 형사소송법 제33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 피고인이 구속된 때  
- 피고인이 미성년자인 때  
- 피고인이 70세 이상인 때  
- 피고인이 농아자인 때  
- 피고인이 심신장애의 의심이 있을 때  
-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때**

[보호관찰 업무 매뉴얼]->[구인 대상자가 유치 대기 중 전화통화 요청]->[보호관찰]->구인 대상자가 유치 대기 중 부모 등과 통화를 요청하면?  
  
**보호관찰 대상자가 구인집행 된 후 유치 대기 중 부모, 친구, 애인 등과의 전화 통화를 원할 경우에는 유치허가장 발부 후 유치집행 전까지 1~2통 정도의 통화는 가능합니다. 보호관찰 대상자가 공범과 모의를 하거나, 증거인멸 등 제재 수행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으면 일정한 범위에서 제한할 수 있습니다.  
  
실무상 서면 통지 이외 보호자 등에게 유선으로 구인 사실을 알려주고 보호관찰 대상자와 통화도 하게끔 하고 있으므로, 이에 비추어 적정한 선에서의 전화 통화를 허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유치 집행 중 유치 대상자가 탈주 등 불미스러운 일을 공모할 수 있으므로 통화를 제한하여야 함**

[보호관찰 업무 매뉴얼]->[구인장이 발부된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 재범 사건 참석]->[보호관찰]->구인장이 발부된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가 재범 사건의 법원 심리에 참석하면?  
  
**2015. 7. 18.에 구인장 발부를 받아 소재추적을 하던 중,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가 재범 사건으로 2015. 8. 8.에 법원 심리에 출석한다는 것을 알았을 경우 처리 절차는 어떻게 될까요? 이때는 법원에 통보하여 위탁처분을 받게 하거나, 구인·유치 후 보호처분 경합통보를 합니다. 구인장 발부 사실을 법원 판사에게 알려 소년법 제18조의 임시조치인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처분을 하도록 하는 방안이 있는데, 이때에는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된 보호관찰 대상자를 상대로 진술조서를 받고 보호처분 ㅂ녀경신청을 하고 구인장을 반환하면 됩니다  
  
구인 후 소년분류심사원에 유치를 하는 방안은 다시 다음과 같이 나눌 수 있습니다.  
  
우선, 심리 전에 구인하였다면 유치를 하고 법원에서 심리기일을 정해 재범사건과 보호처분변경 신청 사건을 같이 처리하게 합니다  
  
심리 후 사회내 처분을 받고 귀가하는 것이라면 구인·유치를 하고 법원에 보호처분 경합통보를 하면 됩니다  
  
심리 후 수용처분을 받았다면 다시 구인·유치할 필요는 없고 법원에 보호처분 경합통보를 하면 됩니다**

[보호관찰 업무 매뉴얼]->[유치할 장소 특정된 경우, 가유치 등의 집행은?]->[보호관찰]->구인장에 유치할 장소가 특정된 경우 가유치 등의 집행은?  
  
**법원 영장 전담 판사가 구인장에 유치할 장소를 특정하라고 하여 해당지역 경찰서 유치장으로 특정하였는데, 만약 다른 지역에서 구인되어 경찰서 유치장 수용 또는 가유치 의뢰 시 유치할 장소에 해당 안된다고 하면서 경찰서에서 거부하면 어떻게 할까요?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9조(유치장)에 "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체포·구속된 사람 또는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판결이나 처분을 받은 사람을 수용하기 위하여 경찰서와 지방해양경비안전관서에 유치장을 둔다"고 규정되어 있는 만큼, 당해 내용을 해당 경찰서에 알리고 해당경찰서와 협의하여 합리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보호관찰 업무 매뉴얼]->[구인 대상자의 임신]->[보호관찰]->구인한 보호관찰 대상자가 임신한 상태라면 석방해야 하나?  
  
**구인한 여자 보호관찰 대상자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즉시 석방을 해야 할까요? 일반 대상자와 동일하게 처리하되, 임신 6개월 이상의 임산부의 경우 구인 후 석방이 가능합니다.  
  
구인한 보호관찰 대상자의 석방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 규정에 따라 유치할 필요가 없으면 되는데, 임신했다고 하여 반드시 구인 후 석방을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즉, 원칙적으로 유치 후 보호처분 변경 신청이나 집행유예 취소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보호관찰 대상자 지도감독 지침 제105조(구인 후 석방) 제1항 각호에 해당되고 석방이 필요하다면 구인 후 석방을 할 수 있습니다  
  
\* 보호관찰 대상자 지도감독 지침 제105조(구인후석방) 1. 보호관찰소의 장은 구인한 대상자를 조사한 결과 다음 각 호의 사유를 감안하여 유치할 필요가 없으면 석방할 수 있다.  
  
1. 준수사항 위반 사실의 경중  
2. 직업유무 및 생업종사여부  
3. 재범유무  
4. 신체적·정신적 건강상태  
5. 기타 구인 후 석방을 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보호관찰 업무 매뉴얼]->[여자 대상자 유치장 일시 수용 거부]->[보호관찰]->경찰에서 여자 보호관찰 대상자의 유치장 일시 수용 거부할 경우  
  
**여자 보호관찰 대상자를 18시경 구인하였고, 조사 후 유치허가장이 22시가 넘어도 발부되지 않아 경찰서 유치장에 일시 수용하고자 하였으나, 여자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를 돌볼 수 있는 여경이 경찰서 내에 없다며 거절을 하면 처리 절차는?  
  
경찰관 직무집행법을 설명하고 협로를 요청해야 합니다  
  
구인(긴급구인 포함)된 보호관찰 대상자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9조의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처분을 받은 자"에 해당되는 만큼, 구인 기간 동안 구인 대상자를 경찰서 유치장에 수용할 수 있고, 경찰 등은 이를 수용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전염병 대상자나 여자 보호관찰 대상자처럼 유치수용을 거부할 수 있는 경찰서 내 내부 지침이 있을 수 있으므로 경찰과의 원만한 사전 협의를 통해 이를 해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관련근거: 보호관찰 대상자 지도감독 지침 제114조(경찰서 유치장 수용)**

[보호관찰 업무 매뉴얼]->[계호 시 도주사고 예방 및 자해방지 방법]->[보호관찰]->보호관찰 대상자 계호 시 도주사고 예방 및 자해 방지 등을 위한 대응 방법은?  
  
**계호를 철저히 하여 도주·자해 등의 행동을 방지하고 위험물품을 제거하며 보호관찰 대상자에게 심리적 안정감을 주도록 유념합니다. 보호관찰 대상자를 구인하면 자해 방지를 위하여 신체검색을 철저히 하고 반드시 수갑과 포승을 한 상태에서 신속하고 안전하게 보호관찰 대상자의 신병을 보호관찰소에 인치해야 합니다  
  
주거지에서 구인된 대상자가 "잠시 화장실에 다녀오겠다."거나 "옷을 갈아입겠다"라고 하면 반드시 3명 이상의 직원이 동행하여 보호관찰 대상자가 도주, 자해, 음독 등의 행동을 하지 않도록 철저히 계호합니다  
  
구인 장소에서 보호관찰소까지 이동하는 동안 보호관찰 대상자의 심리적 불안감이 감소되도록 편안하게 대화를 시도합니다  
  
구인 대상자의 자해 방지를 위하여 신체검색을 철저히 하고, 자해 용도로 쓰일 물건(칼, 볼펜 등)을 책상에서 제거하며, 보호관찰 대상자의 지갑 등 소지품을 수거하여 종이가방에 보관한 뒤, 보호관찰 대상자가 유치되면 영치금품으로 수용기관에 인계합니다  
  
수갑과 포승을 병용하며 수갑은 손목이 빠지지 않을 정도로 조여 시정하고 포승은 분리하지 못하도록 견고하게 결속하는 등 30분마다 보호장구 상태를 점검합니다  
  
구인 대상자가 화장실을 이용할 경우 3명 이상의 계호근무자가 함께 들어가 포승의 끝부분을 붙잡는 등 시선 내 계호를 철저히 하며, 직원의 행동을 살피거나 기만 우려가 있는 대상자를 미리 파악하여 계호 방법을 강화하고 도주의 가능성을 철저히 차단합니다  
  
계호 순번과 시간을 정하여 해당 직원은 보호관찰 대상자 면담지도 등 기타 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계호 업무에 전념합니다  
  
구치소 등 유치장소로 호송 직전에는 보호관찰 대상자의 심리상태가 극도의 불안 상태에 있으므로 극히 주의를 요함  
  
유치허가장을 발부받아 호송할 때에는 사고예방을 위하여 운전원을 포함한 3인 이상이 호송하며, 유치 대상자는 호송차 뒷좌석 가운데에 앉히고 양쪽에 계호 직원이 동승하여 감시합니다**

[보호관찰 업무 매뉴얼]->[구인대상자 도망]->[보호관찰]->구인한 보호관찰 대상자가 도망을 가면?  
  
**구인한 보호관찰 대상자가 도주하면 각 단계별로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이때는 유치허가장 전후로 나누고 시간을 감안하여 검거매뉴얼에 따라 상황별로 처리하고 본부에 정보보고, 법원·검찰청에 관련 사실을 통보합니다  
  
구인장은 이미 집행되었으므로 구인장의 효력은 상실되고, 도망한 사실까지 포함하여 준수사항 위반사실을 적시하여 다시 구인장을 발부받아 이후 절차를 진행합니다  
  
다만, 유치허가장을 발부받은 후라면 이미 발부 받은 유치허가장을 반환하고, 구인장을 재발부 받아 조치해야 합니다  
  
위의 모든 경우에 본부에 정보보고하고 법원·검찰청에는 관련 사실을 통보하여 필요한 조치를 받아야 합니다**

[보호관찰 업무 매뉴얼]->[정밀검사 전 약물 복용사실 자백]->[보호관찰]->정밀검사 전에 보호관찰 대상자가 약물 복용한 사실을 자백하면?  
  
**약물사범에 대해 간이시약검사를 하면서 모발을 채취하였고, 간이검사에서는 음성으로 판명되어 귀가시켰으나, 보호관찰 대상자가 정밀검사에서 약물 복용사실이 적발될 것을 우려하여 약물(마약)을 복용하였다고 시인하면, 정밀검사 결과 전에 구인(긴급구인)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정밀검사 결과를 확인 후 구인장을 발부해야 할까요?  
  
보호관찰 대상자 본인의 약물 투약 시인여부와 상관없이 정밀검사 결과에 따라 양성이면 구인장으로 신청합니다  
  
간인시약검사 결과가 양성이고 대상자가 약물을 복용하였다고 시인하더라도 간이 시약 검사 결과가 증거력이 약해 기각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보호관찰 대상자 지도 감독 지침 제53조 제6항 및 제7항에 따라 약물 투약 시인 여부와 상관없이 정밀검사 결과에 따라 처리해야 합니다  
  
즉, 간이시약검사 결과가 양성인 경우, '마약류 정밀 검사 기관에 소변 또는 모발 정밀검사를 의뢰하여야 하며, 정밀검사 결과가 양성이면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구인장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또한 간이시약검사 결과가 음성인 경우에도 필요하면 정밀검사를 의뢰하고, 정밀검사 결과가 양성이면 대상자에 대한 구인장을 신청해야 합니다**

[보호관찰 업무 매뉴얼]->[대상자의 물질 흡입 사실을 신고 받을 경우, 긴급구인]->[보호관찰]->누군가가 보호관찰 대상자의 본드 등 유해화학 물질 흡입 사실을 신고하면 긴급구인이 가능한지?  
  
**보호관찰 대상자의 본드 흡입 장면을 보호관찰관이 직접 발견한 경우와 담임이나 지인 등 타인이 발견하여 사후에 신고하면 긴급구인이 가능할까요?  
  
원칙적으로 긴급구인이 가능합니다  
  
보호관찰관이 현장에서 이를 발견했고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있으면 신속하게 보호관찰 대상자의 신병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만큼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40조에 의거 긴급구인 할 수 있습니다  
  
학교 담임이나 지인 등 타인이 발견하여 신고하였고 보호관찰 대상자가 환각상태에서 제2의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있다면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40조 요건도 충족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긴급구인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타인이 신고한 경우일지라도 보호관찰 대상자가 환각 상태에서 벗어나는 등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후라면 긴급구인보다는 통상적인 구인장을 발부받거나 준수사항 위반사실을 조사 후 본드 흡입 금지 등의 특별준수사항 추가 신청을 하면 됩니다**

[보호관찰 업무 매뉴얼]->[신병미확보 대상자, 집행유예 취소 신청 시기]->[보호관찰]->신병이 미확보된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집행유예 취소 신청 시기는?  
  
**구인장이 발부된 집행유예 대상자의 신병을 확보하지 못해 신병 미확보 상태에서 집행유예 취소 신청을 하면 그 신청 시기는 어떻게 될까요?  
  
보호관찰 기간 종료를 최소 3개월 이상 남겨두고 하는 것이 적정합니다  
  
집행유예 취소 청구에 대한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집행유예기간이 경과되면 집행유예를 취소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2005. 8. 23. 선고, 2005모444결정) 피고인의 즉시항고, 재항고 제기기간을 감안하여 취소신청 해야 합니다  
  
심리의 개정은 피고인이 참석한 상태에서 진행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를 고수하면 자신에게 불리한 증거자료가 확보된 피고인은 지속적으로 심리에 불참하여 심리진행이 불가하여 형사소송법에서는 공시송달이라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병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집행유예 취소 신청은 검찰의 청구와 법원의 심리(공시송달 절차 포함)를 위한 시간적 여유가 필요하므로 보호관찰 대상자 지도 감독 지침 제115조 제3항에 따라 보호관찰 기간 종료일 3개월 전에 집행유예 취소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다만 법원과 보호관찰협의회 등을 통해 사전 협의가 필요합니다**

[보호관찰 업무 매뉴얼]->[신병확보여부 및 집행유예 취소 신청 관할]->[보호관찰]->보호관찰 대상자의 신병 확보 여부와 집행유예 취소 신청의 관할은?  
  
**보호관찰 대상자의 신병 확보 여부와 집행유예 취소 신청의 관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해당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할지 생각해보겠습니다  
  
1) 안양보호관찰소의 구인장 발부 대상자를 검거하여 서울구치소에서 유치한 경우  
2) 창원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은 서울보호관찰소 대상자가 준수사항 위반으로 구인장이 발부된 후, 재범으로 여주교도소에 수용되었다면, 집행유예취소 신청을 원심 재판부인 창원지방검찰청, 서울보호관찰소 관할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대상자가 수용 중인 수원지방검찰청여주지청 중 어디에 해야 되는지?  
  
3) 수원보호관찰소의 구인장 발부 대상자가 '서울특별시 강남구 신사동 000번지'로 주소를 옮긴 경우 최후의 거주지 관할인 수원지방검찰청에 집행유예취소 신청을 해야 하는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집행유예취소 신청을 해야 하는지?  
  
상기 상황에서는 보호관찰 대상자의 관할 검찰청에 하고, 예외적으로 최후의 거주지 관할 보호관찰소에 하면 됩니다  
형사소송법 제355조는 '형의 집행유예를 취소할 경우에는 검사는 피고인의 현재지 또는 최후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황 1)에서는 보호관찰 대상자의 현재지이자 최후 거주지를 관할하는 수원 지방검찰청안양지청에 신청하면 되고, 상황 2)에서는 보호관찰 대상자의 현재지를 관할하는 수원지검여주지청 또는 최후 거주지를 관할하는 서울중앙지검에 하면 되며, 상황3)에서는 최후 거주지를 관할하는 수원지검에 하면 됩니다**

[보호관찰 업무 매뉴얼]->[가성방된 대상자 유치 후 24시간 이내 가석방 취소 신청 하지 않으면]->[보호관찰]->가석방된 보호관찰 대상자를 유치한 후 24시간 이내 가석방 취소 신청을 하지 않으면?  
  
**대상자를 교도소에 유치한 후 24시간 이내에 가석방 취소 신청을 하지 않고 이를 경과하여 신청한 경우 처리방안은 어떻게 될까요?  
  
원칙적으로 즉시 석방하여야 합니다.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3항에 따라 유치 후 24시간 이내 '가석방 취소 신청'을 하지 않으면 즉시 석방하여야 합니다. 다만, 실무상 24시간 이내에 가석방 취소 신청을 하였으나 컴퓨터 전산장애 등이 원인이 되어 24시간을 초과한 경우도 있을 수 있으므로 관할 보호관찰심사위원회나 본부(심사위를 담당하는 부서: 현 범죄예방기획과)에 이러한 사실을 충분히 설명하고 이후 지시 내용에 따라 처리하면 됩니다**

[보호관찰 업무 매뉴얼]->[2건 집행유예 사건 취소 가능 여부]->[보호관찰]->2건의 집행유예 사건에 대한 집행유예 취소 신청이 가능한지?  
  
**약물과 폭력으로 각각 보호관찰 중인 보호관찰 대상자가 약물 정밀검사 결과 양성으로 판정되어 약물 사건에 대해 구인장을 발부하여 유치한 후 집행유예 취소 신청을 할 때 구인장을 발부한 약물 사건에 대한 집행유예취소 신청 이외에 폭력 사건에 대해서도 집행유예취소 신청을 해야 할까요?  
  
집행유예가 복수인 보호관찰 대상자가 유리하지 않도록 집행유예 사건 모두를 취소 신청합니다. 약물 건만 집행유예 취소 신청을 하여 인용되면, 나머지 폭력건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1조 제6호. 즉, 보호관찰 기간 중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을 받게 된 때에 해당하여 종료되므로 불합리합니다  
  
따라서, 2건에 대해 동시에 집행유예 취소 신청을 하여 법원에서 사건의 경중, 잔여 보호관찰 기간 등을 감안하여 판단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보호관찰 업무 매뉴얼]->[신병미확보 상태에서 집행유예 취소 신청 대상자가 검거]->[보호관찰]->신병미확보 상태에서 집행유예 취소 신청을 한 대상자가 검거되었다면?  
  
**미신고, 장기간 소재 불명으로 신병미확보 상태에서 집행유예 취소 신청을 한 대상자가 경찰에 검거되었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구인장 집행 후 유치 집행합니다. 단, 재차 집행유예 취소 신청은 하지 않으며 유치허가 신청시 먼저 집행유예 취소 신청을 한 사유를 기재합니다  
  
이미 이루어진 집행유예 취소 신청 등은 신청시까지 확인된 준수사항 위반사실과 입증 자료를 첨부하여 한 것이고, 사후 대상자가 검거되면서 준수사항 위반사실의 추가 조사나, 기 파악된 위반사실에 대한 본인 진술을 받아 추가로 입증 자료 제출 등이 필요하므로 구인장을 반환하지 않고 소재가 확인되면 구인장을 집행함이 타당합니다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에는 '집행유예취소 청구의 신청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유치허가 신청을 할 수 있어 '집행유예취소 신청 전'으로 한정되어 있지 않고, 신청 사건 완료 전의 상황은 여전히 취소 신청이 필요한 때로 해석함이 상당합니다**

[보호관찰 업무 매뉴얼]->[재범사건 인지]->[성인보호관찰]->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범사건 인지 시 업무처리 절차는?  
  
**보호관찰 기간 중 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범사실을 인지하는 경로는 다양한데, 각 유형에 대한 업무처리 방법은?  
  
증거물 확보 후 보호관찰 대상자를 인정시키고 조사 또는 긴급구인 등을 실시합니다  
  
무면허 운전 등 재범 사실이 보호관찰관에게 발견되면 대부분의 보호관찰 대상자는 하소연과 사정을 하는데, 우선 보호관찰 대상자를 진정시킨 다음 보호관찰 대상자에게 보호관찰소로 함게 동행하여 재범사실에 대해 조사 받을 것을 요구합니다  
  
보호관찰 대상자가 무면허 상태에서 자동차(오토바이)를 운전하고 보호관찰소에 출석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도 증거사진(운전 및 주차 장면 등)을 확보하고 무면허 운전 사실에 대한 자술서 및 진술조서를 작성하는 등 긴급구인 절차에 따라 처리합니다  
  
마약 등 약물 투입하는 현장을 우연히 발견한 경우, 우선 증거사진을 찍는 등 증거물을 확보할 필요가 있으나 보호관찰 대상자의 상태가 심각하여 혼자 처리하기 어려우면 가족 등 관계인에게 재범사실을 알려 재범현장으로 즉시 올 것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대부분의 약물사범은 가족 앞에서는 난폭한 행동을 자제하고 그들에게 의존하는 경향을 보이기 때문입니다)**

[보호관찰 업무 매뉴얼]->[재범사건 상황통보 시기]->[성인보호관찰]->재범사건에 대한 보호관찰 상황통보 시기는 언제?  
  
**보호관찰 기간 중 재범을 하여 형사사건으로 입건되었고 지침 상 제1회 공판기일 이후 상황통보를 하게 되어 있는데, 제1회 공판기일이 보호관찰 기간 종료 후일 경우 상황통보를 해야 할까요  
  
제1회 공판기일 이후에 하되, 공판기일이 보호관찰 기간 경과 후이면 그 전에 할 수도 있습니다  
  
보호관찰 대상자 지도감독 지침 제123조(구인장이 발부되지 않은 재범자의 처리) 제3항은 "상황통보는 원칙적으로 제1회 공판기일 이후에 하되, 소년부를 포함한 가정법원에 재범사건이 계류 중이면 심리일 이전에 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1회 공판기일 이후 상황통보를 하게 한 것은 판사의 예단을 막기 위한 것이고, 만약 기간 경과가 임박하다면 먼저 상황통보를 할 수도 있습니다**

[보호관찰 업무 매뉴얼]->[특별준수사항 추가·변경 심급]->[성인보호관찰]->특별준수사항 추가·변경의 심급은?  
  
**보호관찰 대상자가 1심에서 특별준수사항 없이 보호관찰만 선고 받은 상태에서 검사가 상소하여 상급심에서 항소(상고)기각 판결을 받았고, 보호관찰 기간 중 준수사항 위반하여 특별준수사항을 추가 신청하는 경우 1심, 항소심 중 어느 재판부에 해야 할까요?  
  
보호관찰을 선고한 법원에 하여야 합니다  
  
상황에서 항소심은 보호관찰을 선고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결정(판결)만 합니다  
  
보호관찰 대상자는 항소심에서 실질적으로 재판을 받지 않고 어떤 처분도 받지 않았기 때문에 1심 법원에 특별준수사항 추가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보호관찰 업무 매뉴얼]->[임시퇴원자 만 22세 종료 처리]->[성인보호관찰]->보호관찰을 성실히 이행하고 있는 임시퇴원자(소년 보호처분 대상자 포함)가 만 22세가 되면 종료 처리 해야하는지?  
  
**보호관찰이 정지된 임시퇴원자는 만 22세가 되면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1조제7호에 따라 보호관찰이 종료되는데, 보호관찰을 잘 받고 있는 임시퇴원자가 만 22세가 되면 보호관찰의 종료 사유가 될까요?  
  
이때는 종료처리하지 않고 계속 보호관찰을 해야 합니다  
  
보호관찰 정지된 임시퇴원자를 종료하는 이유는 신병확보 후 임시퇴원 취소 신청을 하더라도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3조제1항에 의하여 만 22세가 되면 ㅅ호년원에 수용시킬 수 없고, 결국 임시퇴원 취소 신청의 실익이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보호관찰이 정지된 임시퇴원자가 만 22세가 넘으면 종료 처리하여야 하며, 기간만료 코드로 종료하고 지명수배는 해제하여야 합니다  
  
이에 반해 보호관찰 성적이 양호한 임시퇴원자(일반 소년 보호처분 대상자 포함)는 이와 관련이 없기 때문에 나이와 상관없이 보호관찰 기간 종료일까지 보호관찰을 실시해야 합니다  
  
\* 만 21세에 임시퇴원 되어 만 23세까지 보호관찰을 진행하여야 하나 만22세 6개월경 대상자가 잠적한 경우, 보호관찰 기간을 단축시켜주는 효과가 발생하는 보호관찰 정지 신청을 할 것이 아니라 잔여기간 동안 소재파악을 위한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보호관찰 업무 매뉴얼]->[강제퇴거로 인한 종료 여부]->[성인보호관찰]->외국인 보호관찰 대상자가 강제퇴거 처분을 받으면 종료해야하는지?  
  
**외국인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2년 처분을 받고, 형이 확정된 후 출입국관리법에 의거 강제퇴거 처분을 받으면 종료사유에 해당할까요?  
  
보호관찰 기간 경과 시까지 계속 관리해야 합니다  
  
강제퇴거 처분을 받은 외국인에 대한 입국금지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1조의 종료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보호관찰 기간 동안 관리를 하다가 보호관찰 기간 경과로 종료처리하면 됩니다  
  
\* 보호관찰 대상자 지도감독 지침 제51조 제3항 보호관찰관은 제1항의 강제퇴거된 외국인 대상자가 입국한 사실을 알게 되면 즉시 소환하여 보호관찰을 실시해야 합니다**

[보호관찰 업무 매뉴얼]->[이민으로 인한 종료 여부]->[성인보호관찰]->이민은 보호관찰 종료사유에 해당하는지?  
  
**보호관찰 대상자가 보호관찰 중 이민을 가게 되면 보호관찰을 종료해야 할까요?  
  
종료처리하지 말고 기간 경과 시까지 계속 관리해야 합니다  
  
보호관찰 대상자의 실종, 이민, 현역 군 입대 등은 당연 종료처리 사유가 아니므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1조 제1호의 규정에 따라 기간 경과시 종료처리 합니다  
  
따라서, 서면, 전자우편(e-mail), 전화로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지도감독을 계속 실시하고, 입국 여부 등을 지속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보호관찰 업무 매뉴얼]->[보호관찰 기간 중 수용 후 구속 취소]->[성인보호관찰]->보호관찰 대상자가 보호관찰 기간 중 수용되었다가 구속이 취소되었을 때는?  
  
**보호관찰 대상자가 보호관찰 기간 중 재범으로 구속되어 재판진행 중 미결구금 일수가 본형의 형기를 초과하여 실제로 집행할 형이 없어 구속이 취소되고, 그 후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되면 보호관찰 종료사유에 해당될까요?  
-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1조 제1항 제6호의 '형의 집행'에 관한 해석 문제  
  
\* 예시  
1. 보호관찰 대상자 보호관찰 상황 요약  
가. 성명: 김병규(37세, 남)  
나. 보호관찰기간 : 2012. 11. 2. ~ 2015. 11. 1.(가종료)  
다. 재범상황 :  
 1) 죄명 : 공무집행방해  
 2) 구속 기간 : 2014. 1. 16. ~ 5. 20   
 3) 1심 선고 : 2014. 3. 18. 징역 4월  
 4) 구속 취소 : 2014. 5. 21. 구속취소로 출소  
 5) 판결 확정 : 2014. 9. 10.(징역 4월)  
  
 - 보호관찰이 종료되고 종료 시점은 유죄가 확정된 때입니다. 그 이유는 피고인의 입장에서 미결구금은 실질적으로 자유형의 집행과 같고, 형법 제57조제1항에 따라 미결구금 일수가 형기에 산입되고, 그 기간 동안 사실상 형의 집행을 받은 것과 같은 효과가 발생하며,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면' 보호관찰이 종료되는 집행유예부 보호관찰 대상자와의 형평성 등을 감안할 때 보호관찰은 종료되는 것입니다**

[보호관찰 업무 매뉴얼]->[외국에서 징역형]->[성인보호관찰]->보호관찰 대상자가 외국에서 징역형을 받으면?  
  
**보호관찰 대상자가 외국에서 징역형을 받으면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1조의 제5호의 형집행 종료에 해당될까요?  
  
보호관찰 기간시에 종료 처리합니다  
- 외국에서 형 집행을 받은 것은 형집행 종료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며, 보호관찰 기간 경과시에 종료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 관련 법률 : 형법 제7조(외국에서 받은 형의 집행) 범죄에 의하여 외국에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보호관찰 업무 매뉴얼]->[보호처분 변경(취소) 종료일]->[성인보호관찰]->보호처분 변경(취소 포함) 종료에서 실제 종료일자는?  
  
**보호관찰 대상자가 2015. 7. 4. 보호처분 변경(취소 포함) 처분을 받으면 실제 종료일자는 언제일까요?  
  
보호처분결정이 확정된 때입니다  
  
보호처분결정이 있더라도 확정된 이후 종료하여야 합니다  
\* 소년법에서는 결정에 대해 집행정지 효력을 인정하지 않지만,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결정 확정 이후 집행을 하고 있으므로 보호처분 변경 결정이 확정된 이후 종료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항고가 없으면 실제 종료일자는 2015. 7. 12. 입니다**

[보호관찰 업무 매뉴얼]->[전산 종료]->[성인보호관찰]->재범확정(기소중지 포함)이 되지 않은 사건의 전산 종료는 언제인가?  
  
**재범인지 후 재범확정이 되지 않았거나 기소중지 상태에서 기간이 만료된 종료자를 전산상 종료처리가 가능할까요?  
  
보호관찰 기간 종료 후 6개월이 경과하면 기타 처분으로 전산 종료합니다  
  
검사의 종국처분 전 보호관찰 기간경과자 처리 기준 변경 시달(보호관찰과-2352, 2012, 4. 19.)에 의하면 보호관찰 대상자가 재범으로 검찰사건 접수가 되면 향후 검사의 종국처분 결과에 따라 재범통계처리를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검사의 종국처분 전까지 담당자는 보호관찰카드를 별도 관리 하고, 전산종료는 검사의 종국처분 후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재범확정 전까지는 계속 관리를 해야 합니다  
  
다만, 검사의 종국처분 결과 구약식 또는 여죄 비율(55.1%)이 재범 비율(44.9%)보다 높고,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상 경과한 사건을 재범자에 포함하더라도 기존 재범률 변화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므로 보호관찰 기간 종료 후 6개월이 경과하면 기타 처분으로 전산 종료하도록 하였습니다**

[보호관찰 업무 매뉴얼]->[집행유예 실효(취소 종료)시 근거]->[성인보호관찰]->집행유예 실효 또는 취소 종료 시 근거 자료는?  
  
**보호관찰 대상자가 보호관찰 기간 중 집행유예 실효 또는 취소되면 보호관찰을 종료하는게 그 근거자료는 무엇일까요?  
  
판결문 또는 형 확정 내용이 기재된 수용증명서가 필요합니다. 보호관찰 종료는 명확한 근거서류에 근거하여 처리해야 하므로, 보호관찰 대상자의 형 집행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판결문 또는 형 확정 내용이 기재된 수용증명서를 확보하여 종료처리해야 합니다**

[보호관찰 업무 매뉴얼]->[영장집행 시 보호장구 사용]->[성인보호관찰]->법원의 동행영장 집행 시 보호장구의 사용이 가능한지?  
  
**법원의 동행영장집행 대상자는 원칙적으로 보호관찰 대상자가 아니나 영장 본래의 강제적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45조의2(보호장구의 사용)에 따라 수갑 등을 사용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견이 있을 수 있으나, 수갑 등 보호장구는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해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45조의2제1항에서 보호관소 소속 공무원은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 과정에서 도주 방지, 항거 억제,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수갑, 포승 등 보호장구를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습니다**

[보호관찰 업무 매뉴얼]->[전자발찌 부착]->[전자감독]->실무상 전자발찌 대상자의 부착종료일 다음날 오전에 부착장치를 분리하는 것에 대하여 전자발찌 대상자가 이의를 제기하면?  
  
**전자발찌 대상자 부착종료일이 2015. 9. 12.인 경우, 분리는 2015. 9. 12. 24:00 직후에 하는 것이 원칙이나 실질적으로 심야에 업무를 하기 곤란하여 관제센터에 연락하여 전원을 차단하고 2015. 9. 13. 09:00 이후에 분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자발찌 대상자가 부착기간이 지났음에도 10시간 가까이 부당하게 부착을 하여 인권침해를 당했다고 이의를 제기하면 어떻게 할까요?  
  
심야일지라도 전자장치를 분리해야 합니다. 다만 대상자가 동의할 경우 분리시간 조정 가능합니다  
  
원칙적으로 부착명령 종료일에 부착장치를 제거해 달라는 대상자가 있다면 당일 24:00 직후에 전자장치를 즉시 분리해야 합니다  
  
다만, 전자발찌부착법 시행지침 제50조 제2항에 따라 원거리, 심야시간 등으로 전자장치 분리 기준일에 분리하기 곤란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분리시간을 조정할 수 있음을 설명하고 대상자가 이에 동의한다면 전자장치 분리시간을 조정 가능합니다**

[보호관찰 업무 매뉴얼]->[입원 중 부착장치 분리]->[전자감독]->병원에 입원 중 부착장치를 일시 분리할 수 있는지와 분리된다면 분리 기간이 합산되는지?  
  
**첫째, 전자발찌 대상자 중 정신과 치료(알콜치료 등)로 폐쇄 병동에 입원한 경우 부착장치를 분리해야 하는지 아니면 지속적으로 부착하고 있어야 할까요? 둘재, 부착장치를 분리하였다면 입원한 기간 동안 부착명령 기간에 산입이 될까요?  
  
전술한 경우, 일시분리를 할 수 있고, 분리 기간은 부착기간에 산입됩니다  
  
폐쇄 병동에 입원한 경우는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것인 만큼 의사의 소견 등을 참고하여 일시분리를 허가할 수 있습니다  
  
시행지침 제20조제1항에 의하면, 일시분리 기간은 부착기간에 산입되므로 부착명령 기간으로 인정합니다  
\* 관련 법령 : 시행령 제10조 및 시행지침 제17조 제2항**

[보호관찰 업무 매뉴얼]->[전자발찌 여죄 수용]->[전자감독]->전자발찌 대상자가 집행기간 중 여죄건으로 구치소에 수용되면 수용기간이 부착기간에 산입되는지?  
  
**산입됩니다. 상황은 부착명령 집행 이전에 발생한 여죄 사건으로 구속되었으므로, 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과 시행지침 제17조를 근거로 '일시분리'하여 관리하고, 일시분리는 부착기간에 산입됩니다(지침 제20조제1항제3호)  
  
현행 법률 제13조 제4항에는 부착 개시 이후 집행을 정지하는 경우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로 한정합니다  
1. 부착명령의 집행 중 다른 죄를 범하여 구속영장의 집행을 받아 구금된 때  
2. 부착명령의 집ㅎ랭 중 다른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을 받게 된 때  
3. 가석방 똔느 가종료된 자에 대하여 전자장치 부착기간 동안 가석방 또는 가종료가 취소되거나 실효된 때**

[보호관찰 업무 매뉴얼]->[부착명령 집행 중 노역장 유치]->[전자감독]->부착명령 집행 중 노역장에 유치되면 기간에 산입되는지?  
  
**부착명령 집행 이후의 범죄로 벌금형을 받고 노역장에 유치된 때 기간 산입이 될까요  
  
산입됩니다. 부착명령 집행 이후의 범죄로 벌금형을 받고 노역장 유치된 때의 기간은 시행지침 제17조 제3항 제3호에 "피부착자가 부착명령 집행 이전 또는 집행 후에 행한 범죄로 벌금 또는 과료를 선고받았음에도 이를 납입하지 않아 노역 유치된 때에도 일시분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유치기간이 부착명령 기간에 산입됩니다**

[보호관찰 업무 매뉴얼]->[부착명령 추가 처분]->[전자감독]->부착명령 기간 중 또다시 부착명령을 받으면 부착기간은?  
  
**소급 형기 종료 3년을 부과받은 전자발찌 대상자가 2011. 5. 1. 부터 부착명령이 개시되어 부착명령을 이행하던 중 2012. 5. 1. 동종 재범사건으로 구속되어 징역 3년, 형기 종료 후 부착명령 7년을 받은 경우, 2015. 4. 30. 징역 3년이 지나 만기 출소 후 부착명령을 개시하게 되면 1) 소급 형기 종료 시 부과 받은 3년 중 남은 2년과 재범사건에서 부과 받은 7년을 별도로 진행하여 총 9년을 집행해야 할까요? 2) 아니면 2년과 7년을 동시에 진행하여 7년을 집행해야 할까요?  
  
합산하여 총 9년 집행하면 됩니다. "쌍집행유예"처럼 두 사건이 동시에 진행되는 것으로 착각할 수도 있으나, 법 제13조 제3항은 부착명령이 여러 개인 경우 확정된 순서에 따라 집행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2015. 4. 30. 만기로 석방된 후 소급형기종료 부착명령의 남은 기간인 2년을 집행한 후, 재범사건의 형기종료 부착명령 7년을 순서대로 집행해야 합니다( 질문 1)에 따름)**

[보호관찰 업무 매뉴얼]->[형기종료자 노역장 유치]->[전자감독]->형기종료자가 여죄건 벌금 미납으로 인해 본건 형기 종료 후 출소하지 않고 노역장에 유치될 경우, 전자발찌 부착 개시일은 언제?  
  
**대상자가 본건 형기를 마치고 출소할 예정이었으나, 여죄건에 대한 벌금 미납이 있어 노역장에 유치되고 '현재 여죄건으로 노역장에 있는 것이니 전자발찌 개시일을 본건 형기 종료일로 해달라'고 주장할 경우에 어떻게 할까요?  
  
노역중 유치 등을 마치고 출소하는 날 부착 개시합니다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에 '부착 명령은 본건 형의 집행이 종료되면 집행하나, 다른 범죄사건으로 형의 집행이 계속될 경우 이를 종료하는 날부터 집행한다'는 요지로 규정되어 있는 만큼 대상자가 노역장 유치 종료 후 출소하는 날 부착을 개시하면 됩니다**

[보호관찰 업무 매뉴얼]->[전자장치 훼손 관할 경찰서]->[전자감독]->전자장치 훼손사건이 발생하여 수사 의뢰시 관할 경찰서는 어디인지?  
  
**전자발찌 대상자가 직장에서 전자장치를 훼손하면 수사의뢰는 어느 경찰서에서 할까요?  
  
전자장치부착법 시행지침 제38조의 3에 따르면, 사건발새지 관할 경찰관서에 수사의뢰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주거지가 아닌 사건발생지 관할 경찰관서에 수사의뢰 하여야 합니다. 다만, 필요할 경우 보호관찰소의 소재지나 피부착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도 할 수 있습니다**

[보호관찰 업무 매뉴얼]->[주의경보에 대한 수사의뢰 가능 시기]->[전자감독]->주의경보에 대하여 수사 의뢰가 가능한 시기는 언제인지?  
  
**감응거리 이탈이나 휴대용 추적장치 저전력 및 신호실종 상태에서 휴대용 추적장치에 의한 통신이 단절되고, 전자발찌 대상자의 휴대전화로도 통화가 불가능하면 통신두절 상태가 어느정도 이어져야 경찰에 수사의뢰 등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  
  
효용유지의무 위반이 3회 이상 반복될 경우 수사의뢰 할 수 있습니다  
기타 효융유지의무 위반, 신호실종, 감응범위이탈 등에 대한 수사의뢰를 위해서는 부착명령 등의 집행을 회피할 목적인지, 즉 고의성에 대한 입증이 반드시 필요한 부분으로 현행 지침 제40조에서는 3회 이상 반복되면 수사의뢰하거나, 부착명령 집행 회피목적 및 고의가 입증 가능하거나, 위반사실이 중하면 위반횟수에 상관없이 수사의뢰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따라서, 휴대용 추적장치 신호 실종, 감응거리 이탈이 장시간 지속되어 소재불명되면, 구인장 발부 등의 조치를 한 후에 수사의뢰를 통해 신속한 신병 검거를 도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고의성 입증을 위한 시간이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부분은 일률적으로 정하기 어렵고, 대상자의 보호관찰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정해야 할 것입니다)**

[보호관찰 업무 매뉴얼]->[구인 조사 후 수사의뢰에 대한 이중체포 여부]->[전자감독]->전자발찌 훼손자를 구인하여 조사한 뒤 경찰에 수사의뢰하여 바로 체포되게 하는 것이 이중체포가 아닌지?  
  
**전자발찌 훼손자를 보호관찰관이 긴급구인한 뒤 48시간 이내에서 준수사항 위반에 대해 조사 후 경찰에 신병을 인도하고, 경찰은 전자발찌 훼손 혐의로 대상자를 (긴급)체포하여 수사 후 사후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것이 이중체포가 아닐까요?  
  
이중체포가 아닙니다  
전자발찌 훼손은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따라야 한다'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의 준수사항 위반임과 동시에 형사처벌 대상입니다(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한 긴급구인자에 대하여 사후영장을 청구하는 경우, 별도의 긴급체포 절차가 필요하므로 이중체포가 아니며, 오히려 체포는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입니다  
\* 대검찰청(정책기획과-8255. '15. 6. 4.)에서도 위의 보호법제과 검토내용은 같은 취지의 의견 회신**

[보호관찰 업무 매뉴얼]->[지속적인 가해제 신청 요구]->[전자감독]->대상자가 업무부담이 가중될 정도로 가해제 신청을 계속 요구할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하는지?  
  
**보호관찰 경과율, 범죄전력, 범죄사실 등을 감안할 때 가해제 신청 인용 가능성이 거의 없음에도, 대상자가 계속적으로 가해제 신청을 요구하며 담당자의 업무 부담을 가중시킨다면 어떻게 할까요?  
  
대상자가 가해제 신청에 신중을 가하도록 대상자를 안내합니다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의하면, 부착명령이 개시된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하면 보호관찰소의 장 또는 피부착자 및 그 법정대리인은 해당 보호관찰소를 관할하는 심사위원회에 부착명령의 가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담보호관찰관은 지침 제47조에 따라 피부착자의 재범위험성이 현저히 낮다고 판단될 때에만 가해제 신청을 하면 되고, 대상자가 원할 경우 직접 심사위원회에 가해제 신청을 하도록 안내해주면 됩니다  
  
다만 대상자가 직접 가해제 신청을 하는 경우에도 관련 서류 제출 등으로 업무 부담이 상당한 만큼, 동법 제17조 제2항에 따라 신청이 기각되면 3개월이 경과한 후에 다시 신청할 수 있음을 충분히 설명하여 무분별한 가해제 신청을 피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호관찰 업무 매뉴얼]->[성충동 치료 약물 효과의 판단기준]->[전자감독]->대상자가 성충동 치료 약물 효과의 판단기준은 무엇일까요?  
  
**성충동 치료약물 투여에 따른 약물의 효과는 어떻게 판단 가능하며, 기준은 무엇일까요?  
  
테스토스테론의 혈액내 분포 수치로 약물의 효과를 판단하며, 남성의 2차 성징 이전의 호르몬 수치인 0.5ng/ml를 기준으로 합니다  
  
일명 남성호르몬으로 알려진 테스토스테론(Testosterone)의 혈액 내 분포수치로 약물의 효과를 판단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남성의 제2차 성징 이전 아동의 호르몬 수치인 0.5ng/ml를 기준으로 합니다  
\* 검사기관마다 차이가 있으나 일반 성인의 경우 평균 혈액 내 Testosterone 수치는 4~7ng/ml입니다  
  
약물투여 초반 일시적인 호르몬 증가 현상(Flare phenomenon) 기간을 제외하고 약물치료 진행 중 0.5ng/ml 이상으로 호르몬 수치 증가 시 치료의사와 상의하여 추가 검사 및 약물투여 등의 조치를 강구해야 합니다  
  
의료기관에 따라 혈액 내 호르몬 수치에 대한 단위(ng/ml, ng/dl 등)를 혼용하고 있어 해석 시 주의해야 합니다  
\* 1ml=0.01dl  
  
\* 참고  
- 플레어 현상(Flare phenomenon)이란 약물투여 초기 뇌하수체에서 황체형성 호르몬 분비를 자극하여 일시적으로 혈중 테스토스테론 레벨을 증가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플레어 현상의 지속기간은 2~4주 정도로 이후 테스토스테론의 레벨은 거세 수준으로 떨어집니다**

[보호관찰 업무 매뉴얼]->[성충동 약물치료 대상자의 노역장 유치시 치료기간]->[전자감독]->성충동 약물치료 대상자의 노역장 유치 시 치료기간은 어떻게 되는지  
  
**성충동 약물치료 대상자가 벌금을 납부하지 않아 노역장에 유치된다면 치료기간에 산입될까요? 산입되지 않는다면 치료집행은 어떻게 하나요?  
  
법 제14조 제1항1의 각 호 치료명령 집행 정지 사유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치료명령의 집행이 중지되지 않습니다  
  
치료약물효과 지속기간이 1개월인 약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수용기간 중 치료약물의 효과가 사라져 호르몬 수치가 이전으로 복원될 수 있고, 이후 치료집행 시 다시 일시적인 호르몬 수치 증가 현상(Flare phenomenon)이 나타날 수 있기 떄문에 그 기간 동안은 출장횟수 증가 등 지도감독을 강화하여야 합니다(지침 제19조 제6항 참조)  
  
만약, 치료약물효과가 1개월이 아닌 장기간(3~6개월)동안 지속되는 치료약물을 사용한다면 단기간 수용으로 치료명령의 집행이 실질적으로 중단되는 경우를 방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부득이하게 수형자에 대해 치료명령을 집행해야 할 경우에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37조(외부의료시설진료 등) 제1항에 따라 교정시설에 의뢰하여 외부의료시설 진료가 가능합니다  
  
\*제14조(치료명령의 집행)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치료명령의 집행이 정지된다  
1. 치료명령의 집행 중 구속영장의 집행을 받아 구금된 때  
2. 치료명령의 집행 중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을 받게 된 때  
3. 가석방 또는 가종료·가출소된 자에 대하여 치료기간 동안 가석방 또는 가종료·가출소가 취소되거나 실효된 때  
  
\*제37조(외부의료시설 진료 등)  
1. 소장은 수용자에 대한 적절한 치료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교정시설 밖에 있는 의료시설(이하 "외부의료시설"이라 한다)에서 진료를 받게 할 수 있다**

[보호관찰 업무 매뉴얼]->[호르몬 수치 검사 차이]->[전자감독]->혈액 내 호르몬 수치 검사와 소변 내 호르몬 수치 검사의 차이는?  
  
**혈액 내 호르몬 수치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실시하는 소변 내 호르몬 수치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시행령 제7조(치료명령의 집행) 제3항에 따라 약물투여와 함께 실시하는 '혈액 내 호르몬 수치 검사'와 별개로 시행령 제13조(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의 의무 등) 및 시행지침 제27조(상쇄역물 투약 여부 검사 등)에 의해 '소변 내 호르몬 수치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약물치료 진행 중인 대상자의 경우, 혈액 내 호르몬 수치와 소변 내 호르몬 비율의 결과 값이 비슷하여 혼동하는 사례가 종종 있으나 혈액 내 호르몬 수치와 소변 내 호르몬 비율은 별개입니다**

[보호관찰 업무 매뉴얼]->[소년 단독 대상자의 집행기한]->[사회봉사]->소년 단독 사회봉사명령 대상자의 집행기한은 언제까지일까요?  
  
**소년법상 단독 사회봉사명령의 경우, 법원에서 결정문 주문에 결정일부터 6개월 또는 12개월 이내 사회봉사명령을 이행하도록 기한을 명시하였으나, 군입대 또는 질병 입원 등으로 이 기한 내에 집행하지 못하면 기간만료로 종료처리를 할 수 있을까요?  
  
종료처리 가능합니다  
  
법원이 결정문 주문에 사회봉사명령 집행기한(결정일부터 6개월 이내 등)을 정했다면, 소년 단독 사회봉사명령의 경우 소년법상 별도의 집행 기간이 없기 때문에 결정문 주문 상의 기간이 집행기한입니다  
\* 보호관찰이 병과된 경우에도 보호관찰 기간보다 결정문 상 집행기간을 사회봉사 집행기한으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사회봉사 대상자가 군입대 또는 장기간 입원 등으로 이 기한 내에 사회봉사명령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는, 소년법 제37조(처분의 변경)를 근거로 기간만료 전에 사회봉사 집행기간 연장 신청을 하여 사회봉사명령을 이행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다만, 사회봉사 집행기한 내에 사회봉사명령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는 비록 엄격한 의미에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63조(사회봉사·수강의 종료)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기간만료로 종료처리 가능합니다**

[보호관찰 업무 매뉴얼]->[신체질환자 등의 봉사 집행방안]->[사회봉사]->장애인 및 고령자 등의 효율적인 사회봉사명령 집행방안은 무엇인지?  
  
**장애인, 에이즈보균자, 감염병자, 임산부 등 특이 대상자에 대한 사회봉사 집행 방법은 무엇일까요?  
  
담당관의 판단 하에 집행 등 결정합니다  
  
신고 시 신체적 특이사항을 보고하는 사회봉사 대상자는 담당 주치의, 보건 당국 담당자, 가족 등을 통해 대상자의 현 상태와 주의사항 등을 확인하고, 진단서, 보건당국 확인서 등 증빙서류를 확보하여 일반 사회봉사 대상자와의 분리집행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합니다  
  
증상에 따라 집합교육 대신 개별교육을 실시하고 타 사회봉사 대상자들과 접촉하지 못하도록 조치하되, 전염경로가 특정되지 않아 예방이 어려운 감염병자는 집행을 보류하고 치료 후 집행합니다  
  
에이즈보균자, 공황장애자, 고령자, 임산부 등은 정확한 몸 상태를 확인하여 담당관의 판단에 따라 직접, 협력 집행 등을 실시하거나 집행 보류 등 결정합니다  
  
집행 기간 내 도저히 집행이 불가능한 사회봉사 대상자에 대해서는 소견서·진단서 등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종료처리합니다  
\* 대법원의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등에 관한 예규 상에 사회봉사명령에 적합하지 아니한 대상자의 유형으로 '정신질환이나 심한 정신장애의 상태에 있는 경우' 육체적 장애로 인하여 주어진 작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법원 판결·결정 시부터 신체적 장애 등이 있는 대상자에게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한 경우 법원과의 업무협의 등을 토해 사례소개 및 개선 요청 등 실시합니다**

[보호관찰 업무 매뉴얼]->[봉사 중 식사, 집행시간 인정]->[사회봉사]->사회봉사 집행 중 식사시간을 집행시간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사회봉사 집행 중 식사시간을 사회봉사 집행시간으로 인정할 수 있을까요?  
  
인정할 수 있습니다  
  
사회봉사명령도 일반 근로와 같이 일정 시간의 휴식이 필요하며, 점심시간을 포함한 휴식 시간은 담당 보호관찰관 또는 책임자의 지도감독 하에 집행장소 등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집행시간으로 인정할 수 있고, 사회봉사 집행지침에도 집행 중의 식사시간은 집행의 연속성이 있을 경우 1시간까지 집행시간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다만, 무단이탈 등 지도감독권을 벗어난 경우에는 집행시간으로 인정할 수 없고, 집행의 연속성 여부는 집행 현장에 있으면서 현장 상황을 가장 잘 알고 있는 담당 보호관찰관 또는 책임자가 판단하여 결정합니다**

[보호관찰 업무 매뉴얼]->[음주상태로 출석한 봉사 대상자]->[사회봉사]->사회봉사 대상자가 음주상태로 출석하거나 집행 중 음주를 했을 경우 어떻게 할까요?  
  
**사회봉사 집행장소에 음주상태로 출석하거나 집행 중 음주를 했을 때 사회봉사 대상자를 집행해야 할까요? 또는 즉시 현장에서 제재해야 할까요?  
  
귀가조치 또는 제재조치를 실시합니다  
  
신고서 접수, 개시교육 등을 통해 대상자에게 음주상태로 사회봉사명령 집행을 받을 수 없음을 교육하고, 집행현장에 음주상태로 출석하거나 집행 중 음주사실을 발견했을 경우에는 담당 보호관찰관의 판단 하에 준수사항 위반사실, 보호관찰소 소환일시 등을 고지한 후 귀가조치합니다  
  
대상자가 위와 같은 조치에 따르지 않으며 난동, 폭력사, 협박 등을 할 경우에는 담당 보호관찰관의 판단 하에 긴급구인 등을 실시하고, 경고 등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음주상태로 출석 또는 집행에 임하는 대상자도 구인 등 제재조치 실시합니다**

[보호관찰 업무 매뉴얼]->[원격감독 사진촬영의 기본권 침해 여부]->[사회봉사]->원격감독시스템 출·퇴근 사진촬영이 사회봉사 대상자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협력기관에 배치된 사회봉사 대상자가 "출·퇴근 사진촬영이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항의하고 사진촬영의 근거를 제시할 것을 요구하는 등 문제를 제기하면 이에 대한 대응 방법은 무엇일까요?  
  
침해하지 않습니다  
  
사회봉사 대상자의 출·퇴근 시 원격감독시스템을 이용한 사진촬영은 대상자의 대리출석 등을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 제2항에도 대상자의 동일성 식별을 위해 사진을 촬영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대상자가 문제 제기 시 관련 내용 등을 설명하고 사진촬영에 임하도록 조치합니다  
  
\* OO 보호관찰소에서 사회봉사 집행 중이던 대상자가 원격감독시스템을 이용한 사진촬영은 과도하고 인권을 침해한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한 사건에 대해, 2011년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사진촬영은 관계법령에 따른 보호관찰관의 사회봉사명령의 집행의 한 행위라 할 것이며, 이는 사회봉사명령 시 대리출석방지 및 출결관리의 정확성 등의 공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그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 진정인의 사진이 공개되는 등으로 피해가 없는 점 등을 종합햇거 볼 때 이는 정당한 업무수행으로써 인권침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판단된다."며 기각결정을 내렸습니다.**

[보호관찰 업무 매뉴얼]->[점심시간에 다친 봉사 대상자]->[사회봉사]->사회봉사 집행 중 점심시간에 다치면 단체상해보험금 청구를 할 수 있는지?  
  
**사회봉사는 점심시간에 집행하지 않으나 집행의 연속성을 고려하여 집행시간으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점심시간 중 작업내용과는 무관하게 지나가는 자동차에 치이거나 안전사고를 당한 경우 보험금 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점심시간을 기준으로 집행의 연속성을 인정할 수 있고 담당 보호관찰관 또는 책임자에게 보고 후 식사를 하는 경우에는 정상적인 집행시간으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보험금 청구는 할 수 있습니다  
\* 다만, 보험금 청구를 했다고 하여 반드시 보험금이 지급되는 것은 아니므로 사안에 따른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보험사 등에 문의가 필요합니다**

[보호관찰 업무 매뉴얼]->[봉사 대상자의 대리 출석]->[사회봉사]->사회봉사 집행감독 중 대리출석을 우연히 발견했다면 어떻게 하는지?  
  
**사회봉사 집행감독 중 대리출석을 우연히 발견한 경우 대리출석자를 귀가조치 할까요. 현장에서 조치할까요?  
  
수사의뢰 및 제재조치 등 실시합니다  
  
대리출석은 법집행을 저해하는 범죄행위로 이를 적발 시에는 엄정한 제재조치 등이 필요합니다  
  
대리출석자의 경우 조사 후 관련 수사기관(경찰, 검찰)에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수사의뢰하고, 협력기관의 묵인 하에 대리출석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관련자 등에 대한 상세한 경위조사 후 수사의뢰합니다  
  
대리출석을 부탁한 사회봉사 대상자는 소환·조사 후 보호처분 변경신청 또는 집행유예 취소신청 등의 제재를 실시하되, 소환불응 등 사안에 따라 구인장 신청 및 지명수배 등을 통해 신병확보 후 관련 절차를 진행합니다**

[보호관찰 업무 매뉴얼]->[정식재판 중인 벌금봉사 대상자]->[사회봉사]->정식재판이 진행 중인 벌금미납 대상자의 사회봉사는 어떻게 처리하는지?  
  
**벌급미납 대상자가 사회봉사 허가결정이 나서 보호관찰소에 결정문이 접수되었으나, 동일 사건에 대해 법원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재판이 진행 중이면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종료 처리합니다  
  
사회봉사 허가 결정된 벌금미납 대상자가 동일 사건으로 정식재판이 진행 중이면, 사회봉사를 집행하는 것은 부적절합니다.  
  
따라서,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사횝오사 허가의 취소) 등에 따라 사회봉사 허가취소를 검사에게 신청한 후 같은 법 제15조(사회봉사의 종료)에 따라 종료 처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보호관찰 업무 매뉴얼]->[한 대상자의 여러 건 벌금사회봉사 취소]->[사회봉사]->벌금미납 사회봉사가 여러 건인 사회봉사 대상자에 대한 취소신청은 어떻게 하는지?  
  
**벌금미납 사회봉사 대상자가 동시 혹은 중복되는 기간 중 사회봉사를 여런 건 허가 결정 받은 후 집행에 불응하면 여러 건을 동시에 취소 신청할 수 있을까요?  
  
모두 취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준수사항 위반 등으로 1건에 대해 취소될 사유라면 다른 건도 집행하기 어려운 상황이므로, 공통되는 사유로 동시 취소신청을 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보호관찰 업무 매뉴얼]->[이행하지 않은 봉사대상자의 집행확인서 발급 요구]->[사회봉사]->사회봉사를 전혀 하지 않은 대상자에게도 집행확인서를 발급해 줄 수 있는지?  
  
**벌금미납 사회봉사 허가결정을 받은 대상자가 사회봉사를 전혀 이행하지 않았으나, 벌금 납부시 필요하다는 이유로 사회봉사 집행확인서를 발급해달라고 할 경우 발급해 줄 수 있을까요?  
  
발급해 줄 수 있습니다  
  
대상자가 사회봉사를 전혀 이행하지 않았더라도 검찰청 제출 등 사실관계 증빙 등으로 요청할 경우, 발급해 줄 수 있습니다**

[보호관찰 업무 매뉴얼]->[보호처분 단독 수강 집행기한]->[수강명령]->보호처분 단독 수강명령(소년은 제외)의 집행 기한은 언제까지일까요?  
  
**가정폭력사범 보호처분 대상자 중 보호관찰 없이 단독 수강명령이 부과된 대상자에 대한 수강명령 집행 기한은 어떻게 될까요?  
  
사실상 집행기한이 없고, 집행불응시 보호처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에 수강명령은 200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집행기한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는 바, 사실상 집행 기한이 없습니다  
\*소년 보호처분은 소년심판규칙 제31조 제2항에서 단독 명령의 경우 그 집행기한을 의무적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위와 같은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대상자의 집행 불응 등으로 수강명령 집행이 곤란한 경우, 동법 제45조 및 제46조에 따라 보호처분의 변경 또는 취소 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성매매사범 보호처분 대상자의 집행기한도 위와 동일합니다(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4조부터 제17조까지)**

[보호관찰 업무 매뉴얼]->[외국인 수강명령 집행절차]->[수강명령]->외국인에 대한 수강명령 집행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외국인 수강명령 40시간을 선고 받은 경우 통역관 의뢰 방법 등 외국인 수강명령 대상자에 대한 집행절차는 어떻게 될까요?  
  
출입국관리소와 연계하여 통역인을 추천받아 집행합니다  
  
외국인 수강명령 혹은 이수명령 대상자에 대해서는 관할 출입국관리소와 연계하여 통역인을 추천받아 집행합니다  
  
다만, 한국 국적을 취득하지 못한 외국인 수강명령 대상자가 출입국관리법 제46조에 의해 강제퇴거된 경우 보호관찰 대상자 지도감독 지침에 따라 처리합니다**

[보호관찰 업무 매뉴얼]->[교육장 CCTV 설치]->[수강명령]->수강명령을 집행하는 교육장에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는 자유롭게 설치할 수 있는지?  
  
**수강명령 무단이탈 확인 등 엄정한 집행감독을 위해 수강명령 교육장에 폐쇄회로텔레비전(CCTV)을 설치할 수 있는지와 문제점은 무엇일까요?  
  
필요한 셩우 설치운용할 수 있으나, 폐쇄회로텔레비전 설치에 필요한 법적 조치(안내판 설치·녹음불가·보유기간 만료 후 삭제 등)를 해야 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2011.7.24. 시행)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및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에 따라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를 설치하여 운용할 수 있습니다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 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설치한 장소마다 정보주체가 이를 쉽게 할 수 있도록 안내판을 설치해야 합니다  
  
다만, 설치 목적 범위를 넘어 카메라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어서는 안 되고 녹음은 할 수 없으며, 수집된 화상정보는 설치목적에 따른 보유기간이 만료되면 즉시 삭제해야 합니다**

[보호관찰 업무 매뉴얼]->[집행기간 경과 후 수강 집행]->[수강명령]->법원이 정한 집행기간이 경과하여도 수강명령을 집행할 수 있는지?  
  
**소년이 보호처분으로 단기 보호관찰과 6개월 이내에 수강명령 40시간을 이행하도록 결정되었으나, 수강명령 대상자가 병원 입원으로 6개월이 지나 퇴원하여 집행기간이 경과한 경우 수강명령 집행을 해야 할까요?  
  
집행기간 내에 집행하며, 기간 내 집행이 어려우면 사전에 처분변경 신청을 통해 집행기간 연장합니다  
  
기존에는 소년 단독명령의 경우 별도의 집행기한 규정이 없어 병과된 보호관찰 기간을 집행 기한으로 유추하여 집행하였으나 지금은 결정문에 집행기한이 정해지기 때문에 이 기한 내에 집행해야 하며, 이 기간이 경과되면 집행할 수 없습니다  
  
집행기간 내에 모두 집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예상될 경우 미리 소년법 규정에 따라 처분변경 신청을 통해 집행기간을 연장해야 합니다(신청서는 일반 보호처분 변경신청서를 활용하여 "수강명령 집행기간 변경신청"을 하면 됩니다)  
\*관련 법령: 소년심판규칙 제31조(보호처분 결정 등의 고지) ②소년부 판사가 법 제3조제1항 제2호·3호에 따라 수강명령 또는 사회봉사명령의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소년이 이행하여야 할 총 수강시간, 사회봉사시간과 집행기한을 정하여야 한다.**

[보호관찰 업무 매뉴얼]->[학교출석 인정 근거]->[수강명령]->수강명령 집행 시 학교출석을 인정하는 근거는 무엇인지?  
  
**수강명령 집행 시 교육에 응한 학생들의 학교 출석을 인정하는데 그 근거는 무엇인가요?  
  
학교 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 지침 별제 제8호 출결상황 관리에 따라 출석 인정하며,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에서 출석에 관한 내용이 명시되어있습니다  
  
\*학교 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 지침(시행 2021. 3. 1. 교육부훈령 제365호. 2021. 1. 4., 일부개정) [별표 8]  
5. 소속학교 이외 기관 장소에서의 수강학생 처리  
- 다. 보호소년 등 위탁교육기관  
(1) 학적처리 :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32조, 제34조에 따라 학적 처리하고,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의2, 제85조를 참조해 학적, 출석일수 등을 관리한다.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시행 2021. 4. 21. 대통령령 제31625. 2021. 4. 20., 일부개정)  
제85조(대안교육 대상자의 출석일수 인정) ① 법 제42조의2제1항에 따라 판사 또는 검사가 의뢰한 대안교육 대상 소년이 소년원등에서 정해진 교육과정을 이수했을 때에는 그 기간을 재적학교의 출석일수로 인정해야 한다. <개정 2021. 4. 20.>  
② 원장은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위탁소년이나 그 보호자 또는 제1항에 따른 대안교육 대상 소년이나 그 보호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소년원등의 교육과정 이수사실이나 대안교육 이수사실을 소년의 재적학교의 장에게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21. 4. 20.>  
[전문개정 2008. 6. 20.]**

[보호관찰 업무 매뉴얼]->[전자발찌 대상자에 대한 이수명령 처리 절차]->[수강명령]->전자발찌 대상자에게 부과된 이수명령 처리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실형 집행 중인 전자발찌 대상자에게 성폭력치료 강의 이수명령이 준수사항으로 부과되어 있으면 대상자의 판결문을 보호관찰소에서 접수해야 할까요?  
  
형기종료 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대상자의 판결문은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의 준수사항 부과 여부와 상관없이 보호관찰소에서 접수합니다  
  
실형이 선고된 수강명령 대상자의 판결정문이 접수되면, 이수명령 시간을 등록하여 누락되지 않도록 하고, 대상자가 출소 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 이수명령을 보호관찰소에서 집행해야 합니다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른 특정범죄 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는 전자발찌 대상자가 교도소에서 성폭력 재범방지 프로그램을 장시간 이수한 경우라 하더라도 이와 별도로 보호관찰소에서 받아야 합니다  
  
피부착자가 이수명령 등 준수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 관련법령: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득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준수사항), 제10조(부착명령 판결 등의 통지), 제39조(벌칙)**

[보호관찰 업무 매뉴얼]->[실형 중인 대상자의 집행 기관]->[수강명령]->실형 집행 중인 성폭력 대상자의 이수명령 집행 기관은 어떻게 되는지?  
  
**실형 집행 중인 성폭력 대상자가 성폭력처벌법 상 성폭력치료 강의 이수 명령이 부과되어 있으면 이수명령은 교도소와 보호관찰소 중 어디에서 집행해야 할까요?  
  
원칙적으로 교도소에서 집행하되, 형을 집행할 수 없게 되면 남은 이수 명령은 보호관찰소에서 집행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에 따르면, 이수명령이 벌금형 또는 형의 집행유예와 병과되면 보호관찰소의 장이 집행하고, 징역형 이상의 실형과 병과되면 교정시설의 장이 집행하도록 집행주체와 책임이 명확히 구분되어 있습니다  
  
다만, 징역형 이상의 실형과 병과된 이수명령을 모두 이행하기 전에 석방 또는 가석방 되거나 미결구금일수 산입 등의 사유로 형을 집행할 수 없게 되면 보호관찰소의 장이 남은 이수명령을 집행합니다**

[보호관찰 업무 매뉴얼]->[질병으로 수강명령 지속 연기]->[수강명령]->수강명령 대상자가 질병을 이유로 수강명령 이행을 계속 연기한다면 어떻게 대처하는지?  
  
**수강명령 대상자가 진단서는 제출하지 않고 질병을 이유로 수강명령 이행을 치일피일 미루면 어떻게 하나요?  
  
의료기관의 확인서를 통해 확인하고, 보호관찰관을 기망한 경우 제재를 합니다  
  
수강명령 대상자가 자신의 병을 과장하거나 거짓으로 담당자에게 보고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실제 수강명령 대상자의 건강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수강명령 대상자의 병명이나 질환 등 수강명령 대상자의 건강에 대한 명확한 파악을 위해 진단서나 치료확인서 등 의료기관의 확인서를 확인합니다  
  
확인 결과 실제 건강이 좋지 않으면 수강명령 대상자의 건강에 맞게 탄력 집행을 고려하며, 보호관찰관을 기망했다면 제재 절차에 따라 제재를 실시하면 됩니다**

[보호관찰 업무 매뉴얼]->[벌금형 병과된 이수명령 대상자 제재 방법]->[수강명령]->벌금형이 병과된 이수명령 대상자에 대한 제재 방법은 무엇인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벌금형 병과 이수명령을 부과 받은 이수명령 대상자가 미신고 등 집행 불응 시 제재 방법은 무엇일까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2조(벌칙)에 따라 집행 불응자에 대해 출석요구서, 경고장 발송으로 출석 및 이수명령 이행을 독려해야 합니다  
  
이수명령 이행에 관한 지시에 불응하여 경고를 받은 후 재차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에 관한 지시에 불응하면 보호관찰소 소재지 또는 이수명령 대상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수사의뢰할 수 있습니다. 불응자에 대해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65조 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아래 각호의 벌칙이 있습니다  
  
1. 벌금형과 병과되는 경우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  
2. 징역형 이상의 실형과 병과되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 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보호관찰 업무 매뉴얼]->[징역형 이수명령 대상자의 재구금]->[수강명령]->보호관찰소에서 집행 중이던 징역형 이수명령 대상자가 다시 구금된 경우 집행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징역형 이수명령 대상자가 교도소에서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출소해 보호관찰소에서 집행하려 했으나 재차 구속된 경우 집행절차 및 집행 기한은 어떻게 될까요?  
  
보호관찰 종료 처리 후 공문으로 해당기관에 통보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6항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6항에 따라 집행을 완료하지 못한 징역형 이수명령 대상자의 남은 이수명령은 보호관찰소에서 집행하여야 합니다  
  
이수명령은 성범죄자에게 치료적 개입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요구가 반영된 처분으로 용어의 차이는 있으나 기존 수강명령과 동일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으므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의 수강명령 집행 절차에 따라야 하며 이는 종료사유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벌금형 또는 징역형 이수명령 대상자가 여죄 또는 별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 집행을 받게 된 경우에는 '형 집행 종료'로 종료하고 남은 시간 등을 교정기관에 공문으로 통보하면 됩니다**

[보호관찰 업무 매뉴얼]->[판결전조사(결정전조사) 면담 거부]->[조사]->판결전조사(결정전조사)를 위해 피고인, 가족, 피해자 등을 면담하려 했으나 신분 노출 등의 사유로 거부하면?  
  
**판결전조사(결정전조사) 대상자 및 가족, 피해자 등을 면담하려고 요청하였는데 악화된 가족 관계, 신분 노출 등을 이유로 거부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조사의 법적 근거, 취지 및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상대방을 이해시키고, 조사는 비공개로 실시되며 조사 내용은 오직 재판의 참고 자료로만 활용됨을 설명하여 피조사자의 심리적 불안감을 해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공판절차에서 진술할 수 없는 내용을 조사 시 진술함으로써 피고인의 입장을 재판부에 전달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음을 설명하여, 피조사자가 편안한 입장에서 진술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합니다  
  
성폭력 피해자의 경우,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고 거부의사를 표시하면 즉시 조사를 중단하고, 피해자의 불편함을 최소화할 것입니다**

[보호관찰 업무 매뉴얼]->[학교에서 생활기록부 발급 거부]->[조사]->조사의 기초자료인 생활기록부 발급을 해당 학교에서 거부할 경우 어떻게 대응하나?  
  
**피조사의 조사를 위한 기초자료 중 하나인 생활기록부 발급을 해당 학교에 의뢰하였으나 '개인정보 제공 불가' 입장을 밝히며 거부할 경우 어떻게 대응할까요?  
  
개인정보라도 검찰, 법원의 사건 관련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제공받을 수 있음을 설명하고 근거법령 제시합니다  
  
해당 학교에서 사법절차 및 조사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정보 제공에 민감성을 드러내는 경우일 수 있어, 우선적으로 보호관찰소의 조사제도에 대한 설명 등 협의가 필요합니다  
  
생활기록부가 해당 피조사자의 개인정보라 할지라도 관련 법령에 따르면(공공기관의 경우) 범죄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료 제공에 문제가 없음을 설명하고 발급 의뢰 합니다  
\*관련 법령: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 제2항 제7호, 제2항 제8호,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조 제5호**

[보호관찰 업무 매뉴얼]->[학교 등에서 사건 질문]->[조사]->학교 등 관련기관에서 서류발급 전 사건내용에 대해 질문을 받는 경우는?  
  
**결정전조사시 소년이 재학 중인 학교에 생활기록부 발급을 의뢰하였으나 담임 교사로부터 해당소년의 사건내용에 대해 질문 받는다면 어떻게 대응하여야 할까요?  
  
법령에 근거하여 소년보호사건 조사 업무 수행에 필요함을 간략히 설명하되, 해당 소년의 구체적인 사건내용 등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조사관은 직무상 비밀을 엄수해야 하므로 조사 업무 수행에 학적사항 등이 필요함을 간략이 설명하고 해당 소년의 구체적인 사건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음  
  
본 사건에 대해 학교에서 인지하지 못하고 있으며, 보호자도 관련 사실이 학교 측에 알려지지 않길 원하는 경우, 보호자에게 직접 생활기록부를 발급받아 조사관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보호관찰 업무 매뉴얼]->[결정전조사 거부]->[조사]->가정보호사건 결정전조사시 피조사자가 조사를 거부할 경우 과태료 처분가능한지?  
  
**가정보호사건 결정전조사 면담일 지정을 위해 피조사자에게 연락하였으나 강한 불만을 토로하며 막무가내로 조사를 거부할 경우 어떻게 할까요?  
  
피조사자가 조사를 거부하더라도 현행법 상 과태료 부과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조사서에 거부사유를 적시하고 회보 처리합니다  
  
먼저, 피조사자 및 피해자에게 조사의 취지와 방법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여 협조를 구하는 것이 필요하나 피조사자가 조사를 거부하더라도 과태료 부과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강제할 법률적 근거가 없습니다**

[보호관찰 업무 매뉴얼]->[증인출석 요구 상황에서 위협]->[조사]->청구전조사서 회보 후 증인출석 요구를 받았으나 신변 안전에 위협을 느끼는 경우?  
  
**법원에서 증인출석 요구를 받았으나 청구전조사 당시 피조사자의 강한 분노감 표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신변 보호가 어렵다고 생각될 때 대응 방안은 무엇일까요?  
  
해당 재판부 혹은 검사에게 '증인신변보호'를 요청하면 피조사자와 직접 대면 없이 증언이 가능합니다  
  
조사관이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요구를 받았으나 피조사자로부터 보복의 두려움, 불안감 등 신변 안전에 위협을 느끼게 되는 경우, 해당 재판부 혹은 검사에게 '증인 신변보호'를 요청 할 수 있습니다  
  
요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법원으로부터 별도의 증언방식(피고인의 퇴정, 차폐시설의 설치, 별도 공간에서의 증언 등) 및 '증인지원관 서비스' 등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사회봉사 집행지침]->[벌금미납 봉사 대상자 기간 연장 신청]->[사회봉사]->대상자가 집행기간 연장을 신청하면?  
  
**집행기간 연장과 관련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는 보호관찰관의 판단 및 신청권한을 부여하였을 뿐, 대상자가 연기 신청을 하면 의무적으로 검사에게 연기 허가를 신청해야 한다는 의무는 부여하지 않고 있으므로, 대상자의 연기신청 요구에 응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아울러 집행기간을 연정해주었음에도 집행기간이 부족하다면, 집행기간 동안 이행한 시간만큼을 일부 이행으로 처리하고, 나머지는 대상자가 검찰청에 방문하여 벌금으로 납부할 것을 안내하면 됩니다.  
  
※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사회봉사의 집행기간) 사회봉사의 집행은 사회봉사가 허가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마쳐야 합니다. 다만, 보호관찰관은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검사의 허가를 받아 6개월의 범위에서 한 번 그 기간을 연장하여 집행할 수 있습니다.**

[사회봉사 집행지침]->[사회봉사 종료]->[사회봉사]->사회봉사 종료 절차는?  
  
**1. 종료자 소감문 및 설문조사서 작성합니다  
- 사회봉사 집행을 완료한 대상자에 대해 소감문 및 설문조사서 작성합니다  
  
2. 집행상황부 회수  
- 협력기관에서 사회봉사 이행한 대상자가 집행을 완료하였거나, 대상자의 소재불명 또는 지시불응 등으로 집행이 곤란한 때 집행상황부를 회수합니다  
\* 집행상황부는 담당관 또는 담당자가 협력기관을 방문하여 회수하거나 또는 협력기관의 장으로부터 등기우편을 통해 회수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3. 집행상황부 확인  
- 협력기관 직인 및 책임자 확인 날인 여부, 명령시간과 집행시간의 일치여부, 집행내용이 집행지침에 비추어 적합한지 여부, 담당관 확인란에 담당 보호관찰관 확인 날인  
  
4. 이행확인서 발급  
- 사회봉사를 이행 완료한 대상자가 사회봉사 이행확인서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발급하여 교부하고 사본을 보호관찰카드에 편철**

[보호관찰대상자 지도감독 지침]->[특별준수사항 거부]->[성인보호관찰]->특별준수사항이 부과되지 않은 치료명령 대상자에 대해 대상자가 복약검사를 거부하는 경우는 어떻게 처리해야하는 하는가?  
  
**대상자가 거부하는 경우, 특별준수사항을 추가로 신청하여 부과된 경우 그 아후에 복약검사를 실시하고, 특별준수사항이 부과되었음에도 거부할 시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보호관찰대상자 지도감독 지침]->[대상자 분류]->[성인보호관찰]->성인 보호관찰 대상자의 집중 등급 분류 기준은?  
  
 **- 재범위험성평가 결과 기관내 점수가 상위 20%까지의 대상자 중 다음 ㉠~㉪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  
㉠ 기간 중 재범으로 보호관찰이 재부과된 자  
㉡ 기간 중 제재로 보호관찰이 재부과된 자  
㉢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자  
㉣ 본건 포함 성폭력 전력 2회 이상인 자  
㉤ 본 건 포함 보호관찰 경력 3회 이상인 자  
㉥ 본 건 포함 약물 전력 3회 이상인 자  
㉦ 특별한 사정없이 6개월 이상 무직자  
㉧ 신규 개시한 가출소․가종료자  
㉨ 거주지․연락처가 일정하지 않은 자  
㉩ 치료명령 대상자  
㉪ 조직폭력 대상자  
 - 가정폭력, 아동학대, 스토킹사범 중 주요, 일반 대상자, 분류등급제외자를 제외한 대상자**

[보호관찰대상자 지도감독 지침]->[보호관찰 신고]->[성인보호관찰]->보호관찰 신고 기간은?  
  
**대상자가 선고를 받은 날의 다음날부터 7일까지는 항소, 항고 기간이다. 7일이 지나고 다음날 형이 확정되며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일간 보호관찰 신고 기간이며, 마지막날이 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까지 기산한다.**

[통계 지침 등]->[재범 또는 여죄]->[성인보호관찰]->대상자의 재범하였을 때 여죄 또는 재범 구분 방법은?  
  
**대상자의 재범한 일시가 보호관찰 기간 내에 속하는 경우 재범을 처리하고 그 이전이거나 이후인 경우에는 여죄로 처리한다.**

[통계 지침 등]->[보호관찰 재범 통계]->[성인보호관찰]->대상자가 같은 연도에 두 번 재범을 한 경우 통계 포함 여부는?  
  
**같은 연도에는 한 번의 재범 사건만 통계에 포함하여 계산하여 첫 번째 재범 사건만 통계에 포함하여 계산하며 두 번째부터는 포함되지 않는다.**

[보호관찰대상자 지도감독 지침]->[보호관찰 재범 통계]->[성인보호관찰]->대상자의 재범 일시가 다른 연도인 경우는?  
  
**재범 일시가 다른 연도인 경우에는 각 연도에 하나의 재범 사건으로 계산되므로 통계 포함된다. (단, 이미 해당 연도에 다른 재범 사건으로 통계에 포함된 경우에는 포한되지 않는다)**

[보호관찰대상자 지도감독 지침]->[등급별 지도 감독 회수]->[성인보호관찰]->분류 등급별 지도감독(면담) 횟수는?  
  
**집중인 경우 월 2회(월 1회 출장 포함), 주요인 경우 월 1회(격월 1회 출장 포함), 일반인 경우 격월 1회(반기 1회 출장 포함, 대면 미실시하는 달에는 비대면 지도를 실시해야 한다.)**

[보호관찰대상자 지도감독 지침]->[재범위험성 평가 미실시]->[성인보호관찰]->재범위험성 평가를 실시하지 않는 대상자의 경우는?  
  
**3개월 미만의 보호관찰 처분을 받은 대상자는 재범위험성 평가를 실시하지 않는다. 보통 가석방 대상자의 경우, 가석방 기간이 3개월 미만 경우가 많아 재범위험성 평가를 실시하지 않는 대상자가 많다.**

[보호관찰대상자 지도감독 지침]->[병과자 지도감독]->[성인보호관찰]->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같이 처분 받은 보호관찰 대상자에게 대해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에 대해 성실히 임할 것을 격려해야하는가?  
  
**병과자인 경우, 보호관찰관으로서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에 대해서 이행을 독려할 수 있으나 세부적인 각 담당자와의 면담 내용을 언급하지 않는 것이 좋다. 대상자가 각 담당자와 다르게 면담을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민감하게 받아들여 갈등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보호관찰대상자 지도감독 지침]->[비대면 지도감독]->[성인보호관찰]->보호관찰 비대면 지독감독을 실시하는 경우는?  
  
 **1. 1개월 이상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중증 질환으로 자립 보행이 어렵거나 장기 입원 치료가 불가피한 경우  
 2. 의무경찰대원, 의무소방원으로서 해당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  
 3. 장애, 감염병 등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보호관찰대상자 지도감독 지침]->[야간 또는 여성 출장지도]->[성인보호관찰]->야간 또는 여성 대상자의 주거지 등에 대한 출장지도 감독의 경우에도 1인이 출장할 수 있는 경우는?  
  
 **1. 동성의 직원이 출장할 때  
 2. 직장, 학교, 쉼터 등 관리인이 있는 기관 또는 시설에 출장하는 때  
 3. 대상자가 가족, 보호자와 함께 있는 때  
 4. 출장 업무 수행 중 우연히 마주친 때  
 5. 준수사항 위반사실에 대한 즉시 확인 및 조치가 필요함에도 2인 이상 직원이 동행 출장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때  
 6. 대상자의 주거지 외부 등 개방된 곳에서 면담할 때**

[보호관찰대상자 지도감독 지침]->[외출제한명령 기간]->[성인보호관찰]->외출제한명령의 기간은?  
  
**명령은 법원 등의 판결이나 결정이 확정된 때 또는 임시퇴원·가석방·가종료·가출소된 때부터 개시된다. 다만, 법원 등이 ‘음성등록을 완료한 날’ 등으로 명령 개시시기를 별도로 정한 때에는 그에 따른다.**

[보호관찰대상자 지도감독 지침]->[외출제한명령 개시]->[성인보호관찰]->외출제한명령 집행 개시 시기는?  
  
**법원 등의 판결이나 결정이 확정된 때 또는 임시퇴원·가석방·가종료·가출소된 때부터 개시하나, 시스템을 활용한 명령의 집행은 음성등록을 완료한 당일 또는 다음 날부터 실시한다.**

[보호관찰대상자 지도감독 지침]->[외출제한명령 적용 시간]->[성인보호관찰]->외출제한명령의 적용 시간은?  
  
**대상자의 외출 제한 시간은 법원 등이 정한 기간에 따른다. 다만, 외출 제한 시간이 따로 정해지지 않았으면 대상자의 특성, 범행시기 등을 고려하여 보호관찰관이 정하여야 한다.**

[보호관찰대상자 지도감독 지침]->[외출제한명령 감독]->[성인보호관찰]->외출제한명령 집행 감독 방법은?  
  
**명령의 집행 감독은 시스템을 활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명령 개시 이후 대상자가 다음 각 호 중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보호관찰관이 직접 전화, 출장 등의 방법으로 감독하여야 한다.  
 1) 제104조제1항에 따라 음성등록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스템에 의한 명령 감독’(이하 “시스템상 감독”이라 한다)이 곤란한 음성 등록 당일  
 2) 주거부정자, 언어 또는 청각 장애인 등 시스템상 감독이 부적합한 사람  
 3) 음성 미등록, 전화기 미설치, 고장 및 불통, 시스템의 오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시스템상 감독이 곤란한 경우**

[보호관찰대상자 지도감독 지침]->[외출제한명령 집행]->[성인보호관찰]->비전자방식을 활용하여 외출제한명령 이행을 확인해야하는 대상자의 감독 방법과 감독 횟수는?  
  
**전화 및 SNS 등은 주 1회 이상 주기적인 감독을 실시하거나 필요 시 출장지도를 병행할 수 있다.**

[보호관찰대상자 지도감독 지침]->[특별준수사항 지도]->[성인보호관찰]->‘일정량 이상 음주를 하지 말 것’의 특별준수사항을 부과받은 대상자의 음주측정 횟수는?  
  
**중 대상자인 경우 월 1회, 주요 대상자는 분기 1회, 일반 대상자는 반기 1회 이상 음주측정기를 활용하여 음주측정을 실시한다. 다만, 감염병 우려 등이 있는 경우 선별적으로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그 사유를 K-PIS에 입력하여야 한다.**

[보호관찰대상자 지도감독 지침]->[음주측정기]->[성인보호관찰]->음주측정기 정기 검사 및 교정 시기는?  
  
**부관리자는 음주측정기를 매 4개월마다 교통안전공사에서 정기 검사 및 교정을 받고 그 결과를 ‘음주측정기 관리대장’에 기재한다.**

[보호관찰대상자 지도감독 지침]->[임시해제 취소]->[성인보호관찰]->임시해제 대상자에 대해 취소 신청을 하는 경우는?  
  
**임시해제 대상자가 재범을 하여 재범이 확정되면 즉시 ‘보호관찰 임시해제 취소 신청’또는 ‘보호관찰명령 취소 신청서’를 작성하여 심사위원회에 보호관찰의 임시해제 취소를 신청하여야 한다.**

[보호관찰대상자 지도감독 지침]->[정신건강 선별검사 대상]->[성인보호관찰]->정신건강 선별검사를 실시 대상은?  
  
**가정폭력, 아동학대, 성폭력, 마약, 스토킹사범, 방화사범을 필수 실시 사범이며, 필수 실시 사범이 아닌 대상자에 대해서도 정신질환 의심 시 검사 적극 실시하도록 함(단, 보호관찰기간 6개월 미만자, 검사 실시 동의 거부자, 문맹·고령 등 실시 곤란한 자)**

[업무연락]->[정신건강 선별검사 관련]->[성인보호관찰]->정신건강 선별검사 실시 결과 (고)위험군으로 분류된 대상자에 대한 처리?  
  
**전문기간에 초기상담 의뢰 또는 개별상담 및 병원 연계 등을 실시한다.**

[업무연락]->[정신건강 선별검사 도구]->[성인보호관찰]->정신건강 선별검사 도구는(마음건강질문지 평가 항목)?   
  
 **1) 간이정신진단검사(SCL-90-R)  
 2) 알코올 사용장애 선별검사(AUDIT-K)  
 ※ 자살행동검사(SBQ-R)는 필요 시 실시**

[보호관찰대상자 지도감독 지침]->[스토킹 사범 재범]->[성인보호관찰]->스토킹 사범 대상자가 피해자에게 협박·위해 등 보복범죄를 가한 경우?  
  
**보복범죄를 가한 사실이 1회라도 확인될 경우 지체 없이 소환, 경고, 구인을 통한 조사 후 집행유예 취소 신청을 검토하도록 한다.**

[보호관찰대상자 지도감독 지침]->[스토킹 사범 재범]->[성인보호관찰]->스토킹 사범 대상자 또는 피해자와 면담을 통해 스토킹 범죄 발생을 확인한 경우에는?  
  
**집행유예 취소 신청과는 별도로 수사의뢰를 실시한다.**

[보호관찰대상자 지도감독 지침]->[수사의뢰]->[성인보호관찰]->수사의뢰는 어떠한 경우에 하는 것인지?   
  
**1) 보호관찰 등의 집행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상자의 범죄사실을 인지하면 준수사항 위반에 따른 제재와는 별도로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 약물검사 양성반응자 등 증거물이 확보되거나 현행범인 경우  
  사회봉사·수강명령 집행 중 협력기관으로부터 절도, 미성년자 강제추행·약물흡입 등 범죄행위가 신고된 경우  
  그 밖에 수사의뢰가 필요한 경우  
2) 대상자를 구인·유치 과정 중에 대상자의 범죄사실을 알게 되면 통상의 제재 업무를 수행한 후 수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보호관찰대상자 지도감독 지침]->[상황통보]->[성인보호관찰]->보호관찰 상황통보는 언제 하는가?  
  
**보호관찰 상황통보는 원칙적으로 제1회 공판기일 이후에 하되, 소년부를 포한한 가정법원에 재범 사건이 계류 중이면 심리일 이전에 할 수 있다. 다만, 피해자 관련 민감정보 포함 시에는 보호관찰상황 제출을 생략하거나 주요 상황만 제공할 수 있다.**

[보호관찰대상자 지도감독 지침]->[사범별 가중치]->[성인보호관찰]->사범별 가중치는?  
  
**일반 성인 대상자 1건 당 전자감독은 10건, 치료명령·가종료·마약은 4건, 스토킹·아동학대는 3건, 성폭력·가정폭력은 2건**

[보호관찰대상자 지도감독 지침]->[구인 대상자 공조 집행]->[성인보호관찰]->구인장이 발부된 대상자가 타지역에 있는 경우, 어떻게 집행을 하나요?   
  
**보호관찰소의 장은 관할구역 외에서 구인장을 집행할 때 대상자의 현재지 관할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공조) 요청할 수 있다.**

[보호관찰대상자 지도감독 지침]->[분류 등급 유지기간]->[성인보호관찰]->대상자의 등급 유지 기간은?  
  
**초기 분류 후 집중대상자는 최소 6개월, 주요대상자는 3개월까지 하향하지 못한다. 다만, 분류 등급 유지기간 이전이라도 장기 입원, 장기 해외출국,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분류 등급을 조정할 수 있으며, 그 사유를 K-PIS에 입력하여야 한다.**

[보호관찰대상자 지도감독 지침]->[긴급구인]->[성인보호관찰]->긴급구인의 요건은?  
  
 **보호관찰소의 장은 준수사항을 위반한 대상자가 제122조제1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여 제122조에 의한 구인장을 발부할 수 없으면 그 사유를 알리고 구인장 없이 대상자를 구인할 수 있다.  
 \* 제122조제1항(구인장 신청의 법률요건) -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조사를 위한 소환에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응할 때/ 도망한 때 또는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보호관찰대상자 지도감독 지침]->[긴급구인]->[성인보호관찰]->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   
  
 **1) 대상자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처럼 구인장을 발부받은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2) 대상자 지도감독 과정에서 보호관찰관에 대한 폭행, 협박 등 중대한 준수사항 위반사실이 발생한 경우**

[보호관찰대상자 지도감독 지침]->[가석방 대상자 지도감독]->[성인보호관찰]->가석방 대상자에 대해서 출장 지도를 실시해야 하는가?  
  
**가석방자 중 보호관찰 기간이 1개월 미만인 자는 출장 대신 통신지도를 반영하여 실시할 수 있다.**

[보호관찰대상자 지도감독 지침]->[임시 조치]->[성인보호관찰]->대상자의 유치허가장 신청 발부 대기 중 시간이 지체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는가?  
  
**구인한 대상자에 대해 유치허가장을 신청하고 발부 대기 과정 중 시간 지체 등의 사유로 계호의 적정을 기하기 어려우면 보호관찰소 인근의 경찰서 유치장에 구인한 대상자를 일시 수용할 수 있다. 대상자를 경찰서 유치장에 일시 수용할 때에는 구인장 또는 긴급구인서의 사본이 첨부된 '유치장 수용 의뢰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대상자의 신병과 함께 경찰서에 제출하고, 나머지 1부는 같은 서식의 신병 인수자란에 경찰서 신병 인수자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 보호관찰기록철에 편철하여야 한다. 보호관찰소 장은 '신병 인도 요청서'를 경찰서에 제출하여 일시 수용된 대상자의 신병을 인도받은 후 '신병 인수·인계증'을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행정사항]->[문서대장과 메모의 차이]->[행정]->메모와 문서대장의 차이가 뭔가요?  
  
**동일한 점은 각 직원들에게 알리고자 하는 내용을 알리는 것이 공통입니다.  
메모는 보통 기관 내, 또는 같은 직렬 내에 문서내용을 공유하기 위한 목적이 크며, 문서대장은 타 기관이나 타 직렬로 문서를 보낼 때 또는 공적인 문서를 생산해야할 때 등의 차이가 있습니다.**

[서울서부보호관찰소 업무가이드]->[호칭]->[공직문화]->조사서 작성 시 맨 뒤쪽에 책임관, 주무관 도장 찍는 부분이 있는데 책임관과 주무관의 차이가 무엇인지  
  
**책임관과 주무관은 대외직명이라고, 대외적으로 쓰는 직책입니다. 보호관찰기관의 경우 일반직6~7급 직원의 경우 '책임관', 일반직8~9급 직원은 '주무관' 공무직 등 직원은 '실무관'으로 대외직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도 외부기관에 제 신분을 밝힐 때에는 (전화통화에서도) 책임관이라고 말합니다. 직렬마다 주무관, 책임관 지정도 다르고, 우리와 다른 부분이 있어요**

[서울서부보호관찰소 업무가이드]->[보호관찰 재범 통계]->[통계]->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범이 통계에 산입이 되는 기준  
  
**기본적으로 재범의 확정 시기는 검사의 종국처분입니다. 보호처분은 구공판 및 가정보호사건, 소년부 송치 사건이며, 비 보호처분자의 경우에는 구공판 사건일 경우에 재범으로 처리됩니다. 또한 종국 처분이 아닌 검찰사건접수, 최종판결(무죄 등)은 재범통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니 참고하시고, 그 외 범죄일시, 연도, 보호관찰 사건별로 재범 처리 기준이 상이합니다**

[서울서부보호관찰소 업무가이드]->[유치허가장 작성 시 유의사항]->[보호관찰]->유치허가장을 집행할 때 꼭 적어야 하는 부분에 대해 알려주세요  
  
**유치허가장을 유치할 장소(서울소년분류심사원 등)에 유치할 때에는 유치허가장에 필수적으로 기재되어야 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먼저 유치를 집행 지휘하는 검사의 날인, 청구 번호 등이 필요하며, 원본대조필, 구인 일시, 유치 일시, 유치 장소, 처리자의 관직 등 기타 필수 기재 사항들이 있습니다.**

[서울서부보호관찰소 업무가이드]->[대상자 출석 관련]->[전분야]->대상자가 출석 시간을 지키지 않고 늘 지각을 하는데 이를 출석으로 인정해도 될까요?  
  
**보호관찰소 출석면담은 면담예약제로 진행됩니다. 보호관찰관은 대상자와 출석면담을 할 때는 원칙적으로 면담하는 특정 일자, 시간을 고지해야해요. 이는 대상자가 임의로 보호관찰소에 출석하여 담당자의 출장 등으로 부재중일 때 다른 직원과 면담하는 등 다소 부실한 면담을 방지하고자 2011년부터 도입되었어요. 대상자가 면담 시간에 출석하지 않거나 출석 지시에 불응할 경우 주의, 경고, 소환 등 조치를 취해야하고, 대상자가 면담 시간이 아닌 임의 일시에 출석할 경우 원칙적으로 공식면담으로 인정해서는 안 되고 새롭게 면담일시를 지정해야합니다.**

[서울서부보호관찰소 업무가이드]->[기록물 보관방법]->[기록물]->캐비닛에 작년에 생산된 문서 철이 많은데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기록물은 각 문서의 중요도 등에 따라 법무부 기록관리기준표에 보존기간이 정해져 있으며, 보존 기간이 만료되면 각 기관에서 기록물 기록관인 운영지원과로 목록을 제출합니다. 기록관에서는 기록물평가심의회를 개최하여 폐기의 적정성 등을 심사, 폐기 명단을 각 기관으로 다시 보내고 파기 차량 등으로 폐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생산 문서는 상기 절차를 거쳐 파기해야 합니다.**

[서울서부보호관찰소 업무가이드]->[행사 시 예산항목]->[회계]->부서 내 행사 준비를 위해 예산을 사용해야 합니다. 흔히 ‘수용비카드’라고 불리는 걸 어떻게 사용하면 될까요?  
  
**먼저 소 내 회계 담당자 등에게 예산 항목에 맞는 지출인지, 예산 내에서 지출 가능한 금액인지를 확인한 후 사용하시면 됩니다. 사용 후에는 법무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22P(2-5항 가목)에 따라 곧바로 영수증에 본인 서명을 기재하고 카드와 함께 반납하시면 됩니다.**

[서울서부보호관찰소 업무가이드]->[선도위탁 접수]->[소년보호관찰]->팩스로 검찰청 선도위탁 서류가 접수되는데 누구에게 드려야 할까요?  
  
**보호관찰소 선도위탁규정(법무부 훈령 1182호, ’19. 1. 1.) 제5조에 따라 선도 책임을 인수한 선도업무를 성실히 수행한다는 보호관찰소 선도인수서(별지 서식)을 송부해야 합니다. 우리 소의 경우 팩스 접수 시 행정지원 부서의 성지영 주임님께 드리면 킥스 접수 및 선도인수서 송부 처리를 해주시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서부보호관찰소 업무가이드]->[농협기부금 사용방법]->[회계]->농협 기부금은 원호할 때에는 언제나 사용해도 되는 것인가요?  
  
**농협 기부금은 생계가 어려운 보호관찰 대상자 식비, 긴급 생계비 또는 기타 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범 방지 및 건전한 사회 복귀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맞춤형 원호를 지원하고 있으며, 집행은 법사랑 통장의 체크카드 또는 계좌이체를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입체불 청구서를 회계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고 확인된 후 원호한 직원에게 계좌이체로 지급합니다. 상세한 사용 기준은 '농협 법사랑 기부금 활용 계획(안) (보호관찰과)' 문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서부보호관찰소 업무가이드]->[항고관련]->[소년보호관찰]->소년 보호관찰 대상자가 항고를 제기했을 때의 종료 방법이 궁금합니다.  
  
**해당 상황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1항과 소년법 제46조의 규정이 달라 유권해석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보호관찰 업무 매뉴얼(보호관찰과)에 따르면 보호관찰 등의 집행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므로 항고한 경우에는 상소절차가 모두 종료되어 확정된 후에 집행하는 것이 타당하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또한 형이 확정되지 않았다면 집행할 수 없습니다. 또한 보호관찰 대상자 지도감독 지침에 따라 판결정문 접수 시 대법원 홈페이지를 활용하여 상소 제기 여부를 확인하고, 상소가 제기되었으면 항소증명원 등을 첨부하여 종료하시면 됩니다**

[서울서부보호관찰소 업무가이드]->[대상자 인적사항 관련]->[공통업무]->종종 경찰관서에서 전화로 보호관찰 대상자의 인적사항, 보호관찰 집행 내용 등을 요청합니다. 유의사항이 있을까요?  
  
**먼저 우리 기관은 범죄예방 업무를 실시하고 있어 업무 특성 상 다량의 개인정보를 취급하고 있습니다. 이에 유·노출 등 각종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법,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 이용에 대해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관서 등에서 보호관찰 대상자의 개인정보를 요청할 시에는 법령 근거 및 공문 없이는 자료 제공이 불가합니다. 특히 전자감독 수신자료의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경찰관서에서 해당 정보 요청을 받은 때에는 반드시 공문 등을 접수한 후 관련 근거에 따라 제공해야하며, 출력물, 복사물 형태의 개인정보 제공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전자문서 등을 통해 비공개 송부하고 제공 정보에 대해서는 반드시 비밀번호를 설정하여 문서 수령 후 별도 통보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사회봉사 집행지침]->[배치 적합 부적합 사례]->[사회봉사]->공공기관 배치 적합·부적합 사례  
  
**(배치 적합) 한국 농·어촌 공사의 용수 및 수리시설 유지관리 등 지원, 국립묘지 등 환경정화, 병원 등 환자지원 활동, 기타 사회적 약자 및 지역사회 공익 지원 분야  
(배치 부적합) 개인 업무 보조, 우편물 분류 보조, 행사진행 보조(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지원 행사 제외), 기타 단순 행정업무**

[사회봉사 집행지침]->[사고발생 시 처리 절차]->[사회봉사]->안전사고 발생 시 세부 처리절차  
  
**사고발생 인지 및 보고→응급조치 및 후송→현장조사 및 본부 보고→사고처리 및 조치→조치결과 등 보부 보고→사후처리**

[범죄예방팀 근무 시 주요 점검사항]->[범죄예방팀 근무 시 주요 점검사항]->[전자감독]->범죄예방팀 시간대별 주요 점검 사항  
  
**1. 18:00 ~ 20:00 :  
 가. 범죄예방팀 근무 사전 준비  
 - 주간 시간대 특이내용(전자장치부착법 위반 입건, 재범, 선고, 퇴사, 진료, 결별 등) 확인 및 무도실무관과 정보공유  
 - 부착장치‧음주측정기‧바디캠 및 각종 장비(체결도구, 충전팩, 보안장구 등) 작동 여부 점검  
 나. 부착장치 전력 35% 미만자 점검[상시]  
 - (상황관제 화면) 주거지까지 거리 등을 고려하여 문자 전송 및 유선으로 충전 지시  
 ☞ 15% 이하부터는 현장 출동 및 공조(관외 체류자) 검토   
 다. 훼손 우려 고위험 대상자 실시간 확인[상시]   
 - 재범사건 등 선고 예정자(보석 포함) 및 전담직원 간 정보공유를 통해 최근 이상행동 등 훼손 우려 대상자에 대해 실시간 위치 확인 등 자체 집중 관제 실시  
 - 필요 시 행동관찰 실시  
 ☞ 훼손 발생 시 전자감독 단톡방에 즉시 공유 후 “전자감독 업무매뉴얼”에 따라 조치(p.254 참고)  
  
2. 20:00 ~ 23:00   
 가. 특이지역 체류자 등 점검  
 - (관외지역 체류자 점검) 보호관찰 상황 등 확인을 통해 관외 지역 체류 목적 확인  
 - 경찰관서 및 공항 등 체류자 확인  
 나. 음주제한 준수사항 부과자 점검  
 - (유흥지역 체류 관제정보 이관 시) 유선으로 체류 목적 등 확인, 음주 의심 시 신속수사팀과 공유 후 현장 출동  
 - (음주 의심자) 신속수사팀과 공유 후 불시 현장 출동  
 ☞ 음주측정 시 바디캠 촬영(음주측정 전 촬영사실 고지)  
  
3. 23:00~01:00  
 가. 외출제한 부과자 처리  
 - 외출제한 일시조정 대상자 점검 및 U-Guard시스템 입력 상황 확인  
 ☞ 사정변경으로 외출제한 감독 중지 사유 소멸 시 U-Guard 일시 조정 해제   
 - 외출제한 부과자 중 귀가 중인 자에 대해 안내문자 발송(1차-1시간 전, 2차-30분 전)  
 ☞ 주거지까지 거리‧이동속도 등을 검토, 외출제한 개시 전 귀가가 불가능할 경우 수사팀 공유 후 현장 출동  
 나. 야간미귀가자 처리  
 - 생업으로 사전 보고자 입력   
 ☞ (상황관제 화면)메뉴-참고정보-미귀가자 관리  
 - 특별한 사유 없이 미귀가자의 경우, 유선 통화로 귀가 지시 및 현장 출동 후 귀가 지도 실시  
  
4. 01:00~06:00  
 가. 재외출자 점검  
 - (외출제한 부과자) 신속수사팀 공유 후 즉시 현장 출동(필요시 112출동 요청)  
 - (외출제한 미부과자) 외출 사유 확인 후 필요시 현장 출동  
 나. 측위 이탈 경보 진위 확인  
 - U-Guard 시스템 상황관리에서 귀가(장치), 귀가(재택) 정보를 확인 또는 응급호출발생(재택) 및 이동경로 검색을 통해 재택측위(H) 확인   
 ☞ G측위 경우, 현장 확인 필요  
  
5. 07:00~09:00  
 가. 상황근무일지 작성(과장님 전결)  
 - 근무 중 출장 및 경보처리 상황 등 주요 조치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작성  
 - 기타 항목에 야간시간 특이사항 등 인계사항 작성  
 나. 위험경보처리대장 작성(과장님 전결)  
 다. 1:1 및 고위험 전자감독 일일상황 보고 작성(소장님 결재)  
 - 근무 중 1:1 및 고위험자 중 재범 시(전자장치부착법 위반 포함) 작성**

[업무매뉴얼]->[전작감독 Q&A ]->[전자감독]->피부착예정자(형기종료)가 본형의 집행 중 형의 집행정지로 일시 출소하는 경우 전자장치를 부착하여야 하나요?  
  
**• 부착할 수 없습니다. 형의 집행정지는 법률상 부착명령 집행 사유(형의 집행 종료, 면제, 가석방 등)에 해당 되지 않아 부착명령 집행(개시)이 불가능합니다.**

[업무매뉴얼]->[전작감독 Q&A ]->[전자감독]->집행 이전의 범죄로 금고 이상 형의 집행을 받게 되어 일시분리된 소급적용 피부착자가 수용생활 중 재범하여 1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아 수용기간이 연장되었다면, 재범하여 연장된 수용기간이 부착기간에 산입되나요?  
  
**산입되지 않습니다. 부착명령 기간 중 재범 사건은 집행정지 대상에 해당되며, 여죄사건 형의 집행을 완료 한 뒤 전자장치 부착 및 분리(집행정지) 처리를 해야 합니다.**

[업무매뉴얼]->[전작감독 Q&A ]->[전자감독]->치료감호처분 중 부착명령을 조건으로 가종료된 자가 잔형 집행을 위해 교도소에 수용된 경우 어떻게 집행하여야 하나요  
  
**• 가종료 처분으로 인한 보호관찰은 그 기간의 성격이 불변기간(3년)이나 법 제24조제2항2호 단서에 따라 잔형기가 남아 있는 때에는 일시분리 처리를 하지 않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때에 집행하여 야 합니다.(기간은 산입) • 단, 가종료 후 벌금미납으로 인해 노역장에 일정기간 유치되는 경우 그 성격이 환형처분이므로 부착기간 중 벌금미납 노역 유치와 마찬가지로 일시분리 처리하면 됩니다.(일시분리 처리하여 노역장 유치기간을 형 집행 기간을 부착기간에 산입하고, 출소 이후에 잔여기간이 남아 있으면 부착명령 집행) • (사례 1) 강간으로 징역 3년, 치료감호를 선고 받고 2010. 10. 10. 가종료되면서 부착명령이 부과되어 잔형기가 5월 남은 경우 ⇨ 2010. 10. 10. 가종료 당시 일시분리 처리하지 않고, 잔형기 5월이 종료되고 출소하게 되면 부착명령을 집행 • (사례 2) 강간으로 징역 3년, 치료감호, 부착명령 3년을 선고받고 2010. 10. 10. 가종료되면서 재차 부 착명령이 부과되어 잔형기가 5월 남은 경우 ⇨ 부착명령이 동시에 경합되는 경우로 2010. 10. 10. 가종료 당시 일시분리처리 하지 않고 잔형기 5월 형기종료 이후에 집행을 시작 ※ 이 경우에 동일 사건에 대하여 2건의 부착명령을 집행하는 것은 부적절하며, 실익도 없는 상황이 므로 특별준수사항 감독의 실익이 있는 경우 해당 위원회에서 부착명령만을 철회하는 것이 바람 직함(2013. 8. 보호법제과 의견 참고**

[업무매뉴얼]->[전작감독 Q&A ]->[전자감독]->부착명령 사건이 병합되어 있는 경우 구체적인 집행 순서  
  
**서로 다른 사건에 대하여 각각 부착명령이 부과되면 확정된 순서에 따라 집행(법13조제5항)**

[업무매뉴얼]->[전작감독 Q&A ]->[전자감독]->[동일 사건에 대해 가석방, 가종료시 심사위원회 등에서 부착명령이 부과되는 경우  
  
**가석방 및 가종료 전자장치 부착은 동일 사건에 대하여 법 제9조에 따른 부착명령 판결을 선고받지 않아야 가능한 것으로 제9조에 따른 부착명령이 부과된 자에게 가석방 등 부착명령이 부과된 경우 위원회에 부착명령 철회 요청**

[업무매뉴얼]->[전작감독 Q&A ]->[전자감독]->부착명령 집행 중 재범하여 구속을 원인으로 부착명령 집행이 정지된 피부착자가 (징역)형의 집행정 지결정으로 일시 석방된 경우, 부착명령 재집행(집행정지 해제) 가능 여부  
  
**• 법률 제13조제6항에 따라 구금이 해제되거나 형의 집행을 받지 않아 확정된 때, 형의 집행이 종료 되거나 면제된 후 또는 가석방된 때, 형이나 치료감호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때에만 재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징역)형의 집행이 정지되었더라도 부착명령을 재집행하면 안됨 • 형의 집행정지는 부착명령의 집행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업무매뉴얼]->[전작감독 Q&A ]->[전자감독]->부착명령에 대한 불복 방법]  
  
**1.판결→항소 또는 상소 (각 심급에 따라), 2.결정→항고→재항고 (즉시항고)  
※ 재항고는 즉시항고로 7일의 제기 기한이 있으며, 항고법원에서 결정 전 집행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음**

[업무매뉴얼]->[전작감독 Q&A ]->[전자감독]->항고제기 시 부착명령 집행  
  
**항고의 종류 및 제기 기간 • 항고는 결정에 대한 상소를 말하며, 형사소송법에 의하여 대법원에 즉시 항고할 수 있다고 명문으 로 규정된 것을 특별항고, 그 이외의 항고를 일반항고라고 하며, 일반항고는 보통항고와 즉시항고 로 구분 | 부착명령 집행 2장 2023 전자감독 업무 매뉴얼 Electronic Monitoring Business Manual 41 • 즉시항고는 제기기간이 7일로 제한되어 있고(형소법 제405조 즉시항고의 제기기간), 제기기간 내에 항고의 제기가 있는 때에는 재판의 집행이 정지되는 효력이 있음 ※ 즉시항고는 명문의 규정이 있는 때에만 허용되며, 공소기각의 결정, 상소기각결정, 기피신청기각결정, 구속의 취 소와 집행정지결정, 소송비용부담결정과 같이 신속한 구제를 요하는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가 인정됨 항고제기의 효과 • 법원 결정에 대한 불복신청은 항고의 방법에 의하며, 즉시항고의 제기기간 내 그 제기가 있는 때에 는 재판의 집행은 정지되나, 보통항고에는 재판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음 • 다만, 원심법원 또는 항고법원은 결정으로 항고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집행을 정지시킬 수 있음 ※ (형사소송법 제409조) 항고는 즉시항고 외에는 재판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다. 단, 원심법원 또는 항고법 원은 결정으로 항고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항고제기에 따른 부착명령 집행 여부 • 부착명령 결정, 준수사항 추가 신청 인용 결정에 대한 항고는 보통항고에 해당되어 재판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으므로 피고인이 항고를 하더라도 전자장치를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을 집행하여 야 함 ※ 다만, 항고심에서 ‘부착명령 결정 취소’가 있고, 이에 검사가 재항고(즉시항고) 하더라도, 부착명령을 기각한 법원 의 판단이 우선되어야 하므로 집행을 정지하는 것이 타당함**

[업무매뉴얼]->[전작감독 Q&A ]->[전자감독]->소급형기종료 피부착자의 항고인용(원심 취소, 부착명령 청구 기각)에 대한 검사의 재항고 시, 부착명령 집행 여부  
  
**• 형사소송법 제415조에 따라 항고법원의 결정에 대한 재항고는 즉시항고이므로 원칙적으로 집행정 지 효력이 인정됨 • 그러나 법률의 문언이나 문리적 원칙에 따라 처리 시, 피부착자의 인권이 헌법 규범에 비추어 과도 하게 침해되는 문제점이 발생 • 검사의 불복을 법원의 판단보다 우선하게 될 뿐만 아니라 사실상 항고인용 결정을 무의미하게 만 들 수 있으며, 이는 헌법상 적법절차 및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반하여 기본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따라서, 항고인용 결정에 대한 검사의 재항고는 집행을 정지한다고 볼 수 없으며, 항고 법원의 결정 에 따라 장치를 탈착하여야 함**

[업무매뉴얼]->[전작감독 Q&A ]->[전자감독]->전자감독 처분별 집행 방법  
  
**1. 형기종료 피부착예정자  
 특정범죄사건에 대한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가석방되는 날 또는 치료감호  
(보호감호)의 집행이 종료·가종료(가출소)되는 날 석방 직전에 집행  
• 특정범죄사건으로 인한 형이 종료된 이후 다른 범죄사건으로 형이나 치료감호(보호감호)의  
집행을 계속 받게 될 경우에는 다른 범죄사건에 대한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가석방되는 날 또는 치료감호(보호감호)의 집행이 종료·가종료(가출소)되는 날 집행**

[업무매뉴얼]->[전작감독 Q&A ]->[전자감독]->전자감독 처분별 집행 방법  
  
**2. 소급적용 피부착자  
• 출소예정자에 대한 부착명령은 법원에서 부착명령이 결정된 후 검사의 지휘를 받아 형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가석방되는 날 석방 직전에 집행  
• 출소자에 대한 부착명령은 검사의 집행지휘서가 접수된 당일 집행이 원칙  
• 다만, 현재지를 확인할 수 없는 등의 이유로 당일 집행이 어려운 경우 지체 없이 소환하여  
집행  
• 소환은 등기우편을 활용한 소환장 발부를 원칙으로 함(소환 일시는 발송일로부터 7일 이내,  
1회 발부 원칙)(지침 서식). 다만, 긴급하거나 주거부정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전화,  
현장방문 등 다른 방법을 통해 실시할 수 있음  
• 부착명령 결정에 대한 항고 여부와 관계없이 부착명령 집행  
• 법원이 형사소송법 제409조에 따라 항고 결정전에 부착명령의 집행을 정지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감독중지(감독중지 기간은 부착기간에 산입하지 않음**

[업무매뉴얼]->[전작감독 Q&A ]->[전자감독]->전자감독 처분별 집행 방법  
  
**3. 가석방 및 가종료자  
• 가석방, 가종료 또는 치료위탁, 가출소되는 날 석방 직전에 부착명령 집행  
• 다만, 치료감호와 형이 병과된 가종료 피부착예정자는 잔여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되는 날 집행  
• 부착명령 종료일은 변하지 않음**

[업무매뉴얼]->[전작감독 Q&A ]->[전자감독]->None  
  
**4. 집행유예 및 형의 집행이 종료된 자  
• 집행유예 부착명령이 확정된 경우, 형 확정 전 형의 집행이 종료되어 석방된 상태에서  
부착명령이 확정된 경우 피부착예정자를 지체 없이 소환하여 부착명령 집행**

[업무매뉴얼]->[전작감독 Q&A ]->[전자감독]->19세 미만자에 대한 부착명령 집행  
  
**• 피부착예정자가 만 19세 미만인 경우에는 만 19세에 도달하는 날 피부착예정자를 소환하거나  
주거지 방문하여 부착명령 집행  
• 형 집행 종료 후 피부착예정자에 대해서는 출소 5일전까지 ‘부착명령 집행 예정 고지 확인서’를  
받은 후 집행방법을 고지  
• 출소한 피부착예정자에 대해서는 부착명령 집행 직전에 접수  
• 만 19세 미만 피부착예정자의 부착명령 집행을 위해 주거지, 직장 및 관계인의 연락처 등을  
상세히 확인·관**

[업무매뉴얼]->[전작감독 Q&A ]->[전자감독]-> 부착명령 집행 불응자에 대한 조치  
  
**• 수용 중인 피부착예정자가 집행을 거부하는 때에는 영 제7조제4항에 따라 수용기관의 장의  
협조를 받아 전자장치 부착  
 출소한 피부착예정자가 부착명령 집행을 위한 소환에 불응한 때에는 주거지 등을 방문하여  
전자장치 부착  
• 출소한 피부착예정자가 집행을 위한 소환에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응하거나 불응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일정한 주거가 없는 등 소환이 어려운 경우 및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 부착명령  
집행장을 발부받아 구인   
• 피부착예정자를 구인한 때에는 신고서 접수 및 집행 전 교육 후 부착명령을 집행하고 즉시  
석방  
• 부착명령 집행장의 집행에 관하여 「전자장치부착법 시행지침」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호관찰 대상자 지도감독 지침 」의 제재 관련 규정을 준용**

[업무매뉴얼]->[전작감독 Q&A ]->[전자감독]->전자장치 부착 방법  
  
 **부착장치 부착 절차  
• 부착명령 집행일에 피부착예정자의 발목 등에 부착  
• 부착절차  
－ 부착장치 준비 → 부착장치 전원 ON → 체결 위치 선정 → 스트랩 길이 조절 → 스트랩  
길이 확인 → 고정장치 버튼 확인 → 봉인 스티커 부착 → 체결 상태 점검 → 부착사진  
촬영하여 위치추적시스템(U-Guard)에 등록  
 ※ 봉인스티커 미부착 상태를 장시간 방치 시 버튼의 홀 내부에 이물질이 쌓여 정상적인 작동이 안될 수   
있으므로 면담 시 전자장치 수시 점검을 통한 봉인 여부 확인 필요  
 부착장치 체결 방법  
• 부착자가 양말을 신지 않은 상태에서 복사뼈 바로 윗부분에 부착장치의 연결띠를 감싸  
한쪽으로 밀착시킨 뒤 생긴 공간의 간격이 2cm를 초과하지 않도록 체결  
• 다만, 발목 부종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2.5cm 이내로 체결  
• 발목 부종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2.5cm 이내로 체결하는 것으로, 일반적인 피부착자에게  
는 2cm를 초과하여 체결하면 안됨   
• 전자장치와 발목 사이 공간 간격이 2cm를 초과하는 경우 임의분리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 1회 이상   
부착장치 체결상태를 점검, 촬영하여 위치추척시스템(U-Guard)에 등록하여야 함**

[업무매뉴얼]->[전작감독 Q&A ]->[전자감독]->전자장치 부착 후 확인 사항  
  
**전자장치 부착·분리, 설치·이동, 교부 등의 조치를 한 때에는 전자장치 상태를 촬영하고, 그  
이유 및 일시 등과 함께 위치추적시스템(U-Guard)에 입력  
부착장치가 체결된 발이 완전히 맨살인 상태, 부착장치를 한쪽으로 완전히 밀착한 모습, 본체와 봉인지   
부착 상태가 모두 확인 가능한 상태에서 전용 측정도구를 이용해 발목과 부착장치 사이가 2Cm 이하  
인 모습 사진촬영(20~30도 각도 유지  
체결한 부착장치를 발목에 완전히 밀착하고 반대편 스트랩과 발목 사이 간격이 가장 넓은 곳을 측  
정도구를 이용하여 위와 같은 각도로 촬영  
 (측정도구, 봉인지 부착 상태, 고정피스·보조피스 체결 상태 등 보이도록 촬영**

[업무매뉴얼]->[전작감독 Q&A ]->[전자감독]->재택감독장치 설치  
  
**• 재택감독장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부착장치 부착 후 지체없이 피부착자의 주거지 내에  
고정하여 설치, 다만 가석방 피부착자의 경우 외출제한이 부과된 자 외에는 신고서 접수 후  
7일 이내 설치  
• 피부착자의 주거지가 일정하지 않거나 그 밖에 재택장치를 설치하기에 부적합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설치 예외 가능(지체 없이 위치추적시스템에 가상재택을 설정)  
• 설치 순서  
－ 재택장치 밑판 준비 → 재택장치와 밑판 결합 → 적절한 위치 선정 → 전원선과 전용  
어댑터 연결 → 가정용 전원 연결 → 재택장치와 전용 어댑터 연결 → 재택장치 전원  
켜기 → 재택장치 가설치 → 재택 내 모든 위치 통신 점검 → 재택장치 밑판 스티커  
제거 → 재택장치 고정 및 점검  
• 위치추적시스템(U-Guard) 내 재택위치 지정  
－ 유가드 상황관리 → 재택위치 지정여부 항목의 위치지정 버튼 클릭 → 주소 검색 등을  
통해 지도화면에서 재택위치 지정 → 저장 버튼 클릭  
• 피부착자의 재택장치 상태 촬영하고 위치추적시스템(U-Guard)에 입력  
• 이후 재택장치를 부착·분리, 설치·이동, 교부 등의 조치를 할 때에는 이유와 일시 등을  
위치추적시스템(U-Guard)에 입력하고 재택장치 상태 촬영**

[업무매뉴얼]->[전작감독 Q&A ]->[전자감독]->재택감독장치 권장 설치 위치  
  
**• 전파 수신이 양호한 위치 선정(가급적 주거지 중앙부에 설치)  
 - 전파는 도달 거리에 따라 세기가 감소  
 - 중앙부 설치가 불가할 경우 취침 장소에 설치  
• 바닥, 벽면으로부터 30cm 이상 이격  
 - 최초 전파가 발생하는 안테나 주변에 구조물이 있을 경우 수신범위 감소  
 - 안테나는 고정면의 수직이 되도록 위치  
 - 침대 밑에 설치시 매트리스 스프링으로 수신 성능 감소  
• 가전제품(무선공유기, TV 등)과 30cm 이상 이격  
 - 가전제품의 전자파로 인해 수신범위 감소  
 - 대형 TV 뒤에 설치시 수신성능 감소**

[업무매뉴얼]->[전작감독 Q&A ]->[전자감독]->부착장치 분리1  
  
 **분리절차  
－ 위치추적시스템(U-Guard) 분리처리 → 봉인 스티커 제거 및 스트랩 위치 조정 →  
해제장치와 해제도구 준비 → 해제장치 해제 스위치 누름 → 해제도구로 잠금버튼 해제  
→ 스트랩 분리 및 스트랩 더미 장착**

[업무매뉴얼]->[전작감독 Q&A ]->[전자감독]->부착장치 분리2  
  
**위치추적시스템(U-Guard) 분리 처리  
• 위치추적시스템(U-Guard) 부착/분리 화면에서   
분리 처리•분리처리 즉시 성공 표시(대기 없음)  
• 전자장치에 진동 및 붉은LED 점멸이 발생하지   
않으면 다시 부착 후 분리 처리 진행 (★중요)  
 ※ 전자식 잠금장치는 미인증상태(진동 후 붉  
은LED 점멸)에서만 스트랩 분리 가능**

[업무매뉴얼]->[전작감독 Q&A ]->[전자감독]->부착장치 분리3  
  
**봉인 스티커 제거 및 스트랩 위치 조정  
• 전자식 잠금장치의 봉인스티커 제거  
• 체결 상태의 스트랩을 앞뒤로 움직여 위치   
조정  
• 스트랩의 삼각형 음각 표시를 전자식 잠금장치   
끝단에 정렬  
 ※ 잠금장치의 잠금 버튼이 스트랩에서 쉽게   
빠질 수 있도록 간격 확보**

[업무매뉴얼]->[전작감독 Q&A ]->[전자감독]->부착장치 분리4  
  
**해제장치와 해제도구 준비  
• 전자식 잠금장치는 해제장치 결합 상태에서만   
스트랩 분리 가능(분리처리 중 결합상태 유지)  
• 해제장치를 충전팩과 동일한 방식으로 본체에   
결합하여 ‘딸깍‘ 느낌이 날때까지 이동**

[업무매뉴얼]->[전작감독 Q&A ]->[전자감독]->부착장치 분리5  
  
**해제장치 해제 스위치 누름  
• 해제장치 옆면에 위치한 해제 스위치를 눌러   
전자식 잠금장치해제  
• 시간 경과에 따라 해제 상태가 종료되면 다시   
해제 스위치를 눌러 스트랩 분리 시도  
 ※ 16초 동안만 해제 상태 유지, 재시도 가능**

[업무매뉴얼]->[전작감독 Q&A ]->[전자감독]->부착장치 분리6  
  
**해제도구로 잠금버튼 해제  
• 해제 상태가 유지되는 16초 이내에 해제 도구  
를 잠금 버튼 위에 위치시키고 스트랩을 앞뒤  
로 움직이며 잠금 버튼이 올라 오도록 조치  
• 시간 경과에 따라 해제 상태가 종료되면 다시   
해장 장치의 해제 스위치를 눌러 스트랩 분리   
시도  
 ※ 잠금 버튼이 잘 올라오지 않을 경우 잠금 버  
튼의 상단 홈을 손톱 등으로 들어올려 분리   
시도**

[업무매뉴얼]->[전작감독 Q&A ]->[전자감독]->부착장치 분리7  
  
**스트랩 분리 및 스트랩 더비 장착  
• 스트랩을 완전히 분리하고 내부에 훼손 흔적   
등 이상 여부 확인  
• 사용이 종료된 부착장치는 최초 장착되어 있던   
스트랩 더미(고무마개)를 끼워 반납  
 ※ 사용기간이 짧거나 외부 상태가 양호한 경우   
재사용 가능**

[업무매뉴얼]->[전작감독 Q&A ]->[전자감독]->피부착자가 전자장치에서 발생하는 전자파로 인해 인체에 피해가 상당할 것 같다며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 어떻게 응대하는 것이 좋을까요?  
  
**• 전자발찌를 포함한 모든 위치추적 전자장치는 전파 환경 및 인체 영향도를 고려한 「전파법」제(47조의 2)  
에 따라 강도나 용도를 설정하고 있으며 이를 국가에서 지정한 공인인증기관에서 검사하여 적합 인증을   
인정받았기 때문에 전자파로 인한 인체 영향도는 일반적인 가전제품과 유사합니다**

[업무매뉴얼]->[전작감독 Q&A ]->[전자감독]->피부착자가 “부착 및 휴대, 재택장치 충전에 소비되는 전기세는 모두 국가에서 부담해야 하는 것 아니냐?”라며 항의하는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 전자장치 충전은 「전자장치부착법」상 피부착자의 의무로 규정되어 있어 전자장치 충전에 소비되는 전기  
세는 자비 부담이 원칙임을 설명합니다**

[업무매뉴얼]->[전작감독 Q&A ]->[전자감독]->신고서 접수 시 피부착자에게 고지 및 확인해야 할 사항  
  
**• 출석지도, 현장지도 등 지도감독 방법에 대해 설명하고 특히, ‘행동관찰’의 목적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  
• 재범방지를 위해 준수사항(외출제한) 부과자가 아닌 경우에도 자정 전후 미귀가시 귀가지도가 실시  
된다는 것과 심야 시간대 장치오류, 경보 발생에 따른 관제직원의 전화통화, 보호관찰관의 장치점검   
지시 등에 협조할 의무가 있음을 고지  
• 전자장치의 충전방법, 사용시간, 충전시간 등 사용방법 등에 관한 재교육 실시  
• 전자장치를 분실하거나 손괴한 경우 형사처벌과 별도로 그 가액을 변상해야 한다는 것을 고지  
• 대상자의 사진(반명함, 상반신, 전신)을 촬영하여 보호관찰정보시스템(K-PIS) 및 위치추적시스템  
(U-Guard)에 등록  
 - 신고 후 시간이 경과 하면 피부착자의 헤어스타일 등 용모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대상자의 용  
모 변화가 확인될 경우 재촬영하여 위치추적시스템(U-Guard)에 등록  
• 부착장치-발목 간격이 규정에 맞게 체결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재택감독장치의 설치 예정 일시 등   
고지**

[업무매뉴얼]->[전작감독 Q&A ]->[전자감독]->대상자 정보를 보호관찰정보시스템(K-PIS)에 입력하는 것과는 별도로 위치추적시스템(U Guard)에도 등록해야 하는지?  
  
**• 보호관찰정보시스템(K-PIS)에 등록한 대상자의 기본적인 정보는 위치추적시스템(U-Guard)에 그대로 적  
용됨. 다만, 위치추적관련 사항(접근·출입금지구역 설정, 외출제한 설정, 재택위치 설정 등)은 위치추적시  
스템(U-Guard)에 별도로 설정하여야 함**

[업무매뉴얼]->[전작감독 Q&A ]->[전자감독]->피부착자가 개인 사생활, 인권침해 등을 주장하며 출장 면담, 통신지도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불만을 제기하는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 보호관찰 및 부착명령의 법적 성격은 보안처분으로서 개인의 사생활을 제한하는 측면이 있지만, 대면 지 도감독 내지 통신지도 등의 지도감독 행위는 법률에 의한 정당한 집행이며, • 피부착자는「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제32조에 규정된 보호관찰 준수사항에 따라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 및 방문에 응대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신고 시부터) 교육하고, 계속하여 불만을 제기할 경우 지도감독 불 응으로 경고하고 및 구성요건 충족 시 엄정한 수사의뢰가 필요합니다.**

[업무매뉴얼]->[전작감독 Q&A ]->[전자감독]->보호관찰관이 외출제한 준수사항 미부과자에게 야간 귀가지도를 할 권한이 있는지?  
  
 **야간 귀가지도는 「보호관찰법」 제33조 등에 따라 야간시간대에 재범위험성이 높은 피부착자의 재범방지  
를 위해 자정 전·후 정당한 사유 없이 귀가하지 않는 피부착자를 대상으로 귀가를 독려하는 정당한 지도  
감독의 일환임   
<야간 귀가지도 근거>  
• 전자감독 대상자 중 형기종료 대상자는 「보호관찰법」에 따른 보호관찰을 받아야 하고 「전자장치부착법」   
제9조제3항, 「보호관찰법」 제32조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보호관찰법」 제32조제2항제3호에   
따라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따르고 방문하면 응대할 의무가 있음   
• 보호관찰관은 대상자의 재범을 방지하고 건전한 사회 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도감독을 실시하  
며, 「보호관찰법」 제33조에 따라 지도감독은  
 ① 보호관찰 대상자와 긴밀한 접촉을 가지고 항상 그 행동 및 환경 등을 관찰하고,  
 ② 보호관찰 대상자에게 제32조의 준수사항을 이행하기에 적절한 지시를 하며,  
 ③ 대상자의 건전한 사회 복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는 방법으로 실시  
• 감사원 감사보고서(‘19. 4.)  
 - 야간 외출자에 대한 귀가지도 미흡 지적   
• 국가인권위원회 결정사항(20-진정-0216100)  
 - 외출제한 준수사항이 부과되지 않은 대상자라 하더라도 정당한 사유없이 야간에 미귀가하는 사실에 대  
해 보호관찰관은 귀가지도를 할 권한과 의무가 있고 대상자는 지도감독에 따르고 응대할 의무가 있다고   
결정**

[업무매뉴얼]->[전작감독 Q&A ]->[전자감독]-> 외출제한 준수사항 미부과자가 야간 귀가지도에 순응하지 않을 경우 보호관찰관이 경고장을  
발부할 수 있는지?  
  
**• 귀가지도는 정당한 지도감독의 일환이지만, 일반 보호관찰과 달리 전자감독대상자에 대한 경고장 발부는   
형사처벌의 구성요건이 되므로 경고장 발부 요건을 신중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단순한 야간 귀가지도 거부 행위에 대해서는 경고장 발부를 지양하고, 야간 귀가지도를 통해 보호  
관찰관이 대상자의 재범위험성을 파악하여 준수사항의 추가 등을 통해 명확한 근거를 확보한 후 행동을   
통제하는 것이 바람직함  
 - 이는 음주제한 준수사항이 부과되지 않은 피부착자가 과음을 반복할 경우 보호관찰관은 1차적으로 음  
주를 삼갈 것을 적극 지도하고, 그 이후에도 행동의 변화가 없을 경우 관련 준수사항 추가 신청을 통해   
행동을 통제하는 것과 같음  
• 다만, 귀가지도 과정 중 욕설이나 고성 등 강한 저항, 폭력행위 등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경고장을 발부할   
수 있으며, 「전자장치부착법」 제39조제2항의 구성요건 충족 시 엄정히 대처하여 신속수사팀과 협업을 통  
해 현행범 체포 등 예외 없는 수사의뢰가 필요함**

[업무매뉴얼]->[전작감독 Q&A ]->[전자감독]->외출제한 준수사항 미부과자에 대해 수사의뢰 시 유죄선고가 되는지?  
  
 **외출제한이 부과되지 않은 피부착자가 경고장을 발부받은 상태에서 귀가지도를 반복적으로 불응하여 기  
소된 경우 유죄 선고를 받은 판례 및 무죄선고를 받은 판례\*가 모두 있으나, 단순 귀가지도에 불응한 경우  
에는 경고나 수사의뢰를 지양하고, 준수사항 추가 신청을 하는 것이 바람직함  
 \* 무죄선고 판례 요지 : 특별준수사항으로 부과될 사항까지도 모두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권의 범위에 포  
함하여 처벌할 경우 특별준수사항의 부과 주체(법원 등)나 절차를 따로 정한 보호관찰법의 취지에 반함**

[업무매뉴얼]->[전작감독 Q&A ]->[전자감독]->행동관찰이 필요한 경우 예시  
  
 **집에 반려견을 키우는 대상자가 등하교 시간대에 초등학교 인근을 배회하는 때에는 반려견을 이용  
하여 초등학생들의 관심을 유도, 주거지 등으로 유인하여 범행을 저지를 위험성이 있으므로 이러한   
행동양상을 보일 경우 등하교 시간대에 행동관찰 실시 필요  
• 혼자 원룸·빌라 등에 거주하는 여성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대상자의 경우, 출퇴근 시간 때를   
이용하여 운동을 가장, 원룸가 일대를 배회하며 피해자를 물색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피부착자가 원  
룸 등 주거밀집지역을 이유 없이 배회하는 때에는 현장 방문을 통한 행동관찰 필요**

[업무매뉴얼]->[전작감독 Q&A ]->[전자감독]-> 휴일 지원 수혜 기관 현재원이 응급진료, 정밀검사 등의 사유로 부착장치 일시분리를 원하는 경우,  
지원기관에서 처리를 해 주어야 하나요?  
  
**휴일 지원 수혜 기관의 현재원이 응급진료 등 비상상황 발생 시 지원기관에서 경보처리 등 조치를 처리하  
여야하나, 정밀검사 등 시간적 여유가 있고 충분히 예상 가능한 상황 발생 시 휴일 지원 수혜 기관에서 자  
체 처리하여야 합니다**

[업무매뉴얼]->[전작감독 Q&A ]->[전자감독]->외출제한이 부과된 피부착자가 재택 중임에도 외출·귀가 정보가 반복되거나 신호실종 경보 발생 시 대처방법은?  
  
**• 특정 시간대에 집중하여 경보가 발생된다면 현지출장, CCTV 열람 등을 통해 외출 여부를 면밀하  
게 파악해 볼 필요성 있음  
 • 외출하지 않음에도 경보 발생이 빈번한 경우, 재택감독장치의 설치 환경 문제일 수 있으므로 재설  
치 또는 장치 교체   
 ※ 밑판이 단단하게 고정되어 있지 않은 재택장치를 가방에 넣은 뒤 외출하여 휴대용 보조배터리  
로 전원을 공급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므로, 장치 점검 시 반드시 고정 여부 확인 필요**

[업무매뉴얼]->[전작감독 Q&A ]->[전자감독]->주거지역 제한 감독 시 주의사항  
  
**• 주거는 사람이 생활을 영위하는 장소를 지칭하는 것으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2호의2의 주거지역의 제한이 일상생활에서의 지역 이동을 제한하는 것이 아님  
• 법원에서 주거지역의 제한 준수사항 부과 시 거주지를 벗어나 여행을 할 경우에 담당 보호관찰관에  
게 신고하고 허락을 받도록 한 사항도 점심식사, 은행방문 등 일상생활에서의 일시적 외출까지 제한  
하는 것은 아님  
 ※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3항은 7일 이상 국내여행 시 보호관찰관 허가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전자보석의 경우 3일 이상 여행 시 신고하도록 규정  
• 주거를 옮기거나 여행목적이 아닌 일상생활에서의 일시적 외출의 경우 피해자에 대한 접근 여부 등  
을 지도·감독 차원에서 확인하면 되고, 통상적으로 준수사항 일시조정을 할 필요성은 없음**

[업무매뉴얼]->[전작감독 Q&A ]->[전자감독]->신속수사팀 단독으로 ‘음주제한 준수사항’ 점검 가능 여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전자감독 집행을 전담하는 전담보호관찰관과 「특별사법  
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등을 근거로 한 ‘특  
별사법경찰’의 업무·역할은 명확히 구분되고,   
• 음주측정 점검 결과 음주 사실이 확인되지 않거나 음주 수치가 제한된 기준에 현저히 미달되는 경  
우 수사권 남용에 대한 비판의 소지가 있으므로 음주제한 준수사항 점검은 원칙적으로 전담보호관  
찰관이 실시**

[업무매뉴얼]->[전작감독 Q&A ]->[전자감독]->신속수사팀의 음주 측정 불응 시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따를 것’ 위반 해당 유무  
  
**신속수사팀의 경우 보호관찰관 또는 소속 전담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보호관찰관의 음주제한 점검   
지시에 따를 것’,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따를 것’ 적용 불가**

[업무매뉴얼]->[전작감독 Q&A ]->[전자감독]->불명확한 내용은 준수사항 점검과 위반 시 처벌 가능 여부  
  
**• 모호한 내용의 준수사항의 경우 보호관찰관이 지속적으로 지도감독을 실시하고 서면으로 그 내용  
을 충분히 고지한 경우 준수사항 점검 및 위반 시 처벌이 가능하다고 볼 여지도 있으나, 점검 기준  
이 모호하거나 내용이 불명확한 준수사항은 적극적으로 준수사항 변경 신청 필요**

[업무매뉴얼]->[전작감독 Q&A ]->[전자감독]-><준수사항 일시 조정 신청서 검토 등 방법  
  
**• 원칙적으로 피부착자가 사전에,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응급치료 및 중요한 업무상 출장 등 정  
당한 사유가 있어야 허가됨을 고지  
• 피부착자로부터 일시 조정 필요 사유를 세부적으로 작성토록 하고, 필요 시 증빙서류로 함께 제출   
지시  
• 위치추적시스템(U-Guard) 입력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허가받은 피부착자가 준수사항 위반으로   
처리되는 일이 없도록 함  
• 일시 조정 허가 후 감독정지 사유가 소멸한 때에는 위치추적시스템(U-Guard)에서 감독정지를 반드  
시 해제**

[업무매뉴얼]->[전작감독 Q&A ]->[전자감독]->체포 또는 구속영장 집행 전까지의 유의사항  
  
 **피부착자가 체포 또는 구속영장 집행 이전 유치장 등에 유치된 경우에는 경찰관 등에게 전자장치   
충전 등 관리될 수 있도록 협조 요청**

[업무매뉴얼]->[전작감독 Q&A ]->[전자감독]->대상자가 수술이 예정되어 있고 수술 후 2일 정도 입원을 하여야 하는 상황인데, 입원 시  
피부착자임이 밝혀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이유로 입원 기간 내내 일시분리를 요청하는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장치 소지 및 충전으로 인하여 피부착 사실이 노출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 사실이나, 개인 차원의 사생활   
비밀과「전자장치부착법」을 통해 보호되는 국민의 법익을 비교할 때 피부착자가 감내할 수밖에 없는 상황  
임을 설명하여 이해하도록 해야 합니다**

[업무매뉴얼]->[전작감독 Q&A ]->[전자감독]->현행 지침에서는 형 집행이나 의료적 치료 등으로 필요한 경우 일시분리가 가능하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실무 상에서는 온천 프로그램 집행이나 본인의 결혼, 면접 등 다양한 상황에서 일시분리가  
필요하기도 한데, 이런 경우는 지침에서 벗어난 집행이 되는 건가요?  
  
**위법한 집행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시행령 제10조제1항(그 밖에 전자장치를 일시 분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따라 보호관찰소장의 승인을 얻어 일시분리가 가능합니다**

[업무매뉴얼]->[전작감독 Q&A ]->[전자감독]->피부착자가 고의적으로 전자장치를 손괴하여 이에 따른 배상청구를 하였는데, 무자력이라고 주장  
하며 장기간 배상하지 않는 경우  
  
**• 민사 차원의 문제, 민사 상 손해배상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이므로, 시효 완성 전 내용증명 우편   
발송 등을 통한 추심의 의사 표시로 시효를 중단하는 조치가 지속적으로 필요  
 • 지급명령 신청 또는 (가압류 신청) 소송제기 방법을 통해 강제 집행이 가능하나, 현실적으로 일선   
기관에서 해당 업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것이 현실  
 • 가능한 위 중단 조치와 구두 독촉을 병행하여 빠른 시일 내에 손해를 전보 받을 수 있도록 면담   
시 적극적으로 지도   
 ※ 다만, 실제 무자력임이 명백한 경우는 시행지침 규정에 따라 청구하지 않을 수 있음**

[업무매뉴얼]->[전작감독 Q&A ]->[전자감독]->피부착자에 대한 출국허가 요건은 무엇이며 출국 후 당초 신고한 일자에 천재지변 또는 일정 변경  
등의 사유로 입국하지 못하였을 경우 기간 산입 부분은 어떻게 처리하여야 하나요?  
  
 **관계 법령에 의해 출국이 금지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피부착자에게도 기본권으로서 출국의 자유가 보장되  
므로, 이에 따라 보호관찰소장의 허가도 기속 재량행위로서의 성격을 갖게 됩니다.  
 따라서 단순 관광, 해외 사업 등의 사유로 신청을 하는 경우에도 준수사항 이행 태도가 양호하고 시행지  
침 상의 불허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허가를 해 주어야 합니다.  
• 국외 체류 중 사정변경으로 당초 정한 시기에 귀국하지 못하는 경우 e-mail 등의 방법으로 정당한 사유에   
대한 소명을 받은 뒤 1회에 한해 최장 3개월 간의 연장 체류할 것을 허가할 수 있으며,  
• 미입국 사유에 관계없이 미입국 기간 동안 부착기간에 산입하여야 하나, 그 사유가 기상악화 및 중대한 질  
병치료 등의 천재지변(불가항력적인 사유)으로 입국이 늦어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 제14조의2에 따라 기  
간 연장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부착명령을 회피할 수단으로 보호관찰관에게 거짓으로 신고하여 계속적으로 해외에 체류한 경우에도   
기간에 산입하여야 하나, 법률 제14조의2에 따라 1년의 범위에서 부착기간 연장 신청 및 재출국을 불허  
할 수 있음**

[업무매뉴얼]->[전작감독 Q&A ]->[전자감독]->. 현행 지침에는 대상자의 해외여행 시 소명자료를 제출하면 출국을 허가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실무상에서는 업무 등 특정한 사유로 한정하는 경향이 있는데, 단순한 여행도  
해당 사유가 될 수 있나요?  
  
**• 「전자장치부착법 시행령」 제12조 및 「전자장치부착법 시행지침」제27조에 따라 기간 중 준수사항 이행 태  
도 및 소명자료 제출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재량적으로 허가가 가능한 사안입니다**

[업무매뉴얼]->[전작감독 Q&A ]->[전자감독]->생업 종사 목적으로 허가를 받아 출국한 피부착자가 허가기간 중 퇴사하여 재취업 및 단순 여행  
목적 등으로 남은 허가 기간 또는 기간을 연장하여 해외에서 체류 가능한 지 여부  
  
**잔여기간 또는 기간 연장 체류 가부에 대한 보호관찰관의 판단이 필요, 통신 지도를 통해 필요한 정  
보를 획득한 후 허가 여부를 결정하되, 연장 허가 시 1회에 한하여 최장 3개월 이내의 범위로 한정  
• 일반 가석방 전자감독대상자 및 전자보석대상자는 출국 전날 또는 출국일에 보호관찰소에 출석하  
여 분리, 입국 시 지체없이 보호관찰소에 출석하여 전자장치 부착   
 ※ 전자보석 대상자는 법원의 출국허가서 사전 확인 필요**

[업무매뉴얼]->[전작감독 Q&A ]->[전자감독]->피부착자가 해외 이민이나 유학을 가는 경우에 출국 허가 및 사후관리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현실적으로 성범죄자들에 대하여 비자발급이 제한되는 국가가 다수 있어 이민 및 유학이 쉽지 않으나, 실  
제 비자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시행지침에 따라 출국 절차를 진행합니다.  
• 따라서, 종료일까지 3개월 범위 내로 허가기간을 제한하여 입국 시 감독을 재개하고 출국 시 일시분리 처  
리를 반복하되, 관련 지침의 ‘특별한 사정’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 타국으로의 정착, 유학 중 학사 기간 변동 등을 사유로 1회에 한하여 3개월까지 허가기간 연장 가능   
 ※ 이민을 통해 국적이 바뀐다고 해서 부착명령 집행을 면제받는 것이 아님에 주의**

[업무매뉴얼]->[전작감독 Q&A ]->[전자감독]->전자감독 대상자 이송 관련 내용 해석 및 사례  
  
 **원칙적으로 피부착자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에서 사건을 담당하여야 하며, 피부착자가 일  
정한 곳에 정주 의사를 가지고 머물러 살고 있는 곳이 주거지임  
• 사건의 이송은 부착명령 개시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수용 전후 또는 수용 중 주민등록지의 변경은   
사건 이송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피부착예정자의 귀주 예정지에 따라 관할이 정해짐. 단, 피부착예  
정자의 귀주 예정지가 변경 시 수용기관으로부터 공문 수신하여 처리함  
• 「전자장치부착법」제14조제3항에 따라, 피부착자는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 보호관찰관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므로 ‘특별한 경우’에 제한이 가능하다고 해석할 수 있으나, 거주이전의 자유는 헌법에 보  
장된 기본권으로 피부착자의 주거이전에 대한 의사는 존중되어야 함  
• 사례1 : 피부착예정자의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보호관찰소에서는 피부착예정자의 귀주 예정지 주거  
지가 변경되면 변경된 주소의 관할 기관으로 이송  
• 사례2 : 조현병 등 중중 정신병으로 피부착자가 출소하자마자 출소 전 관할 기관과 다른 지역에 있  
는 (폐쇄)병원에 입원한 경우, 출소 전 사건을 담당하던 기관에서 계속 담당하되 필요시 현재지 관할   
기관과 협의 후 공조 집행 등 실시**

[업무매뉴얼]->[전작감독 Q&A ]->[전자감독]-><이송처리 시 보호관찰정보시스템(K-PIS) 및 위치추적시스템(U-Guard) 시스템 운영 절차>  
  
**• 구주거지 전담보호관찰관 보호관찰정보시스템(K-PIS) 이송 종료 → 구주거지 관찰행정 보호관찰정  
보시스템(K-PIS) 사건 송신 → 신주거지 관찰행정 보호관찰정보시스템(K-PIS) 사건 수신 → 구주거  
지 전담보호관찰관 위치추적시스템(U-Guard)/상황관리/위치추적 종료 → 신주거지 전담보호관찰관   
측위 정보 정상 여부 확인**

[업무매뉴얼]->[전작감독 Q&A ]->[전자감독]-> 신상 공개/고지 피부착자의 경우 전입된 주소와 실거주지가 다른 경우가 많은데, 전입신고 요건 미비를 이유로  
사건이송수신을거부하는경우  
  
**• 7일의 대기기간을 활용하여 해당 기간 동안 상시 공조 체제 유지 후 실 거주지 확인 및 사건 이송   
처리**

[업무매뉴얼]->[전작감독 Q&A ]->[전자감독]->피부착자가 다른 기관의 범죄예방팀 근무자로부터 현지출장 지도를 받는 것에 대한 강한 불만을  
제기하는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 보호관찰소에서는 피부착자의 전자장치 효용 유지를 위해 24시간 상시 근무체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관외   
지역에 체류 시에는 타 기관의 상시 공조 처리가 가능함을 충분히 이해시키고,  
• 초기 신고 단계부터, 모든 보호관찰소 소속 직원이 국가기관의 행위로서 피부착자를 지도감독할 수 있으  
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를 의무가 있음을 주지시켜야 합니다.  
 ※ 여행허가 시 교육을 통해 관외 지역에서 경보가 발생하거나, 장치점검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보호  
관찰소 직원의 전화, 방문 등 지도감독에 순응할 것을 고지함**

[업무매뉴얼]->[전작감독 Q&A ]->[전자감독]-> 피부착자가 교도소 출소 시각과 비교하며 부착명령 종료일 24시에 장치를 탈착하는 것에 대해 강하  
게 반발하는 경우  
  
 **• 교도소 수용의 경우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률」제123조에 따라 형기종료와 석방의   
개념을 구분하고 있으며, 제124조에서는 석방을 형기종료일에 행하는 것으로 규정  
 • 이에 비해 「전자장치부착법」제20조에서는 부착명령 기간이 경과한 때에 집행이 종료된다고 규정,   
당일 24시에 탈착하는 것은 정당한 업무 집행**

[업무매뉴얼]->[전작감독 Q&A ]->[전자감독]->경보처리를 위한 피부착자와의 통화 시 직원에게 욕설, 협박 등을 하는 경우 어떻게 대처하여야  
하나요?  
  
**• 폭언 및 욕설 등의 행동이 문제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음을 알려 피부착자를 진정시킴과 동시에 차분히 대  
화를 유도하고,  
• 형사처벌의 가능성을 사전 고지하며 폭언행위를 중단하도록 3회 이상 엄중 지시합니다.   
• 계속적으로 폭언이 이어지는 경우 통화 내용을 녹음하여 증거 자료로 확보한 뒤 차후 수사 의뢰할 수도   
있습니다.  
 ※ 피부착자에게 욕설을 하거나 무시하는 발언 등으로 맞대응 하지 않도록 주의**

[업무매뉴얼]->[전작감독 Q&A ]->[전자감독]->경제적인 자활 능력 및 일정한 주거지가 없는 외출제한 부과 피부착자가 보호관찰관의 숙소지원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담안선교회 등)을 거부하면서 노숙을 하겠다고 주장하는 경우, 어떤  
방식으로 집행해야 하나요?  
  
**• 피부착자가 일정한 주거 없이 노숙을 시작할 경우 환경적 요인 및 범죄 기회 선택에 의한 재범위험성이 극 대화되므로 위험 요인을 제거하는 방식으로 지도감독을 실시하여야 하며, 숙소 지원이나 프로그램(여관에 서의 목욕 체험 프로그램) 등을 최대한 활용하여 일정한 주거지에 상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에 적합한 지도를 실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 같은 기간 동안 외출제한 감독은 정지 처리하되, 위의 취지에 따라 노숙을 방치하거나 준수사항의 변경 또 는 삭제 신청을 하는 것은 최대한 지양하여야 합니다**

[업무매뉴얼]->[전작감독 Q&A ]->[전자감독]->경보발생 시 관제센터 조치내용  
  
**• 관제센터는 출입금지 위반지역 진입 경보 발생 시 측위정보를 통해 이동 여부를 확인하고, 일정시간   
동안 피부착자가 이동 없이 해당 구역에 머무르거나 이동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P, C측위의 지속 발  
생 등으로) 피부착자와 통화하여 사유를 확인한 후 이동을 지시함  
• 피부착자와 연락되지 않는 경우, 피부착자가 이동 지시에 불응한 경우, 일정 시간 동안 이동이 확인  
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관 조치함  
 ※ (이관 시 CCTV 활용) ①최종 측위지 인근 CCTV로 현장 확인 ②과거 영상 조회로 위반 사실 확  
인 ③CCTV 확인 내용을 보호관찰소에 통보**

[업무매뉴얼]->[전작감독 Q&A ]->[전자감독]->직장이나 주거지 부근에 출입금지 구역이 설정되어 있어 관제센터 및 전담직원으로부터 두차례  
이상 전화를 받는 것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는 경우 어떻게 대처하여야 하나요?  
  
**• 관제센터에서는 경보 발생 시 1차로 경보를 처리하기 위하여 전화를 하며, 이후에도 경보가 처리되지 않는 등 보다 정확한 확인이 필요할 경우 보호관찰관에게 경보를 이관하며, 보호관찰관은 피부착자 위치확인, 장치점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전화하고 있음을 설명합니다. • 또한 경보를 처리하기 위한 보호관찰관의 정당한 업무임을 설명하고 보호관찰관의 지시에 따라야할 의무 가 있음을 고지합니다. • 다만, 직장 및 주거지 인근에 출입금지 구역이 설정되어 있어 실제 위반이 아님에도 경보가 높은 빈도로 발생하는 경우에는 현장 확인 후 출입금지 완충지역 범위를 조정하거나 특별관제 신청을 통해 전담직원이 직접 처리하도록할 수 있습니다**

[업무매뉴얼]->[전작감독 Q&A ]->[전자감독]-> 주거지(재택설치)에 있는데 지속적으로 신호실종(음영지역) 경보가 발생하여 범죄예방팀의 현장  
출동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는 경우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 외부 충격에 의해 내부기판이 손상되거나 통신 환경에 따라 시스템상 오류가 발생할 수도 있음을 고지하  
고 또한 법무부에서는 장치의 내구성을 보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을 설명한 후 장치 점검에 순  
응할 것을 지도합니다.  
• 그럼에도 계속해서 불응할 시에는 법률 제14조제1항의 피부착자의 의무사항 위반으로 형사처벌될 수 있음  
을 고지하여야 합니다.  
 ※ 신호실종 시 피부착자에게 “신호가 잡히지 않는다는” 표현은 쓰지 않도록 주의**

[업무매뉴얼]->[전작감독 Q&A ]->[전자감독]->Q. 피부착자가 “밤에 잠을 자는데 발찌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진동이 온다, 내가 무슨 잘못을 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보호관찰소에서 시도 때도 없이 감시하는 것 아니냐?”며 항의하는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외부 충격에 의해 내부기판이 손상되거나 통신 환경에 따라 오류가 생길 수도 있음을 설명하고 기능 이상  
이 의심되는 상황일 경우에는 장치 점검을 하되,  
• 범죄예방팀에서는 측위 및 장치 정보 자체를 상시 모니터링하는 것이지 아무런 이유 없이 모든 상황을 감  
시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음을 설명하면 되겠습니다.  
 ※ 실제로 장치 이상이 없음에도 진동이 울린다며 악성 민원을 제기하는 사례도 있음에 주의**

[업무매뉴얼]->[전작감독 Q&A ]->[전자감독]->피부착자가 오작동으로 추정되는 전자장치 훼손 경보 발생 및 복원 정보 생성으로 인한 장치의  
진동 등 불편함에 대해 전담직원에게 강하게 항의할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외부 충격에 의해 내부기판이 손상되거나 통신 환경에 따라 시스템상 오류가 생길 수도 있음을 설명하고, 지속될 시 장치를 점검하여 교체할 수 있음을 고지합니다. 또한 교체한 장치는 장치의 오류 등의 원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정밀검사 의뢰됨을 설명합니다. • 다만, 장치 점검에 불응하거나 장치교체 후에도 지속적으로 고의적 불만 제기 시에는 법률 제14조제1항의 의무사항 위반으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됨을 고지하여야 합니다**

[업무매뉴얼]->[전작감독 Q&A ]->[전자감독]->가족, 지인 등이 피부착자의 현재 측위지에 대해 문의하는 경우 어떻게 응대하여야 하나요?  
  
**• 피부착자의 현재 측위지 정보는 전자장치부착법에 따라 수사, 재판자료와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 목적 외  
에는 공개할 수가 없으며, 위반 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고지합니다.  
• 다만, 정신질환 등을 앓고 있는 피부착자가 가출하여 장시간 보호를 받지 못하면 생명이 위험할 수 있는   
상황 등 급박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업무매뉴얼]->[전작감독 Q&A ]->[전자감독]->다수 부착사건이 존재하는 대상자의 개시 심리치료 프로그램 추가 집행 여부  
  
**• 다수의 부착명령을 부과받은 대상자의 경우 부착명령이 한 건인 대상자보다 재범위험성이 상대적으 로 높다고 판단될 수 있으며, 재범위험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담당 보호관찰관의 의견 외 면담을 통해서는 알 수 없는 대상자의 심리상태 등 파악 또한 중요 • 3개월간 심리평가 및 개별상담을 통해 대상자의 제반 재범위험요인을 파악하는 등 재범 방지를 위 해서 개시 심리치료 프로그램 추가 집행은 필요함**

[업무매뉴얼]->[전작감독 Q&A ]->[전자감독]->피부착자가 교도소에서 특정범죄 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보호관찰소  
프로그램 참여를 거부하는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 법률 제9조의2(준수사항)에 따라 부착명령 선고 및 결정 시, 준수사항으로 500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특정  
범죄 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준수사항은 부착명령 개시 이후에만 의미가 있는 것이므로 판결문의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문구 기재   
여부와 관계없이 출소 이후 보호관찰소에서 별도의 프로그램을 집행하여야 합니다.  
• 교정기관에서 치료 프로그램을 이수받은 것은 준수사항과 무관하게 수형자 교화 대책의 일환으로 실시된   
것이며, 특정범죄 치료 프로그램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 다만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또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으로 부착명령과 별도  
의 이수명령을 병과받은 경우에는 교정시설의 장이 집행하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관련 법률 규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제6항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제6항」  
•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은 징역형 이상의 실형과 병과 된 경우에는 교정시설의 장이 집행한다. 다  
만,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모두 이행하기 전에 석방 또는 가석방되거나 미결구금일수 산입 등의   
사유로 형을 집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보호관찰소의 장이 남은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집행  
한다**

[업무매뉴얼]->[전작감독 Q&A ]->[전자감독]->위치추적 미실시형 전자보석대상자가 신호실종, 저전력 상태에서 전화연락을 받지 않아  
소재불명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전자장치 기능을 유지하도록 지시하기 위해 유가드로 측위지  
확인을 할 수 있는지  
  
**위치추적 미실시형 전자보석대상자의 경우 신호실종, 저전력 상태라는 이유로 위치추적을 실시할 수 없고,   
지정조건 이행 여부를 확인 후 위반 사실이 있을 경우 법원·검찰에 통보하면 됨  
 다만, 보호관찰관이 전자장치 기능 유지 및 보석조건 이행 지시를 위한 대상자의 측위지 확인이 가능함  
※ 보호관찰관은 보석조건 이행여부 확인을 위해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할 의무가 있고(「전자장치부착법」  
제31조의3의 3항), 대상자는 전자장치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충전 등 관리하고, 전자  
장치 기능 유지를 위한 보호관찰관의 정당한 지시에 따를 의무가 있음(「전자장치부착법 시행령」제23조  
의5제2항제1호)**

[업무매뉴얼]->[전작감독 Q&A ]->[전자감독]->전자보석대상자의 전자장치 훼손·이탈 경보 이관 시 조치 방법은  
  
**영상통화로 훼손·이탈 상황 확인 불가한 경우 현지출장을 통해 확인함. 훼손이 확인되면 지체 없이 법원·  
검찰에 보석조건위반 통지하고, 전자장치를 손괴한 경우 손해배상 청구와 수사의뢰 실시. 보석취소 결정   
시 사건 종료함**

[업무매뉴얼]->[전작감독 Q&A ]->[전자감독]->전자보석대상자의 전자장치 훼손 시 전자감독 신속수사팀에게 경보이관, 출동 등 조치가  
필요한지?  
  
**전자보석대상자의 장치 훼손 사건은 전자감독 특별사법경찰관의 수사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업무매뉴얼]->[전작감독 Q&A ]->[전자감독]->전자보석대상자의 전자장치 훼손 후 도주·잠적한 경우 경찰에서 수신자료를 요청했는데 이를  
제공할 수 있는지?  
  
 **현행 「전자장치부착법」 에는 보석 대상자의 전자장치 훼손 후 도주 관련 수신자료 제공 근거 규정이 없음.   
다만, 압수수색 영장으로 수신자료 열람·조회 가능함**

[업무매뉴얼]->[전작감독 Q&A ]->[전자감독]->전자보석 지정조건 중 주거제한과 외출제한의 차이점은?  
  
**‘주거제한’은 법원이 정한 주거지에서 생활하며 3일 이상 여행 시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귀가  
정보를 확인하여 3일 이상 미귀가 시 법원에 지정조건 위반 통보를 하고, ‘외출제한’은 법원이 정한 특정한   
시간대에 외출을 제한하는 것으로 이를 위반 시 법원에 이행상황 통보 실시하면 됨**

[업무매뉴얼]->[전작감독 Q&A ]->[전자감독]->. 전자보석대상자가 이사해야 한다고 보호관찰관에게 연락이 온 경우 취해야 할 조치는?  
  
 **주거지 제한이 있는 대상자의 경우 법원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하기에 대상자가 법원에 주거지 변경 신  
청을 하도록 안내하고, 이후 주거지 변경을 허가한 결정서 접수 후 신주거지로 이송처리 함. 다만, 법원이   
보석 결정 시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주거지 변경 권한을 위임한 경우는 주민등록표 등 증빙자료 확보 후 이  
송처리함**

[업무매뉴얼]->[전작감독 Q&A ]->[전자감독]->전자보석대상자의 소재가 확인이 안 될 때 주말이나 야간이라도 법원과 검찰에 이행상황통지를  
해야하는지?  
  
**• 「전자장치부착법 시행령」제23조의7의 제1항제6호에 따라 법원과 검찰에 지체없이 위반사항을 통지해야하  
는 만큼, 당직을 통해서 이행상황통지를 해야 함**

[업무매뉴얼]->[전작감독 Q&A ]->[전자감독]->전자보석대상자가 전자장치 충전 지시에도 불구하고 충전에 불성실하여 저전력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보호관찰대상자가 아니라 지도감독을 할 수 없어 집행에 어려움이 있음  
  
**• 전자장치 충전에 불성실하여 상습적으로 저전력이 발생한다면, 「전자장치부착법 시행령」제23조의7의 제  
1항제3호에 따라 전자장치의 효용 유지를 위해 필요한 보호관찰관의 정당한 지시에 따르지 않는 경우라   
할 수 있는 만큼, 법원·검찰에 보석조건 위반통지를 할 필요가 있음**

[업무매뉴얼]->[전작감독 Q&A ]->[전자감독]->전자보석대상자의 지정조건으로 ‘3일 이상 여행을 하는 경우 미리 법원에 신고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을 것’이 부과되었는데 3일 이상의 기산점은 언제부터인지  
  
**「민법」 제157조, 「형사소송법」 제66조에 따라 초일은 산입하지 않음. 예를 들어 7. 1. 09:00 경부터 외출 후   
여행할 경우 기산점은 7. 2.로 7. 4.이 3일이 되며 이후에도 법원의 허가 없이 여행이 지속될 경우 보건조건   
위반이 될 수 있음**

[업무매뉴얼]->[전작감독 Q&A ]->[전자감독]->전자보석대상자가 전자장치 훼손 시 처벌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은  
  
**전자장치를 훼손한 피고인에 대해 현행 규정으로도 처벌 등(「형법」상 공용물건손상, 「형사소송법」상 과태  
료 및 감치) 가능하고, 보석조건을 위반할 경우 재판 결과(양형 등)에 반영 가능**

[업무매뉴얼]->[전작감독 Q&A ]->[전자감독]->전자보석대상자의 보석취소결정 없이 징역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되었을 경우 종료 절차는?  
  
**전자보석대상자의 자유형이 확정\*되면 구속영장 효력이 실효되어 보석 종료 사유에 해당 됨. 검찰로부터   
‘형사재판 확정 증명서’ 등 형 확정 증빙서류 확보 후 종료  
\* 형확정 시기   
 - 불복 수단이 없는 재판 : 대법 판결은 선고 시 형 확정. 대법 결정은 송달 시 확정(2012모576)   
 - 불복 수단이 있는 재판 : 상소 기간 경과 시, 항소·상고 취하 및 포기 시**

[업무매뉴얼]->[전작감독 Q&A ]->[전자감독]->법정구속되지 않은 대상자가 보석조건 위반으로 보석취소 시 종료 절차는?  
  
 **보호관찰관은 보석취소 결정문 접수 후 「전자장치부착법」 제31조의5제2호에 따라 전자장치 분리 후 종료 함   
 다만, 피고인의 소재불명 상황을 대비하여 보석취소에 따른 전자보석 종료 전 주거지 관할 검찰청에 종료   
일정 통보할 수 있음  
 검찰은 피고인에 대해 지명수배 등을 통해 피고인 검거 후 재수감**

[업무매뉴얼]->[전작감독 Q&A ]->[전자감독]->전자보석 기간이 정해진 것이 있는지? 구속기간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전자보석 법원이 구속된 피고인을 조건을 붙여 구속의 집행을 정지하고 석방하는 제도로 전자보석 기간  
이 있는 것은 아님. 전자보석 기간 중 구속영장의 효력이 실효되는 것은 아니며, 보석기간은 구속기간에   
산입되지 않음**

[업무매뉴얼]->[전작감독 Q&A ]->[전자감독]->외출제한이 부과된 전자보석대상자가 지속적인 외출허가를 요청하고 있음. 보호관찰관이 외출을  
허가할 수 있는지  
  
**• 법원이 정한 조건이 달라 정한 조건에 따라 집행하는 것이 원칙이나 통상적으로 전자보석대상자가 보석조  
건으로 외출제한이 있는 경우 미리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함. 다만, 예외적으로 건강상 이유로 등 긴급한   
경우 보호관찰소장의 허가를 받아 외출을 허가할 수 있음  
• 반복적인 외출을 요청하는 경우 「형사소송법」제102조에 따라 피고인, 피고인의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  
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가족, 동거인 또는 고용주는 법원에 보석조건 변경을 신청할 수 있음을 안내하는   
것이 바람직함**

[업무매뉴얼]->[전작감독 Q&A ]->[전자감독]-> 전자보석 집행 중 전자보석대상자가 별건으로 구속되었을 때 조치 방안은  
  
**별건 구속은 전자보석 종료사유에 해당되지 않은 만큼, 종료할 수 없으며 집행이 정지되어 전자장치를   
분리하고 구금해제 결정에 대비하여 수용기관의 장에게 보석으로 인한 전자장치 부착이 필요한 사람임을   
통지하고, 수시로 재판 진행 상황을 확인하여 보호관찰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함. 법원에 이행상황통보를 통  
해 대상자의 상황을 전달하고 보석 취소 결정이 있을 경우 종료함**

[업무매뉴얼]->[전작감독 Q&A ]->[전자감독]-> 전자보석대상자의 출국이 가능한지? 출국 시 절차는?  
  
**법원의 출국허가가 있을 경우 출국이 가능. 출국일(오전 출국 시 전일 오후)에 보호관찰소 출석 후 분리,   
입국 시 지체 없이 보호관찰소에 출석하여 전자장치 재부착함(’22. 10. 21. 업무연락)**

[업무매뉴얼]->[전작감독 Q&A ]->[전자감독]->전자보석대상자의 출국금지를 할 수 있는지?  
  
 **「출입국관리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형사재판에 계속 중인 사람은 출국을 금지할 수 있음. 따라서 「전  
자장치부착법 시행지침」제48조의2에 따라 부착개시 후 지체없이 위치추척중앙관제센터장에게 출국 금지   
등 요청서 송부하여야 함. 단, 검찰에서 출국금지를 기 신청한 전자보석대상자의 경우 제외**

[업무매뉴얼]->[전작감독 Q&A ]->[전자감독]->전자보석대상자의 MRI 촬영 등 치료를 위한 일시분리 절차는?  
  
**전자보석대상자의 MRI 촬영 등 치료를 위해 전자장치 분리가 불가피한 경우 준용 규정(제74조제4항)에 따  
라 보호관찰소에서 일시분리 및 재부착(’22. 10. 21. 업무연락)**

[보호관찰 통계 보고(보호관찰과)]->[보호관찰 통계 용어 설명]->[통계]->보호관찰 통계 업무 시 사용하는 통계 용어가 어떻게 되는지?  
  
**1. 신수 : 당해 연도 1월 1일부터 통계 작성 기준 월의 말일까지 접수된 인원과 사건수를 의미하며, 통계를 산출하는 당해 월에 접수된 인원 및 사건수와 통계를 산출하는 당월과 전월까지의 누계는 구분  
2. 구수 : 통계 작성 기준 연의 전년도에서 이월된(전년 12월분 통계의 현재원) 인원  
3. 이입 : 당해연도 1월 1일부터 통계 작성 기준 월의 말일까지 타 보호관찰소에서 이송된 인원  
4. 실시사건 : 전년도 12월 말 현재원(구수)에 당해 연도에 접수된 신수와 이입된 사건의 누계를 합산한 수치  
5. 접수사건 : 당해연도 1월 1일부터 통계 작성 기준 월의 말일까지 신수와 이입 사건을 합산한 수치  
6. 현재원 : 당해연도 1월 1일부터 통계 작성 기준 월의 말일까지 실시사건에서 종료자 수를 제외한 수치**

[보호관찰 통계 보고(보호관찰과)]->[통계상 재범 확정 시기]->[통계]->통계상 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범이 확정되는 시기는?  
  
**보호관찰 기간 중 검사의 종국처분 시**

[보호관찰 통계 보고(보호관찰과)]->[통계상 재범 제외 사건]->[통계]->재범 통계 산출 시 제외해야할 사건은?  
  
**1. 검사의 불기소 처분, 구약식 사건, 여죄 사건, 범죄일시가 군법 피적용 기간 중 발생한 사건  
2. 보호관찰관의 적극적인 업무수행 중 인지한 범죄사실에 대해 직원의 수사의뢰로 재범이 확정된 다음의 사건  
 - 전자감독대상자 효용유지의무 위반 및 준수사항 위반 사건  
 - 약물검사 실시 결과 양성판정 사건  
 - 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 사건**

[검사 종국처분 전 기간만료자 처리 기준(2012, 보호관찰과)]->[검사의 종국처분 이전 보호관찰 기간 종료]->[통계]->보호관찰 대상자가 보호관찰 기간 중 재범하여 검사의 종국처분 이전에 보호관찰 기간이 종료되면 어떻게 처리하는지?  
  
**보호관찰 기간 종료 후 6개월이 경과되면 전산 종료 처리함**

[보호관찰 통계 담당직원 교육자료(2017, 보호관찰과)]->[이송처리된 사건의 실시사건 산정 여부]->[통계]->판결정문 접수 후 20일 후 이송을 갔을 때 이송 전 판결문 접수기관에도 실시인원으로 산정되는지?  
  
**판결정문 접수만 하고 실제 보호관찰을 집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사건번호가 이미 부여되었기 때문에 실시사건으로 산출됨**

[보호관찰 통계 담당직원 교육자료(2017, 보호관찰과)]->[개시 이전 전자감독 대상자의 실시사건 산정 여부]->[통계]->전자감독 대상자 중 킥스 상 현재원으로 출력되지만 보호관찰 개시 이전인 위치추적 실형집행 중인 자도 실시사건으로 산정되는지?  
  
**원칙적으로 실시사건으로 산정되지 않으나, 집행명령장이 발부된 소재추적자는 실제 부착 대상자가 아니지만 실시사건으로 산정됨**

[보호관찰 통계 담당직원 교육자료(2017, 보호관찰과)]->[검정고시 동영상, 교재 지원 금액의 원호 실적 포함 여부]->[통계]->검정고시 동영상, 교재 지원 금액이 검정고시 지원 코드를 이용, 경제구호 금액에도 포함되는지?  
  
**원호 분야의 금액에 산정됨**

[보호관찰 통계 담당직원 교육자료(2017, 보호관찰과)]->[월별 통계표의 구성]->[통계]->월별 통계표를 보면, 같은 항목이 두 줄인데 각각 어떤 수치를 의미하는지?  
  
**두 줄로 되어 있는 통계 값 중 윗줄은 금월 값이고 아랫줄은 금월까지의 누계 값을 의미함. 한 줄로 표시하는 통계는 금월까지의 누계만 나타내는 수치임**

[보호관찰 통계 담당직원 교육자료(2017, 보호관찰과)]->[K-PIS를 통해 과거 특정일의 현재원 산출]->[통계]->K-PIS 다중항목조회로 과거 특정일의 현재원을 산출하는 방법은?  
  
**○ 예를 들어, 2022. 12. 31. 자정(기준일)을 기준으로 하여 현재원을 산출할 경우, 기준일(2022. 12. 31.) 당시 현재원은 오늘(2023. 3. 11.)을 기준으로 볼 때 크게 [이미 종료된 사건]과 [2023. 3. 11. 진행중인 사건]으로 나뉨. 따라서, 이 두가지를 산출하여 데이터를 합하면 기준일(2022. 12. 31.) 당시의 현재사건이 됨  
 - 산출일 현재(2023. 3. 11.) 이미 종료된 사건 산출방법  
 ① 다중항목조회에서 대상자구분을 "종료자"로 선택함  
 ② 조회조건에서 ‘판결정문접수일자’를 ‘20221231’ 보다 작거나 같고, 관호행정종료일을 20221231 보다 크고로 놓은 후 원하는 출력항목을 체크 후 다중항목조회 버튼 클릭(기준일(2022. 12. 31.) 이전에 접수가 되어 기준일이 지나 종료된 사건으로 현재(2023. 3. 11.)는 종료자이나, 기준일(2022. 12. 31.) 당시에는 현재원)  
 - 기준일(2022. 12. 31.)에 현재원으로 산출일(2023. 3. 11.) 현재도 현재원인 사건 산출방법  
 ① 대상자구분을 "현재원" 선택함  
 ② ‘판결정문접수일자’를 ‘20221231’ 보다 작거나 같고로 놓은 후 원하는 출력항목을 위와 동일하게 설정한 후 다중항목조회 버튼 클릭(기준일(2022. 12. 31.) 이전에 접수가 되어 산출일(2023. 3. 11.) 현재까지 진행중인 사건)  
○ 위와 같이 산출된 두 개의 파일을 합하면 2022. 12. 31. 자정에 현재원이었던 사건데이터가 만들어짐**

[보호관찰통계분석시스템 사용자 매뉴얼(2021, 범죄예방정보화센터)]->[PIST의 통계(구수) 산출 기준]->[통계]->보호관찰통계분석시스텀(PIST)에서 보호관찰, 집행분야의 구수 산출 기준은?  
  
**○ 보호관찰 산출기준 : 관찰행정 종료일(전산종료일)  
 - 2021. 12. 31.까지 전산종료 되지 않은 사건은 연구수로 산출  
○ 봉사, 수강 등 집행분야 산출기준 : 집행 종료(완료) 상황일  
 - 2021. 12. 31.까지 이행시간이 부과시간보다 작거나 봉사, 수강 등 집행 종료(완료)코드가 입력되지 않은 사건은 연구수로산출**

[보호관찰통계분석시스템 사용자 매뉴얼(2021, 범죄예방정보화센터)]->[PIST의 통계(신수) 산출 기준]->[통계]->보호관찰통계분석시스텀(PIST)에서 보호관찰, 집행분야의 신수 산출 기준은?  
  
**○ 협의의 보호관찰(보호관찰대상자)  
 - 신수는 판결정문 접수 상황일, 이입은 이송사건수리 상황일 기준  
 - 판결정문 미접수 사건은 통계 수치 제외  
 - 종료(기간만료, 처분변경 등, 기타)는 종료코드 별로 관찰행정 종료일 기준으로 통계 산출  
 예) 홍길동 대상자의 기간경과종료 상황일이 1. 31. 이고, 관찰행정종료일이 2월 2일 이면 2월 통계에 산출됨   
 - ‘기타’ 종료 : 상소종료, 사망종료, 판결정문 오접수, 기타종료 등  
○ 사회봉사, 수강, 이수명령 등 집행 통계  
 - 신수는 판결정문 접수 상황일, 이입은 이송사건수리 상황일 기준  
 - 부과시간 > ‘0시간’ 또는 부과시간 > 이행시간 이면 이입으로 산출   
 - 완전집행 : 봉사부과시간 = 이행시간이고, 봉사․수강 등 집행완료(종료) 입력 상황일 기준  
 예) 사회봉사 40시간 부과받은 대상자를 2022. 1. 20. 40시간 이행처리하면(사회봉사완료처리) 1월 통계로 산출  
 - 부분집행 : 이행시간 > ‘0시간’ 보다 크고, 관찰행정종료일 기준  
 - 처분변경 등 기타 : 이행시간 = ‘0시간’이고, 처분변경 등 관찰행정종료일 기준(2021. 12. 31.까지 이행시간이 부과시간보다 작거나 봉사, 수강 등 집행 종료(완료)코드가 입력되지 않은 사건은 연구수로 산출)**

[보호관찰통계분석시스템 사용자 매뉴얼(2021, 범죄예방정보화센터)]->[PIST에서의 성인, 소년 구분 기준]->[통계]->보호관찰통계분석시스텀(PIST)에서 성인, 소년의 구분 기준은?  
  
**○ 소년 = 소년법 + 소년가석방 + 그외 법률의 경우는 18세 이하, 나머지는 모두 성인   
 예) 19세 소년법 대상자 => 소년, 19세 형법 대상자 => 성인   
○ 성인, 소년 구분 예외 사항  
 - 특정범죄자위치추적법, 치료감호법, 성폭력특별법(벌금/이수명령, 징역형이상 실형(이수명령),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징역형이상실형/이수명령)등은 소년이라도 성인으로 통계를 산출함**

[보호관찰통계분석시스템 사용자 매뉴얼(2021, 범죄예방정보화센터)]->[메일링통계 산출 기준]->[통계]->범죄예방협업포털에 게시된 메일링 통계의 산출 기준은?  
  
**○ 대상자현황  
 - 보호관찰 : 사건상태가 현재원(관찰행정종료처리 × )인 대상자(전자감독 포함)   
 - 수강/봉사/벌금대체 : 사건상태가 현재원이고, 상태값이 미배치, 배치, 분할미배치인 대상자(수강에서 선도교육은 제외)  
 - 수강/봉사/벌금대체 배치인원 : 사건상태가 현재원이고, 상태값이 배치인 대상자  
○조사자별 현황  
 - 접수 : 2022. 1. 1. 이후 접수된 조사서  
 - 회보 : 2022. 1. 1. 이후 회보된 조사서  
 - 조사중 : 2021. 1. 1. 이후 접수되어 회보되지 않은 조사서**

[정신질환 대상자 종료사실 통보 관련 질의응답(2022, 보호관찰과)]->[정신질환 보호관찰 대상자 종료사실 통보의 정의]->[보호관찰]->정신질환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종료사실 통보란?  
  
**‘정신질환 보호관찰 대상자 종료사실 통보’ 제도는 정신질환 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범방지 및 치료의 필요성 여부를 보호관찰심사위원회가 심사하여 보호관찰 종료사실을 대상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 및 지자체에 통보하는 제도임**

[정신질환 대상자 종료사실 통보 관련 질의응답(2022, 보호관찰과)]->[정신질환 보호관찰 대상자 종료사실 통보의 목적]->[보호관찰]->정신질환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종료사실 통보는 왜 하는 것인지?  
  
**2019년 진주 방화‧살인 사건을 계기로 정신질환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보호관찰 종료 후에도 범죄예방 및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자들에 대해 경찰 및 지방자치단체가 재범방지와 치료적 개입을 할 수 있도록 법이 시행된 것임**

[정신질환 대상자 종료사실 통보 관련 질의응답(2022, 보호관찰과)]->[정신질환 보호관찰 대상자 종료사실 통보의 대상 처분 범위]->[보호관찰]->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모든 대상자가 종료사실 통보대상에 해당 되는지?  
  
**보호관찰 대상자 중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로부터 정신질환으로 진단을 받거나 감정한 사람으로, 재범위험성 및 치료의 필요성이 있는 3개(조현병, 양극성장애(조울증), 망상장애)의 진단명을 가진자만 해당됨**

[정신질환 대상자 종료사실 통보 관련 질의응답(2022, 보호관찰과)]->[정신질환 보호관찰 대상자 종료사실 통보의 대상 처분 상세 범위]->[보호관찰]->소년 보호관찰 대상자와 단독 집행(수강․봉사) 대상자도 통보를 해야 하는지?  
  
**보호관찰을 처분을 받아 보호관찰관으로부터 정기적으로 지도감독을 받는자가 통보 대상이 되므로, 보호관찰 처분을 받은 소년(선도위탁 포함)은 해당되나, 단독 수강․봉사 대상자는 해당되지 않음**

[정신질환 대상자 종료사실 통보 관련 질의응답(2022, 보호관찰과)]->[정신질환 보호관찰 대상자 종료사실 통보의 대상자 고지, 동의 필요 여부]->[보호관찰]->종료사실 통보 관련, 대상자에게 고지하고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 대상자에게 고지할 의무는 없고, 동의 또한 받을 필요가 없음  
 ※ ①보호관찰법 시행령 제51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2항 3의2  
 ②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제1항 제2호, 제3호 및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제1항 제2호**

[정신질환 대상자 종료사실 통보 관련 질의응답(2022, 보호관찰과)]->[정신질환 보호관찰 대상자 종료사실 통보의 필요 서류 관련]->[보호관찰]->심사위원회에 종료사실 통보 심사를 하는데 진단서는 꼭 필요한지?  
  
**종료사실 통보를 위한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받기 위해서는 진단서 등의 증빙자료가 반드시 필요함**

[정신질환 대상자 종료사실 통보 관련 질의응답(2022, 보호관찰과)]->[정신질환 보호관찰 대상자 종료사실 통보의 필요 서류 발급 시 예산 지원]->[보호관찰]->비용 등으로 진단서 발급을 못하는 대상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보호관찰법 시행령 제20조의2 제1항에 따라 ‘진단서 또는 진료확인서’로 규정되어 있고, 그 외 입퇴원확인서, 소견서 등도 가능하며, 진단서 발급 비용 부족 시 기관 예산(일반수용비)을 지원할 수 있음**

[정신질환 대상자 종료사실 통보 관련 질의응답(2022, 보호관찰과)]->[정신질환 보호관찰 대상자 종료사실 통보의 심사 신청 시기]->[보호관찰]->심사위원회에 심사신청은 언제까지 해야 하는지?  
  
**보호관찰 종료월의 전월 10일까지 신청합니다. 즉 6월이 종료인 대상자는 5월 10일까지 심사신청을 해야함**

[정신질환 대상자 종료사실 통보 관련 질의응답(2022, 보호관찰과)]->[정신질환 보호관찰 대상자 종료사실 통보 대상자가 재판을 받고 있는 경우 신청 시기]->[보호관찰]->재범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경우 통보 심사 신청 시기는?  
  
**○ 보호관찰법 제36조의2항은 통보 심사 시기를 보호관찰이 종료되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어, 재범 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재판이 확정되어 보호관찰이 종료되면 심사위원회에 심사 신청함  
○ 심사위원회는 임시회의 등을 통해서 부정기적 종료(집행유예 실효 등) 통보 심사를 합니다. 다만, 심사위원회에서는 약 1주일 사이에 정기회의가 예정된 경우 정기회의를 통해서 통보 심사를 할 수 있음   
 ※ 단, 여죄, 과실로 인한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을 받아 그 형의 집행이 종료․면제되거나 대상자가 가석방된 경우 보호관찰 기간이 남아 있으면 보호관찰 집행 후 ‘종료되는 때’에 심사 신청**

[정신질환 대상자 종료사실 통보 관련 질의응답(2022, 보호관찰과)]->[정신질환 보호관찰 대상자 종료사실 통보의 신청 시기가 경과되었을 경우]->[보호관찰]->교육, 연가 등으로 시기를 놓쳐 종료월의 전월 10일까지 신청을 못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심사위원회의 원활한 심사를 위해 종료월의 전월 10일까지 신청해야 하므로, 장기간 교육 등으로 부재 시 과(팀)에서 대직자를 통해 업무처리를 할 필요가 있으며, 신청일 경과 시 심사위원회와 협의 후 신청함**

[정신질환 대상자 종료사실 통보 관련 질의응답(2022, 보호관찰과)]->[정신질환 보호관찰 대상자 종료사실 통보의 심사 신청이 누락되었을 경우]->[보호관찰]->심사신청 시기를 놓친 대상자에 대해 심사위원회에 심사 신청을 하지 않고 통보해도 되는지?  
  
**보호관찰법 제36조의2 제2항에서,‘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경찰관서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는 것이므로, 위 과정을 생략하고 곧바로 통보하는 것은 법률에 위배되는 사항이므로 주의가 필요함**

[정신질환 대상자 종료사실 통보 관련 질의응답(2022, 보호관찰과)]->[정신질환 보호관찰 대상자 종료사실 통보의 조기 신청 가능 여부]->[보호관찰]->K-PIS 업무종합현황에서 3개월 전에 종료사실 통보가 필요한 대상자 명단을 확인할 수 있는데, 3개월 전에 미리 심사를 요청해도 되는지?  
  
**업무종합현황에서 3개월 전에 미리 보여주었다고 하여 곧바로 심사신청 하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종료월의 전월(10일까지)에 심사 신청해야함**

[정신질환 대상자 종료사실 통보 관련 질의응답(2022, 보호관찰과)]->[경찰과 지자체에 정신질환 보호관찰 대상자 종료사실 통보 시기]->[보호관찰]->경찰 및 지자체에는 언제 통보하는지?  
  
**○ ‘종료되는 때’에 통보하는 것이므로, 실무적으로 심사위원회로부터 통보 결정을 받은 후 종료일 이후에 경찰과 지자체에 통보해야함  
 ※ 심사위원회 결정일과 보호관찰 종료일 사이 상당한 기간이 남아 있다고 하여 미리 통보절차를 진행하지 않도록 함. 단, 보호관찰 종료일 이후 심사결정 통보서가 접수된 경우는 접수일에 통보 및 종료처리**

[정신질환 대상자 종료사실 통보 관련 질의응답(2022, 보호관찰과)]->[경찰과 지자체의 정신질환 보호관찰 대상자 종료사실 활용 내용]->[보호관찰]->경찰과 지자체는, 통보된 내용으로 각자 어떻게 관리를 하는지?  
  
**○ 경찰은 범죄예방 활동에, 지자체는 치료적 개입이라는 법률 내용에 맞게 활용할 것으로 예상됨  
○ 즉 경찰은 신고를 받거나 대상자가 범죄를 저지를 경우 대상자가 정신질환 경력이 있음을 확인․참고하여 조사 후 응급입원, 행정입원, 치료감호신청, 구속영장신청 등 신병처리에 활용할 것임  
○ 지자체는 자체적으로 수립한 정신건강증진 계획에 따라 사업을 진행할 것으로 예상됨  
○ 지역사회 정신질환자 관리·치료 정책(정신건강증진사업)의 수립·결정·이행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부과된 권한이자 책임(정신건강복지법 제4조 및 제8조)임  
○ 따라서 통보된 대상자의 정보를 지자체에서 어떻게 활용할지는 각 지자체의 고유 업무영역이며 활용방식도 지자체별로 다양할 수 있음**

[정신질환 대상자 종료사실 통보 관련 질의응답(2022, 보호관찰과)]->[정신질환 보호관찰 대상자 종료사실 통보의 취지 관련]->[보호관찰]->자자체에서는 통보된 대상자에 대해 어떻게 개입해야 하는지 문의가 많은데 이럴 경우 어떻게 답변을 해야 하는지?  
  
**정신질환자에 대한 치료, 재활 지원은 지자체의 책무로서 구체적으로 어떤 정책을 시행할 것인지는 지자체가 판단할 사항이며, 보호관찰소가 자‧타해 위험성이 예상되는 보호관찰 종료자를 통보하는 것은 지자체에게 정신건강증진사업의 대상이 될 정신질환자가 있음을 알리는데 목적이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해 주시기 바람**

[정신질환 대상자 종료사실 통보 관련 질의응답(2022, 보호관찰과)]->[정신질환 보호관찰 대상자 종료사실 외 타 정보 제공 가능 여부]->[보호관찰]->자자체에서 통보 범위 외의 항목, 즉 죄명, 범죄경력 등을 요구하면?  
  
**죄명과 범죄경력은 지자체의 치료적 개입을 위한 필수항목이 아니며, 법령에 규정된 사항도 아니므로 통보할 수 없음**

[벌금액 초과 집유 판결 비상상고 관련 검토(2021, 보호관찰과)]->[비상상고가 제기된 사건의 집행 가능 여부]->[보호관찰]->형법상 집행유예 부과 가능 벌금 상한액을 초과한 판결에 대해 법령위반으로 비상상고가 제기된 경우, 본 처분의 집행 처리 방안은?  
  
**○ 비상상고제도는 법령해석과 법령 적용의 통일성을 도모하는 것이 본래 목적으로, 비상상고심에서 선고한 판결의 효력은 파기자판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피고인에게 효력이 미치지 않음(파기자판의 경우 파기자판하여 선고한 판결이 확정되면 원판결은 효력 상실, 이 경우 원판결에 의한 형의 집행은 파기자판에 의한 형의 집행으로 간주됨)  
○ 원판결의 위법 부분이 파기되어도 원판결의 주문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집행유예 부분이 파기되어도 원판결의 주문대로 벌금형의 집행은 유예됨  
○ 따라서 비상상고심 판결과 무관하게 원판결 주문대로 보호관찰 등 처분 집행 가능**

[인사혁신처 답변(2021)]->[2차 건강검진의 공가 사용 가능 여부]->[복무]->건강검진을 이유로 공가를 사용했는데, 2차 검사 대상이 되어 추가로 검진을 받아야 하는 경우, 공가 사용이 가능한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9조 제6호에 따라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을 받을 때에는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을 공가로 승인하여야 하며, 건강검진에 부여할 수 있는 공가의 상한일수는 별도로 제한하고 있지 않지만, 2차 검사(확진검사)의 경우는 공가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인사혁신처 답변(2023)]->[원격지 전보 뱔령 및 부임 시 공가 사용 가능 기준]->[복무]->원격지간의 전보 발령을 받고 부임할 때 공가를 사용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거리 기준은?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9조에 따라,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원격지간의 전보 발령을 받고 부임할 때 직접 필요한 기간(시간)만큼 공가를 승인하여야 함  
○ '원격지'라 함은 원소속기관 등으로부터 전보 뱔령지로 이동할 때 가장 빠른 교통수단으로 편도 4시간 이상이 소요되는 등 인사발령을 받은 당일에 부임에 관한 일을 모두 처리하기 곤란한 지역을 말함  
○ 이때 가장 빠른 교통수단이라 함은 대중교통 및 자차 등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모든 교통수단을 고려함이 바람직하며 동 제도의 취지 및 구체적인 소요시간을 감안하여 승인권자가 적의 판단하여 승인하여야 함**

[인사혁신처 답변(2020)]->[병가 사용 요건의 세부 기준]->[복무]->병가 사용 요건으로 수술 후 경과 관찰, 정기적 약 수령 등이 해당되는지?  
  
**○ 진단서 등 병가를 신청한 공무원의 건강상태에 대한 관련 전문가의 의학적 소견을 참고하여 질병, 부상 또는 감염병 환자여부를 확인하고,  
○ 병가를 신청한 공무원의 진술이나 진단서, 기타 질병치료와 관련된 자료 등을 참고하여 직무수행이 불가능한 상태인지에 대하여 판단, 병가의 승인여부 및 기간을 결정해야함  
○ 따라서, 수술 후 단순 경과 관찰, 정기적 약 수령하는 경우 ‘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 할 없을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병가가 아닌 연가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인사혁신처 답변(2018)]->[병가 상신 시 필요한 서류 해석]->[복무]->병가 상신 시 필요한 진단서 발급은 약 2만원 정도의 비용이 발생하는데, 통원확인서 및 진료확인서 등과 같은 서류로는 갈음하지 못하는지?  
  
**병가는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다른 공무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에 승인권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는 것이며, 의사의 소견서와 달리 진단서는 병명에 대한 법적효력을 갖는 문서이므로, 병가제도의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해 진단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인사혁신처 답변(2022)]->[진단서 없는 병가 사용 6일에 대한 해석]->[복무]->진단서 없는 병가 사용의 기간 산정에 대한 기준은?  
  
**진단서 첨부 여부와 관계없이 연간 누계 6일이 산정되므로, 처음부터 진단서를 첨부하여 병가를 사용하였더라도 연간 누계 6일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병가부터는 반드시 진단서를 첨부해야 함  
 예) 2022. 1. 1.~1. 7. 코로나19 확진으로 병가를 사용했으면, 이후에 모든 병가는 진단서를 제출해야함**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안내]->[반복민원의 기준]->[행정]->반복민원인지의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는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반복 및 중복 민원의 처리)에 따르면, 민원인이 동일한 내용의 민원(시행령 제2조 제2항 제4호 내지 제7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원에 한한다.)에 관한 서류를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반복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2회 이상 그 처리 결과를 통지한 후에 단순한 문구로서 판단할 사안은 아니고 민원인이 요구하는 민원 취지나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동일 내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민원내용이 서로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민원에 대한 답변이 같다면 '동일한 내용의 민원'으로 보아 반복 및 중복 민원으로 종결처리 할 수 있습니다.**

[국립국어원 답변(2016)]->[공문서 작성 시 유의할 점]->[행정]->공문서의 본문 마지막에 '끝'을 표기하는 방법은?  
  
**○ '행정업무운영 편람'에 따르면 본분 내용 끝에서 두 타(한글 한 자)를 띄고, '끝' 뒤에 마침표를 씀  
 - 문서의 '끝' 표시  
 ① 본분 내용의 마지막 글자에서 한 글자(2타) 띄우고 '끝' 표시를 한다. 예) …..주시기 바랍니다. ⅤⅤ끝.  
 ② 첨부물이 있으면 붙임 표시문 다음에 한 글자(2타) 띄우고 표시한다. 예) 붙임 1. 서식승인 목록 1부.   
 2. 승인서식 2부ⅤⅤ끝.  
 ③ 본문 또는 붙임 표시문이 오른쪽 한계선에서 끝났을 경우에는 그 다음 줄의 왼쪽 한계선에서 한 글자(2타) 띄우고 '끝' 표시를 한다. 예) (본문 내용)............주시기 바랍니다.  
 ⅤⅤ끝.**

[자체 제작 문서(2022)]->[대외직명의 사용 기준]->[행정]->책임관과 주무관의 차이가 무엇인지?  
  
**책임관과 주무관은 대외직명이라고, 대외적으로 쓰는 직책임. 보호관찰기관의 경우 일반직 6~7급 직원은 '책임관', 일반직 8~9급 직원은 '주무관, 공무직 등 직원은 '실무관'으로 대외직명을 운영하고 있음**

[자체 제작 문서(2022)]->[경찰관의 유선 정보 요청에 따른 조치 방법]->[행정]->경찰관서에서 전화로 보호관찰 대상자의 인적사항, 보호관찰 집행 내용 등을 요청할 경우 대응 방법은?  
  
**보호관찰기관의 경우 범죄예방 업무를 실시하고 있어 업무 특성 상 다량의 개인정보를 취급하고 있음. 이에 유·노출 등 각종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법,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 이용에 대해 제한을 두고 있음. 따라서 경찰관서 등에서 보호관찰 대상자의 개인정보를 요청할 시에는 법령 근거 및 공문 없이는 자료 제공이 불가함. 특히 전자감독 수신자료의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가 필요하며, 경찰관서에서 정보 요청을 받은 때에는 반드시 공문 등을 접수한 후 관련 근거에 따라 제공해야함. 또한 출력물, 복사물 형태의 개인정보 제공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며, 전자문서 등을 통해 비공개 처리하여 송부하고 제공 정보에 대해서는 반드시 비밀번호를 설정하여 문서 발송 후 별도 통보하는 것이 바람직함**

[자체 제작 문서(2022)]->[소년보호관찰 대상자가 항고를 제가한 경우 집행 방법]->[소년보호관찰]->소년 보호관찰 대상자가 항고를 제기했을 때의 종료 방법은?  
  
**해당 상황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1항과 소년법 제46조의 규정이 달라 유권해석이 필요한 사안임. 보호관찰 업무 매뉴얼(보호관찰과)에 따르면 보호관찰 등의 집행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므로 항고한 경우에는 상소절차가 모두 종료되어 확정된 후에 집행하는 것이 타당하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또한 형이 확정되지 않았다면 집행할 수 없음. 또한 보호관찰 대상자 지도감독 지침에 따라 판결정문 접수 시 대법원 홈페이지를 활용하여 상소 제기 여부를 확인하고, 상소가 제기되었으면 항소증명원 등을 첨부하여 종료할 수 있음**

[자체 제작 문서(2022)]->[생산 비전자문서의 폐기 방법]->[행정]->생산된 비전자문서의 폐기 방법은?  
  
**기록물은 각 문서의 중요도 등에 따라 법무부 기록관리기준표에 보존기간이 정해져 있으며, 보존 기간이 만료되면 각 기관에서 기록물 기록관인 운영지원과로 목록을 제출함. 기록관에서는 기록물 평가심의회를 개최하여 폐기의 적정성 등을 심사, 폐기 명단을 각 기관으로 보내고 파기 차량 등으로 폐기하고 있음**

[정보공개 담당자 교육 자료(2023)]->[정보공개 실시 시 원보대조필 유무]->[행정]->정보공개 청구 시 원본대조필(진본성확인) 요구를 할 경우에는 이에 응해야 하는지?  
  
**정보공개 실시 시 원본대조필을 해야 할 의무와 법정 근거 없음(경기도 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 2011. 10. 13. 2011행심27 재결)**

[정보공개 담당자 교육 자료(2023)]->[전자파일 공개 시 파일 형태 구부]->[행정]->국민신문고 민원내역을 전자파일로 청구하였으나 기관에서 정보의 소재만을 안내가 가능한지?  
  
**전자파일 형태의 공개방법을 거절하였고, 요청한 정보가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개된 정복 아니기 때문에 공개 거부 처분은 위법함(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20. 9. 15. 2020-13901 재결)**

[정보공개 담당자 교육 자료(2023)]->[구술을 통한 정보공개]->[행정]->구술로 정보공개 청구가 가능한지?  
  
**담당공무원 앞에서 진술로써 정보공개 청구가 가능하나, 이는 질병, 장애, 기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며 전화로 청구하는 것은 불가함**

[정보공개 담당자 교육 자료(2023)]->[사전공개대상의 공개 결정 여부]->[행정]->사전 공개 대상인 법률, 시행령을 청구한 경우에는 이에 응해야 하는지?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수용자가 인터넷에 이미 공개되어 있는 법률과 시행령을 일체 청구하여 담당자가 정보에 게시되어 있는 인터넷 주소만을 안내하는 경우, 법령에 이미 공개된 정보는 그 정보의 소재를 안내하는 방법으로 공개한다고 명시되어 있어, 청구자의 수용 여부와 무관하게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정보를 공개한 것으로 인정(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3. 7. 16. 2013-07091 재결)**

[정보공개 담당자 교육 자료(2023)]->[정보공개 시 공무원 성명 등 공개 가능 여부]->[행정]->공문서에 기재된 공무원 성명 등을 청구했을 때, 공개가 가능한지?  
  
**공문서를 기안한 담당공무원 및 검토, 결재한 공무원의 직위와 성명은 공개 대상임(법제처 2006. 8. 22. 답변 06-0131)**

[이수명령 제도 관련 Q&A(2015)]->[수강명령과 이수명령의 차이]->[수강명령]->수강명령과 이수명령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  
  
**○ 수강명령은 대상자의 잘못된 인식과 오래된 습관을 교정하는 교육적인(수동적) 의미가 큰 반면,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은 치료가 필요한 대상자에게 적극적·능동적인 개입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요구가 반영된 처분임  
○ 이수명령 제도가 도입되기 전부터 보호관찰소에서 사용하고 있는 수강명령 전문 프로그램은 이미 치료적 개입에 의한 재발방지를 목적으로 집행하고 있으므로 법률상 용어의 차이는 있으나 집행상 수강명령과 이수명령은 큰 차이가 없음  
○ 성범죄자의 경우, 교육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수강명령과 이수명령의 구분이 아닌 재범위험성에 따른 집단 구분을 통해 위험성에 따른 치료 강도를 차별화할 필요가 있음**

[이수명령 제도 관련 Q&A(2015)]->[이수명령 대상자의 제재조치 방법]->[수강명령]->주거부정인 벌금형 이수명령 대상자에 대해 수사의뢰 하였으나 검찰에서 범죄성립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며 기각한 사례가 있는데, 이수명령 대상자가 소재불명된 경우 제재조치 방법은?  
  
**○ 「성폭력처벌법」및「청소년성보호법」상 ‘경고를 받은 후’의 의미에 대해 검찰에서는 대상자가 서면경고를 수령하여 위반 사실을 인지하고 있어야 하므로 소재불명된 경우는 수사의뢰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음  
○ 「성폭력처벌법」및「청소년성보호법」상 벌금형 이수명령자의 소재불명 기간이 1개월 이상 지속될 경우, 관할 경찰관서에 신상정보 등록관련 지명수배 여부를 확인하고 협조요청, 현지 출장 및 관계인 면담과 범죄경력조회, 출입국조회 등 각종 정보조회를 활용하여 대상자 소재파악에 주력하여야 함(징역형 이수명령자의 경우도 동일하게 적용)   
○ 소재불명된 벌금형 이수명령자가 노역 등 이유로 수용되었을 경우, 수용시설을 방문하여 사유를 파악한 뒤 서면경고하고, 이후 출소전 재차 고지하여 대상자가 출소한 뒤 불응할 경우 즉시 수사의뢰**

[이수명령과 치료프로그램 준수사항의 이해(2023, 전자감독과)]->[징역형 이수며영과 특정범죄 치료프로그램 준수사항의 차이]->[수강명령]->징역형 이수명령과 특정범죄 치료프로그램 준수사항의 차이는?  
  
**○ '징역형 이수명령'은 「성폭력처벌법」제16조 및 「청소년성보호법」제21조를 근거로, 징역형에 부과되는 수강명령의 일종임. 실무상 용어는 '이수명령'으로 판결문의 주문에 명시되어 있음. 집행 주체는 수용 중일 경우 교정시설, 출소 후에는 보호관찰소임  
○ '특정범죄 치료프로그램'은 「전자장치부착법」제9조의2 제1항제4호를 근거로, 전자장치 부착명령에 부과되는 준수사항임. 실무상 '치료프로그램 준수사항'이며, 판결문 별지에 표기되어 있음. 집행 주체는 보호관찰소만 집행 가능함(교정기관은 불가)  
○ 결과적으로 교도소장이 이수명령을 집행할 수 있는 처분은 징역형 이수명령 뿐이며, 이 또한 대상자가 본건 수용 중에 한하므로 출소 후에 보호관찰소에서 집행 중 대상자가 별건(재범, 여죄 등)으로 재수감되더라도 교도소장은 본건 이수명령에 대한 집행 권한 없음**

[e-사람 서비스센터 답변(2021)]->[None]->[행정]->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에 의한 출근 근무일수(실근무일수)의 산정 방식은?  
  
**○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에 의하면 실근무일수를 계산함에 있어 강등(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3개월에 한함), 정직, 직위해제, 휴직, 연가, 병가, 공가, 특별휴가 등의 사유가 있어 근무하지 아니한 경우는 출근 근무일수에 포함하지 아니하며, 반일연가, 외출 등의 경우에는 사용한 시간을 제외하고 당일에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상 1일 근무시간(8시간)을 모두 근무하는 경우에만 출근 근무일수로 인정됨  
○ 즉 실근무일수에 산정되는 기준은 일일 초과근무시간을 포함하여 8시간 근무를 하였을 때 실근무일수 1일이 산정됨.(연가, 외출, 조퇴 등으로 1일 근무시간 8시간을 모두 근무하지 못한 일자들은 실근무일수에서 제외되며, 육아시간, 모성보호시간, 대체휴무, 당직휴무의 경우에는 실근무일수에 포함)**

[e-사람 서비스센터 답변(2021)]->[None]->[행정]->e-사람과 법무샘의 사용자 정보(소속기관, 부서 등)가 다른 경우 처리 방법  
  
**○ 기관 통합계정관리자가 사용자 정보 변경해야 함  
○ 통합계정관리시스템> 조직관리 > 사용자 관리> 사용자 선택 및 정보수정  
 - e-사람 자동연계 부분을 “수동”으로 변경  
○ 주의사항  
 - e-사람 자동연계를 “수동”으로 설정 하면 e-사람의 사용자정보가 법무샘에 자동 반영 되지 않으므로 담당자가 기존처럼 직접 변경해야 함  
 - 파견 또는 지원근무 등으로 e-사람과 법무샘 조직정보가 달라야 하는 경우 반드시 “수동”처리 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법무샘 정보가 e-사람의 원소속기관 정보로 자동반영 됨  
 - 파견 종료 등 원소속으로 변경이 될 경우 반드시 e-사람 자동연계를 “자동”으로 변경해야 이후 인사이동 시 e-사람 자동 연계 됨**

[None]->[None]->[소년보호]->보호소년이란 무엇인가요?  
  
**"보호소년"이란 「소년법」제32조제1항제7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가정법원소년부 또는 지방법원소  
년부(이하 "법원소년부"라 합니다)로부터 위탁되거나 송치된 소년을 말합니다.**

[None]->[None]->[소년보호]->의료재활 보호소년이란 무엇인가요?  
  
**"의료재활 보호소년"이란 「소년법」제32조제1항제7호 처분을 받은 소년을 말합니다.**

[None]->[None]->[소년보호]->특수단기 보호소년이란 무엇인가요?  
  
**특수단기 보호소년이란「소년법」제32조제1항제8호 처분을 받은 소년을 말합니다.**

[None]->[None]->[소년보호]->단기 보호소년이란 무엇인가요?  
  
**단기 보호소년이란「소년법」제32조제1항제9호 처분을 받은 소년을 말합니다.**

[None]->[None]->[소년보호]->장기 보호소년이란 무엇인가요?  
  
**장기 보호소년이란「소년법」제32조제1항제10호 처분을 받은 소년을 말합니다.**

[None]->[None]->[소년보호]->집중처우 교육이란 무엇인가요?  
  
**「보호소년 처우지침」제33조에 따른 교육과정을 말하며, 이 교육을 받는 보호소년을 "집중처우소년"이라 합니다.**

[None]->[None]->[소년보호]->소년보호기관에 입원한 학생들은 처음에 어떤 교육을 받게 되나요?  
  
**소년보호기관에 입원한 학생들은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3조에 따른 신입자교육을 받게 됩니다.  
「보호소년 교육지침」 제5조에서 신입자교육은 보호소년 개개인의 소질과 특성을 심층적으로 진단하고 보호소년의 사회복귀 목표와 부합하는 개별처우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교육 과정 및 내용을 안내하고 새로운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으로 합니다.  
소년원장은 「보호소년 교육지침」 제6조에 따라 보호소년이 입원한 날로부터 10일 이내(공휴일 포함)의 기간을 신입자교육 기간으로 지정하고 면회 절차 등 소년원 생활 제반에 관한 기본적인 권리 및 의무에 대한 교육 등을 실시합니다.  
또한 소년원장은 신입자교육의 총 교육과정을 30시간 이상으로 운영하되, 각 교육과정은 다음 각 호에 따라 편성하여야 하며 교육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생활안내 : 5시간 이상  
2. 적응지도 및 상담활동 : 10시간 이상  
3. 체육활동 : 5시간 이상  
4. 분류조사 : 5시간 이상  
5. 성폭력예방 및 인권교육 : 5시간 이상**

[None]->[None]->[소년보호]->사회복귀교육은 무엇인가요?  
  
**소년보호기관에 출원에 임박한 학생들은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5조에 따른 사회복귀교육을 받게 됩니다.  
「보호소년 교육지침」 제7조에서 사회복귀교육은 출원을 앞둔 보호소년에게 취업, 진학 등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사회적응력을 배양하는 것을 지도방향으로 두고 있습니다.  
소년원장은 「보호소년 교육지침」 제6조에 따라 퇴원 및 임시퇴원 등 출원이 임박한 보호소년에 대하여 출원예정일 이전 10일이내(공휴일 포함)의 기간을 사회복귀교육 기간으로 지정하여 진로상담 및 취업교육 등을 실시합니다.  
또한 소년원장은 사회복귀교육의 총 교육과정을 15시간 이상으로 운영하되, 각 교육과정은 다음 각 호에 따라 편성하여야 하며 교육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진로상담 및 취업교육 : 7시간 이상  
2. 현장학습 및 봉사활동 : 7시간 이상  
3. 출원준비 : 1시간 이상**

[None]->[None]->[소년보호]->검정고시반 운영은 어떻게 해야하며 주의사항은 무엇인가요?  
  
**소년원장은 「보호소년 교육지침」 제9조에 따라 학업을 중단한 보호소년의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7조제2항의 중학교 졸업학력검정고시 또는 제98조제2항의 고등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 응시를 위해 시험일정에 따라 3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검정고시반을 편성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검정고시반 운영 시 초ㆍ중등교육 처우로 소년원학교에 재학중인 보호소년은 검정고시반에 편입하면 안됩니다.**

[None]->[None]->[소년보호]->인성교육은 어떤 내용으로 운영되나요?  
  
**인성교육은 보호소년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전문화된 교육과정을 운영하여 건전한 청소년으로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비행성 교정에 중점을 두며 소년원장 등은 기본 교육과정에 인성교육 과목을 편성ㆍ운영하여야 합니다.  
「보호소년 교육지침」 제11조(교육과정)에 따라 인성교육은 집단상담, 집단지도, 기타 활동으로 합니다.   
집단상담은 강/절도ㆍ폭력ㆍ약물ㆍ성비행예방 등 비행유형별 과목과 자기성장, 가족관계회복, 대인관계능력향상, 진로교육 등 일반과목으로 합니다.  
집단지도는 위의 집단상담 과목 외에 법교육, 생활예절, 단학, 인터넷중독예방, 교통안전, 독서지도, 음악감상, 인문학교육 등의 과목으로 합니다.  
기타활동은 예ㆍ체능교육, 사회봉사활동, 체험학습, 특강, 종교활동 등으로 합니다.  
「보호소년 교육지침」 제17조(소년원학교의 인성교육)에 따라 소년원학교는 특성화교과의 일부로 인성교육을 실시하며 소년원학교장은 인성교육과정을 편성ㆍ운영함에 있어 집단상담을 우선 편성하고 잔여 시간을 집단지도, 기타 활동으로 구성하여야 합니다.  
위의 항에도 불구하고 교육과정 편성상의 사유로 집단상담에서 제외된 보호소년은 집단상담 외의 과정으로 편성할 수 있습니다.  
「보호소년 교육지침」 제18조(직업능력개발훈련 소년원의 인성교육)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 소년원은 이론 또는 자율편성 과목의 일부로 인성교육을 실시하며 소년원학교장은 인성교육과정을 편성ㆍ운영함에 있어 집단상담을 우선 편성하고 잔여 시간을 집단지도, 기타 활동으로 구성하여야 합니다.  
위의 항에도 불구하고 교육과정 편성상의 사유로 집단상담에서 제외된 보호소년은 집단상담 외의 과정으로 편성할 수 있습니다.  
「보호소년 교육지침」 제19조(의료재활 소년원의 인성교육)에 따라 의료재활 소년원은 의료재활교육의 일부로 인성교육을 실시합니다. 의료재활 처우 기간 중 이수한 집단상담은 퇴원 또는 임시퇴원 시 필요 이수 교육시간으로 인정합니다.**

[None]->[None]->[소년보호]->인성교육 중 집단상담은 어떻게 운영하나요?  
  
**「보호소년 교육지침」 제12조(집단상담)에 따라 인성교육의 주 교육과정은 집단상담으로 하여야 하며 집단상담의 각 과목은 3개월 과정(주1회, 12회기)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기간과 횟수를 단축 운영할 수 있습니다.  
집단 상담의 1개 집단은 8∼12명으로 구성하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과목이 종료될 때까지 구성원을 변경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보호소년의 부족 등으로 집단구성이 어려운 경우에는 7명 이하로 할 수 있습니다.  
보호소년별로 이수하여야 할 집단상담의 과목 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의료재활 보호소년은 1개 이상으로 합니다.  
2. 단기 보호소년 또는 장기 보호소년은 2개 이상으로 하되, 초ㆍ중등교육과정 단기 보호소년은 1개 이상으로 할 수 있습니다.**

[None]->[None]->[소년보호]->인성교육 중 집단지도는 어떻게 운영하나요?  
  
**「보호소년 교육지침」 제13조(집단지도)에 따라 집단지도는 소년원 교사 1인당 1개 또는 2개의 과목을 지정하여 운영합니다.  
집단지도 담당 소년원 교사는 각 과목별로 학습지도안을 작성하여야 하며 소년원장은 집단지도를 위한 시청각자료의 개발ㆍ보완, 활용 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합니다.**

[None]->[None]->[소년보호]->인성교육 중 기타 활동은 어떻게 운영하나요?  
  
**「보호소년 교육지침」 제14조(기타 활동)에 따라 예ㆍ체능교육은 과목별로 담당교사를 지정ㆍ운영하며 예ㆍ체능 교육은 과목별로 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주 4시간 이상으로 편성ㆍ운영합니다.  
예ㆍ체능 과목 중 구조화된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제12조제3항에서 정한 집단상담을 이수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장기 보호소년 : 48회기 이상  
2. 의료재활 및 단기 보호소년 : 20회기 이상  
종교활동의 경우에는 교육과정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토, 일요일에 편성ㆍ운영하여야 합니다.**

[None]->[None]->[소년보호]->인성교육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진행하나요?  
  
**「보호소년 교육지침」 제15조(평가)에 따라 인성교육 평가는 집단상담 과목에 대해서만 실시하며, 평가도구는 각 과목 종료 시 보호소년 등이 작성한 교육소감문과 교육평가설문 응답에 의합니다.  
「보호소년 교육지침」 제16조(교육활동 결과물 관리)에 따라 소년원장은 교육평가설문지, 교육소감문 등 인성교육 운영 과정에서 생산된 각종 교육활동 결과물의 원본을 1년간 보존ㆍ관리하여야 합니다.**

[None]->[None]->[소년보호]->어떤 학생들이 집중처우 교육을 받나요?  
  
**「보호소년 처우지침」 제33조(집중처우)에 따라 소년원장은 품행교육이 집중적으로 필요한 소년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단기 및 장기 보호소년을 처우ㆍ징계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기존의 교육과정과는 별도의 교육과정(이하 "집중처우 교육과정"이라 합니다)에 따라 지도할 수 있습니다.  
1. 3회 이상 근신의 징계를 받은 보호소년  
2. 「소년법」 제32조 제1항 제7호부터 제10호의 보호처분을 받아 이번 처분 포함 3회 이상 소년원에 재입원(임시퇴원취소 포함)한 후 징계를 2회 이상 받은 소년  
3. 상습규율위반 소년(가. 벌점 5점을 월 3회 이상 받은 소년, 나. 2개월간 벌점을 10회 이상 받은 소년)  
4. 이탈 후 재수용된 소년 또는 이탈을 시도하였던 소년  
5. 교육을 받을 의지가 없는 소년(가. 임시퇴원취소자 중 교육과정 이수를 거부하거나, 정당한 이유없이 다른 소년원 전출을 요구하는 소년 등, 나. 정당한 이유없이 입실거부, 수업거부 등을 3회 이상 하는 소년)  
또한 집중처우 교육과정은 타인에 대한 공감과 배려심을 증진하고, 법의식 및 책임감을 함양하여 성행을 교정하고 공동체 의식을 높일 수 있는 인성교육을 그 내용으로 합니다.**

[None]->[None]->[소년보호]-> 집중처우 교육은 어떻게 운영하나요?  
  
**「보호소년 교육지침」 제20조(집중처우교육)에 따라 소년원장은 「보호소년 처우지침」 제33조에 따라 선정된 집중처우 교육과정 대상자에 대한 효과적인 교육을 위해 집중처우교육 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집중처우교육은 적응교육, 기본교육, 수료교육으로 구성하고 교육기간은 1개월 이내로 합니다.  
집중처우소년의 생활실, 교육시설, 교육과정은 다른 보호소년등과 분리하여 운영을 원칙으로 하되 기관 실정에 따라 생활실은 분리하지 않고 운영할 수 있습니다.  
소년원장은 집중처우소년에 대한 안정된 수용관리와 전문적인 교육을 위하여 전담교사를 지정하여야 하며 소년원장은 전담교사가 집중처우소년의 지도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여야 합니다.**

[None]->[None]->[소년보호]->집중처우 교육 중 적응교육은 어떻게 운영하나요?  
  
**「보호소년 교육지침」제22조(적응교육)에 따라 소년원장은 집중처우교육이 시작되면 대상 소년에 대하여 지체 없이 상담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적응교육은 집중처우소년이 새로운 교육과정에 원만히 적응할 수 있도록 생활안내, 명상, 개별상담, 다짐문 작성 등의 내용으로 구성하여야 하며 집중처우교육의 적응교육 기간은 7일 이내로 합니다.**

[None]->[None]->[소년보호]->집중처우 교육 중 기본교육은 어떻게 운영하나요?  
  
**「보호소년 교육지침」제23조(기본교육)에 따라 기본교육은 집중처우소년이 자기성찰, 타인에 대한 공감과 배려심 증진, 법의식 및 책임감 함양 등을 통하여 성행을 교정하고 공동체 의식을 높일 수 있는 인성교육, 체험활동, 그 밖에 필요한 내용으로 구성하여야 합니다.  
집중처우교육의 기본교육 기간은 14일 이내로 합니다.**

[None]->[None]->[소년보호]->집중처우 교육 중 수료교육은 어떻게 운영하나요?  
  
**「보호소년 교육지침」제24조(수료교육)에 따라 수료교육은 집단지도, 체육활동, 상담 등 집중처우소년이 생활실로 복귀하여 원만히 생활할 수 있도록 돕는 내용으로 구성하여야 하며 집중처우교육의 수료교육 기간은 10일 이내로 합니다.**

[None]->[None]->[소년보호]->집중처우 교육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진행하나요?  
  
**「보호소년 교육지침」제25조(교육 평가)에 따라 전담교사는 매일 집중처우소년의 교육 및 생활태도에 대해 별표 3에 따라 5단계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보시스템에 기록하여야 합니다. 단, 공휴일 등 집중처우교육이 실시되지 않는 기간은 생활관 근무책임자가 평가할 수 있습니다.  
소년원장은 위의 평가 결과 매우좋음 평가를 3회 이상 받은 경우 향상된 처우를 할 수 있므며 집중처우교육 종료 전일 평가기록지를 참작하여 집중처우소년의 수료여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집중처우소년은 처우ㆍ징계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재교육 대상자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1. 집중처우 교육기간 중 징계를 받은 소년  
2. 평가기록지에서 매우나쁨 평가를 3회 이상 받거나, 나쁨과 매우나쁨 평가를 합산하여 6회 이상 받은 소년**

[None]->[None]->[소년보호]->집중처우 교육 중 재교육은 어떻게 운영하나요?  
  
**「보호소년 교육지침」제26조(재교육)에 따라 재교육 대상자에 대하여는 제23조의 교육과정을 반복하여 교육하며 소년원장은 필요에 따라 교육과정 및 교육기간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None]->[None]->[소년보호]->소년원학교에서 교육을 받던 집중처우소년은 집중처우 교육기간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보호소년 교육지침」제28조(학적처리 등)에 따라 소년원학교에서 초ㆍ중등교육을 받던 집중처우소년은 집중처우 교육기간을 수업일수로 인정합니다. 다만, 직업능력개발훈련 및 인성교육을 받던 집중처우소년은 훈련시간 및 교육시간에서 제외합니다.**

[None]->[None]->[소년보호]->소년원은 학교라고 하던데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나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의하여 소년원학교의 지정과 명칭은「소년원 등의 기능 및 명칭 복수사용에 관한 지침」제3조에 따라 학교의 명칭를 복수명칭으로 사용합니다. 또한 소년원학교는 특성화학교 체제로 운영합하며 소년원학교의 운영은 기관의 특성을 고려하여 「초ㆍ중등교육법」 제30조에 따라 중학교ㆍ고등학교를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습니다.**

[None]->[None]->[소년보호]->초ㆍ중등교육과정을 이수하는 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는 어떻게 기재하여야 하나요?  
  
**「보호소년처우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64조에 따라 소년원학교장은 「초ㆍ중등교육법」 제25조에 따라 보호소년의 인성발달상황과 학업성취도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ㆍ평가한 학교생활기록부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하며 소년원학교장이 작성ㆍ관리하는 학교생활기록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1. 인적사항  
 2. 학적사항  
 3. 출결상황  
 4. 자격증 및 인증 취득상황  
 5. 교과학습 발달상황  
 6.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7. 그 밖에 교육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None]->[None]->[소년보호]->초ㆍ중등교육과정을 이수하는 학생의 성적은 어떻게 관리하여야 하나요?  
  
**「보호소년 교육지침」제31조(학업성적관리규정)에 따라 소년원학교장은 교과별 평가의 영역ㆍ방법ㆍ횟수ㆍ세부기준(배점)ㆍ반영비율 등과 성적처리 방법 및 결과의 활용 등을 정한 학업성적관리규정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세부내용은 기관의 학업성적관리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None]->[None]->[소년보호]->초ㆍ중등교육과정의 기본편제는 어떻게 되나요?  
  
**「보호소년 교육지침」제32조(기본편제)에 따라 소년원학교의 교육과정은 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으로 구분합니다. 특성화학교 체제의 교과는 특성화교과와 보통교과로 합니다.**

[None]->[None]->[소년보호]->초ㆍ중등교육과정의 창의적 체험활동에는 어떤 내용이 포함되나요?  
  
**「보호소년 교육지침」제32조(기본편제)에 따라 창의적 체험활동은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으로 합니다.**

[None]->[None]->[소년보호]->초ㆍ중등교육과정을 운영하면서 어떤 점을 유의해야 되나요?  
  
**「보호소년 교육지침」제32조(기본편제)에 따라 창의적 체험활동은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으로 합니다.**

[None]->[None]->[소년보호]->초ㆍ중등교육과정을 운영하면서 어떤 점을 유의해야 되나요?  
  
**「보호소년 교육지침」제33조(편성ㆍ운영의 기본방향)에 따라 소년원학교장은 학교 교육과정 편성ㆍ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학년ㆍ교과목별 교육과정을 편성합니다.  
 학생의 학기당 이수 보통교과목 수는 교육부에서 고시하는「초ㆍ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에 따라 편성하고, 연간ㆍ 학기간ㆍ주간 학사운영계획을 수립하여 교육과정을 운영합니다.  
과목별 시간을 배정함에 있어 요일 및 교과간의 균형을 유지하고 행사활동 등으로 특정 교과 시수의 결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합니다.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의 하위 영역을 통합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습니다.**

[None]->[None]->[소년보호]->초ㆍ중등교육과정의 수업일수는 어떻게 되나요?  
  
**「보호소년 교육지침」제34조(수업일수 등)에 따라 소년원학교장은 수업일수를 학교행사를 포함하여 190일 이상으로 정하여야 합니다.**

[None]->[None]->[소년보호]->초ㆍ중등교육과정의 수업시수는 어떻게 되나요?  
  
**「보호소년 교육지침」제34조(수업일수 등)에 따라 소년원학교장은 중학교는 1,122시간, 고등학교는 1,156시간 이상을 수업시수로 정하여야 합니다.  
수업시수에는 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 외에 각종 시험, 경시대회 등의 시수도 포함합니다.**

[None]->[None]->[소년보호]->초ㆍ중등교육과정 중 중학교 교과는 어떻게 되나요?  
  
**「보호소년 교육지침」제35조(중학교 교과) 중학교과정의 교과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특성화교과 : 인성교육, 컴퓨터교육 또는 직업교육  
 2. 보통교과 : 국어, 사회(역사포함)/도덕, 수학, 과학/기술ㆍ가정/정보, 체육, 예술(음악/미술), 영어, 선택**

[None]->[None]->[소년보호]->초ㆍ중등교육과정 중 교등학교 교과는 어떻게 되나요?  
  
**「보호소년 교육지침」제36조(고등학교 교과) 고등학교과정의 교과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특성화교과 : 인성교육, 컴퓨터교육 또는 직업교육  
 2. 보통교과 : 국어, 수학, 영어, 사회(역사/도덕 포함), 과학, 체육, 예술(음악/미술), 한국사, 기술ㆍ가정/제2외국어/한문/교양**

[None]->[None]->[소년보호]->초ㆍ중등교육과정 중 특성화교과와 보통교과의 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보호소년 교육지침」제37조(교과의 편성 및 운영) ① 소년원학교의 특성화교과와 보통교과는 60:40의 비율로 합니다. 다만, 소년원학교장은 시설ㆍ교사 등 교육여건을 고려하여 그 비율을 40:60까지 조정할 수 있습니다.**